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교원인사정책과]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CONTENTS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 3

2014. 3. 1.자 적용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관련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사례 안내 ····· 47

2026학년도 중등·특수교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 ····· 57

인사양식 및 서식 ····· 107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중등) ····· 121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중등)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중등)

1975. 5. 10. 시행
64차 개정 2025. 7. 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공립의 중등학교 교원(영양교사 별도) 및 교육전문직원에 적용한다.

제 2 장 신 규 임 용

제3조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 ① 신규임용자는 임용후보자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근무지를 지정할 때는 생활근거지를 참고하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규임용후보자를 우선 고려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의2 (초빙 · 공모 교원의 임용) ① 초빙교사제 교원의 임용은 별도의 실시 지침에 의한다.
② 교장공모제 교원의 임용은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제3조의3 (수석교사의 신규임용 및 배치) ① 수석교사의 신규임용 및 배치는 별도의 실시 지침에 의한다.

제4조 (기간제교사의 임용) ①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사는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되 본도의 임용후보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승 진 임 용

제5조 (승진) ①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의 3배수 범위에서 하되, 승진후보자의 승진포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교감으로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2. 발령일 현재 교감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3. 교육적 필요에 의해 지정한 지역(연천, 포천 등)에 교감전보 희망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교감승진 임용을 희망한 자
   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정기전보에 한함
   나. 발령교에 교감으로 4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 각 해당지역에 제3호에 의거 승진임용된 교감은 80% 미만에 한함
4.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 2회 이상 등재된 자(단, 교원 수급상 필요에 의해 명부가 조정된 경우에 한하며. 3월 31일자 명부는 적용하지 아니함)

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제청추천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승진임용제청추천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2. <삭제>
3. <삭제>
4. 발령일 현재 교장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5. 교장승진후보자명부에 2회 이상 등재된 자(단, 교원 수급상 필요에 의해 명부가 조정된 경우에 한하며. 3월 31일자 명부는 적용하지 아니함)

⑥ 제1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감 또는 교감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교장 자격소지자는 당해 학기에 교장임용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 4 장 전 보

제6조 (전보계획 및 전보시기) ① 교원의 동일교 ·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 인사관련법규 및 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세부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의 전직 또는 전보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실시하고, 수석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전보 또는 전직할 수 있다.

제7조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작성) ① 전보순위는 전보년수(현임교 근무년수와 가산년수 합계)를 우선으로 하고 전보년수가 같을 때는 근무성적(평어), 고령자 순으로 한다. 다만, 수석교사는 업적평가 점수를 다음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어로 환산한다. (근무성적(평어) 또는 업적평가 점수는 실적이 있는 최근년도의 것을 적용한다.)

[수석교사 업적평가 점수 평어 환산 기준표]

업적평가 점수	평어
95점 이상	수
90점 이상 ~ 95점 미만	우
90점 미만	미

② <삭제>

③ 현임교 근무년수는 나이스 전보내신서의 현임교 근무년수로 하되 월수까지로 한다.

④ 가산년수는 가산비율에 따른 환산년수를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 (전보희망자순위명부의 유효기간) ① 수석교사와 교사의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유효기간은 3월 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③ 교육전문직원, 교장, 교감의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유효기간은 3월 1일, 9월 1일 정기전보에 한한다.

제9조 (인사구역) ① 교원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인사구역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1. 특구역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고양시 소재 학교

2. 갑구역

   가. 경합 : 광명시, 평택시(을구역 제외),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을구역 제외), 화성시(을구역 제외),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을구역 제외) 소재 학교

   나. 비경합 :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을구역 제외), 여주시(을구역 제외), 파주시(을 · 병구역 제외), 광주시(을구역 제외), 포천시(을구역 제외), 가평군(을구역 제외), 양평군(을구역 제외), 이천시(을구역 제외), 안성시(을구역 제외), 김포시(을 · 병구역 제외), 시흥시 소재 학교

3. 을구역
   특 또는 갑 · 병구역을 제외한 학교
4. 병구역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한 도서 · 벽지 · 접적지역 소재 학교

제10조 (근무기간) ① 동일직위 근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장 · 교감의 특구역 내 근무기간은 8년 이하로 한다.
2. 수석교사와 교사의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
3. <삭제>
4. 과학영재학교에 공모로 임용된 기간은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전보일 현재 58세에 달한 수석교사와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석교사와 교사는 당해 교육지원청 지역 내에서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 (정기전보) ① 수석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단, 병구역 학교는 3년으로 하되 병라구역 학교는 4년)의 범위에서 실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동일교 재직교사의 ⅓을 초과하여 관내 · 외를 불문하고 전보내신을 할 수 없다.

③ 교장 · 교감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 범위에서 동일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기간, 근무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내신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교장의 전보는 당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전 의견을 들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의 전보는 5년 이내에서 실시하되 3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와 교사의 시 · 군 배치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도내 학교간 및 시 · 군간 전보자
2. 복귀 · 복직자(국 · 공립 특수학교 교류자 포함, <삭제>)
3. 사립특채자 · 타시도 전입자
4. 신규임용자

⑥ <삭제>

⑦ 초빙교사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외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⑧ 교사의 배치는 정원(임용)과목별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에서 중학교의 경우 사회(일반사회, 지리, 통합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은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고, 중 · 고등학교의 기술 · 가정(기술 · 가정, 기술, 가정), 고등학교의 디자인 ·

공예(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화공・섬유, 화공, 섬유)등도 통합 배치할 수 있다.

⑨ <삭제>

⑩ 수석교사로 재임용되지 않거나 수석교사에서 해지된 자는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

⑪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전보의 유예) ① 동일교만기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에 의하여 1년~4년(단,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사는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최대 5년을 인정하며,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대치가 불가능한 교과 담당교사
2.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연구학교 연구담당보직교사 및 연구담당교사
3. 교육상 특히 필요하여 학교장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수석교사와 교사 <삭제>
4. <삭제>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석교사와 교사

②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포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전문교과는 희망하는 경력교사가 없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2항 해당자로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석교사의 경우 업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동일교 만기 교장, 교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퇴직 또는 교장중임 임기 만료 시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장
2.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감
3. 교장이 정년퇴직, 의원면직,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교감
4. 교감이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교장

⑤ 제3항에 불구하고, <삭제> 과학영재학교 근무교사 중 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 (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 조치키로 된 자

4.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사
5. 도서·벽지(무의촌지역) 근무자로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학기 도중 결원보충을 하는 자
7. <삭제>
8. <삭제>
9. 수석교사 임기 중 해지된 자
10.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
11.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
12. 초빙교사 임기 중 해지된 자
13.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 또는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전보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 또는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3.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성비위 행위자 포함)
5. 성비위 행위 피해자 등 교원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 직무역량 및 교육 여건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제10호, 제2항 제4호 해당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현 근무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3. 생활근거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제13조 (전보의 제한) ① <삭제>

② 동일교 및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 만기자의 전보순위는 일반전보에 포함하여 3희망까지 받아 전보한다. 다만, 희망지역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으로 전보한다.

③ 부부교사,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통근이 가능한 구역에 배치한다.

④ 라급지를 제외한 병구역 학교에 근무한 자는 병구역 학교에 다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병나·다급지 학교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⑤ <삭제>

제14조 (전보의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교사와 교사는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전보를 희망할 경우 경합에 불구하고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제6호, 제7호는 현임교 근무 중 수상실적만 적용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는 1회에 한함)

1. 정기전보일 58세 이상의 고령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
3. <삭제> 순직한 교원의 배우자 및 직계 유가족
4. 정기전보일 현재 70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노부모를 3년 이상 직접 봉양해 온 자(다만, 전보희망 시 · 군에 전년도 3월 1일 현재 봉양하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를 봉양할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삭제>
6. 경기교육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
7. 기타 도 단위 이상의 교육부문 대상 수상자 중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심신장애로 계속 보호를 요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손자·녀 제외)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전보우대 대상자 전보순위 결정은 전보년수, 근무성적(평어), 고령 순으로 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에는 본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의 제7조, 제10조, 제13조에 불구하고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동일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청간전보를 희망할 경우 본인의 희망지로 전보할 수 있다. (단, 병구역 소재 시 · 군은 제7조 적용)

④ <삭제>

제15조 (전보의 특례) ① 도내의 부부교원(교육전문직원 배우자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부 중 어느 한편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임교(갑 · 을 · 병구역) 근무년수의 70%를 가산 적용한다.

② 도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 전보는 배우자의 근무지로 희망하는 경우 현임교(갑 · 을 · 병구역)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

1. 평가관리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현임교에서 2회 이상 받은 자
2. <삭제>
3. 학생생활지도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와 교사
4. <삭제>

5. <삭제>
6. 『경기새울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수석교사와 교사
7. 청소년단체활동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수석교사와 교사

④ 비경합지의 갑 · 을 · 병구역 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가산표와 같이 현임교 근무년수에 가산년수를 가산 적용한다.

[가 산 표]

구 역		가산비율	
		교장 · 교감	수석교사 · 교사
병구역	나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다 · 라	현임교 근무년수의 40%	현임교 근무년수의 70%
을구역		현임교 근무년수의 30%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갑구역(비경합)		-	현임교 근무년수의 30%

⑤ 체육교사의 경우는 지도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임교 근무년수에 가산년수를 가산 적용한다.

[가 산 표]

구 분	가산비율
학교운동부연구상 금상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학교운동부연구상 은상	현임교 근무년수의 70%
학교운동부연구상 동상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⑥ 2명의 영유아(7세 이하) 자녀 또는 3명 이상의 미혼 자녀를 둔 수석교사와 교사는 현임교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⑦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포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교사는 전국기능대회의 지도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임교 근무년수에 가산년수를 가산 적용한다.

[가 산 표]

구 분	가산비율
기능지도연구상 금상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기능지도연구상 은상	현임교 근무년수의 70%
기능지도연구상 동상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⑧ 제1항 내지 제7항, 제12항 내지 제15항 전보특례 대상자는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을 100%까지 적용하되,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가중 계산 적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임교 1년 이상이면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지역 내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근무 희망 교사,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근무 희망 교사
2. 신체가 허약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진단서 제출)
3. 타시 · 도에서 전입하였거나 당해년도에 결혼한 교사(단, 타시 · 도 전입교사는 1회에 한함)
4. 폐교, 학급감축, 학과개편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1희망지 외로 전보 조치된 자 (단,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 만기자와 특구역과 경합갑구역에서 현임교 5년 이상 근무하고 TO감으로 전보된 자는 제외)

⑩ 제9항 제4호 해당자 중 현임교 근무 2년 이내에 전보를 희망할 때 4년 이내의 전임교 근무년수를 합산한다.

⑪ 교장, 교감은 현임교에서 학교표창을 받은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교육부장관 표창 6월, 교육감 표창 3월을 가산하되 1년에 1개만 인정하며, 통합(병설)교의 교장은 현임교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⑫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담당교사는 담당년수의 50%를 현임교 근무년수에 가산 적용한다.

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및 특수교육순회교사는 현임지 근무년수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

⑭ 신설학교(재개교한 학교 포함)에 개교 이후 2년 이내 전입자 중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현임교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다만, 승진평정 가산점 부여 학교, 병구역 학교는 제외한다.

⑮ 『학교경영 우수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한 수석교사와 교사는 지정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50%를 현임교 근무년수에 가산 적용한다.

제16조 (관내전보) ① 교육장은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 · 여,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관내 전보서열명부 작성 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교육지원청 포함) 근무년수를 인정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내전보 시는 제14조,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5조 제9항 제1호, 제15조제13항 제외)

④ <삭제>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장은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석교사 배치 희망교에 수석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다만, 희망교가 없을 때는 교육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7조 (교원의 시 · 도간 교류) ① 본 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 · 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 · 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 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교류 교과는 사회(일반사회, 지리, 통합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 기술·가정(기술·가정, 기술, 가정)이다.

②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 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전출 순위

순 위	전출 대상	전출 요건	구비서류
1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 1~3급 국가유공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존속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비속은 미혼 자녀에 한함)	• 장애인 부양 증빙자료 - 장애인 증명 -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2순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부부별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 독립유공자(유족)증명서 - 배우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배우자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 배우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배우자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3순위	• 부부별거자	•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	• 부부별거 증빙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재직(경력)증명서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학교장 의견서
4순위	• 직계존속 별거자	• 실질적 부양 책임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전출 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별거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 의견서 - 기타 증빙자료(본인 확인서 등)
5순위	• 일반희망자	• 1, 2순위를 제외한 일반으로 희망하는 경우	
비고	• 위 전출 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중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전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각 전출 순위별 순위 적용 후 동일한 경우는 아래 순으로 적용한다.
   1) 3자녀 이상 부양자(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
   2) 별거 기간이 오래된 자
   3) 별거 부부 교육공무원
   4) 별거 부부공무원
   5) 본도 장기 실근무자
   6)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7)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으로 적용)
   8)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타시 · 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파견)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종, 직급, 과목별 교류조건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1 : 1동수로 교환(파견)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연장불가)

라.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의하며 경합될 경우 전출 순위에 의한다.

1. 특별연구 과제 부여자 :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도 단위 2등급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 · 박사 학위 소지자
2.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파견)희망 시 · 도에 등재된 자
3. 원거리 근무지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 : 배우자가 교환(파견)희망 시 · 도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4. 기타 희망자

마. 복귀 후 임지 지정은 교환(파견) 근무 전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 · 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하며, 교환(파견) 근무 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타시 · 도 전출, 교환(파견)근무 내신은 3월 1일자 정기전보 시 내신을 원칙으로 한다.

④ 타시 · 도 전출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기간 3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 · 도 전출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⑤ 근속기간 산정 시 계약제 교원 경력, 휴직기간(단,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 기간,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 · 도 교환 근무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5 장 전 직 등

제18조 (교원의 전직 등) ①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삭제>)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원을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교육전문직원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임용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육전문직원(<삭제>) 경력자는 전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

③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 전보 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경력 년수 순위에 따라 3개 지역 이내의 희망지에 전보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지에 구애 없이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지 이외 지역에도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 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1. 교감 경력이 있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계속 재직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2.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어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전문직원 경력 5년 이상 근속한 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은 동일직급에서 근속 10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동일 직급에서 2개 이상의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경기도교육청의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국(과)장 및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에서 3년 이내,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한다. 단,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 (위임) ① 교육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당해 교육지원청 인사원칙 수립 시 이 기준에서 정한 인사구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교육장은 이 기준에서 정한 동일 인사구역 내 소재하는 학교간의 등차를 설정하고, 동일교 근무기간을 상한 년수 범위 내에서 조정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반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인사는 관계 부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기준은 공포시행일 현재 교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학교의 인사구역은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구역과 동일교 근무의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성남시의 양영중공고와 광명시의 안서중학교와 광명상고는 1982년 3월 1일부터 특구역학교로 적용한다.

3. 과천시는 1983년 3월 1일부터 특구역으로 적용한다.

가. 1983년 3월 1일부터 1986년 2월 28일까지 과천시내 학교 근무자는 1983년 3월 1일 이전 특구역 근무기간은 특구역 만기 9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1983년 3월 1일 이후,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특구역으로 전출된 자의 과천시내 학교 근무기간은 갑구역으로 적용한다.

4. C구역이었던 연천중, 연천실고, 관인중, 관인고는 B구역으로, B구역이었던 강서중은 C구역으로, A구역이었던 문산북중·문산고는 C구역으로 인사구역을 변경,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구리시는 1986년 3월 1일부터 특구역으로 적용한다.

가. 1986년 3월 1일부터 1988년 2월 28일까지 구리시내 학교 근무자의 1986년 3월 1일 이전 특구역 근무기간은 특구역 만기 9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1986년 3월 1일 이후 1988년 2월 28일 이전에 타구역으로 전보된 자의 구리시내 학교 근무기간은 A구역으로 적용한다.

6. 안성군 공도중은 1988년 3월 1일부터 A구역으로 적용한다.

7. C구역이었던 여주군 상품중은 B구역으로 인사구역을 변경,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1990년 12월 1일에 개정된 제9조(정기전보) 1항 및 제10조(전보희망순위명부 작성) 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10. 8. 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3년 3월 1일부터 광명시내 학교 및 봉일천중은 A구역 학교로, 전곡중, 전곡종고는 B구역 학교로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9조 2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8항과 제19조 3항 1호는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 3항 2호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1992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분당지역 내 학교는 1993년 3월 1일부터 1996년 2월 28일까지 A구역 학교로 적용한다.

부 칙 (1993. 11. 9. 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4년 3월1일부터 구리시내 학교는 A구역 학교로 적용한다. (단,1994년 3월 1일 이전 구리시(특구역) 근무기간은 A구역 근무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4. 11. 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천군 장호원중, 장호원여중, 장호원고, 장호원상고, 용인군 포곡중학교는 1995년 3월 1일부터 을구역으로 조정하고, 가산년수는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이 조정된 경우의 근무경력은 조정 전후의 근무년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제4조 구리시와 남양주군의 인사구역은 1995년 3월 1일부터 분리 실시한다.

부 칙 (1995. 10.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분당구역이 1996년 3월 1일부터 성남시 특구역으로 환원됨에 따른 특구역 근무기간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0.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2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제19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시기는 교육장, 직속기관장은 1997. 9. 1부터 시·군 학무국장, 과장, 교육연구관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부 칙 (1998. 10.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 제3항은 1999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 6.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고양시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부 칙 (2000. 11. 1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용인시는 2004년 2월 29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1조 제3항 규정 중 동일교 3년 이상 적용을 2002년 9월 1일까지 유보한다.

부 칙 (2001. 1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조 제1항 중 병구역학교 3년에 대하여 연천중학교, 연천종합고등학교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부 칙 (2002. 1. 2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고양시의 한수중학교,백석중학교,오마중학교,신일중학교,백신중학교,발산중학교,백마중학교,대화중학교,중산중학교,장성중학교,저동중학교,정발중학교,일산동중학교,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주엽고등학교,백석고등학교,백신고등학교,일산동고등학교,저동고등학교,백마고등학교,정발고등학교,중산고등학교,주엽공업고등학교는 2003년 3월 1일부터 특구역으로 조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인사구역이 조정된 고양시의 특구역 근무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특구역으로 조정된 지역에서 2003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특구역으로 되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고양시 특구역과 갑구역의 인사구역은 2003년 3월 1일부터 분리 실시한다.

부칙(2003. 11. 2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2005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인사구역 현황표의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산중학교의 경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1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중학교 교사와 제15조 제6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11. 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문산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삼숭중학교는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1조 제1항 중 병라구역 학교는 4년에 대하여 문산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의 변경사항은 2007년 3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솔빛중학교, 반송중학교, 화성동화중학교는 2007년 9월 1일 개교시 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변경사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19조 제3항 제2호의 직속기관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7.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향남중학교, 청덕중학교, 신곡중학교, 시흥능곡중학교는 2008년 9월 1일 개교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1.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인사구역표) 신곡중학교의 인사구역 적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13조 (전보의 제한) 제5항은 2009년 3월 1일 발령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예고) 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접적지역에서 해제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해당학교의 인사구역은 접적지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병구역에서 해제되며, 해당학교 근무자의 병구역 근무년수는 해제일 이전까지만 인정하고, 해제일부터는 조정된 급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11. 1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동일중은 2010년 5월 1일, 일산양일중은 2010년 9월 1일, 역세2중은 2010년 12월 1일 개교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표) 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접적지역에서 해제되는 고양송산중은 병구역에서 갑구역으로, 문산북중, 두일중, 지산중, 문산중, 교하중, 문산고, 교하고, 문산제일고는 병구역에서 을구역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하성중, 하성고는 2010년 9월 1일부터 병나구역에서 병라구역으로 조정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 1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2009.11.18 개정) 제3조(인사구역표) 인사구역조정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다가오는 3.1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1. 1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7조 4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2년 3월 1일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무경력 2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규정 적용 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부 칙 (2011. 11.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하성중, 하성고는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제3조 (경과조치)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7항,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9항 제1호 · 제4호, 부칙 제4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0조 제1항 제2호(교사의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의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원시(특),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특), 고양시(특)의 특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특구역 근무기간을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원시(갑), 부천시(갑), 고양시(갑)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경합 갑구역 근무기간을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군, 파주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용인시 등의 비경합 갑구역, 을구역 및 병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리시, 남양주시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2012. 2. 2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원고등학교 회복지원을 위하여 2014년 5월 8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단원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는 제10조 1항 2호에 불구하고, 전입일로부터 동일 교육지원청지역내 근무기간을 10년 이하로 한다.

제3조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말까지 단원고등학교에 근무한 교사는 제15조 3항에 불구하고, 해당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100%를 전보년수에 가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원고등학교 회복지원을 위하여 단원고등학교 교사는 2015.3.1.자 전보에 한하여 제11조 ①항 및 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제19조 ②항은 2011.11.23. 이후 신규임용된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11.22. 이전 임용된 교육전문직원은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7. 2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승진) 제5항은 2015월 9월 1일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단원고등학교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28일까지 전입한 교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전입일로부터 동일교육지원청지역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제3조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28일까지 단원고등학교에 근무한 교원은 제15조제3항에 불구하고, 해당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100%를 전보년수에 가산 적용한다.

제4조 단원고등학교 정상화지원을 위하여 단원고등학교 교사는 2017년 3월 28일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9조 ②항은 2011.11.23. 이후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11.22. 이전 임용된 교육전문직원은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6. 7.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5항 제4호는 2017년 9월 1일자 임용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8월 31일 이전 임용은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제15조 제15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는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제15조 (전보의 특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감 및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100%를 가산 적용한다.

5. 『학교경영 우수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이상 근무한 교사(지정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100%)

[개정 후] 제15조 (전보의 특례)

⑮ 『학교경영 우수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한 수석교사와 교사는 지정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50%를 현임교 근무년수에 가산 적용한다.

제4조 제19조 제2항은 2011년 11월 23일 이후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11월 22일 이전 선발된 교육전문직원은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1. 1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4항 제2호는 2017년 9월 1일자 임용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8월 31일 이전 임용은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제5조 제4항 제3호는 신설로 2017년 9월 1일자 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7. 1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제11조 제6항 및 제13조 제1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는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8. 7.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 제7항은 2019년 3월 1일자 초빙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9.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4항 제2호는 2019년 3월 1일자 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7. 2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 제6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수상한 자는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5조 제15항의 혁신학교에 대한 전보의 특례는 2021년 3월 1일자 지정교(재지정교 포함)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21년 2월 28일 이전 지정교는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7. 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조의2제4항제1호는 2024.3.1.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5조제3항제1호는 2023.2.28.자까지의 실적만 인정하고, 2023.3.1.자 이후의 실적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23. 7. 1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6.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26학년도 신설교의 경우는 개교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5조 제5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지도실적부터 적용하며, 이전의 지도실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중등학교 인사구역 현황표(2026. 3. 1. 기준)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수원시	특	수원북중, 수성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연무중, 창용중, 수일중, 송원중, 권선중, 동성중, 매원중, 곡선중, 구운중, 산남중, 원천중, 동수원중, 남수원중, 숙지중, 호매실중, 영덕중, 영일중, 영통중, 청명중, 태장중, 율전중, 대평중, 화홍중, 명인중, 천천중, 율현중, 매현중, 곡반중, 칠보중, 망포중, 정천중, 조원중, 영동중, 서호중, 세류중, 잠원중, 상촌중, 매탄중, 수원원일중, 경기체육중, 광교중, 이의중, 이목중, 고색중, 수원다산중, 능실중, 광교호수중, 규장중	수성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여고, 경기과학고, 효원고, 수원정보과학고, 경기체고, 권선고, 숙지고, 영덕고, 태장고, 청명고, 화홍고, 장안고, 수원하이텍고, 수일고, 대평고, 경기대명고, 천천고, 조원고, 매탄고, 수원외고, 망포고, 매원고, 고색고, 율천고, 광교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이의고, 곡정고	중 52 고 31 각종 1 특수 1
	특	경기이음온학교		
	특	아름학교		
성남시	특	성남여중, 성남서중, 성남동중, 상원여중, 금광중, 대원중, 서현중, 영성중, 성남문원중, 성남중, 양영중, 은행중, 이매중, 매송중, 장안중, 수내중, 내정중, 야탑중, 정자중, 하탑중, 분당중, 청솔중, 백현중, 불곡중, 태평중, 구미중, 늘푸른중, 도촌중, 샛별중, 수진중, 운중중, 판교중, 삼평중, 보평중, 낙원중, 신백현중, 위례중앙중, 위례한빛중, 창성중, 판교대장중	성남고, 성남여고, 양영디지털고, 분당고, 분당중앙고, 서현고, 이매고, 한솔고, 성남테크노과학고, 분당아람고, 수내고, 분당경영고, 불곡고, 돌마고, 늘푸른고, 성남외고, 복정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위례한빛고	중 40 고 21 특수 2
	특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		
의정부시	특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회룡중, 금오중, 다온중, 신곡중, 발곡중, 민락중, 호원중, 충의중, 부용중, 효자중, 천보중, 녹양중, 솔뫼중, 동암중, 송양중, 훈민중	의정부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여고, 송현고, 호원고, 부용고, 경기북과학고, 효자고, 발곡고, 송양고	중 18 고 10 특수 1
	특	송민학교		
안양시 (과천시)	특	안양중, 관양중, 대안여중, 신안중, 인덕원중, 대안중, 호계중, 안양서중, 신기중, 범계중, 평촌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귀인중, 부안중, 연현중, 호성중, 비산중, 임곡중, 박달중	안양공고, 안양고, 평촌고, 부흥고, 평촌경영고, 동안고, 평촌과학기술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관양고, 충훈고, 인덕원고	중 23 고 13 특수 1
	특	과천중, 과천문원중, 과천율목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특	안양해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부천시	특	부천중, 부천여중, 심원중, 부천남중, 상도중, 성주중, 부천부곡중, 중흥중, 계남중, 부명중, 부인중, 부천부흥중, 석천중, 상일중, 상동중, 원미중, 부일중, 덕산중, 성곡중, 소사중, 내동중, 부천여월중, 중원중, 부천일신중,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역곡중, 까치울중, 수주중, 옥길중, 도당중, 범박중, 옥길새길중	부천고, 부천공고, 원미고,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계남고, 중흥고, 부명고, 심원고, 경기국제통상고, 상동고, 경기예술고, 상일고, 송내고, 상원고, 부천북고, 원종고, 소사고, 중원고, 도당고, 덕산고, 범박고, 수주고, 역곡고, 옥길고('26.3)	중 33 고 25 특수 1
	특	부천상록학교		
광명시	갑	광명중, 하안북중, 광남중, 안서중, 철산중, 광명북중, 가림중, 광문중, 하안중, 소하중, 충현중, 빛가온중	광명고, 명문고, 창의경영고, 광명북고, 광문고, 충현고, 소하고, 운산고, 광휘고	중 12 고 9
동두천시 (양주시)	갑	생연중,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국어고	중 13 고 9 특수 1
	갑	덕정중, 덕계중, 고암중, 삼숭중, 양주백석중, 덕현중, 회천중, 옥정중, 옥빛중, 율정중, 옥정1중('26.3.)	덕정고, 덕계고, 양주백석고, 양주고, 덕현고, 옥정고, 옥빛고	
	갑	양주도담학교		
안산시	갑	원곡중, 관산중, 중앙중, 시곡중, 선부중, 원일중, 성포중, 본오중, 상록중, 반월중, 안산부곡중, 경수중, 성안중, 송호중, 양지중, 별망중, 와동중, 선일중, 초지중, 석수중, 단원중, 안산성호중, 안산해양중, 석호중, 광덕중, 신길중, 이호중, 안산해솔중	원곡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성안고, 고잔고, 양지고, 송호고, 초지고, 단원고, 성포고, 신길고, 선부고, 광덕고, 부곡고, 상록고	중 29 고 15
	을	대부중	대부고	
평택시	갑	평택중, 평택여중, 송탄중, 세교중, 비전중, 장당중, 이충중, 용이중, 배다리중, 민세중, 동삭중, 해창중, 소사벌중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평택여고, 송탄고, 이충고, 비전고, 용죽고('26.3.)	중 20 고 10
	을	안일중, 포승중, 청북중, 현화중, 도곡중, 청옥중, 평택화양중	경기물류고, 현화고, 청북고	
군포시 (의왕시)	갑	군포중, 산본중, 흥진중, 곡란중, 도장중, 용호중, 궁내중, 수리중, 금정중, 당동중, 당정중, 부곡중앙중	흥진고, 산본고, 용호고, 경기폴리텍고, 수리고, 군포e비즈니스고, 군포중앙고	중 21 고 11 특수 1
	갑	의왕중, 백운중, 의왕부곡중, 고천중, 갈뫼중, 모락중, 덕장중, 내손중, 백운호수중('26.3.)	백운고, 의왕고, 모락고, 내손고	
	갑	의왕정음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고양시	특	한수중, 백석중, 오마중, 신일중, 백신중, 발산중, 백마중, 대화중, 중산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일산동중, 풍동중, 풍산중, 안곡중, 일산양일중, 가람중, 능곡중, 덕양중, 무원중, 백양중, 신능중, 원당중, 일산중, 지도중, 행신중, 화수중, 화정중, 호곡중, 현산중, 대송중, 목암중, 성사중, 서정중, 덕이중, 고양송산중, 고양중, 신원중, 도래울중, 향동중, 지축중, 덕은한강중, 원흥중	일산국제컨벤션고, 주엽고, 백석고, 백신고, 일산동고, 저동고, 백마고, 정발고, 중산고, 경기영상과학고, 풍동고, 안곡고, 고양국제고, 저현고, 고양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가좌고, 고양일고, 서정고, 덕이고, 대화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중 44 고 33
구리시 (남양주시)	갑	구리여중, 구리중, 교문중,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토평중, 갈매중	구리여고, 구리고, 인창고, 토평고, 수택고, 갈매고	중 40 고 23 특수 1
	갑	퇴계원중, 덕소중, 진건중, 금곡중, 미금중, 도농중, 와부중, 호평중, 장내중, 평내중, 판곡중, 예봉중, 가운중, 별가람중, 한별중, 남양주다산중, 다산한강중, 하랑중, 다산새봄중, 화접중	퇴계원고, 금곡고, 진건고, 평내고, 호평고, 도농고, 와부고, 가운고, 판곡고, 별내고, 별가람고, 남양주다산고	
	을	화광중, 오남중, 마석중, 별내중, 양오중, 어람중, 광릉중, 진접중, 송라중, 풍양중, 주곡중, 천마중	남양주고, 청학고, 오남고, 진접고, 마석고	
	을	경은학교		
여주시	갑	여주중, 여주여중, 세종중	여주자영농고, 세종고	중 8 고 4
	을	점동중, 이포중, 흥천중, 강천중, 상품중	점동고, 이포고	
화성시 (오산시)	갑	정남중, 발안중, 남양중, 봉담중, 진안중, 동학중, 안화중, 병점중, 기안중, 석우중, 기산중, 솔빛중, 반송중, 화성동화중, 능동중, 푸른중, 와우중, 향남중, 예당중, 화성반월중, 한백중, 청계중, 동탄중, 하길중, 방교중, 다원중, 송린중, 이산중, 청림중, 동탄목동중, 서연중, 신백중, 수현중, 치동중, 화성세정중, 화성상신중, 화성신동중, 화담중, 청연중, 남양1중('26.3.), 동탄8중('26.3.)	발안바이오과학고, 남양고, 병점고, 동탄고, 안화고, 봉담고, 예당고, 반송고, 향남고, 나루고, 능동고, 동탄국제고, 향일고, 동탄중앙고, 화성반월고, 하길고, 한백고, 이산고, 창의고, 정현고, 서연고, 새솔고, 이솔고, 와우고, 치동고, 화담고, 신동고, 동탄10고('26.3)	중 51 고 37 특수 1
	을	양감중		
	갑	화성나래학교		
	갑	매홀중, 성호중, 운암중, 운천중, 대호중, 오산원일중, 문시중, 세마중, 가수중	오산정보고, 운천고, 성호고, 운암고, 세마고, 세교고, 매홀고, 세교2-2고('26.3.), 세교소프트웨어고('26.3.)	
파주시	갑	봉일천중, 금릉중, 금촌중, 한빛중, 해솔중, 동패중, 두일중, 지산중, 교하중, 문산중, 한가람중, 산내중, 운정중, 산들중, 심학중, 다율중, 운정1중('26.3.), 운정5중('26.3.)	금촌고, 봉일천고, 교하고, 문산제일고, 운정고, 한빛고, 동패고, 지산고, 심학고, 운정3고('26.3.)	중 24 고 12 특수 1
	을	법원여중, 문산북중, 선유중,	문산고	
	병 나	탄현중		
	병 다	파평중	적성융합고	
	병 라	어유중		
	을	자운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광주시	갑	광주중, 경안중, 탄벌중, 광주광남중, 신현중, 매양중, 태전중, 고산중('26.3.)	광주중앙고, 광주고, 광남고, 태전고, 오포고('26.3)	중 26 고 16
	을	곤지암중, 광수중, 광일중, 초월중,	곤지암고, 초월고	
(하남시)	갑	남한중, 동부중, 하남중, 신장중, 신평중, 덕풍중, 미사강변중, 은가람중, 미사중, 위례중, 윤슬중, 감일중, 감일백제중, 미사5중('26.3.)	남한고, 하남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신장고, 풍산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위례고, 감일고	
연천군	을	전곡중, 청산중, 연천중	전곡고, 연천고	중 6 고 2
	병 나	백학중		
	병 다	군남중, 대광중		
포천시	갑	포천중, 포천여중, 갈월중, 대경중, 송우중	포천일고, 포천고, 송우고	중 13 고 6
	을	일동중, 경북중, 영북중, 이동중, 내촌중, 영중중, 삼성중, 관인중	일동고, 영북고, 관인고	
가평군	갑	가평중	가평고	중 5 고 4
	을	설악중, 조종중, 가평북중, 청평중	설악고, 조종고, 청평고	
양평군	갑	양평중	양평고	중 6 고 4
	을	지평중, 청운중, 국수중, 강하중, 양수중	지평고, 청운고, 양평전자과학고	
이천시	갑	이천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증포중	이천제일고, 이천고, 이현고	중 14 고 9 각종 1 특수 1
	을	이천경남중, 마장중, 율면중, 장호원중, 모가중, 백사중, 대월중, 효양중, 부발중, 이천사동중	장호원고, 이천세무고, 마장고, 율면고, 한국도예고, 효양고	
	을	경기새울학교		
	을	다원학교		
용인시	갑	용인중, 신갈중, 수지중, 대지중, 정평중, 죽전중, 구성중, 서원중, 이현중, 구갈중, 상갈중, 성복중, 나곡중, 용신중, 소현중, 홍천중, 손곡중, 상현중, 성지중, 용인대덕중, 언동중, 현암중, 용인신촌중, 용인신릉중, 동백중, 용인백현중, 초당중, 보라중, 청덕중, 흥덕중, 용인한빛중, 성서중, 서천중, 상하중, 신봉중, 어정중, 고림중, 고진중, 역삼중('26.3.), 기흥1중('26.9.)	용인고, 수지고, 풍덕고, 기흥고, 죽전고, 서원고, 구성고, 보정고, 성지고, 용인홍천고, 용인백현고, 현암고, 동백고, 대지고, 보라고, 초당고, 청덕고, 흥덕고, 성복고, 신봉고, 상현고, 서천고, 고림고 용신고('26.3.)	중 50 고 29 특수 1
	을	송전중, 백암중, 원삼중, 모현중, 포곡중, 영문중, 용천중, 한숲중, 처인중, 도현중	용인바이오고, 백암고, 포곡고, 용인삼계고, 처인고	
	을	용인다움학교		
안성시	갑	안성중, 안성여중, 공도중, 비룡중, 양진중, 만정중	안성고, 안성여고, 경기창조고	중 10 고 5 각종 1 특수1
	을	일죽중, 죽산중, 서운중, 양성중	일죽고, 죽산고	
	을	신나는학교		
	을	모두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김포시	갑	김포중, 김포여중, 금파중, 장기중, 풍무중, 감정중, 고창중, 양도중, 푸른솔중, 하늘빛중, 은여울중, 김포한가람중, 운양중, 나래중, 모담중	김포제일공고, 김포고, 사우고, 풍무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제일고, 솔터고 운유고, 김포호수고	중 22 고 14 특수 1
	을	대곶중, 고촌중, 김포신곡중, 마송중, 신양중, 은여울중, 김포한가람중, 향산중, 나래중	마송고, 고촌고, 양원고('26.3.)	
	을	새솔학교		
	병 라	하성중	하성고	
시흥시	갑	소래중, 대흥중, 정왕중, 송운중, 서해중, 시흥은행중, 함현중, 시흥중, 군자중, 장곡중, 연성중, 신천중, 월곶중, 논곡중, 시화중, 은계중, 시흥매화중, 응곡중, 시흥능곡중, 배곧중, 조남중, 배곧해솔중, 시흥가온중, 시화나래중, 배곧라라중, 목감1중('26.3.)	소래고, 은행고, 서해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정왕고, 함현고, 경기스마트고, 장곡고, 시흥고, 군서고, 시흥매화고, 시흥능곡고, 신천고, 배곧고, 목감고	중 26 고 15 각종 1
	갑	군서미래국제학교		

중등학교 인사구역 현황표(2025. 3. 1. 기준)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수원시	특	수원북중, 수성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연무중, 창용중, 수일중, 송원중, 권선중, 동성중, 매원중, 곡선중, 구운중, 산남중, 원천중, 동수원중, 남수원중, 숙지중, 호매실중, 영덕중, 영일중, 영통중, 청명중, 태장중, 율전중, 대평중, 화홍중, 명인중, 천천중, 율현중, 매현중, 곡반중, 칠보중, 망포중, 정천중, 조원중, 영동중, 서호중, 세류중, 잠원중, 상촌중, 매탄중, 수원원일중, 경기체육중, 광교중, 이의중, 이목중, 고색중, 수원다산중, 능실중, 광교호수중, 곡반3중('25.3.)	수성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여고, 경기과학고, 효원고, 수원정보과학고, 경기체고, 권선고, 숙지고, 영덕고, 태장고, 청명고, 화홍고, 장안고, 수원하이텍고, 수일고, 대평고, 경기대명고, 천천고, 조원고, 매탄고, 수원외고, 망포고, 매원고, 고색고, 율천고, 광교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이의고, 곡정고	중 52 고 31 각종 1 특수 1
	특	경기이음온학교('25.3.)		
	특	아름학교		
성남시	특	성남여중, 성남서중, 성남동중, 상원여중, 금광중, 대원중, 서현중, 영성중, 성남문원중, 성남중, 양영중, 은행중, 이매중, 매송중, 장안중, 수내중, 내정중, 야탑중, 정자중, 하탑중, 분당중, 청솔중, 백현중, 불곡중, 태평중, 구미중, 늘푸른중, 도촌중, 샛별중, 수진중, 운중중, 판교중, 삼평중, 보평중, 낙원중, 신백현중, 위례중앙중, 위례한빛중, 창성중, 판교대장중	성남고, 성남여고, 양영디지털고, 분당고, 분당중앙고, 서현고, 이매고, 한솔고, 성남테크노과학고, 분당아람고, 수내고, 분당경영고, 불곡고, 돌마고, 늘푸른고, 성남외고, 복정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위례한빛고	중 40 고 21 특수 2
	특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		
의정부시	특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회룡중, 금오중, 다온중, 신곡중, 발곡중, 민락중, 호원중, 충의중, 부용중, 효자중, 천보중, 녹양중, 솔뫼중, 동암중, 송양중, 훈민중	의정부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여고, 송현고, 호원고, 부용고, 경기북과학고, 효자고, 발곡고, 송양고	중 18 고 10 특수 1
	특	송민학교		
안양시 (과천시)	특	안양중, 관양중, 대안여중, 신안중, 인덕원중, 대안중, 호계중, 안양서중, 신기중, 범계중, 평촌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귀인중, 부안중, 연현중, 호성중, 비산중, 임곡중, 박달중	안양공고, 안양고, 평촌고, 부흥고, 평촌경영고, 동안고, 평촌과학기술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관양고, 충훈고, 인덕원고	중 23 고 13 특수 1
	특	과천중, 과천문원중, 과천율목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특	안양해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부천시	특	부천중, 부천여중, 심원중, 부천남중, 상도중, 성주중, 부천부곡중, 중흥중, 계남중, 부명중, 부인중, 부천부흥중, 석천중, 상일중, 상동중, 원미중, 부일중, 덕산중, 성곡중, 소사중, 내동중, 부천여월중, 중원중, 부천일신중,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역곡중, 까치울중, 수주중, 옥길중, 도당중, 범박중, 부천옥길중('25.3.)	부천고, 부천공고, 원미고,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계남고, 중흥고, 부명고, 심원고, 경기국제통상고, 상동고, 경기예술고, 상일고, 송내고, 상원고, 부천북고, 원종고, 소사고, 중원고, 도당고, 덕산고, 범박고, 수주고, 역곡고	중 33 고 24 특수 1
	특	부천상록학교		
광명시	갑	광명중, 하안북중, 광남중, 안서중, 철산중, 광명북중, 가림중, 광문중, 하안중, 소하중, 충현중, 빛가온중	광명고, 명문고, 창의경영고, 광명북고, 광문고, 충현고, 소하고, 운산고, 광휘고	중 12 고 9
동두천시 (양주시)	갑	생연중,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국어고	중 12 고 9 특수 1
	갑	덕정중, 덕계중, 고암중, 삼숭중, 양주백석중, 덕현중, 회천중, 옥정중, 옥빛중, 율정중	덕정고, 덕계고, 양주백석고, 양주고, 덕현고, 옥정고, 옥빛고	
	갑	양주도담학교		
안산시	갑	원곡중, 관산중, 중앙중, 시곡중, 선부중, 원일중, 성포중, 본오중, 상록중, 반월중, 안산부곡중, 경수중, 성안중, 송호중, 양지중, 별망중, 와동중, 선일중, 초지중, 석수중, 단원중, 안산성호중, 안산해양중, 석호중, 광덕중, 신길중, 이호중, 안산해솔중	원곡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성안고, 고잔고, 양지고, 송호고, 초지고, 단원고, 성포고, 신길고, 선부고, 광덕고, 부곡고, 상록고	중 29 고 15
	을	대부중	대부고	
평택시	갑	평택중, 평택여중, 송탄중, 세교중, 비전중, 장당중, 이충중, 용이중, 배다리중, 민세중, 동삭중, 해창중, 소사벌2중('25.3.)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평택여고, 송탄고, 이충고, 비전고	중 20 고 9
	을	안일중, 포승중, 청북중, 현화중, 도곡중, 청옥중, 화양1중('25.3.)	경기물류고, 현화고, 청북고	
군포시 (의왕시)	갑	군포중, 산본중, 흥진중, 곡란중, 도장중, 용호중, 궁내중, 수리중, 금정중, 당동중, 당정중, 부곡중앙중	흥진고, 산본고, 용호고, 경기폴리텍고, 수리고, 군포e비즈니스고, 군포중앙고	중 20 고 11 특수 1
	갑	의왕중, 백운중, 의왕부곡중, 고천중, 갈뫼중, 모락중, 덕장중, 의왕내손중('25.3.)	백운고, 의왕고, 모락고 의왕내손고('25.3.)	
	갑	의왕정음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고양시	특	한수중, 백석중, 오마중, 신일중, 백신중, 발산중, 백마중, 대화중, 중산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일산동중, 풍동중, 풍산중, 안곡중, 일산양일중, 가람중, 능곡중, 덕양중, 무원중, 백양중, 신능중, 원당중, 일산중, 지도중, 행신중, 화수중, 화정중, 호곡중, 현산중, 대송중, 목암중, 성사중, 서정중, 덕이중, 고양송산중, 고양중, 신원중, 도래울중, 향동중, 지축중, 덕은한강중, 삼송1중('25.3.)	일산국제컨벤션고, 주엽고, 백석고, 백신고, 일산동고, 저동고, 백마고, 정발고, 중산고, 경기영상과학고, 풍동고, 안곡고, 고양국제고, 저현고, 고양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가좌고, 고양일고, 서정고, 덕이고, 대화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중 44 고 33
구리시 (남양주시)	갑	구리여중, 구리중, 교문중,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토평중, 갈매중	구리여고, 구리고, 인창고, 토평고, 수택고, 갈매고	중 40 고 23 특수 1
	갑	퇴계원중, 덕소중, 진건중, 금곡중, 미금중, 도농중, 와부중, 호평중, 장내중, 평내중, 판곡중, 예봉중, 가운중, 별가람중, 한별중, 남양주다산중, 다산한강중, 하랑중, 다산새봄중, 화접중	퇴계원고, 금곡고, 진건고, 평내고, 호평고, 도농고, 와부고, 가운고, 판곡고, 별내고, 별가람고, 남양주다산고	
	을	화광중, 오남중, 마석중, 별내중, 양오중, 어람중, 광릉중, 진접중, 송라중, 풍양중, 주곡중, 천마중	남양주고, 청학고, 오남고, 진접고, 마석고	
	을	경은학교		
여주시	갑	여주중, 여주여중, 세종중	여주자영농고, 세종고	중 8 고 4
	을	점동중, 이포중, 흥천중, 강천중, 상품중	점동고, 이포고	
화성시 (오산시)	갑	정남중, 발안중, 남양중, 봉담중, 진안중, 동학중, 안화중, 병점중, 기안중, 석우중, 기산중, 솔빛중, 반송중, 화성동화중, 능동중, 푸른중, 와우중, 향남중, 예당중, 화성반월중, 한백중, 청계중, 동탄중, 하길중, 방교중, 다원중, 송린중, 이산중, 청림중, 동탄목동중, 서연중, 신백중, 수현중, 치동중, 화성세정중, 상신중('25.3.), 동탄9중('25.3.), 봉담2-1중('25.3.), 비봉1중('25.3.)	발안바이오과학고, 남양고, 병점고, 동탄고, 안화고, 봉담고, 예당고, 반송고, 향남고, 나루고, 능동고, 동탄국제고, 향일고, 동탄중앙고, 화성반월고, 하길고, 한백고, 이산고, 창의고, 정현고, 서연고, 새솔고, 이솔고, 와우고, 치동고, 봉담2고('25.3.), 동탄9고('25.3.)	중 49 고 34 특수 1
	을	양감중		
	갑	화성나래학교		
	갑	매홀중, 성호중, 운암중, 운천중, 대호중, 오산원일중, 문시중, 세마중, 세교2-2중('25.3.)	오산정보고, 운천고, 성호고, 운암고, 세마고, 세교고, 매홀고	
파주시	갑	봉일천중, 금릉중, 금촌중, 심학중, 다율중	금촌고, 봉일천고, 심학고	중 22 고 11 특수 1
	을	법원여중, 한빛중, 해솔중, 동패중, 문산북중, 두일중, 지산중, 교하중, 문산중, 한가람중, 선유중, 산내중, 운정중, 산들중	문산고, 교하고, 문산제일고, 운정고, 한빛고, 동패고, 지산고	
	병 나	탄현중		
	병 다	파평중	적성융합고	
	병 라	어유중		
	을	자운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광주시 (하남시)	갑	광주중, 경안중, 탄벌중, 광주광남중, 태전중	광주중앙고, 광주고, 광남고, 태전고	중 24 고 15
	을	곤지암중, 광수중, 광일중, 초월중, 신현중, 매양중	곤지암고, 초월고	
	갑	남한중, 동부중, 하남중, 신장중, 신평중, 덕풍중, 미사강변중, 은가람중, 미사중, 위례중, 윤슬중, 감일중, 감일백제중	남한고, 하남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신장고, 풍산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위례고, 감일고	
연천군	을	전곡중, 청산중, 연천중	전곡고, 연천고	중 6 고 2
	병 나	백학중		
	병 다	군남중, 대광중		
포천시	갑	포천중, 포천여중, 갈월중, 대경중, 송우중	포천일고, 포천고, 송우고	중 13 고 6
	을	일동중, 경북중, 영북중, 이동중, 내촌중, 영중중, 삼성중, 관인중	일동고, 영북고, 관인고	
가평군	갑	가평중, 청평중	가평고, 청평고	중 5 고 4
	을	설악중, 조종중, 가평북중	설악고, 조종고	
양평군	갑	양평중	양평고	중 6 고 4
	을	지평중, 청운중, 국수중, 강하중, 양수중	지평고, 청운고, 양평전자과학고	
이천시	갑	이천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증포중	이천제일고, 이천고, 이현고	중 14 고 9 각종 1 특수 1
	을	이천경남중, 마장중, 율면중, 장호원중, 모가중, 백사중, 대월중, 효양중, 부발중, 이천사동중	장호원고, 이천세무고, 마장고, 율면고, 한국도예고, 효양고	
	을	경기새울학교		
	을	다원학교		
용인시	갑	용인중, 신갈중, 수지중, 대지중, 정평중, 죽전중, 구성중, 서원중, 이현중, 구갈중, 상갈중, 성복중, 나곡중, 용신중, 소현중, 홍천중, 손곡중, 상현중, 성지중, 용인대덕중, 언동중, 현암중, 용인신촌중, 용인신릉중, 동백중, 용인백현중, 초당중, 보라중, 청덕중, 흥덕중, 용인한빛중, 성서중, 서천중, 상하중, 신봉중, 어정중, 고림중, 고진중	용인고, 수지고, 풍덕고, 기흥고, 죽전고, 서원고, 구성고, 보정고, 성지고, 용인홍천고, 용인백현고, 현암고, 동백고, 대지고, 보라고, 초당고, 청덕고, 흥덕고, 성복고, 신봉고, 상현고, 서천고, 고림고	중 48 고 28 특수 1
	을	송전중, 백암중, 원삼중, 모현중, 포곡중, 영문중, 용천중, 한숲중, 아곡1중('25.3.), 왕산2중('25.3.)	용인바이오고, 백암고, 포곡고, 용인삼계고, 처인고	
	을	용인다움학교		
안성시	갑	안성중, 안성여중, 공도중, 비룡중, 양진중, 만정중	안성고, 안성여고, 경기창조고	중 10 고 5 각종 1
	을	일죽중, 죽산중, 서운중, 양성중	일죽고, 죽산고	
	을	신나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김포시	갑	김포중, 김포여중, 금파중, 장기중, 풍무중, 감정중, 고창중, 양도중, 푸른솔중, 하늘빛중, 운양중, 운양1중('25.3.)	김포제일공고, 김포고, 사우고, 풍무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제일고, 운유고, 양산고('25.3.)	중 22 고 13 특수 1
	을	대곶중, 고촌중, 김포신곡중, 마송중, 신양중, 은여울중, 김포한가람중, 향산중, 나래중	마송고, 솔터고, 고촌고	
	을	새솔학교		
	병 라	하성중	하성고	
시흥시	갑	소래중, 대흥중, 정왕중, 송운중, 서해중, 시흥은행중, 함현중, 시흥중, 군자중, 장곡중, 연성중, 신천중, 월곶중, 논곡중, 시화중, 은계중, 시흥매화중, 응곡중, 시흥능곡중, 배곧중, 조남중, 배곧해솔중, 시흥가온중, 시화나래중, 배곧라라중	소래고, 은행고, 서해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정왕고, 함현고, 경기스마트고, 장곡고, 시흥고, 군서고, 시흥매화고, 시흥능곡고, 신천고, 배곧고, 목감고	중 25 고 15 각종 1
	갑	군서미래국제학교		

중등학교 인사구역 현황표(2024. 3. 1. 기준)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수원시	특	수원북중, 수성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연무중, 창용중, 수일중, 송원중, 권선중, 동성중, 매원중, 곡선중, 구운중, 산남중, 원천중, 동수원중, 남수원중, 숙지중, 호매실중, 영덕중, 영일중, 영통중, 청명중, 태장중, 율전중, 대평중, 화홍중, 명인중, 천천중, 율현중, 매현중, 곡반중, 칠보중, 망포중, 정천중, 조원중, 영동중, 서호중, 세류중, 잠원중, 상촌중, 매탄중, 수원원일중, 경기체육중, 광교중, 이의중, 이목중, 고색중, 수원다산중, 능실중, 광교호수중	수성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여고, 경기과학고, 효원고, 수원정보과학고, 경기체고, 권선고, 숙지고, 영덕고, 태장고, 청명고, 화홍고, 장안고, 수원하이텍고, 수일고, 대평고, 경기대명고, 천천고, 조원고, 매탄고, 수원외고, 망포고, 매원고, 고색고, 율천고, 광교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이의고, 곡정고	중 51 고 31 특수 1
	특	아름학교		
성남시	특	성남여중, 성남서중, 성남동중, 상원여중, 금광중, 대원중, 서현중, 영성중, 성남문원중, 성남중, 양영중, 은행중, 이매중, 매송중, 장안중, 수내중, 내정중, 야탑중, 정자중, 하탑중, 분당중, 청솔중, 백현중, 불곡중, 태평중, 구미중, 늘푸른중, 도촌중, 샛별중, 수진중, 운중중, 판교중, 삼평중, 보평중, 낙원중, 신백현중, 위례중앙중, 위례한빛중, 창성중, 판교대장중	성남고, 성남여고, 양영디지털고, 분당고, 분당중앙고, 서현고, 이매고, 한솔고, 성남테크노과학고, 분당아람고, 수내고, 분당경영고, 불곡고, 돌마고, 늘푸른고, 성남외고, 복정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위례한빛고	중 40 고 21 특수 2
	특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		
의정부시	특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회룡중, 금오중, 다온중, 신곡중, 발곡중, 민락중, 호원중, 충의중, 부용중, 효자중, 천보중, 녹양중, 솔뫼중, 동암중, 송양중, 훈민중	의정부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여고, 송현고, 호원고, 부용고, 경기북과학고, 효자고, 발곡고, 송양고	중 18 고 10 특수 1
	특	송민학교		
안양시 (과천시)	특	안양중, 관양중, 대안여중, 신안중, 인덕원중, 대안중, 호계중, 안양서중, 신기중, 범계중, 평촌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귀인중, 부안중, 연현중, 호성중, 비산중, 임곡중, 박달중	안양공고, 안양고, 평촌고, 부흥고, 평촌경영고, 동안고, 평촌과학기술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관양고, 충훈고, 인덕원고	중 23 고 13 특수 1
	특	과천중, 과천문원중, **과천율목중**('24.3)	과천고, 과천중앙고	
	특	안양해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부천시	특	부천중, 부천여중, 심원중, 부천남중, 상도중, 성주중, 부천부곡중, 중흥중, 계남중, 부명중, 부인중, 부천부흥중, 석천중, 상일중, 상동중, 원미중, 부일중, 덕산중, 성곡중, 소사중, 내동중, 부천여월중, 중원중, 부천일신중,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역곡중, 까치울중, 수주중, 옥길중, 도당중, 범박중	부천고, 부천공고, 원미고,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계남고, 중흥고, 부명고, 심원고, 경기국제통상고, 상동고, 경기예술고, 상일고, 송내고, 상원고, 부천북고, 원종고, 소사고, 중원고, 도당고, 덕산고, 범박고, 수주고, 역곡고	중 32 고 24 특수 1
	특	부천상록학교		
광명시	갑	광명중, 하안북중, 광남중, 안서중, 철산중, 광명북중, 가림중, 광문중, 하안중, 소하중, 충현중, 빛가온중	광명고, 명문고, 창의경영고, 광명북고, 광문고, 충현고, 소하고, 운산고, 광휘고	중 12 고 9
동두천시 (양주시)	갑	생연중,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국어고	중 12 고 9 특수 1
	갑	덕정중, 덕계중, 고암중, 삼숭중, 양주백석중, 덕현중, 회천중, 옥정중, 옥빛중, 옥정2중('24.3.)	덕정고, 덕계고, 양주백석고, 양주고, 덕현고, 옥정고, 옥빛고	
	갑	양주도담학교		
안산시	갑	원곡중, 관산중, 중앙중, 시곡중, 선부중, 원일중, 성포중, 본오중, 상록중, 반월중, 안산부곡중, 경수중, 성안중, 송호중, 양지중, 별망중, 와동중, 선일중, 초지중, 석수중, 단원중, 안산성호중, 안산해양중, 석호중, 광덕중, 신길중, 이호중, 안산해솔중	원곡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성안고, 고잔고, 양지고, 송호고, 초지고, 단원고, 성포고, 신길고, 선부고, 광덕고, 부곡고, 상록고	중 29 고 15
	을	대부중	대부고	
평택시	갑	평택중, 평택여중, 송탄중, 세교중, 비전중, 장당중, 이충중, 용이중, 배다리중, 민세중, 동삭중, 고덕8중('24.9.)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평택여고, 송탄고, 이충고, 비전고	중 18 고 9
	을	안일중, 포승중, 청북중, 현화중, 도곡중, 청옥중	경기물류고, 현화고, 청북고	
군포시 (의왕시)	갑	군포중, 산본중, 흥진중, 곡란중, 도장중, 용호중, 궁내중, 수리중, 금정중, 당동중, 당정중, 부곡중앙중	흥진고, 산본고, 용호고, 경기폴리텍고, 수리고, 군포e비즈니스고, 군포중앙고	중 19 고 10 특수 1
	갑	의왕중, 백운중, 의왕부곡중, 고천중, 갈뫼중, 모락중, 덕장중	백운고, 의왕고, 모락고	
	갑	의왕정음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고양시	특	한수중, 백석중, 오마중, 신일중, 백신중, 발산중, 백마중, 대화중, 중산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일산동중, 풍동중, 풍산중, 안곡중, 일산양일중, 가람중, 능곡중, 덕양중, 무원중, 백양중, 신능중, 원당중, 일산중, 지도중, 행신중, 화수중, 화정중, 호곡중, 현산중, 대송중, 목암중, 성사중, 서정중, 덕이중, 고양송산중, 고양중, 신원중, 도래울중, 향동중, 지축중, 덕은한강중	일산국제컨벤션고, 주엽고, 백석고, 백신고, 일산동고, 저동고, 백마고, 정발고, 중산고, 경기영상과학고, 풍동고, 안곡고, 고양국제고, 저현고, 고양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가좌고, 고양일고, 서정고, 덕이고, 대화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중 43 고 33
구리시 (남양주시)	갑	구리여중, 구리중, 교문중,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토평중, 갈매중	구리여고, 구리고, 인창고, 토평고, 수택고, 갈매고	중 40 고 23 특수 1
	갑	퇴계원중, 덕소중, 진건중, 금곡중, 미금중, 도농중, 와부중, 호평중, 장내중, 평내중, 판곡중, 예봉중, 가운중, 별가람중, 한별중, 남양주다산중, 다산한강중, 하랑중, 다산새봄중, 별내4중('24.3.)	퇴계원고, 금곡고, 진건고, 평내고, 호평고, 도농고, 와부고, 가운고, 판곡고, 별내고, 별가람고, 남양주다산고	
	을	화광중, 오남중, 마석중, 별내중, 양오중, 어람중, 광릉중, 진접중, 송라중, 풍양중, 주곡중, 천마중	남양주고, 청학고, 오남고, 진접고, 마석고	
	을	경은학교		
여주시	갑	여주중, 여주여중, 세종중	여주자영농고, 세종고	중 8 고 4
	을	점동중, 이포중, 흥천중, 강천중, 상품중	점동고, 이포고	
화성시 (오산시)	갑	정남중, 발안중, 남양중, 봉담중, 진안중, 동학중, 안화중, 병점중, 기안중, 석우중, 기산중, 솔빛중, 반송중, 화성동화중, 능동중, 푸른중, 와우중, 향남중, 예당중, 화성반월중, 한백중, 청계중, 동탄중, 하길중, 방교중, 다원중, 송린중, 이산중, 청림중, 동탄목동중, 서연중, 신백중, 수현중, 치동중, 화성세정중	발안비이오과학고, 남양고, 병점고, 동탄고, 안화고, 봉담고, 예당고, 반송고, 향남고, 나루고, 능동고, 동탄국제고, 향일고, 동탄중앙고, 화성반월고, 하길고, 한백고, 이산고, 창의고, 정현고, 서연고, 새솔고, 이솔고, 와우고, 동탄5고('24.3.)	중 44 고 32 특수 1
	을	양감중		
	갑	화성나래학교		
	갑	매홀중, 성호중, 운암중, 운천중, 대호중, 오산원일중, 문시중, 세마중	오산정보고, 운천고, 성호고, 운암고, 세마고, 세교고, 매홀고	
파주시	갑	봉일천중, 금릉중, 금촌중, 심학중, 운정2중('24.3.)	금촌고, 봉일천고, 운정5고('24.3)	중 22 고 11 특수 1
	을	법원여중, 한빛중, 해솔중, 동패중, 문산북중, 두일중, 지산중, 교하중, 문산중, 한가람중, 선유중, 산내중, 운정중, 산들중	문산고, 교하고, 문산제일고, 운정고, 한빛고, 동패고, 지산고	
	병 나	탄현중		
	병 다	파평중	적성융합고	
	병 라	어유중		
	을	자운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광주시 (하남시)	갑	광주중, 경안중, 탄벌중, 광주광남중, 태전중	광주중앙고, 광주고, 광남고, 태전고	중 24 고 15
	을	곤지암중, 광수중, 광일중, 초월중, 신현중, 매양중	곤지암고, 초월고	
	갑	남한중, 동부중, 하남중, 신장중, 신평중, 덕풍중, 미사강변중, 은가람중, 미사중, 위례중, 윤슬중, 감일중, 감일백제중	남한고, 하남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신장고, 풍산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위례고, 감일고	
연천군	을	전곡중, 청산중, 연천중	전곡고, 연천고	중 6 고 2
	병 나	백학중		
	병 다	군남중, 대광중		
포천시	갑	포천중, 포천여중, 갈월중, 대경중, 송우중	포천일고, 포천고, 송우고	중 13 고 6
	을	일동중, 경북중, 영북중, 이동중, 내촌중, 영중중, 삼성중, 관인중	일동고, 영북고, 관인고	
가평군	갑	가평중, 청평중	가평고, 청평고	중 5 고 4
	을	설악중, 조종중, 가평북중	설악고, 조종고	
양평군	갑	양평중	양평고	중 6 고 4
	을	지평중, 청운중, 국수중, 강하중, 양수중	지평고, 청운고, 양평전자과학고	
이천시	갑	이천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증포중	이천제일고, 이천고, 이현고	중 14 고 9 각종 1 특수 1
	을	이천경남중, 마장중, 율면중, 장호원중, 모가중, 백사중, 대월중, 효양중, 부발중, 이천사동중	장호원고, 이천세무고, 마장고, 율면고, 한국도예고, 효양고	
	을	경기새울학교		
	을	다원학교		
용인시	갑	용인중, 신갈중, 수지중, 대지중, 정평중, 죽전중, 구성중, 서원중, 이현중, 구갈중, 상갈중, 성복중, 나곡중, 용신중, 소현중, 홍천중, 손곡중, 상현중, 성지중, 용인대덕중, 언동중, 현암중, 용인신촌중, 용인신릉중, 동백중, 용인백현중, 초당중, 보라중, 청덕중, 흥덕중, 용인한빛중, 성서중, 서천중, 상하중, 신봉중, 어정중, 고림중, 고유중('24.3.)	용인고, 수지고, 풍덕고, 기흥고, 죽전고, 서원고, 구성고, 보정고, 성지고, 용인홍천고, 용인백현고, 현암고, 동백고, 대지고, 보라고, 초당고, 청덕고, 흥덕고, 성복고, 신봉고, 상현고, 서천고, 고림고	중 46 고 28 특수 1
	을	송전중, 백암중, 원삼중, 모현중, 포곡중, 영문중, 용천중, 한숲중	용인바이오고, 백암고, 포곡고, 용인삼계고, 처인고	
	을	용인다움학교		
안성시	갑	안성중, 안성여중, 공도중, 비룡중, 양진중, 만정중	안성고, 안성여고, 경기창조고	중 10 고 5 각종 1
	을	일죽중, 죽산중, 서운중, 양성중	일죽고, 죽산고	
	을	신나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김포시	갑	김포중, 김포여중, 금파중, 장기중, 풍무중, 감정중, 고창중, 양도중, 푸른솔중, 하늘빛중, 운양중, 운양1중('24.3.)	김포제일공고, 김포고, 사우고, 풍무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제일고, 운일고('24.3.)	중 22 고 12 특수 1
	을	대곶중, 고촌중, 김포신곡중, 마송중, 신양중, 은여울중, 김포한가람중, 향산중, 나래중	마송고, 솔터고, 고촌고	
	을	새솔학교		
	병 라	하성중	하성고	
시흥시	갑	소래중, 대흥중, 정왕중, 송운중, 서해중, 시흥은행중, 함현중, 시흥중, 군자중, 장곡중, 연성중, 신천중, 월곶중, 논곡중, 시화중, 은계중, 시흥매화중, 응곡중, 시흥능곡중, 배곧중, 조남중, 배곧해솔중, 시흥가온중, 시화나래중, 배곧라라중('24.3)	소래고, 은행고, 서해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정왕고, 함현고, 경기스마트고, 장곡고, 시흥고, 군서고, 시흥매화고, 시흥능곡고, 신천고, 배곧고, 목감고	중 25 고 15 각종 1
	갑	군서미래국제학교		

중등학교 인사구역 현황표(2023. 3. 1. 기준)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수원시	특	수원북중, 수성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연무중, 창용중, 수일중, 송원중, 권선중, 동성중, 매원중, 곡선중, 구운중, 산남중, 원천중, 동수원중, 남수원중, 숙지중, 호매실중, 영덕중, 영일중, 영통중, 청명중, 태장중, 율전중, 대평중, 화홍중, 명인중, 천천중, 율현중, 매현중, 곡반중, 칠보중, 망포중, 정천중, 조원중, 영동중, 서호중, 세류중, 잠원중, 상촌중, 매탄중, 수원원일중, 경기체육중, 광교중, 이의중, 이목중, 고색중, 수원다산중, 능실중, 광교호수중	수성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여고, 경기과학고, 효원고, 수원정보과학고, 경기체고, 권선고, 숙지고, 영덕고, 태장고, 청명고, 화홍고, 장안고, 수원하이텍고, 수일고, 대평고, 경기대명고, 천천고, 조원고, 매탄고, 수원외고, 망포고, 매원고, 고색고, 율천고, 광교고, 호매실고, 수원칠보고, 이의고, 곡정고	중 51 고 31 특수 1
	특	아름학교		
성남시	특	성남여중, 성남서중, 성남동중, 상원여중, 금광중, 대원중, 서현중, 영성중, 성남문원중, 성남중, 양영중, 은행중, 이매중, 매송중, 장안중, 수내중, 내정중, 야탑중, 정자중, 하탑중, 분당중, 청솔중, 백현중, 불곡중, 태평중, 구미중, 늘푸른중, 도촌중, 샛별중, 수진중, 운중중, 판교중, 삼평중, 보평중, 낙원중, 신백현중, 위례중앙중, 위례한빛중, 창성중, 판교대장중	성남고, 성남여고, 양영디지털고, 분당고, 분당중앙고, 서현고, 이매고, 한솔고, 성남테크노과학고, 성남금융고, 수내고, 분당경영고, 불곡고, 돌마고, 늘푸른고, 성남외고, 복정고, 운중고, 보평고, 판교고, 위례한빛고	중 40 고 21 특수 2
	특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		
의정부시	특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회룡중, 금오중, 다온중, 신곡중, 발곡중, 민락중, 호원중, 충의중, 부용중, 효자중, 천보중, 녹양중, 솔뫼중, 동암중, 송양중, 훈민중('23.3)	의정부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여고, 송현고, 호원고, 부용고, 경기북과학고, 효자고, 발곡고, 송양고	중 18 고 10 특수 1
	특	송민학교		
안양시	특	안양중, 관양중, 대안여중, 신안중, 인덕원중, 대안중, 호계중, 안양서중, 신기중, 범계중, 평촌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귀인중, 부안중, 연현중, 호성중, 비산중, 임곡중, 박달중	안양공고, 안양고, 평촌고, 부흥고, 평촌경영고, 동안고, 평촌공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관양고, 충훈고, 인덕원고	중 22 고 13 특수 1
(과천시)	특	과천중,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특	안양해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부천시	특	부천중, 부천여중, 심원중, 부천남중, 상도중, 성주중, 부천부곡중, 중흥중, 계남중, 부명중, 부인중, 부천부흥중, 석천중, 상일중, 상동중, 원미중, 부일중, 덕산중, 성곡중, 소사중, 내동중, 부천여월중, 중원중, 부천일신중,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역곡중, 까치울중, 수주중, 옥길중, 도당중, 범박중	부천고, 부천공고, 원미고,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계남고, 중흥고, 부명고, 심원고, 경기국제통상고, 상동고, 경기예술고, 상일고, 송내고, 상원고, 부천북고, 원종고, 소사고, 중원고, 도당고, 덕산고, 범박고, 수주고, 역곡고	중 32 고 24 특수 1
	특	부천상록학교		
광명시	갑	광명중, 하안북중, 광남중, 안서중, 철산중, 광명북중, 가림중, 광문중, 하안중, 소하중, 충현중, 빛가온중	광명고, 명문고, 광명경영회계고, 광명북고, 광문고, 충현고, 소하고, 운산고, 광휘고	중 12 고 9
동두천시 (양주시)	갑	생연중,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국어고	중 11 고 9 특수 1
	갑	덕정중, 덕계중, 고암중, 삼숭중, 양주백석중, 덕현중, 회천중, 옥정중, 옥빛중	덕정고, 덕계고, 양주백석고, 양주고, 덕현고, 옥정고, 옥빛고	
	갑	양주도담학교		
안산시	갑	원곡중, 관산중, 중앙중, 시곡중, 선부중, 원일중, 성포중, 본오중, 상록중, 반월중, 안산부곡중, 경수중, 성안중, 송호중, 양지중, 별망중, 와동중, 선일중, 초지중, 석수중, 단원중, 안산성호중, 안산해양중, 석호중, 광덕중, 신길중, 이호중, 안산해솔중	원곡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성안고, 고잔고, 양지고, 송호고, 초지고, 단원고, 성포고, 신길고, 선부고, 광덕고, 부곡고, 상록고	중 29 고 15
	을	대부중	대부고	
평택시	갑	평택중, 평택여중, 송탄중, 세교중, 비전중, 장당중, 이충중, 용이중, 배다리중('23.3), 민세중 ('23.3) 동삭중('23.3)	평택고, 평택기계공고, 평택여고, 송탄고, 이충고, 비전고	중 17 고 9
	을	안일중, 포승중, 청북중, 현화중, 도곡중, 청옥중	경기물류고, 현화고, 청북고	
군포시 (의왕시)	갑	군포중, 산본중, 흥진중, 곡란중, 도장중, 용호중, 궁내중, 수리중, 금정중, 당동중, 당정중, 부곡중앙중	흥진고, 산본고, 용호고, 경기폴리텍고, 수리고, 군포e비즈니스고, 군포중앙고	중 19 고 10 특수 1
	갑	의왕중, 백운중, 의왕부곡중, 고천중, 갈뫼중, 모락중, 덕장중	백운고, 의왕고, 모락고	
	갑	의왕정음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고양시	특	한수중, 백석중, 오마중, 신일중, 백신중, 발산중, 백마중, 대화중, 중산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일산동중, 풍동중, 풍산중, 안곡중, 일산양일중, 가람중, 능곡중, 덕양중, 무원중, 백양중, 신능중, 원당중, 일산중, 지도중, 행신중, 화수중, 화정중, 호곡중, 현산중, 대송중, 목암중, 성사중, 서정중, 덕이중, 고양송산중, 고양중, 신원중, 도래울중, 향동중, 지축중, 덕은한강중('22.9.)	일산국제컨벤션고, 주엽고, 백석고, 백신고, 일산동고, 저동고, 백마고, 정발고, 중산고, 경기영상과학고, 풍동고, 안곡고, 고양국제고, 저현고, 고양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가좌고, 고양일고, 서정고, 덕이고, 대화고, 고양동산고, 도래울고, 신원고, 향동고	중 43 고 33
구리시 (남양주시)	갑	구리여중, 구리중, 교문중,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토평중, 갈매중	구리여고, 구리고, 인창고, 토평고, 수택고, 갈매고	중 39 고 23 특수 1
	갑	퇴계원중, 덕소중, 진건중, 금곡중, 미금중, 도농중, 와부중, 호평중, 장내중, 평내중, 판곡중, 예봉중, 가운중, 별가람중, 한별중, 남양주다산중, 다산한강중, 하랑중, 다산새봄중	퇴계원고, 금곡고, 진건고, 평내고, 호평고, 도농고, 와부고, 가운고, 판곡고, 별내고, 별가람고, 남양주다산고	
	을	화광중, 오남중, 마석중, 별내중, 양오중, 어람중, 광릉중, 진접중, 송라중, 풍양중, 주곡중, 천마중	남양주공고, 청학고, 오남고, 진접고, 마석고	
	을	경은학교		
여주시	갑	여주중, 여주여중, 세종중	여주자영농고, 세종고	중 8 고 4
	을	점동중,이포중,흥천중,강천중,상품중	점동고, 이포고	
화성시 (오산시)	갑	정남중, 발안중, 남양중, 봉담중, 진안중, 동학중, 안화중, 병점중, 기안중, 석우중, 기산중, 솔빛중, 반송중, 화성동화중, 능동중, 푸른중, 와우중, 향남중, 예당중, 화성반월중, 한백중, 청계중, 동탄중, 하길중, 방교중, 다원중, 송린중, 이산중, 청림중, 동탄목동중, 서연중, 신백중, 수현중, 치동중, 화성세정중	발안바이오과학고, 남양고, 병점고, 동탄고, 안화고, 봉담고, 예당고, 반송고, 향남고, 나루고, 능동고, 동탄국제고, 향일고, 동탄중앙고, 화성반월고, 하길고, 한백고, 이산고, 창의고, 정현고, 서연고, 새솔고, 이솔고, 와우고('23.3)	중 44 고 31 특수 1
	을	양감중		
	갑	화성나래학교		
	갑	매홀중, 성호중, 운암중, 운천중,대호중, 오산원일중, 문시중, 세마중	오산정보고, 운천고, 성호고, 운암고, 세마고, 세교고, 매홀고	
파주시	갑	봉일천중, 금릉중, 금촌중, 심학중	금촌고, 봉일천고	중 21 고 10 특수 1
	을	법원여중, 한빛중, 해솔중, 동패중, 문산북중, 두일중, 지산중, 교하중, 문산중, 한가람중, 선유중, 산내중, 운정중, 산들중	문산고, 교하고, 문산제일고, 운정고, 한빛고, 동패고, 지산고	
	병 나	탄현중		
	병 다	파평중	경기세무고	
	병 라	어유중		
	을	자운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광주시 (하남시)	갑	광주중, 경안중, 탄벌중, 광주광남중 태전중('23.3)	광주중앙고, 광주고, 광남고, 태전고	중 24 고 15
	을	곤지암중, 광수중, 광일중, 초월중, 신현중, 매양중	곤지암고, 초월고	
	갑	남한중, 동부중, 하남중, 신장중, 신평중, 덕풍중, 미사강변중, 은가람중, 미사중, 위례중, 윤슬중, 감일중, 감일백제중 ('23.3)	남한고, 하남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신장고, 풍산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위례고, 감일고	
연천군	을	전곡중, 청산중, 연천중	전곡고, 연천고	중 6 고 2
	병 나	백학중		
	병 다	군남중, 대광중		
포천시	갑	포천중, 포천여중, 갈월중, 대경중, 송우중	포천일고, 포천고, 송우고	중 13 고 6
	을	일동중, 경북중, 영북중, 이동중, 내촌중, 영중중, 삼성중, 관인중	일동고, 영북고, 관인고	
가평군	갑	가평중, 청평중	가평고, 청평고	중 5 고 4
	을	설악중, 조종중, 가평북중	설악고, 조종고	
양평군	갑	양평중	양평고	중 6 고 4
	을	지평중, 청운중, 국수중, 강하중, 양수중	지평고, 청운고, 양평전자과학고	
이천시	갑	이천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증포중	이천제일고, 이천고, 이현고	중 14 고 9 각종 1 특수 1
	을	이천경남중, 마장중, 율면중, 장호원중, 모가중, 백사중, 대월중, 효양중, 부발중, 이천사동중	장호원고, 이천세무고, 마장고, 율면고, 한국도예고, 효양고	
	을	경기새울학교		
	을	다원학교		
용인시	갑	용인중, 신갈중, 수지중, 대지중, 정평중, 죽전중, 구성중, 서원중, 이현중, 구갈중, 상갈중, 성복중, 나곡중, 용신중, 소현중, 홍천중, 손곡중, 상현중, 성지중, 용인대덕중, 언동중, 현암중, 용인신촌중, 용인신릉중, 동백중, 용인백현중, 초당중, 보라중, 청덕중, 흥덕중, 용인한빛중, 성서중, 서천중, 상하중, 신봉중, 어정중, 고림중	용인고, 수지고, 풍덕고, 기흥고, 죽전고, 서원고, 구성고, 보정고, 성지고, 용인홍천고, 용인백현고, 현암고, 동백고, 대지고, 보라고, 초당고, 청덕고, 흥덕고, 성복고, 신봉고, 상현고, 서천고, 고림고	중 45 고 28 특수 1
	을	송전중, 백암중, 원삼중, 모현중, 포곡중, 영문중, 용천중, 한숲중	용인바이오고, 백암고, 포곡고, 용인삼계고, 처인고	
	을	용인다움학교		
안성시	갑	안성중, 안성여중, 공도중, 비룡중, 양진중, 만정중	안성고, 안성여고, 경기창조고	중 10 고 5 각종 1
	을	일죽중, 죽산중, 서운중, 양성중	일죽고, 죽산고	
	을	신나는학교		

시·군명	인사구역	중 학 교 명	고 등 학 교 명	학교수
김포시	갑	김포중, 김포여중, 금파중, 장기중, 풍무중, 감정중, 고창중, 양도중, 푸른솔중, 하늘빛중, 운양중	김포제일공고, 김포고, 사우고, 풍무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제일고	중 21 고 11 특수 1
	을	대곶중, 고촌중, 김포신곡중, 마송중, 신양중, 은여울중, 김포한가람중, 향산중, 나래중	마송고, 솔터고, 고촌고	
	을	새솔학교		
	병 라	하성중	하성고	
시흥시	갑	소래중, 대흥중, 정왕중, 송운중, 서해중, 시흥은행중, 함현중, 시흥중, 군자중, 장곡중, 연성중, 신천중, 월곶중, 논곡중, 시화중, 은계중, 시흥매화중, 응곡중, 시흥능곡중, 배곧중, 조남중, 배곧해솔중, 시흥가온중, 시화나래중('23.3)	소래고, 은행고, 서해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정왕고, 함현고, 경기스마트고, 장곡고, 시흥고, 군서고, 시흥매화고, 시흥능곡고, 신천고, 배곧고, 목감고	중 24 고 15 각종 1
	갑	군서미래국제학교		

2014. 3. 1.자 적용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관련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사례 안내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2014. 3. 1.자 적용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개정 관련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사례 안내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경기교육혁신기획단의「인사제도 혁신방안 혁신기획단 회의 결과」인사개선안 결정(행정관리담당관-2034, 2011. 3. 9) 및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개선안 시행방법·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결정

○ 인사제도개선 TF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운영(2011. 4 ~ 2011. 10)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인사제도개선안 상정 및 확정(2011. 11. 18.)

Ⅱ 필요성 및 효과

○ 특구역과 경합 갑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지역에 대한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어 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이 발생함

○ 타지역 근무자가 희망할 경우 전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 순환전보에 따른 능률적인 직무수행 및 다양한 교육방법 상호 공유 기회 확대

○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 도서벽지지역, 접경지역 및 농어촌 등 가산점이 있는 지역으로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음.

Ⅲ 2014년 3월 1일 적용 행정예고 주요 내용

○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개정 주요사항

제9조 (인사구역) ① 교원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인사구역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1. 특구역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고양시 소재 학교
2. 갑구역
   가. 경합 : 광명시, 평택시(을구역 제외),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을구역 제외), 화성시(을구역 제외),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을구역 제외) 소재 학교

나. 비경합 :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을구역 제외), **여주시**(을구역 제외), 파주시(을, 병구역 제외), 광주시(을구역 제외), 포천시(을구역 제외), 가평군(을구역 제외), 양평군(을구역 제외), 이천시(을구역 제외), 안성시(을구역 제외), 김포시(을, 병구역 제외), 시흥시 소재 학교

3. 을구역
특 또는 갑.병구역을 제외한 학교

4. 병구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한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학교

제10조 (근무기간) ① 동일직위 근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장·교감의 특구역 내 근무기간은 8년 이하로 한다.
2. **수석교사와** 교사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
3. <삭제>
4. 과학영재학교에 공모로 임용된 기간은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전보일 현재 만 58세에 달한 **수석교사와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는 당해 교육지원청 지역 내에서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부 칙 (2011. 11. 8. 개정)

제3조 (경과조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7항,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9항 1호·4호, 부칙 제4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0조 제1항 제2호(교사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원시(특),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특), 고양시(특)의 특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특구역 근무기간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원시(갑), 부천시(갑), 고양시(갑)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경합 갑구역 근무기간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군, 파주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용인시 등의 비경합 갑구역, 을구역 및 병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리시, 남양주시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른 세부 주요 내용

『교사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

1) 적용시점 : **2014. 3. 1. 부터 적용**

2) 인사구역 조정
- ○ 경합 갑구역에서 특구역으로 변경·통합 : 수원갑, 고양갑, 부천갑
- ○ 경합 갑지역 통합 : 구리남양주

3) 근무기간 10년 산정방법
- ○ 현행과 동일 : 특구역과 경합 갑구역(수원갑, 고양갑, 부천갑, 구리시, 남양주시 제외)
- ○ 현임교 발령일을 기준으로 10년 산정
  - 특구역으로 변경되는 수원갑, 부천갑, 고양갑
  - 인사구역이 병합되는 구리남양주
  - 비경합 갑, 을, 병구역

4) 2014. 3. 1. 부터 특구역내 근무기간 제한 규정이 개정됨(인사관리세부기준 제10조 제1항 참조)에 따라 특구역 만기 후 다른 특구역으로 전보내신할 수 있음

5) 기타
- ○ 예고기간을 주어 전보내신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부여함
- ○ 인사구역이 통합되는 고양갑, 부천갑, 수원갑, 구리시, 남양주시 및 비경합 갑구역, 을구역, 병구역 지역은 2014. 3. 1.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을 산정토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함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 산정 관련 Q&A

Q1. **2014. 2. 28. 현재 특구역 5년 근무경력인 안양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 수원의 △△고등학교로 전보한 경우 수원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1. 상기교사는 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 제4조 1항에 의해 2014. 3. 1.자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4. 3. 1.이후 수원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할 수 있음.

Q2. **2014. 2. 28. 현재 고양(특)의 전임교 2년, 부천(특)의 현임교 3년을 포함하여 특구역 5년 근무경력인 부천(특)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부천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는가?**

A2.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특구역 근무기간 5년으로, 부천지역에서 향후 5년을 근무할 수 있음. 특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특구역 근무기간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Q3. **2014. 2. 28. 현재 전임교 5년(안양특), 현임교 4년(수원특) 근무경력인 수원(특)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수원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으며, 전보를 희망할 경우 수원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가?**

A3.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 특구역 근무기간 9년으로 향후 1년을 현재 근무하는 OO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2015. 3. 1.에는 반드시 수원이 아닌 다른 교육지원청 지역으로 전보내신해야 함.
- 2014. 3. 1.에 전보를 희망할 경우 수원지역으로 전보내신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나, 전보 후 1년만에 지역만기에 해당되어 2015. 3. 1.에는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지역만기 전보내신을 해야 하므로, 초빙이 아닌 한 다른 교육지원청 지역으로 전보내신하는 것이 타당함.

Q4. **2014. 2. 28. 현재 전임교 5년(안양특), 현임교 5년(부천특) 근무경력인 부천(특)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부천지역에 근무가 가능한가?**

A4.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 특구역 근무기간 10년으로 부천지역 근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구역만기(특구역만) 전보내신하여야 함. 부칙 제4조 제1항 참조

Q5. **2014. 2. 28. 현재 고양(특)에서 전임교 5년, 현임교 5년을 포함하여 특구역 10년 근무경력인 고양(특)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고양지역에 근무가 가능한가?**

A5.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 특구역 근무기간 10년으로 고양지역 근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구역만기(특구역만) 전보내신하여야 함.(부칙 제4조 제1항 참조)
• 이 내용은 2014. 2. 28. 기준 부천(특)에서 특구역 10년 근무 경력인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Q6. **2014. 2. 28. 현재 부천(갑)에서 전임교 2년, 현임교 3년을 포함한 경합 갑구역 5년 근무경력인 부천(갑)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부천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는가?**

A6.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부천(갑) 경합구역 근무기간 5년이나 현임교 근무기간 3년만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며, 2014. 3. 1. 이후 부천지역에서 향후 7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
• 이 내용은 2014. 2. 28. 기준 고양(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2014. 2. 28. 기준 수원시(갑), 부천시(갑), 고양시(갑)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부칙 제4조 제2항 참조).

Q7. **2013. 2. 28. 현재 부천(특)의 OO고등학교에서 현임교 5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3. 3. 1.자로 부천(갑)의 △△고등학교로 전보한 경우 2014. 3. 1. 이후 부천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는가?**

A7. • 상기교사는 2014. 2. 28. 현재 부천(갑) 소속으로 부천(갑)근무기간은 1년이며, 2014. 3. 1. 이후에는 부천지역에서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 2014. 3. 1. 이후에는 부천(갑)은 없으며 부천(특)으로 통합되고, 근무기간산정방법 적용조항은 부칙 제4조 제2항임.
• 이 내용 중 부천을 고양으로 대체할 경우, 고양(갑)에 근무하는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됨

Q8. **2013. 2. 28. 현재 부천(갑)의 OO고등학교에서 현임교 5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3. 3. 1.자로 부천(특)의 △△고등학교로 전보한 경우 2014. 3. 1. 이후 부천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를 할 수 있는가?**

A8. • 상기교사는 2014. 2. 28. 현재 부천(특) 소속으로 부천(특)근무기간은 1년이며, 2014. 3. 1. 이후에는 부천지역에서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 근무기간산정방법 적용조항은 부칙 제4조 제1항임.
• 이 내용 중 부천을 고양으로 대체할 경우, 고양(특)에 근무하는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됨

Q9. **2013. 2. 28. 현재 부천(갑)의 OO고등학교에서 현임교 5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3. 3. 1.자로 부천(갑)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보한 경우 2014. 3. 1. 이후 부천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를 할 수 있는가?**

A9.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부천(갑) 경합구역 근무기간 6년이나 현임교 근무기간 1년만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며, 2014. 3. 1. 이후 부천지역에서 향후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 부칙 제4조 제2항임.
• 이 내용 중 부천을 고양으로 대체할 경우, 고양(갑)에 근무하는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 내용 중 부천을 수원으로 대체할 경우, 수원(갑)에 근무하는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됨

Q10. **2014. 2. 28. 현재 용인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전임교 5년, 현임교 4년 근무한 OO고등학교 교사가 2014. 3. 1.에도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할 경우 용인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10.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경합 갑구역 근무기간이 9년으로 향후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으며, 2015. 3. 1.자로 반드시 다른 교육지원청 지역으로 구역만기 전보내신하여야 함. (부칙 제4조 제3항 참조)
• 상기 내용은 2014. 3. 1. 적용되는 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인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Q11. **2014. 2. 28. 현재 용인시에서 전임교 경합 갑구역 5년, 현임교 을구역 3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4. 3. 1.에도 을구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용인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11.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기간 3년만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함으로, 2014. 3. 1. 이후 7년을 용인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전임교는 경합 갑구역에 해당하나, 2014. 2. 28. 기준으로 전임교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으로 산정함(부칙 제4조 제4항).
• 상기 내용은 2014. 3. 1. 적용되는 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 제4조 4항에 해당되는 비경합갑구역, 을구역, 병구역은 동일하게 적용됨.

Q12. **2014. 2. 28. 현재 평택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전임교 5년, 현임교 5년 근무한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평택지역에 근무가 가능한가?**

A12.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 경합 갑구역 근무기간 10년으로 평택지역 근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구역만기(경합구역만) 전보내신하여야 함. 부칙 제4조 제3항 참조
• 상기 내용은 2014. 3. 1. 적용되는 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인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구리남양주 제외).

Q13. **2013. 2. 28. 현재 평택(갑)의 OO고등학교에서 현임교 5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3. 3. 1.자 관내 내신으로 평택(을)의 △△고등학교로 전보한 경우, 2014. 3. 1. 이후 평택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를 할 수 있는가?**

A13. • 상기교사는 2014. 2. 28. 현재 평택시 근무기간은 경합 갑구역 5년, 을구역 1년을 근무하였으나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해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므로 2014. 3. 1. 기준 동일교육지원청 근무기간은 1년이며, 2014. 3. 1. 이후에는 평택지역에서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부칙 제4조 제4항)
• 상기 내용은 2014. 3. 1. 적용되는 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 제4조 제4항에 해당되는 비경합 갑구역, 을구역, 병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Q14. **2014. 2. 28. 현재 구리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전임교 7년, 현임교 2년 근무한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014. 3. 1.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할 경우,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는가?**

A14. •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구리시 근무기간은 경합 갑구역 9년이나 현임교 근무경력 2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므로 2014. 3. 1. 이후 8년을 구리남양주지역에서 더 근무할 수 있음(부칙 제4조 제5항)
• 구리남양주지역은 경합 갑구역에 해당하나 2014. 3. 1. 기준으로 전임교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Q15. **2013. 2. 28. 현재 남양주 갑구역의 OO고등학교에서 현임교 5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3. 3. 1. 구리시의 △△고등학교로 전보한 경우 2014. 3. 1. 이후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를 할 수 있는가?**

A15. 상기교사는 2014. 2. 28. 현재 구리남양주시 근무기간은 남양주시 5년, 구리시 1년으로 6년이나 현임교 근무경력 1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므로, 2014. 3. 1. 이후 구리남양주지역에서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부칙 제4조 제5항)

Q16. **2013. 2. 28. 현재 남양주(갑)의 OO고등학교에서 현임교 5년 근무경력인 교사가 2013. 3. 1.자 관내 내신으로 남양주(을)의 △△중학교로 전보한 경우 2014. 3. 1. 이후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를 할 수 있는가?**

A16. • 상기교사는 2014. 2. 28. 현재 남양주시 근무기간은 비경합 갑구역 5년, 을구역 1년을 근무하였으나 부칙 제4조 제5항에 의해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므로 2014. 3. 1. 기준 구리남양주시 근무기간은 1년이며, 2014. 3. 1. 이후에는 구리남양주지역에서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부칙 제4조 제5항)
• 상기 내용은 2014. 3. 1. 적용되는 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 제4조 4항에 해당되는 비경합 갑구역, 을구역, 병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Q17. **2014. 2. 28. 현재 파주시에서 전임교 갑구역 9년, 현임교 병구역(다) 1년을 근무한 OO고등학교 교사가 2014. 3. 1. 이후 OO고등학교와 파주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17. 파주지역의 경우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함으로 2014. 3. 1. 이후 현재의 OO고등학교에서 2년간 더 근무가 가능하며, 파주지역에서는 현임교 2년을 포함하여 9년을 더 근무할 수 있음.

Q18. **2014. 2. 28. 현재 가평군에서 전임교 갑구역 5년, 현임교 갑구역 4년을 근무한 교사가 2014. 3. 1.에도 전보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평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18.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기간 4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므로 2014. 3. 1. 이후 6년을 가평지역에서 더 근무할 수 있음. 가평군은 비경합 갑구역 또는 을구역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해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Q19. **2014. 2. 28. 현재 가평군에서 전임교 갑구역 5년, 현임교 을구역 4년을 근무한 교사가 2014. 3. 1. 에도 계속 현임교에 근무할 경우 가평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19.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기간 4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므로 2014. 3. 1. 이후 6년을 가평지역에서 더 근무할 수 있음. 가평군은 비경합 갑구역 또는 을구역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해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내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Q20. **2014. 2. 28. 현재 군포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전임교 5년, 현임교 4년 근무한 OO고등학교 교사가 2014. 3. 1.에도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할 경우 군포지역에서 얼마나 더 근무가 가능한가?**

A20. 상기교사는 2014. 2. 28. 기준으로 경합 갑구역 근무기간이 9년으로 향후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으며, 2015. 3. 1.자로 반드시 다른 교육지원청 지역으로 구역만기 전보내신하여야 함.(부칙 제4조 제3항 참조)

2026학년도

중등·특수교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2026학년도 중등·특수교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

Ⅰ 중등교원 정원

1. 교원정원

가. 정원: 규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인원수. 정원은 학급 신증설 및 초등학교 교과전담의 수가 증가될 때만 소요됨

- ▸초등: 학급수 + 교과전담수 + 관리자 + 특수 + 비교과 교사
- ▸중등: 학급수×(급당 교사수) + 관리자 + 특수 + 비교과 교사 + 증치

나. 현원: 정원 중 현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기간제, 휴직자, 직위해제자 등 제외, 다만 출산휴가 등 단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 및 직위해제자 중 그 직위에 재종사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사람 등은 편의상 현원에 포함하여 집계하기도 함)

다. 발령 자원: 발령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원

라. 계약제교원: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의 총칭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1) **정원외기간제 교사**: 정원의 부족 또는 부족이 예상되어 정규 교원 대신 사용하는 비정규직 자원
2) **기간제 교사**: 1개월 이상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계약에 의해 1년 이내로 임용하는 비정규직 자원
3) **(시간)강사**: 1월 미만의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시간 단위 급여 지급을 전제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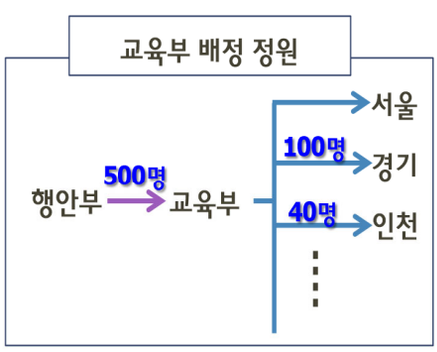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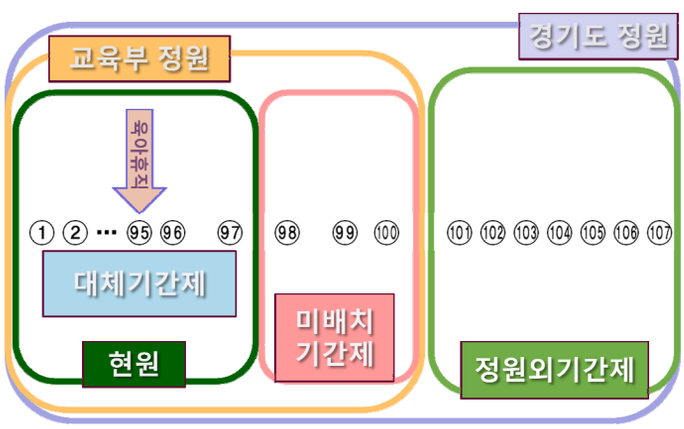

2. 교원 정원 배정기준

가. 2026. 3. 1자 예상정원을 학급 수에 따라 아래표의 배정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한다.

구분 / 학급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교사	교감	교장	계	교사	교감	교장	계
3	10	(1)	1	12	10	(1)	1	12
4	11	(1)	1	13	11	(1)	1	13
5	12	(1)	1	14	13	(1)	1	15
6	13	1	1	15	14	1	1	16
7	14	1	1	16	15	1	1	17
8	15	1	1	17	16	1	1	18
9학급 이상교	- 교장,교감 제외 ※ **9학급** : (학급 수) × **1.75** 명 + 2명 = **18명** ※ **10학급**: (학급 수) × **1.75** 명 + 1명 = **19명** ※ **11학급** 이상: (교사 수) = (학급 수)×**1.75 명**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장,교감 제외 ※ 일반계 교사수: 학급당 **1.95** ※ 농업계 교사수: 〃 2.15 ※ 공업계 교사수: 〃 2.15 ※ 상업계 교사수: 〃 2.05 ※ 외국어고 교사수 : 〃 2.15 ※ 특성화고(종합고): 계열별 학급당 위 비율 적용 후 합산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특수	• 기준: 학급수×1명 • 추가배치기준: ① 순회학급 제외 특수 3학급 이상인 경우 ②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학생 6명)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 학급수×1명 • 추가배치기준: ① 학교당 1명 추가 배치 (단, 1학급 학생수 4명 이하일 경우 추가배치 제외) ②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학생 7명)을 초과하는 경우			
	• 공통: 추가배치기준에서 ①항 적용 시, ②항은 ①항의 교사를 포함하여 산정함							
보건	• 9학급 이상 (단, 9학급 미만 학교 예산 내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원외기간제교사 인원 할당) • 일반학급 36학급 이상학교 정원외기간제교사 1명 추가 배치(2026학년도)							
교감	• 5학급 이하(특수학급 포함)교는 교감 미배치 가능(「초·중등교육법」제19조) (배치시 교감은 수업을 담당해야 함,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6조의2) • 43학급 이상의 중 · 고등학교에 복수교감 배치 가능(특수학급포함)							
진로 진학 상담	• 3~8학급 학교는 배정 기준에서 1명을 더하고, 9학급 이상의 학교는 정원배정 산식에 포함 (단, 소수점 아래 첫재짜리에서 반올림)							
수석 교사	• 정원배정 산식에 0.5 추가 단,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①항에 상응하는 우대를 적용받을 경우, 정원 배정 산식에 0.5 추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수석교사 배치 기준에 의한 교사 수

※ 수석교사 배치교 : 2026학년도 수석교사 TO 여부에 따라 정원배정 산식에 0.5 추가

0.5 추가	0.5 미추가
- 2026학년도까지 수석교사 TO가 있는 경우	- 수석교사가 12월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경우 - 수석교사의 퇴직, 면직, 일반교사 전환 등의 사유로 2026학년도 수석교사 TO가 없는 경우

※ 수석교사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후 발령이 나지 않거나 수석교사 미배치교 중 2026. 3. 1.자 인사 발령으로 수석교사가 배치될 경우 정원 재산정 (교육지원청 주관)

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기준에 의한 교사 수(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 9학급 미만 : 배치 기준에 의한 교사 수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수(1명)를 더하여 산출

2) 9학급 이상 : 배치 기준에 의한 교사 수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수가 포함되어 있음

라. 보건교사 배치기준 : 2026학년도 중등보건교사 배치 기준 알림 공문 참조

1) 9학급 이상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 배치(통합, 병설학교는 겸임할 수 있음)

2) 9학급 미만 학교에 근무 중인 정규 보건교사는 동일교 만기까지만 현임교 근무 보장, 유예 불가

3. 현원 제외 요인

[휴직, 파견, 퇴직 등에 대한 현원 포함 및 제외 근거]

구분		현원 포함	현원 제외
휴직	1년 이하	모든 휴직	
	1년 초과	질병,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행, 육아, 불임·난임, 가족돌봄, 노조전임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
파견	1년 이하	모든 파견	
	1년 초과	연수파견(4호) 이외의 파견자 : 도직속기관	연수파견자(4호) : 교원대, 서울대, 해외(재외 교육기관 파견 포함)
기타		2026년 2월말 명예퇴직신청자, HOLD, 직위해제자, 해임(파면) 처분 후 소청(소송)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자	의원면직예정자 2026년 2월말 정년퇴직예정자 정원외기간제(미배치기간제 포함)

- HOLD : 현원제외요인(정원외기간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후임(정규교사)을 배치하지 않고, 정기인사 이후 복직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자리(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복직발령 될 학교에 이미 통보되었으며, 복직자의 복직시점까지 미배치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 됨. 임의로 HOLD 처리하여서는 안 됨)

※ 현원제외요인(정원외기간제)의 HOLD 처리 시, 현원에 포함하여 입력

4. 전문계 통합교과 현황

[전문계 통합교과 현황]

전문계 교과(통합이전)	전문계 통합교과
농업, 임업, 원예, 조경	식물자원·조경
축산, 잠업	동물자원
농토목, 농기계	농공
공업, 건축, 토목, 건설	건설
전기, 전자, 통신	전기·전자·통신
화공, 섬유	화공·섬유
금속, 기계, 자동차	기계·금속
디자인	디자인·공예

※ 전문교과의 증원이 요구될 시 통합교과로 소요 정원 입력(식물자원 · 조경, 동물자원, 농공, 건설, 전기 · 전자 · 통신, 화공 · 섬유, 기계 · 금속, 디자인 · 공예)

5. 11월 정원 소요 입력시 주의사항

가. 2026학년도 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책임감을 갖고 정확히 작성

나. 제출 후 감원 사유 발생 시, 가급적 증원되는 교과를 조정한 후 수정하여 즉시 제출

다. 9월에 제출한 교원소요 현황을 근거로 작성 (교육과정 변경에 의한 교원소요 변경 불가)

라. 2026년 신설 예정 학교는 설립사무교에서 작성 제출

마.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예정인 고등학교 및 지원청의 경우, OO순회고, OO청순회고 입력 제출

바.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정원 배치교만 입력(공무직을 대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사. 공문 시행에 의해 추가 배치된 정원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아. 보건교사: **정원=1** 입력, 36학급 이상교에 추가 배치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Ⅱ 2026. 3. 1.자 중등교사 전보 내신서 작성

1 전보 내신서 작성 순서

1. 교내연수 : G-인사이트 전보 내신서 작성요령
2. 본인 내신서 작성(G-인사이트 입력) : 작성요령 및 입력요령 참고
3. G-인사이트 전보 내신서 출력하여 본인 확인
4. 자료 수정 및 입력자료 최종 확인
5. 자료 출력(전보 내신서-본인, 전보 내신자 명부-교감)
6. 전보 내신서에 본인 도장 날인(수기 서명 불가) 및 학교장 직인, 사인 날인
7. 전보내신서 및 전보 내신자 명부에 근평 기록
   (관리자가 직접 전보 내신서 출력물 및 G-인사이트-[내신서절차도]-[근무성적관리] 입력 기재)
8. 출력자료 제출 : G-인사이트 전보 프로그램 출력자료
   ※ G-인사이트 전보 프로그램 출력자료의 내용이 틀릴 경우에는 우선 NEIS 인사기록을 확인하고, 인사기록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두 줄 긋고 정정 · 날인하여 제출함
   ※ G-인사이트 전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별도 유인물 참조

2 일반 사항

1. 현임교 근무년수 계산 기준은 2026. 2. 28.까지로 하되 **기간제교사, 휴직, 파견, 직위해제, 정직 기간, 교원 근무시간면제** 등은 "**현임교 근무년수(18)**"**에서 제외함**
2. G-인사이트 전보 내신서의 **" 현임청근무경력(25)"** 란 휴직기간 확인(실제 현임교의 휴직기간과 다를 경우 [근무년수]-[근무경력 목록]에서 정정)
3. **현임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내신서를 제출하지 못함**
   (**2024년 3월 2일 이후** 발령자는 내신 불가. 단,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5조 제9항 해당자는 1년 이상~2년 미만도 가능함. **또한,**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는 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음)
4. **청간전보 희망지역 선택 방법**
   - **일반 내신자(2년 이상 4년 이하자): 1희망지역까지만 기재하고 미발령시 유예자로 인정 (내신여부는 본인이 선택 가능)**
   - **동일교만기 내신자(4년 초과자): 반드시 내신서 제출해야 함**
     가. 4년 초과 5년 미만자: 1희망지역까지만 기재하고 미발령시 유예자로 인정
     나. 5년 이상자: 3희망지역까지 기재하되, 1·2·3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도 전보될 수 있음 반드시 전보 처리, 단, 희망지역 선택 시 현임지역 배제
     ※ 관내 내신자는 해당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세부원칙에 의함

5. **동일교육지원청 만기**, 특구역만기, TO감 내신자는 3희망지역까지 기재하되, 1·2·3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도 전보될 수 있음. 단, 희망지역 선택 시 현임지역 배제
6. 병구역 학교에 근무한 자는 병구역 학교에 다시 전보할 수 없음(단, 라급지 및 병구역 학교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 **타시도 전입자도 해당됨**
7. 전보의 우대(제14조 제1항 제6,7호)는 **현임교 근무 중 수상한 실적만 적용**함
8.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전보의 우대), 제15조(전보의 특례) 각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교감이 원본대조필하여 첨부(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내신할 경우 위장전입을 철저히 확인)
9. 동일교 재직교사(**영양교사를 제외한 2025학년도 교사정원**)의 1/3을 **초과하여**(제11조 제2항) 관내 · 외를 불문하고 내신이 불가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함
   -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 **현임교에 자녀가 재학(예정 포함)하고 있어 내신하는 교사**

■ 2025학년도 교사 정원(영양교사 제외) **50명인 학교**의 경우
1. **50×1/3=16.6이므로 16명**이 내신 가능함(소수점 아래 부분 절사)
2. 내신을 희망하는 사람이 17명인 경우
   가. 현임교 근무년수가 큰 교사 순으로 전보순위 결정하여 16명까지만 내신가능

전보순위	성명	현임교근무년수	비고
1	김00	5	
2	최00	4.6	
:	:	:	
16	이00	2.6	
17	유00	2	

   나.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 현임교에 자녀가 재학(예정 포함)하고 있고 현임교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인 교사'** 가 전보순위가 17위(유00)인 경우: **전보순위 17위까지** 내신가능
   다. **'TO감 내신자, 타시·도 전출내신자, 병구역학교 만기자, 현임교에 자녀가 재학(예정 포함)하고 있고 현임교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인 교사'** 가 전보순위가 **16위 이내**인 경우 : **전보순위 16위까지** 내신가능
   라. 비정기전보 대상(제12조): **전보순위 외**로 전보
   - 제5호(도서벽지 근무자로서 신체장애가 있는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
   - 제11호(현임교에 자녀가 재학(예정 포함) 중인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현임교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교사): 포함
   - 제13호(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외

10. 재직교사의 1/3에 해당하는 교원수 산출은 **소수점 아래 부분을 절사하여 계산함**
11. **내신자 구분(2026. 2. 28.자 기준)**
   - 일반 내신자 : 동일교 근무기간 만 4년 이하인 자
   - 동일교만기 내신자 : 동일교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한 자(1일이라도 초과하면 해당됨)
   - 동일교육지원청 만기 내신자 : 동일교육지원청 근무기간이 9년을 초과한 경우(1일이라도 초과하면 해당됨, 단,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부칙(2011. 11. 8.)에 의거함)
   - 특구역만기 내신자 : 특구역 근무기간이 9년을 초과한 자(〃)

부 칙 (2011. 11.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하성중, 하성고는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제3조 (경과조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9조, 제10조, 11조 제7항, 13조 제2항, 15조 제9항 제1호·제4호, 부칙 제4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0조 제1항 제2호(교사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의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원시(특),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특), 고양시(특)의 특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특구역 근무기간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원시(갑), 부천시(갑), 고양시(갑)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의 경합 갑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경합 갑구역 근무기간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군, 파주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용인시 등의 비경합 갑구역, 을구역 및 병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 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리시, 남양주시 구역에서 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현임교 근무기간만을 동일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기간에 합산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삭제>**
13. **<삭제>**
14.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5조(전보의 특례) 제1,2항은 갑, 을, 병구역에 근무하고 있는 부부교사 및 부부공무원이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희망할 때 "**배우자직업(10)"란에 부부교사 또는 부부공무원으로 입력한 후** 가산년수를 산출하여 합산하고, 부부교사는 G-인사이트-[내신서 작성]-[친인척사항] 탭에서 배우자 관계, 성명, 동시내신 여부(청간전보만 해당)를 반드시 기재하며 부부공무원은 "**비고(28)"란**에 배우자 성명, 소속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직장 주소지 포함))를 첨부함**(부부교사가 동시 청간내신할 경우는 가산년수 불인정)**
15. **<삭제>**

16. **학교에 TO감이 생길 경우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기준안을 작성 적용**하고 TO감으로 내신하는 경우 현임교 근무기간이 작은 교사의 내신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TO감 내신자의 경우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5조 제9항 제4호 이외 특례사항 없음)
17.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TO감"을 조정(관내이동)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TO감"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내신자와 동일하게 내신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학교 TO감"으로 기재하며, "**교육지원청 TO감**"의 경우는 반드시 제3희망지역까지 기재함(**단, "학교 TO감"은 청간전보 시 희망자에 한하여 제2, 3희망지역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1·2·3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도 전보될 수 있음에 유의**)
18. 2012학년도부터 9. 1.자 교사 인사발령시 3. 1.자 미발령교사에 대한 전보는 실시하지 않으며, 9. 1.자 인사발령은 파견복귀, 복직, 신규교사발령 등에 한하여 실시됨. 따라서 3. 1.자 미발령으로 인한 내신포기원 제도는 폐지됨(관련근거: 인사관리세부기준 제8조 제1항)
19. 초빙교사의 의무 복무기간은 4년임(초빙교사도 반드시 내신서 제출, 동일교 초빙의 경우 수기 내신서 제출하여 관내전보 처리)
20. **<삭제>**
21. **전보내신 중인 자가 파견, 휴직, 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담당부서로 필히 내신 중임을 알려야 함**
22. 제출서류에 직인, 사인(서명 아님, 도장 날인), 본인 확인 등의 누락이 없도록 할 것
23. 모든 인사서류의 정정은 G-인사이트를 통해 정정할 것(**단, 희망지역은 수정 불가**, 정정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기존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24. 휴직 중인 자는 내신이 불가하지만 **2026. 2. 28.까지 휴직인 교사는 복직 신청서류(육아, 가족돌봄, 질병휴직은 복직서류 사본)와 함께 전보 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휴직기간을 제외한 현임교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이어야 함)
교육지원청 별 내신서 마감 전 학교 → 교육지원청 복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타교복직 서류는 제출양식에 의거 개별공문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생활근거지, 부부교사, 자녀정보를 표기**해야 함
  - 복직자가 **휴직자 TO감** 등의 특기사항이 있을 시 복직서류 제출공문에 기재할 것
25. **발령교과변경 선발 확정자는 다음에 의거 전보내신하여야 함**

※ 발령교과변경 선발 확정자는 **2026. 3. 1.**자 전보내신(청간, 관내 포함)을 반드시 해야 하고 당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며, 전보내신교과는 변경된 교과(국어, 수학 등)가 됨
※ 발령교과변경 확정자로 전보내신하는 경우, 전보년수는 현임교 근무년수로 하며 희망지역은 반드시 3희망지역까지 기재하고 '발령변경 TO감'으로 처리하여 TO감 전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군배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1조(정기전보) 제5항에 의함(예:'수학'으로 발령교과변경이 확정된 교사는 '수학'교과로 청간(관내포함) 전보 내신함)
※ 금번 발령교과변경 대상자로 선발 확정되어 내신하는 교사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5조(전보의 특례) 제9항 및 제10항이 적용되지 않음
※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교과의 TO감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발령교과변경 확정교사를 당해 학교에 배치할 수 없음**
※ 발령교과변경자는 변경교과로 발령 시부터 새로운 지역근무년수를 부여함

26. 본교에 파견복귀하는 1년 이하의 파견자(연구년제, 미래과학교육원파견 등) 중에서 지역근무년수 만기자, 동일교 근무기간 5년 이상자로 유예 미승인자, TO감 교사는 반드시 전보내신해야 함
27. 2026학년도 진로전담교사 및 수석교사 선발확정대상자는 전보 내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전보내신 불가), 선발순위명부에 의거 인사발령함(2026학년도 수석교사 지원자 전보내신 가능)
28. 동일교 부부 또는 동일교 결혼예정 교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보 내신서 제출
29. 청간전보내신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음
30. 휴직, 휴직연장, 파견 등의 **결원요인 반영시점은** 2026. 1. 7.(수)까지이며, 그 이후는 반영하지 않음(기간제교사 배치)
    1) **2025년 후반기 HOLD(2025년 9월 2일~2025년 2월 28일 복직예정자)는** 2025. 11. 21.(금) **까지 복직관련서류 또는 휴직연장보고 등 제출(기 복직자 및 기 제출자는 제외)**
    2) **2026. 3. 1.자 타교복직자의 서류는 2025. 12. 19.(금)까지 제출**
    3) **2026년 3월 2일~2026년 8월 31일 타교복직예정자는 2026학년도 1학기 중 복직 1개월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복직서류 제출**
31. **2명의 영유아(7세 이하, 2018. 3. 2. 출생부터) 자녀를 둔 교사가 전보년수 가산을 원할 경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예정 진단서상 출산예정일이 2026. 2. 28.까지인 경우)를 제출해야하고,** 3명 이상의 **미혼** 자녀를 둔 교사가 전보년수 가산을 원할 경우, **미혼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가족관계증명서"와 만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제출)**
32.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정하나, 기간제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지역은 배정 인원을 최소화 할 예정임
    - 특정 지역에 정원외기간제의 편중을 막고 기간제교사를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지역별, 과목별로 고르게 배치할 예정
33. **2025. 12. 26.**자 기준으로 제12조 제1항 제1호(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제2호(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3호(감사결과 인사 조치키로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청간전보 내신서를 제출해야 함
    - 위 해당자는 3희망지역까지 기재하되 전보순위는 최하위로 하며, 배치는 **2026학년도**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2조 제4항에 의함
    - **제12조(비정기전보) 제4항 제3호의 의미는 생활근거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내 해당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배치기준 산정함**
    - **예1] 생활근거지가 송파구인 경우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인접한 교육지원청에는 배치하지 않음**
    - **예2] 생활근거지가 부평구인 경우 인천 북부교육지원청과 인접한 교육지원청에는 배치하지 않음**

3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개정(2015. 7. 31.)에 따른 전보 변경 사항**
  1) 중학교 교사가 동일교육지원청 내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관내 전보 처리
  2) 고등학교 교사가 동일교육지원청 내 중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관내 전보 처리
  3)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청간전보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청간전보 내신서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후 도교육청으로 제출
  4)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교사의 적임자 배치**
    -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배치
    -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 포함), 과학영재학교는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적임자 배치 요청 공문 송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적임자 배치 요청 공문을 취합하여 교원인사정책과로 공문 제출(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 포함), 과학영재학교 적임자로 선발된 자는 반드시 전보 내신서 제출)
    - **전보년수 2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임자 배치 요청함**

35. **교사가 그의 자녀와 동일학교에 근무(자녀 입학 예정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내신서 제출 안내**
  1)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 제11항에 의거 2026학년도에 교사가 본인의 자녀와 동일교에 근무하거나 예정인 경우(입학, 전학 등) 반드시 내신을 내야 하며,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현임교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경우도 비정기전보 대상임**
  2) **위 1)의 이유로 청간내신을 내는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2, 3희망지역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동일교 자녀 재학'이라고 기재함. 3희망지역까지 기재한 경우 1·2·3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도 전보될 수 있음**
  3) **전보내신한 교사의 학교 배치 시 자녀가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이 예상되는 경우 전보희망순위에도 불구하고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즉, 자녀 재학 및 재학예정 학교를 희망교로 선택 불가)**
  4) **전보 내신서 작성 시 '30) 자녀학교정보 목록'란에 자녀학교정보 필히 입력함(초6~고2)**
  5) **2026. 3. 1. 이후 자녀가 재학 중인 동일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2026. 9. 1.자 비정기전보 조치 예정임**
  6) **상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조치할 수 있음**

36. **제12조(비정기 전보) 제1항 제12호 초빙교사 임기 중 해지된 자는 관내에서 초빙된 경우 관내 또는 청간 전보 내신서를, 관외에서 초빙된 경우 청간 전보 내신서를 제출함. 관내 전보 내신서는 3개 학교와 그 외 희망에 체크하여야 하며, 청간 전보 내신서는 3개 지역을 기재하고 1·2·3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도 전보될 수 있음**

37. **제12조(비정기 전보) 제1항 제5호 도서벽지(무의촌지역) 근무자로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제13호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희망하는 지역 1개만 기재함**

38. **제10조(근무기간) 제3항 정기전보일 현재 58세에 달한 수석교사와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석교사와 교사는 당해 교육지원청 지역 내에서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동일교 전보의 유예는 제11조의2에 따름**

39. 제13조(전보의 제한) 제2항 '동일교 및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 만기자의 전보순위는 일반전보에 포함하여 3희망까지 받아 전보한다. 다만, 희망지역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으로 전보한다.'에서 타지역은 현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고, 전보가 불가능한 희소교과는 예외로 함

40. 제11조의2(전보의 유예) 제2항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포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전문교과는 동일교 동일교과에 당해연도 전보희망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 추가로 전보를 유예할 수 있음(단, 전보 내신서는 반드시 제출)

41. 교과순회전담교사 희망자는 청간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 의거 전보 내신서 작성, 관내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인사관리세부원칙(중등)에 의거 전보 내신서 작성함

※ 교과순회전담교사란? 교육지원청 또는 거점학교에 정원으로 배치되어 학교를 순회하며 고교학점제 교과수업만 전담하는 교사, 교육지원청 또는 거점학교 근무여부는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42. 교과순회전담교사 희망자가 관내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거점학교를 희망교로 선택함

43. 고등학교 보건관련 학과 설치교의 보건교과 수업 전담 보건교사 희망 시 '보건교과 수업 전담 보건교사 희망' 기재

3 교사 전보 내신서 작성

※ 메뉴명 : [G-인사이트] - [전보] - [(중등) 전보내신서 작성] - [청간] 또는 [관내] 개요선택

① 청간 : 다른 교육지원청의 중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② 관내 : 동일 교육지원청의 중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 동일 교육지원청의 중등학교에는 해당지역의 중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모든 공립중등학교가 해당됨.

1) 내신교과 => 자동 ([NEIS]-[인사]-[인사기록]-[기본사항] 메뉴의 [근무사항] 탭 오른쪽 맨 아래 "정원(임용)과목"부분)

※ 전문교과는 후임교과가 통합교과명이 아닌 경우,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정원교과]에서 통합교과명으로 수정하여 제출

2) 학교전화 => [전화번호변경] 버튼 클릭 후, "학교전화" 부분 등록(학교 대표번호 입력)

3) 본인전화 => [전화번호변경] 버튼 클릭 후, "휴대전화" 부분 등록

4) 전보구분 => 자동 ([G-인사이트] - [전보] - [(중등) 전보내신서 작성] - [청간] 또는 [관내] 개요선택에 따라 "청간"/"관내"로 표시)

5) 성명, 6) 성별, 7) 현임교 => 자동

8) 특구역근무 => 자동

※ 현임교 인사구역이 특구역일 경우에만 해당, 현임교와 전임교가 특구역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됨 (휴직기간은 자동으로 제외됨)

9) 내신구분 : 정확하게 기입(**2026. 2. 28. 기준**)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 "내신구분" 부분

① 일반 : ③, ⑤, ⑦, ⑨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인사구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예: 수원 → 용인)

② 일반우대 :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 우대조항에 해당하면서 다른 인사구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③ 동일교 만기 : 현임교 근무년수가 4년(단, 특만, 구역만은 제외)을 초과할 경우

④ 동일교 만기우대: ③에 해당하면서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 우대조항에 해당

⑤ 동일 교육지원청 만기 : 동일 교육지원청 근무년수가 9년을 초과할 경우

⑥ 동일 교육지원청 만기우대: ⑤에 해당하면서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 우대조항에 해당

⑦ 특지 구역만기 : 현임교 인사구역이 특구역이고, 특구역 근무년수가 9년을 초과한 경우('특구역 만기'일 경우에만 선택, 동일 교육지원청 만기는 '동일 교육지원청 만기' 선택)

⑧ 특지 구역만기우대: ⑦에 해당하면서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 우대조항에 해당

⑨ 비정기 :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2조 비정기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⑩ 비정기우대: ⑨에 해당하면서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 우대조항에 해당

⑪ 관내 : 동일교육지원청 인사구역 내에서 전보를 희망할 경우

[G-인사이트] - [전보] - [(중등) 전보내신서 작성] - [관내] 개요선택

※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1항각호 우대의 경우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의 “내신사유”에서 우대사유 및 증빙자료 입력(제14조1항1호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음)
※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2조1항5호,13호,, 제15조9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의 “내신사유”에서 해당하는 사유 및 증빙자료 입력(제15조9항1호, 제15조9항4호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음)

10) 배우자 직업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 "배우자직업" 부분
- 배우자 직업이 '부부교원(교육전문직원 및 사립학교 포함)', '부부공무원'일 경우만 기재 (가산년수 부여 혜택을 받거나, 부부교사가 동일 인사구역으로 내신 또는 부부 동시내신일 경우는 반드시 기재)

① 부부교원은 [친인척사항]-[교원친인척 목록]에 관계, 성명, 동시내신여부 체크하면 26)번 ‘부부교사(교원)’란에 기재됨

※ 친인척 상피를 위하여 교원친인척이 있는 경우 행추가 후 반드시 기재

② 부부공무원은 가산년수 부여 혜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

11) TO감 내신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TO감” 해당있음 체크
TO감 내신자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체크하고 해당이 없을 때에는 체크하지 않음
- [청간] TO감 : **교육지원청** 교원조직표상 증감란에 "+"로 표시된 교과의 해당 전보대상자인 경우
- [관내] TO감 : **학교 TO감** 전보대상자인 경우

12) 주민등록번호 : 자동

13) 근무성적 : 내신자가 입력하지 않음. 근무성적(평어)을 정확하게 기입(**교감이 관리**하고 **보안유지 철저**)
⇒ 학교관리자 [전보처리관리(학교)]-[내신서 절차도]-[근무성적관리]
⇒ **내신서 출력물에 교감이 수기 기재 후 제출**

14) 후임교과 : 자동([NEIS]-[인사]-[인사기록]-[기본사항] 메뉴의 [근무사항] 탭 오른쪽 맨 아래 “정원(임용)과목”부분)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TO감" 해당있음 체크 시 후임교과 부분은 자동으로 공백 처리됨
※ 전문교과는 후임교과가 통합교과명이 아닌 경우, [기본사항]-[정원교과]에서 통합교과명으로 수정하여 제출

15) 소지자격 : 자동 (내신교과의 소지자격 중 최상위 자격)
⇒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소지자격1]에서 정정
유의) 복수전공자의 경우 임용과목은 "소지자격1"에 다른 과목은 "소지자격2"에 입력됨

16) 전보희망지역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희망지관리] 에서 등록
○ 1희망지역 : 전보 희망지역을 시·군을 참고하여 기입(**희망지역 정정 불가**)
○ 2희망지역, 3희망지역은 해당자만 기입
○ 현임교 근무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제1희망지역만을 기재**
○ 동일교만기, **동일교육지원청만기**, 특구역만기, TO감 해당자는 제3희망지역까지 기재하되, **희망지역 세 곳 중 한 곳은 가급적 경합이 되지 않는 곳**을 기재(병구역 학교가 있는 김포, 파주, 연천 구역은 2개 구역만 희망하여야 함)

17) 전보년수 : 자동(NEIS 인사기록의 경력사항이 연동되어 현임교 근무년수와 가산년수를 합산하고 **휴직, 정직, 파견, 직위해제, 교원 근무시간 면제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됨)
17)전보년수 = 18)현임교근무 + 19)총가산년수

18) 현임교 근무 : 자동**[직접 확인 바람]** ⇒ **파견, 휴직, 정직, 직위해제, 교원 근무시간 면제 등 기간 제외하고, 전보유예인 경우 전보년수 산정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임교 근무년수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휴직, 타교 복직대상자가 본교로 다시 복직한 경우 등)는 [근무년수]-[근무경력 목록]에서 정정

19) 총가산년수(년, 월) : 자동(20)환산 + 21)TO감)**[직접 확인 바람]**

20) 환산(년, 월) : 자동(29)가산년수내역에서 환산된 가산년수)**[직접 확인 바람]**

※ 29)가산년수내역에서 가산비율 합계를 계산하여 100% 초과시는 초과년수의 1/2만 가산하여 가산년수를 합산함(예: "부부교사"이면서 "을구역"에 근무하는 경우 부부교사와 을구역 가산년수가 각각 70%와 50%이므로 비율합계는 120%이며, 이 경우 가산년수 100%를 20%로 초과하였고 초과비율의 1/2인 10%만 인정하므로 적용비율은 110%이고, 환산년수 계산은 월 이하의 소수점 절사하여 기재)

21) TO감(년, 월) : 현임교 근무 2년 이내이면서 전임교 TO감으로 1희망지역으로 전보되지 못하여 전보를 희망할 경우 4년 이내의 전임교 근무년수(도교육청 확인)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전임교 경력 사용]에서 “해당있음” 체크

22) 현임교 휴직년수 : 자동(출력물과 실제 휴직기간 등이 다를 경우 [근무년수]-[근무경력 목록]에서 정정) **[본인 확인 바람]**

23) 현임청 근무년수 : 자동

⇒ NEIS에 입력된 경력을 자동 계산하여 조회되나, 경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근무년수]-[근무경력 목록]에서 직접 수정하여 저장함

24) 생활근거지 : 자동([NEIS 기본 메뉴- 인사- 인사기록- 기본사항] 메뉴의 [개인신상] 탭에서 "생활근거지" 부분 수정)기본 메뉴- 인사- 인사기록- 기본사항] 메뉴의 [개인신상] 탭에서 "생활근거지" 부분 수정) 가능, 예 : 수원시 팔달구, 이천시 장호원읍)

25) 현임청 근무경력 : 자동(전임교들의 학교명이 바뀐 경우 전임교명 및 근무기간 확인)

⇒ 현임청 초빙 기간 전체 [근무년수]-[근무경력 목록]에서 해당 경력 “제외”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과천, 부천, 고양, 광명, 군포의왕은 미해당

⇒ 현임교에서 휴직 경력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 자동으로 나옴(파견, 직위해제, 정직기간도 자동 처리되게 프로그램 수정)

유의) 복직발령이 나지 않은 자가 전보 내신서를 작성할 경우, 현임교 휴직을 **2026. 2. 28.** 까지로 휴직처리 되므로 **2026. 3. 1.** 이전에 복직하는 자는 [근무년수]-[근무경력 목록]에서 행추가 후 해당내용 입력

⇒ 본교 복직자만 해당

26) 부부교사(교원) : [친인척사항]-[교원친인척목록]

※ 10) 배우자직업을 기입한 경우만 해당

※ 부부교원(사립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반드시** 입력

※ 경기도내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산점 해당자는** [친인척사항]-[공무원친인척목록]에 배우자, 성명, 소속 기입 후 **"28)비고"란에 기재**

27) 현임교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자동(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 [가산년수]-[업무가산 목록]에서 확인

28) 비고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 "비고" 부분에 다음 사항들 중 해당사항 기입

○ 현임교육지원청 초빙교 및 기간 전체(예: 초빙 ○○고 2018.3.1.~2022.2.28. △△중 2022.3.1.~2026.2.28.)

○ 특목고 및 과학영재고 3년 이상 근무자 근무년수(예: **특목** ○○고 2021.3.1. ~ 2026.2.28.)

○ **"학교TO감"** 인 경우 기재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내신을 내는 경우 '동일교 자녀 재학' 기재**

※ 10)배우자직업에 '부부공무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 '배우자이름 소속' 기재(예, 홍길동 ○○시 △△주민센터)

○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내신을 희망하는 경우 '교과순회전담교사 희망' 기재**

○ **고등학교 보건관련 학과 설치교의 보건교과 수업 전담 보건교사로 내신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교과 수업 전담 보건교사 희망' 기재**

○ 기타 기재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자동(우대자의 경우 우대조항 등, 예, 14-1-2)

29) 가산년수내역 : [가산년수] 탭 클릭 후, 등록

※ 내신구분이 '청간'인 경우만 해당('관내'인 경우 교육지원청 소속교사 가산점 입력가능)

※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의 가산받는 해당자만 기재

○ 지역가산 목록: 자동

○ 업무가산 목록: 자동 또는 수동 기입

- "가산항목" 부분에서 해당되는 가산사유 및 증빙자료 입력

○ 기타가산 목록: 수동 기입

- "가산항목" 부분에서 해당되는 가산사유 및 증빙자료 입력

유의) 인사세부관리기준 제15조(전보의 특례) ③ 1.평가관리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현임교에서 2회 이상 받은 자, 7.청소년단체활동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현임교에서 2회 이상 받은 자 ⇒ [가산항목]에서 표창 부분 등록 시, 2개 모두 선택하여 등록한다.

30) 특이사항

○ **초빙교사/전입요청/특목요청**: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에서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 해당 학교명 기재

○ **타시 · 도내신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에서 **"타시도내신기관명" 부분기재(예 : 서울, 부산 등)**

– 경기도 청간내신과 타시 · 도내신을 동시에 희망할 경우 해당
(타시 · 도내신자 전보 내신서는 별도로 추가 작성해야 함)

– 타시 · 도 기관명(예 : 서울, 부산) 기재

○ 제15조 제9항 제1호 : **현임교 1년 이상~2년 미만** 근무자 중,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근무 희망교사, **관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근무 희망교사

○ 발령변경 TO감 : 발령교과변경 확정자인 경우만 해당.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에서 "발령변경 TO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함>

– 후임이 필요한 경우 :「후임필요」선택, 후임교과 입력 후 저장

– 후임이 불필요한 경우 :「후임불필요」선택 후 저장

○ **자녀학교정보 [기본사항]-[자녀학교정보 목록]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반드시 모두 기록)**

– 초등학교 6학년(학교명 성명): OO초 김자율

– 중학교 1, 2학년(학교명): OO중

– 중학교 3학년(학교명 성명): OO중 이균형, OO중 박미래(2명인 경우)

– 고등학교 1, 2학년(학교명): OO고

※ 발령교과 변경 확정자 유의사항

<예시 : [정보·컴퓨터] 교사가 [수학]으로 발령교과 변경 확정된 경우>

•1) 내신교과 : 현임교 발령교과(정보·컴퓨터)가 자동으로 나오므로,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에서 "정원교과"를 변경 발령교과(수학) 기재
15) 소지자격 : [기본사항]-[전보기본사항] "소지자격1"에서 변경 발령교과의 소지자격(수학)을 선택
16) 전보희망지역 : 반드시 1,2,3희망지역 모두 등록
30) 특이사항 : 발령변경TO감 부분에서 후임이 필요한 경우는 '후임필요' 선택 후, 후임교과(정보·컴퓨터) 입력, 후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후임불필요' 선택

4 교사 전보내신자 명부 작성

※ 메뉴명 : 학교관리자(교감) ⇒ [전보처리관리(학교)]-[내신서절차도]-[내신서제출현황]
교육지원청관리자(장학사) ⇒ [전보처리관리(교육지원청)]-[내신서절차도]-[내신서제출현황]

가. [청간] 또는 [관내] 전보내신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개요 선택 후 내신구분별로 명부 작성됨
나. 근무성적(평어)를 교감 및 담당 장학사가 직접 입력
[전보처리관리(학교/교육지원청)]-[내신서절차도]-[근무성적관리]
다. 전보내신서 명부 파일 제출시 [청간/관내] 각각 다운로드
라. 청간 전보내신자 명부의 경우 다운로드한 파일 및 출력, 출력물-날인하여 제출
마. 관내 전보내신자 명부의 경우 다운로드한 파일만 제출

5 동일교만기 교사 전보 내신서 작성

※ 동일교만기 전보자 : 2026. 2. 28.자 기준 동일교 근무기간 4년을 초과한 자를 말함

1. 동일교만기 전보자를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전보할 수 있으면 도교육청으로 내신하지 않음
2. 동일교만기자 중 4년 초과 5년 미만인 자는 제1희망지역만 기재하고, 5년 이상인 자는 3희망지역까지 기재하되, 3지역 중 1지역은 가급적 경합이 되지 않는 곳을 기재하고 병구역 가산점이 있는 지역(김포, 파주, 연천)은 2곳까지만 기재할 수 있음.(단, 희망지역 선택 시 현임지역 배제)
3. 전보유예 승인 시 유의사항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만 승인
   - 전보유예는 학교장의 요청과 본인의 동의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내부결재)
   - 전보유예 승인자 외 동일교 4년 초과자는 전보 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예승인은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1조의2에 의거 실시
   -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최대 5년까지 인정
   - 학교관리자(교감) ⇒ [전보처리관리(학교)]-[유예승인자관리]에서 전보유예 승인자의 명단을 작성, 저장, 내신서 제출하면 교육지원청 시스템 자동 연계
   [전보처리관리(학교)]-[기관별 교원현황]에서 내신서 제출여부와 교차검토

- 교육지원청관리자(장학사) ⇒ [전보처리관리(교육지원청)]-[유예승인자관리]에서 관내 학교 명단 확인 가능, 도교육청으로 내신서 제출하면 도교육청 시스템 자동 연계
  [전보처리관리(교육지원청)]-[기관별 교원현황]에서 내신서 제출여부와 교차검토
- 교육지원청: 전보유예 승인자 명단을 다운로드한 파일의 전체 내용 복사하여 '중등학교 유예 승인자 명단' 파일(별도 제공 예정)에 값만 붙여넣기 후 저장 후 출력물과 엑셀파일 제출

6 특구역만기 및 동일교육지원청만기 교사 전보 내신서 작성

※ 특구역 근무기간 또는 **동일 교육지원청** 근무기간이 9년을 초과한 자는 반드시 전보 내신서를 제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1. 일반 기재사항은 일반전보 내신에 준함
2. 특구역에서 연속 근무하여 특지만기가 된 경우 현임교와 전임교를 기재하고 특지근무 통산 년수를 "8)특구역 근무"란에 기재함
3. 전보희망지역은 3희망까지 기재함. 단, 희망지역 선택 시 현임지역 배제
4. 특지만기의 경우도 현임교 근무년수를 전보년수로 기재함.

※ 2026. 3. 1.자 전보 가산년수 자료

구분	내 용	가산년수	조-항-호
지역	병구역 나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4
	병구역 다, 라	현임교 근무년수 70%	15-4
	을구역	현임교 근무년수 50%	15-4
	갑구역(비경합)	현임교 근무년수 30%	15-4
업무	「경기새울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수석교사와 교사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3-6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담당	담당년수의 50%	15-12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및 특수교육순회교사	현임지 근무년수 100%	15-13
	신설학교에 개교 이후 2년이내 전입자 중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승진평정 가산점 부여 학교, 병구역은 제외)	현임교 근무년수 50%	15-14
	『학교경영 우수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이상 근무한 교사	지정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100% <2017.3.1.자 이전 해당>	(구)15-3-5
	『학교경영 우수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지정기간 동안 근무년수의 50% <2017.3.1.자 이후 해당>	15-15
기타	부부교원(교육전문직 포함) (갑,을,병구역 적용, 특구역 제외)	현임교 근무년수 70%	15-1
	부부공무원(갑,을,병구역)	현임교 근무년수 50%	15-2
	2명의 영유아(7세 이하) 자녀 또는 3명 이상의 미혼 자녀를 둔 수석교사, 교사	현임교 근무년수 50%	15-6
	학교운동부연구상 금상 수상자(현임교에서 수상)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5
	학교운동부연구상 은상 수상자(현임교에서 수상)	현임교 근무년수 70%	15-5
	학교운동부연구상 동상 수상자(현임교에서 수상)	현임교 근무년수 50%	15-5
	기능지도연구상 금상 수상자(현임교에서 수상)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7
	기능지도연구상 은상 수상자(현임교에서 수상)	현임교 근무년수 70%	15-7
	기능지도연구상 동상 수상자(현임교에서 수상)	현임교 근무년수 50%	15-7
	평가관리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현임교에서 2회 이상 받은 자(2023.2.28.자 실적까지만 인정함)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3-1
	학생생활지도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3-3
	청소년단체활동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자	현임교 근무년수 100%	15-3-7

※ 본 가산년수는 청간전보에 한하여 적용함(관련 :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6조 제3항)

※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른 전보 및 가산년수 부여 증빙 서류 안내

- 발급받는 증빙서류는 최신서류이어야 함(1개월 이내 발급)
- 증빙서류 교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G-인사이트 에 업로드

조항	증빙서류	비고
제12조 1항 5호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등)	
제12조 1항 13호	- 전보 내신서 제출 시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임신확정 진단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 2026. 3. 1.기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14조 1항 1호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전보 내신서
제14조 1항 2호	-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 독립유공자(유족) 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관련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된 국가보훈처의 증명서
제14조 1항 3호	- 순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4조 1항 4호	- 주민등록등본	전보희망시군에 2025. 3. 1.자 부양부모 포함 가족의 주민등록 기재, 실제 거주
제14조 1항 6호	- 상장 사본	
제14조 1항 7호	- 상장 사본	
제14조 1항 8호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제15조 1항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재직(경력)증명서(배우자)	
제15조 2항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재직(경력)증명서(배우자)	
제15조 3항 1호	- 표창장 사본(2개)	표창장 수여 부서에서 제공하는 명단 대조 후 인정
제15조 3항 3호	- 표창장 사본	
제15조 3항 7호	- 표창장 사본(2개)	
제15조 4항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전보 내신서
제15조 5항	- 상장 사본	표창장 수여 부서에서 제공하는 명단 대조 후 인정
제15조 6항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19세 이상 자녀) 영유아 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확정 진단서 또는 출산 예정증명서)	
제15조 7항	- 상장 사본	표창장 수여 부서에서 제공하는 명단 대조 후 인정
제15조 9항 1호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전보 내신서
제15조 9항 2호	- 병원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제15조 9항 3호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예정: 청첩장)	타시도전입자(전보 내신서)
제15조 9항 4호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전보 내신서
제15조 12항	- 담당교사 경력증명서	
제15조 13항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전보 내신서
제15조 14항	- 별도 증빙 서류 없음	전보 내신서
제15조 15항	- 근무년수 확인 증빙서류	지정 학교 공문 사본 등

※ 위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보내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전보 가산년수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청간 전보시에만 적용함)

※2026. 3. 1. 자 전보 제출서류

중등학교 교사 전보 내신서

1) 내신교과	수학	2) 학교전화	031-000-0000	3) 본인전화	010-0000-0000	개인번호	J101000000	4) 청간

5) 성명	6) 성별	7) 현임교 시.군	학 교 명	인사구역	8) 특구역 근 무	9) 내신구분	10) 배우자직업	11) TO감내신
홍길동	남	경기 시흥	OO고등학교	갑구역(비경합)	0 년 0 월	일반	부부교원	TO감

12) 주민등록번호	13) 근무성적	14) 후임교과	15) 소지자격	16) 희망지역	1희망지역	2희망지역	3희망지역	24) 생활근거지
700000-1******					경기 성남			수원시 영통구

17) 전보 년수	5 년 0 월	18) 현임교 근무	2024-03-01 부터 2026-02-28 까지	2 년 0 월	22) 현임교 휴직년수	0 년 6 월	23) 현임청 근무년수	8 년 6 월

19) 총 가산 년수	3 년 0 월	20) 환산	3 년 0 월	TO 감	21) 0 년 0 월	27) 현임교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혁신학교	
						자공고	2022-03-01 ~ 2027-02-28

26) 부부교사	학교명	OO중학교	성명	OOO	동시내신여부	아니오

28) 비고	

25) 현임청 근무경력

학교명	구분	기간	년월
OO고등학교	근무	2024-03-01 ~ 2026-02-28	2년0월
OO고등학교	근무	2021-09-01 ~ 2024-02-29	2년6월
OO고등학교	제외	2021-03-01 ~ 2021-08-31	0년6월
OO고등학교	근무	2017-03-01 ~2021-02-28	4년0월

29) 가산년수내역		30) 특 이 사 항	
해당 조항	비율(%)	항 목	내 용
자율형 공립고	50.00	초빙	OO중학교
부부교원	70.00	전입	
영유아 자녀	50.00	특목	
갑구역(비경합)	30.00	타시도내신	
		15조9항1호	예: 아니오:
		발령변경TO감	
합 계	150.00	자녀학교정보	OO초 홍OO, OO고

관내 희망학교명				그외희망	

위와 같이 전보 내신 합니다

학교장: 직인 사인

본인확인: (인)

간동고등학교/20160801141916/10.200.90.149/최효정

(양식2) 중등학교 수석교사 및 교사 전보유예 승인자 명단

확인자 : 교장 (인)

작성자 : 교감 (인)

연번	지역	학교명	교 과	인사구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지자격	현임교		휴직(파견) 년수	근무성적	유예규정	유예사유	비고
									발령일자	근무년수					
1	수원	학교명은 정식 명칭기재 (예 : OO고등학교)	물리	특	홍길동	남	1971.02.05.	중등1정	2020.03.01.	5년0월	1년0월		제11조의2 제1항제3호		휴직기간 2022.03.01. -2023.02.28.
2													제11조의2 제2항		
3															
4															
5															

※ 1. 유예사유 : 전보유예를 해야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2. 비고란 기재 : 현임교 휴직 또는 파견기간
3.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보유예 대상자는 전보내신서를 작성·제출해야함

(양식3) OO교육지원청 TO감 내신자(수석교사 및 교사) 명단

확인자 : 과장 (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교감) (인)

연번	지역명	학교명	인사구역	교 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지자격	현임교		휴직(파견) 년수	TO감 사유	비고
									발령일자	근무년수			
1	수원	OO중학교 (학교 정식 명칭 기재)	특	물리	홍길동	남	1971.02.05.	중등1정	2021.03.01.	4년6월	6월	학급 감소, 교과 조절 등	휴직기간 2023.03.01. -2023.08.31.
2													
3													
4													
5													

Ⅲ 2026. 3. 1. 교사 인사 발령 관련 행정사항(중등)

인사서류 제출 시 공립 중등학교는 아래 양식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교육청으로 제출

기관명	○○교육지원청(○○학교)
작성자	교 감 (장학사)
	○ ○ ○ (인)

1. 실기교사 파악

소속	실기종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력	타자격취득진행여부

2. 2026. 2. 28.자 정년퇴직 교사 현황(생년월일이 1963. 9. 1. ~ 1964. 2. 29.)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교과	후임교과

3. 휴직 복직 예정자 파악

가. 2026. 3. 1.자 타교 복직예정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휴직사유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생활 근거지	부부 교원	자녀 정보	비고
예)국어	*00고*	*이순신*	*동반휴직*	2023. 3. 11	2026. 2. 28	*수원시 팔달구*	*00중 김사임*	*00초 이길동*	*1년 동반휴직 연장예정*
									실제복직

나. 2026. 3. 2. ~ 2026. 8. 31. 중 타교 복직예정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휴직사유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생활 근거지	부부 교원	자녀 정보	비고

※ 휴직자 중 **2026년 3월 1일자, 2026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타학교로 복직예정인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양식에 의거 **별지로 인사서류와 같이 제출**

※ 타교 복직 대상자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유학, 동반, 고용, 연수, 병역 휴직자

※ 동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조기복직 예정자 및 생활근거지(본인 확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

※ **[비고]에는 복직 후 예정사항 필수 기입** (예1) 실제 복직, (예2) 1년 동반휴직 연장 예정

4. 파견복귀 예정자 파악

가. 2026. 3. 1.자 타교 파견복귀 예정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파견기관	파견일	종료일	생활 근거지	부부 교원	자녀 정보	비고

나. 2026. 3. 2. ~ 2026. 8. 31. 중 타교 파견복귀 예정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파견기관	파견일	종료일	생활 근거지	부부 교원	자녀 정보	비고

※ 파견자 중 **2026년 3월 1일자, 2026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타교로 복귀 예정인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양식에 의거 **별지로 인사서류와 같이 제출**
※ 타교 복귀 대상자 :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수파견자(4호 파견) 또는 재외교육기관 파견자
※ **2011.3.1.부터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자는 본교 복귀 처리됨**
※ 동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조기복귀 예정자 및 생활근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
※ **[비고]에는 복귀 후 예정사항 필수 기입** (예1) 실제 복귀, (예2) 1년 육아휴직 예정

5. 2026학년도 진로전담교사 발령예정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진로진학상담 자격증 유무	생활근거지	TO감여부 (O,X)	비고
예)수학	*OO고*	*OOO*	*71.06.27.*	*유*	*성남시 수정구*	*X*	

6. 2026학년도 수석교사 발령예정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선발확정권역	생활근거지	TO감여부 (O,X)	비고
예)국어	*OO고*	*OOO*	*71.06.27.*		*고양시 덕양구*	*X*	

7. 2026학년도 교과순회전담교사 지원자 명단

교과	소속	성명	생년월일	희망청/거점학교	관내/청간	TO감여부 (O,X)	비고
예)교과순회 전담교사 (중국어)	*OO고*	*OOO*	*71.06.27.*	*여주교육지원청*	*청간*	*X*	

※ 교과순회전담교사란?
교육지원청 또는 거점학교에 정원으로 배치되어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고교학점제 교과수업만 전담하는 교사, 교육지원청 또는 거점학교 근무여부는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의함

8. 특이사유 교원 명단(인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소속	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유	비고

※ 사유란 기재사항 : 병약자 등

Ⅳ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내신서 작성

공통사항(교장, 교감)

1.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제출

가. 제출 일시 및 방법 : 2025. 12. 3.(수)까지 K-에듀파인 제출,
2025. 12. 4.(목) ~ 12. 9.(화) 인편 제출

※ 학교 → 교육지원청 제출: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함.
(특수학교는 도교육청(교원인사정책과)로 직접 제출)

※ 교육지원청별 인사서류 접수는 수능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추진 바람

나. 인편 제출 일시 및 장소

제출 일시			제출 장소 및 해당 지원청		비고
			남부청사	북부청사	
12. 4.(목)	오전	9시 30분	군포의왕	의정부	세부 접수장소 추후 별도안내
		10시 45분	여주	동두천양주	
	오후	1시 30분	평택	가평, 연천	
		2시 45분	양평	김포	
12. 5.(금)	오전	9시 30분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10시 45분	안성, 이천	파주	
	오후	1시 30분	광명	고양, 포천	
		2시 45분	광주하남		
12. 8.(월)	오전	9시 30분	성남		
		10시 45분	부천		
	오후	1시 30분	화성오산		
		2시 45분	수원		
12. 9.(화)	오전	9시 30분	안산, 시흥		
		10시 45분	용인		
	오후	1시 30분	교육지원청		

2. 각종 제출 서류 서식은 [붙임] 자료를 이용할 것
3. 교육지원청에서 파일과 서류를 취합하여 도교육청으로 제출할 것

가. **교장** 전보내신서(관내 및 청간 모두)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나. **교감** 전보내신서

- 관내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관내전보 희망자 중**
  '동일교만기자, 전보유예 희망자의 전보내신서'는 **사본**만 도교육청으로 제출)
- 청간 : 학교 → 교육지원청(취합) ➡ 도교육청

4. 표지 공문 등 모든 자료는 K-에듀파인(비공개 5, 6호)으로 제출함
   단, 날인이 들어간 [붙임] 자료는 인편으로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음**
   ※ **제출 기한을 넘긴 전보내신서는 받지 않음. 또한, 제출 후 희망지 변경은 절대 불가함**

유의사항

1. 교장, 교감 전보는 3.1자, 9.1자를 기준으로 연 2회 내신함
2. 전보유예 신청자도 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가산년수를 인정하는 경우
   - 청간내신일 경우만 해당**(관내내신자는 가산년수 인정하지 않음)**
   - '학교표창'만 인정**(상장은 인정되지 않음)**
   -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년에 1개만 인정
   - 가산년수 증빙서류 제출방법 :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함
     (예: 2024년 00지도 우수교, 2025년 00지도 우수교 등)
4. 전보내신서 작성요령
   - 특구역만기자는 특구역 연속근무 통산년수를 특구역 근무년수란에 기재함
   - 전보희망지
     - 일반내신자는 제1희망지만 선택(제2희망지는 "희망하지 않음" 선택)
     - **일반내신자 중 반드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2희망지도 선택하여야 함**
     - **동일교만기자는 반드시 제2희망지도 선택하여야 함**
   - 전보사유 : 콤보박스에서 선택함
   - 전보내신서 및 명부 작성 한셀 파일은 K-에듀파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내신서 및 명부 출력물은 날인하여 **인편**으로도 제출하여야 함
   - **관내내신자와 현임교 근무 2년 미만인 자는 가산년수를 적용하지 않음**
5. 교장, 교감 퇴직(임기만료)예정자 현황
   - 퇴직(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임기만료 예정자는 (서식3_1, 3_2)의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제출(인편제출)

1 교장 전보

1. 제출 대상

- 2026. 2. 28. 기준 현임교 근무경력 2.00년 이상인 자로서 전보 희망자
- 2025. 9. 1.자 전보내신자 중 미발령된 교장도 전보를 희망할 경우 내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2026. 2. 28. 기준 **동일교만기자(4.06년 초과), 지역만기자, 유예희망자 전원 제출**
- 동일교만기자 중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도 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함(「유예원」제출)
  - 「유예원」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교장** 전보내신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전보유예신청"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함(콤보박스에서 선택함)
- 2026. 2. 28. 기준 정년퇴직 또는 교장중임 임기만료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전보를 희망할 수 없으며, 동일교 만기 시 「유예원」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전보내신서(서식1)
- 청간내신자인 경우 가산년수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
- 퇴직(임기만료) 예정자 현황(서식3_2) ("해당없음"도 인편제출)
- 전보내신서 제출자의 상피제 반영 자료(서식4)(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경영 우수실적 평가서(서식5)(중등만 해당)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_1)(교육지원청 취합용)
- 전보내신자 현황(상피제 반영 자료 포함)(서식7_1)(교육지원청 작성용)
- 관내 전보 교육장 의견서(서식8)

파일(K-에듀파인) 및 **출력물**(날인) 모두 제출	서식1, 서식2, 서식2_1, 서식3_1, 서식5, 서식8
파일(K-에듀파인)만 제출	서식4(학교→교육지원청), 서식7_1(교육지원청→도교육청)

3. 기타 유의사항

가. 임지 지정은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임자를 배정하고 **관내 전보자에게 임지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음**

나. **학교경영 연계를 고려하여 동일교의 교장, 교감이 동시에 내신하지 않도록 할 것 (동시에 전보내신서 제출 시 반려 조치함)**

다. 학교경영 실적

– 작성대상: **중등교장 전보자 및 교장 전보유예 신청자**
(단, 징계에 의한 전보자는 작성하지 않음)

– 현임교에서의 학교경영 실적을 (서식5)의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라. 교육지원청에서는 2026.3.1.자 **교장 관내 전보 교육장 의견서(서식8)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장 의견서'는 학교 발송 절대 금지)

4. 제출 방법: K-에듀파인 및 인편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특수학교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2 교감 전보

1. 제출 대상

- 2026. 2. 28. 기준 현임교 근무경력 2.00년 이상인 자로 전보 희망자
- 2025. 9. 1.자 전보내신자 중 미발령된 교감도 전보를 희망할 경우 내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2026. 2. 28. 기준 <u>동일교만기자(4.06년 초과), 지역만기자, 유예희망자 전원 제출</u>
- 동일교만기자 중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도 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함(「유예원」제출)
  – 「유예원」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교감** 전보내신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전보유예신청" 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함(콤보박스에서 선택함)
- 2026.2.28. 기준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전보를 희망할 수 없으며, 동일교만기 시 「유예원」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전보내신서(서식1)
- 청간내신자인 경우 가산년수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
- 퇴직(임기만료) 예정자 현황(서식3_2) ("해당없음"도 인편제출)
- 전보내신서 제출자의 상피제 반영 자료(서식4)(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_1)(교육지원청 취합용)
- 전보내신자 현황(상피제 반영 자료 포함)(서식7_2)(교육지원청 작성용)

파일(K-에듀파인) 및 **출력물**(날인) 모두 제출	서식1, 서식2, 서식2_1, 서식3_2
파일(K-에듀파인)만 제출	서식4(학교→교육지원청), 서식7_2(교육지원청→도교육청)

3. 기타 유의사항

가. 임지 지정 시 관내 전보자에게 임지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음

나. 학교경영 연계를 고려하여 동일교의 교장, 교감이 동시에 내신하지 않도록 할 것
(동시에 전보내신서 제출 시 반려 조치함)

다. 관내전보 희망 시, 도교육청에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음
(관내전보 희망자 중 동일교만기자, 유예희망자는 도교육청에 전보내신서 사본 제출)

4. 제출 방법: K-에듀파인 및 인편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특수학교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3 중등교감승진 우선임용 희망서

1. 제출 대상

- 2025. 3. 31.자 교감승진순위명부 등재자 중 희망자만 제출

2. 제출 서류

- (서식6) '교감 승진 우선임용 희망서(교육적 필요 지정지역)'[파일 및 출력물(날인)]
- 기재 방법 : (서식6)에 본인 날인 및 학교 직인 필(必)

– 연천만 희망할 경우

임용일	소속	직급	성명	희망지역	
				1희망	2희망
2026. 3. 1.	□□중학교	교사	○○○	연천	

– 포천만 희망할 경우

임용일	소속	직급	성명	희망지역	
				1희망	2희망
2026. 3. 1.	□□중학교	교사	○○○	포천	

– 연천 1순위, 포천 2순위로 희망할 경우

임용일	소속	직급	성명	희망지역	
				1희망	2희망
2026. 3. 1.	□□중학교	교사	○○○	연천	포천

– 포천 1순위, 연천 2순위로 희망할 경우

임용일	소속	직급	성명	희망지역	
				1희망	2희망
2026. 3. 1.	□□중학교	교사	○○○	포천	연천

3. **제출 방법**: K-에듀파인 및 인편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4. **교감 승진 우선임용 방법**

• 근거: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장제5조제4항제3호

경기도교육청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장 **제5조(승진)**

④ 교감으로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3. **교육적 필요에 의해 지정한 지역(연천, 포천 등)에 교감전보 희망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교감승진 임용을 희망한 자**

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정기전보에 한함

나. **발령교에 교감으로 4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 **각 해당지역에 제3호에 의거 승진임용된 교감은 80% 미만에 한함**

• 방법

– 교육적 필요 지정지역(연천, 포천)에 ㉠교감결원이 발생하고 ㉡교감전보 희망자가 없을 시 ㉢교감승진순위명부 3배수 이내의 희망자 중 선순위자를 교감승진 우선 임용할 수 있음.

– 각 해당지역에 '중등교감 승진 우선임용'된 교감은 80% 미만에 한함(2026. 3. 1. 기준)

– 2026. 3. 1.자에만 해당 요건이 맞을 경우 활용함(그 외 인사상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지 않음)

4 교육전문직원 전직(전보): 별도 안내

V 각종 자료 받기(중등)

1 교원용

가. 방법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교원인사정책과 / 과자료실]**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및 평정업무처리요령(중등)

나. 방법2: **[경기교육통합메신저]**(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음

○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용 근평 프로그램(교사·교감용)**

- 2025다면평가(교육지원청용).xlsm
- 2025근평합산출력(교육지원청용_3명이상).xlsm
- 2025근평프로그램(학교 및 교육지원청_2명이하).xlsm

2 교육전문직원용

○ 방법: K-에듀파인 공문으로 별도 안내

VI 제출 서류

1 중등교원 정원

1. 제출 방법: G-인사이트 입력, 첨부 후 결재(전송)
2. 제출 일시: 2025. 12. 8.(월)까지 결재(전송)
3. 제출 서류(G-인사이트 입력, 첨부)
   · 2026학년도 교육과정편제 및 단위시간 배당표
   · 2026학년도 순회교사 운영계획
   · 2026학년도 중 · 고등학교 학급편성 예정표
   · 2026학년도 중등학교 교과별 교원조직 예정표
   · 중등 전문상담 순회교사 현황 등

2 중등교사 전보

1.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증빙서류 G-인사이트 첨부] : G-인사이트 출력물-날인(양식1)
2. 202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자 명부(근평이 기록된 G-인사이트 출력물-날인, 명부 엑셀 파일)
3. 중등학교 수석교사 및 교사 전보유예 승인자 명단(양식 2)
4. 교육지원청 TO감 내신자(수석교사 및 교사) 명단(양식 3)
5. 2026. 3. 1.자 교사 인사 발령 관련 행정사항(붙임3)

3 교장

[전보]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 ○ 전보내신서(서식1)
- ○ 청간내신자인 경우 가산년수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
- ○ 퇴직(임기만료) 예정자 현황(서식3_1)
- ○ 전보내신서 제출자의 상피제 반영 자료(서식4)(학교 → 교육지원청)
- ○ 학교경영 우수실적 평가서(서식5)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_1)

○ 전보내신자 현황(상피제 반영 자료 포함)(서식7_1)

○ 관내 전보 교육장 의견서(서식8)

[자격 및 승진]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감 자격 및 승진 평정 집계표 등 출력물 일체

4 교감 전보, 승진 및 강습(중등), 근무성적 평정(중등)

[전보]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 전보내신서(서식1)

○ 청간내신자인 경우 가산년수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

○ 퇴직(임기만료) 예정자 현황(서식3_2) ("해당없음"도 제출)

○ 전보내신서 제출자의 상피제 반영 자료(서식4)(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전보내신자 명부(서식2_1)

○ 전보내신자 현황(상피제 반영 자료 포함)(서식7_2)

[자격 및 승진]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감 자격 및 승진 평정 집계표 등 출력물 일체

[근무성적 평정]

<학교 → 교육지원청>

1. 「교감 개인별 자기실적평가서」 각 1부(양면출력, 상철)
2. 학교별 「교감 근무성적평정표」 1부(학교장 평정점만 기재 · 날인 후 밀봉하여 인비 제출)
3. 교감 근무평정 참고자료(위촉장, 표창장 등)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4.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1부(단면출력)
5.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사 다면평가표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단면출력)

※ 위 5번의 제출서류는 모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를 각각 별도로 작성 · 제출해야 함

※ 그 밖의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관련 서류(회의록, 내부결재 문서 등)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1.「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각 1부(교감, 교육전문직원 별도 작성)
2.「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각 1부(교육장 확인점 및 총점 기재)
3. 학교별「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및 교육지원청 평정상황 집계표」1부
4. 학교별「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5.「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1부
6.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교사 근무성적 평정표」,「교사 다면평가 합산표」,「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7.「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1부
8.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교사 근무성적 평정표」,「교사 다면평가표 합산표」,「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9. 교육지원청 징계 및 행정처분대장 사본 1부(해당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확인 공문 출력 제출)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근평 취합용 한셀파일 제출

5 교육전문직원 인사: 별도 안내

Ⅶ 서류 접수 일정(중등)

1 교사 전보 서류 접수 일정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제출 일시			제출 장소 및 해당 지원청		비고
			남부청사	북부청사	
12. 4.(목)	오전	9시 30분	군포의왕	의정부	세부 접수장소 추후 별도안내
		10시 45분	여주	동두천양주	
	오후	1시 30분	평택	가평, 연천	
		2시 45분	양평	김포	
12. 5.(금)	오전	9시 30분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10시 45분	안성, 이천	파주	
	오후	1시 30분	광명	고양, 포천	
		2시 45분	광주하남		
12. 8.(월)	오전	9시 30분	성남		
		10시 45분	부천		
	오후	1시 30분	화성오산		
		2시 45분	수원		
12. 9.(화)	오전	9시 30분	안산. 시흥		
		10시 45분	용인		
	오후	1시 30분	교육지원청		

※ 업무처리시간 : 9:00 ~ 12:00, 13:00 ~ 17:00 (점심 시간: 12:00 ~ 13:00)

교사 · 교감용 평정서류(자격연수, 승진) 서류 접수 일정(1차)

○ 해당 교사·교감 ➡ 관할 교육지원청 인편 제출(교육지원청 자체 일정) ➡ 교원인사정책과 교육지원청별 해당 시간 제출(2025. 12. 26.)

일 시		접수 대상 및 접수 장소		비고
		남부청사	북부청사	
<1차> 2025.12.26. (금)	09:30~10:30	수원, 화성오산	의정부, 동두천양주, 파주	세부 접수장소 추후 별도 안내
	10:30~11:30	성남,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13:00~14:00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연천, 포천, 가평, 김포	
	14:00~15:00	평택, 이천, 여주		
	15:00~16:00	광주하남, 양평, 군포의왕		
	16:00~17:00	용인, 안성		

※ 접수 시간 이외 접수 불가 : 09:30 ~ 17:00 (※ **점심시간** 11:30 ~ 13:00에는 **접수 불가**)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오전, 오후의 일정을 가급적 맞춰주시기 바람

교사 · 교감용 평정서류(자격연수, 승진) 서류 접수 일정(2차)

○ 해당 교사·교감 ➡ 관할 교육지원청 인편 제출(교육지원청 자체 일정) ➡ 교원인사정책과 교육지원청별 해당 시간 제출

일 시	접수 대상 및 접수 장소	비고
2026. 1. 28.(수)	G-인사이트 자격 및 승진 평정 마감	
<2차> 일시 미정(추후 별도 안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추가 및 보완은 추후 협의)	세부 접수장소 추후 별도 안내

※ 접수 시간 이외 접수 불가 : 09:30 ~ 17:00 (※ **점심시간** 11:30 ~ 13:00에는 **접수 불가**)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오전, 오후의 일정을 가급적 맞춰주시기 바람

교사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류 지역별 접수 일정

1) 학교 ➡ 교육지원청(인사담당장학사), 인편 접수일정은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2) 교육지원청(인사담당장학사)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인편 제출

일 시		접수 대상 및 접수 장소	비고
2026. 1. 6.(화)		G-인사이트 근무성적평정 마감	
2026.1.12. (월) 인편제출	09:30~10:30	수원, 화성오산, 의정부, 동두천양주, 파주	세부 접수장소 추후 별도 안내
	10:30~11:30	성남,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13:00~14:00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연천, 포천, 가평	
	14:00~15:00	평택, 이천, 여주	
	15:00~16:00	광주하남, 양평, 군포의왕	
	16:00~17:00	용인, 안성, 김포	

※ 접수 시간 이외 접수 불가 : 09: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에는 **접수 불가**)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오전, 오후의 일정을 가급적 맞춰주시기 바람

교감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류 지역별 접수 일정

1) 학교 ➡ 교육지원청(인사담당장학사), 인편 접수일정은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2) 교육지원청(인사담당장학사) ➡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인편 제출

일 시	접 수 대 상		접수 장소
	(오전)	(오후)	
2026.2.5.(목)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추가 및 보완은 추후 협의)		세부 접수장소 추후 별도 안내

※ 접수 시간 이외 접수 불가 : 09: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에는 **접수 불가**)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2026. 2. 5.(목)에 모두 제출 요망

3) 교육전문직원 관련 자료(평정, 근평, 전직, 전보) 접수 일정: 별도 알림

Ⅷ 학교 등 현황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 현황(2026. 3. 1. 기준)

소속지역청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학교수
수원	수원하이텍고등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경기대명고등학교(대안)	4
성남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분당경영고등학교, 분당아람고등학교(전, 성남금융고)	4
안양과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전, 경기글로벌통상고)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전, 평촌공고), 안양공업고등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	4
부천		부천공업고등학교,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3
광명		창의경영고등학교(전, 광명경영회계고)	1
안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1
평택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2
군포의왕		경기폴리텍고등학교(전, 산본공고),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
여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1
화성오산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 **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칭)**	3
광주하남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	2
양평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1
이천		한국도예고등학교, 이천세무고등학교	2
용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	1
안성		일죽고등학교	1
김포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전, 김포공고)	1
시흥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전,군자공고),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전, 시화공고)	2
의정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1
고양		고양고등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일산고등학교,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5
구리남양주		남양주고등학교(전, 남양주공고)	1
동두천양주			0
파주		적성융합고등학교(전, 경기세무고)	1
연천			0
포천		영북고등학교	1
가평			0
계	3	41	44

특수목적고 현황(2026. 3. 1. 기준)

구분	학교명	소속지역청	설립별	비고
외국어고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동두천양주	공립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수원	공립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성남	공립	
국제고	동탄국제고등학교	화성오산	공립	
	고양국제고등학교	고양	공립	
체육고	경기체육고등학교	수원	공립	
예술고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천	공립	
과학고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의정부	공립	
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수원	공립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함
산업수요맞춤형고	수원하이텍고등학교	수원	공립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평택	공립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안양과천	공립	
계	12			

각종학교 현황(2026. 3. 1. 기준)

지역	학교명	학교급	설립별	비고
안성	신나는학교	통합(중+고)	공립	
이천	경기새울학교	중	공립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통합(초+중+고)	공립	
수원	경기이음온학교	고	공립	
계	4			

신설교 개교 예정 현황(2026. 3. 1. 기준)

구분	지역	인사구역(예정)	중학교명(가칭)	고등학교명(가칭)	학교수
남부	광주하남	갑	고산중, 미사5중	오포고	3
	군포의왕	갑	백운호수중		1
	김포	을		양원고	1
	동두천양주	갑	옥정1중		1
	부천	특		부천 옥길고	1
	시흥	갑	목감1중		1
	용인	갑	역삼중	용신고	2
	파주	갑	운정1중, 운정5중	운정3고	3
	평택	갑		용죽고	1
	화성오산	갑	동탄8중, 남양1중	동탄10고, 세교소프트웨어고, 세교2-2고	5
계			10	9	19

신설교 개교 예정 현황(2026. 9. 1. 기준)

구분	지역	인사구역(예정)	중학교명(가칭)	고등학교명(가칭)	학교수
남부	용인	갑	기흥1중		1
계			1	0	1

통폐합 예정 현황(2026. 3. 1. 기준)

구분	지역	인사구역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학교수
			해당없음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예정교(2026. 3. 1. 기준)_문의: 진로직업교육과(진로교육담당)

연번	지 역	학 교 명 (2026년 신설교는 가칭)	비 고
1	평택	평택화양중	2025년 9월 개교
2	광주하남	고산중, 미사5중, 오포고	2026년 3월 개교
3	군포의왕	백운호수중	2026년 3월 개교
4	김포	양원고	2026년 3월 개교
5	동두천양주	옥정1중	2026년 3월 개교
6	부천	부천 옥길고	2026년 3월 개교
7	시흥	목감1중	2026년 3월 개교
8	용인	역삼중, 용신고	2026년 3월 개교
9	파주	운정1중, 운정5중, 운정3고	2026년 3월 개교
10	평택	용죽고	2026년 3월 개교
11	화성오산	동탄8중, 남양1중, 동탄10고, 세교소프트웨어고, 세교2-2교,	2026년 3월 개교

※ 2025년 8월말, 2026년 2월말 퇴직(정년, 명예)자 소속교 및 정원외기간제 배치교 포함
※ 2026년 9월 개교 예정교 미포함

공립 특수학교 현황(2026. 3. 1. 기준)

지역	학교명	유형	학교급	비고
수원	아름학교	시각 ·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성남	성남혜은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성은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안양과천	안양해솔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부천	부천상록학교	지적 · 지체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군포의왕	의왕정음학교	지적 · 지체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화성오산	화성나래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이천	다원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용인	용인다움학교	지적 · 지체장애	유+초+중+고+전	
안성	모두학교	지적 · 지체장애	유+초+중	
김포	새솔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의정부	송민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동두천양주	양주도담학교	지적 · 지체장애	유+초+중+고+전	
구리남양주	경은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파주	자운학교	지적 · 지체장애	유+초+중+고+전	순회학급 운영
계	15			

IX 특수교사 인사·평정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 **특수교원의 전보**
- 유치원, 초등 특수교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초등)」적용
- 중등 특수교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적용

❖ **특수교원의 승진, 자격 평정**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적용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육교원 모두 적용)

1 정원 및 결충원

관련 법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정원 산정 기준 및 특수학급 당 학생 수

1) 정원 산정 기준: 특수학교(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교사 1명
2)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교(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비 고
유치원	4명	4명	
초등학교	6명	4명	
중학교	6명	4명	
고등학교	7명	5명	
복합특수학급	4명	-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는 정규교사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정 정원을 특수학교(급)으로 배치할 수 없음

4) 별도정원
- 지역별 별도정원 관리 철저 및 별도정원 배치교의 결원 시 반드시 확인

특수학급 신 · 증설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선정 · 배치 완료
2) 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특수학급 신 · 증설 편성
3) 특수교사 충원 요청 시 **학급편성 공문 사본** 첨부
4) 2026. 3. 1.자 특수학급 신 · 증설: 3. 1.자 결충원 자료에 반영하여 처리
5) 9. 1.자 신설교: 하반기 인사 작업 기간 중 도교육청으로 사전 보고(정원 확보)

2 특수교사 배치 기준

특수학교

구 분	배치기준	비 고
유아특수학교	학급수×1.5명	
특수학교(유치원)	학급수×1.3명	
특수학교(초등학교)	학급수×2.0명	
특수학교(중학교)	학급수×2.1명	
특수학교(고등학교)	학급수×2.2명	
특수학교(전공과)	학급수×2.2명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당 1명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교만 배치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당 1명	중등과정이 있는 특수학교 배치
특수학교늘봄	학교당 1명	늘봄 운영 특수학교 중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

특수학급

구 분	배치기준	비 고
장애영아	학급당 1명	-
유치원	학급당 1명	① 일반학급이 2학급 이상이고 특수학급이 1학급만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 중 특수학급에 혼합연령으로 배치된 학생이 4명이고, 연령별 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② 특수학급을 증설할 교실이 없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학생 4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1명	특수학급을 증설할 교실이 없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학생 6명)을 초과하는 경우
중학교	학급당 1명	① 순회학급 제외 특수 3학급 이상인 경우 ② 특수학급을 증설할 교실이 없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학생 6명)을 초과하는 경우
고등학교	학급당 1명	① 학교당 1명 추가 배치 (단, 1학급 학생수 4명 이하일 경우 추가배치 제외) ② 특수학급을 증설할 교실이 없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학생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공과	학급당 2.1명	-
순회학급	학급당 1명	-
공통	1) 복합특수학급에서 전일제로 운영하는 특수학급 교사 배치는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에 의함 2) 추가배치기준에서 ①항 적용 시, ②항은 ①항의 교사를 포함하여 산정함	

3 전보

적용

1) 유 · 초등 특수교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초등)」 적용
2) 중등 특수교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적용

인사관리세부기준 특수교사 적용 사항

1) 인사구역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의 인사구역은 센터 설치기관에 의함
  ※ 교육지원청 설치: 교육지원청 소속교 중 최상위 급지
  ※ 학교 설치: 설치 학교의 급지

구분	유 · 초등	중등
전보 인원(특수학급)	특수학급 재직교사의 2/3 초과 불가 - 정규 1명: 1명 내신 가능 - 정규 2명: 1명 내신 가능 - 정규 3명: 2명 내신 가능 - 정규 4명: 2명 내신 가능 - 정규 5명: 3명 내신 가능	동일교 재직교사의 1/3 초과 불가
전보 인원(특수학교)	동일교 재직교사의 1/2 초과 불가	동일교 재직교사의 1/3 초과 불가
전보 인원(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급 구분 없이 재직교사의 1/2 초과 금지	
전보 가산점 / 특례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담당교사: 특수교육방과후학교, 특수교육종일반 담당교사 미해당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교사는 미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간 근무 희망교사: 특수학교는 해당없음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 공립 특수학교 교원 인사를 관내 유·초·중·고 교원과 동일하게 관리

공립 특수학교로의 전보: 2019. 3. 1.자부터 관내전보로 처리

예) 시흥지역의 특수학급 교사가 아름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때:
시흥→ 수원으로 전보(수원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특수학교인 아름학교로 배치)

※ 특수학교가 인사구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동일구역내 근무기간 산정시 참고)
- 초등(2011년부터), 중등(2010년부터)

4 전보내신서 작성 및 관련 사항 안내

- **특수교사 전보 검토요령은 유치원·초등·중등 전보 검토요령에 준함**
  - 내신서 작성은 G-인사이트를 통해 작성
  - 유치원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별로 개요 등록하여 작성
  - G-인사이트 내신서 작성 시 반드시 "인사기록_근무사항" 확인 필요

> * **직급: 특수학교교사 / 직위: 교사(특수학교),** 교사(유치원특수), 교사(초등특수), 교사(중등특수)
> * **정원직급: 특수학교교사**
> * 교원구분:
> - 유치원특수교사: 교사(유치원특수학급) 또는 유치부교사(특수학교)
> - 초등특수교사: 교사(초등특수학급) 또는 초등부교사(특수학교)
> - 중등특수교사: 교사(중학교특수학급) 또는 교사(고교특수학급) 또는 중등부교사(특수학교)
> * **표시과목종류: 특수학교**
> * 담당과목자격: 특수(유치원, 초등, 중등)
> * **정원임용과목: 특수**

- 특수학교로 전보 희망하는 경우 내신서에 **해당 교육지원청**만 기록 (특수학교도 관내전보에 포함)
  - 도교육청 인사발령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임지희망서 조사 시 특수학교 포함 필요
- **2026. 3. 1.자 특수학교 신설교 개교 예정: 없음**

5 교육지원청에서 정규교사 배치 시 유의사항

- 특정 학교에 정원외 기간제교사 편중을 막고 정규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균형 있게 배치
  - 신설 특수학교(급)은 정규교사 배치 권장
  - 관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정규교사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배치
  - 1학급 1~2명, 2학급 7명 등의 특수학급은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기중 학급 감축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규교사 배치 시 유의
- 특수교사는 휴직 · 파견 시 본교복직을 원칙으로 함
  - 교육지원청에서 임의로 특수교사 별도정원 금지
  - 사유 발생 시 도교육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정규교사 100% 배치하므로 유·초·중등 정원 준수

6 근무성적평정 안내

근무성적평정

- 특수교사 별도 평정
- 평정 대상 특수교사 2인의 근무성적평정

1) 2019. 2 .28.자 평정부터 급간 달리하여 평정(수, 우 또는 우, 미 또는 수, 미 등)

2) 특수교육교원 근무성정평정 시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구분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특수학급	교사	교감	교장	국(과)장
특수학교	교사	교감	교장	국(과)장
	교감	교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순회교사(유,초,중)	국(과)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도교육청	특수교육순회교사(유,초,중)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승진자격평정

- 특수교사는 초등기준에 따름

7 승진자격평정 서류 제출 안내

특수(유,초,중등)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에 따름

– 특수교사에게 해당하는 선택가산점: 특수학교(급) 종일반 담당교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등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는 2022. 2. 28.까지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인정, 2022. 3. 1.자부터 연구대회 실적으로 전환

– 특수학교(급) 교사의 담임교사 및 보직(부장)교사 가산점 부여: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임명사항에 대한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인사 담당자(교감) 연수 시 안내

X 공립 중등 보건교사 인사업무 유의사항

1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

2026년 공립 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
가. **일반 학급수 기준 9학급 이상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 배치** - 9학급 이상 학교 중 정규 보건교사 부족 시 정원외기간제교사 배치 나. 일반 학급수 기준 9학급 미만 학교에 정원외기간제교사 배치 다. 일반 학급수 기준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정원외기간제교사 1인 추가 배치 라. 통합 또는 병설학교는 학교급별 1인 배치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겸임 배치 가능

※ 2026.3.1.기준 일반 학급수 9학급 미만교에 근무 중인 정규 보건교사는 동일교 만기까지만 현임교 근무를 보장하며, 전보유예 불가

※ 2026.2.28.기준 동일교 만기자(기 유예자 포함)의 경우 현 소속교가 2026.3.1.기준 교원소요 상 일반 학급수 9학급 미만교에 해당될 경우 전보유예 불가

2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유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의료법 제7조(간호사면허),
제11조(면허조건과 등록), 제30조(협조의무),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 보건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함
- 간호사 면허증 관련 유의사항
  -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 면허증은 매 3년마다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3년 이전 취득한 간호사 면허증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신고 확인증을 통해 의료인 면허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 사서교사(융합교육과), 전문상담교사(생활교육과)의 배치기준은 각 사업부서에 문의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인사양식 및 서식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인사 양식 및 서식

인사 양식 및 서식 목록

번호	일련 번호	양식 및 서식명	비고
1	양식 1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G-인사이트 출력물)	A4(횡)
2	양식 2	중등학교 수석교사 및 교사 전보유예 승인자 명단(한셀)	한셀A4(횡)
3	양식 3	○○교육지원청 TO감 내신자 명단 (한셀)	〃
4	서식 1	중등·특수학교 교장(감) 전보내신서 (한셀)	한셀A4(횡)
5	서식 2	중등·특수학교 교장(감) 전보내신자 명부 (한셀)	〃
6	서식 3-1	2026년 상반기 중등 교장 퇴직(임기만료) 예정자 현황	한셀A4(종)
7	서식 3-2	2026년 상반기 중등 교감 퇴직 예정자 현황	〃
8	서식 4	중등·특수교장(감) 전보내신서 제출자의 상피제 반영 자료	한셀A4(횡)
9	서식 5	학교경영 우수실적 평가서	A4(종)
10	서식 6	중등교감승진 우선임용 희망서	한셀A4(종)
11	서식 7-1	2026.3.1.자 중등 교장 전보내신자 현황_교육지원청 작성용	한셀A4(횡)
12	서식 7-2	2026.3.1.자 중등 교감 전보내신자 현황_교육지원청 작성용	〃
13	서식 8	2026.3.1.자 교장 관내 전보 교육장 의견서	〃

양식 1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1)내신교과		2)학교전화		3)본인전화		개인번호		4)

5)성명	6)성별	7)현임교	시.군	학 교 명	인사구역	8)특구역 근 무	년 월	9)내신구분	10)배우자직업	11)만기TO감내신

12)주민등록번호	13)근무성적	14)후임교과	15)소지자격	16)전공	17)부전공	18)희망지역	1 희망지역	2 희망지역	3 희망지역

19)전보년수	년 월	20)현임교 근 무	부터 까지	년 월	21)총가산년 수	년 월	22)환 산	년 월	23)TO감	년 월	24)휴 직	년 월	25)총경력	년 월	초경력	년 월	중경력	년 월	고경력	년 월	26)생활근거지

27)병구역근 무	병구역근무교	근무기간	부터 까지	년 월	28)전임교	전임교명	근무기간	부터 까지	년 월

29)학교장의견		30)전전임교	전전임교명	근무기간	부터 까지	년 월

31)부부교사	학교명		성명		동시내신여부		32)비고	

33)가산년수내역(벽지,부부...등)		34)특 이 사 항		35)관내희망학교명				35-1)그외희망	
구 분	비율(%)	항 목	내 용						
		초빙 교사							
		전입 요청							
		특목 요청							
		타시도내신							
		15조9항1호	예: 아니오:						
		발령변경TO감							
합 계		자녀학교정보							

위와 같이 전보 내신을 합니다.

년 월 일

교육장 : 직인 학교장 : 직인 사인

본인 확인 : (인)

양식 2 한셀 양식

(양식2) 중등학교 수석교사 및 교사 전보유예 승인자 명단

확인자 : 교장 (인)

작성자 : 교감 (인)

연번	지역	학교명	교 과	인사구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지자격	현임교		휴직(파견)년수	근무성적	유예규정	유예사유	비고
									발령일자	근무년수					
1	수원	학교명은 정식 명칭기재 (예 : OO고등학교)	물리	특	홍길동	남	1971.02.05.	중등1정	2020.03.01.	5년0월	1년0월		제11조의2 제1항제3호		휴직기간 2022.03.01. -2023.02.28.
2													제11조의2 제2항		
3															
4															
5															

※ 1. 유예사유 : 전보유예를 해야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2. 비고란 기재 : 현임교 휴직 또는 파견기간
3.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보유예 대상자는 전보내신서를 작성·제출해야함

양식 3 한셀 양식

(양식3) OO교육지원청 TO감 내신자(수석교사 및 교사) 명단

확인자 : 과장 (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교감) (인)

연번	지역명	학교명	인사구역	교 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지자격	현임교		휴직(파견) 년수	TO감 사유	비고
									발령일자	근무년수			
1	수원	OO중학교 (학교 정식 명칭 기재)	특	물리	홍길동	남	1971.02.05.	중등1정	2021.03.01.	4년6월	6월	학급 감소, 교과 조절 등	휴직기간 2023.03.01. -2023.08.31.
2													
3													
4													
5													

서식 1 한셀 프로그램

※ 노란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은 [콤보박스]로 선택하세요.

<서식 1>

중등학교 교장(감) 전보 내신서

직위명								내신구분	
시군명	학교명	급지	성 명 (한 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전공과목	소지자격	교직 내역별 경력년수	
								교 사	교 감	전문직	교 장	총경력

근 무 년 수			특 구 역 근무년수	전보 희망지		전보 사유	근 무 성 적 (해당자)	상벌	학교경영실적	생 활 근거지	비고
계	현임교	가 산 년 수		1	2						
( )년	0	학교표창 ( )회 ( )년 ( )월							별도제출(서식5)		
( )월	自: 至: ( )년 ( )월	기타 ( )% ( )년 ( )월 / ( )년 ( )월	自: 至: ( )년 ( )월								

1쪽

위와 같이 전보 내신합니다.

2025 년 월 일

교육장 (인)
교장 (인)
본인확인 (인)

◇ 근무년수계 란에는 현임교 근무년수와 가산년수를 더하여 기재한다.(가산년수 관련 학교표창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내신구분란에 일반, 비정기, 동일교만, 특구역만 중 선택한다.
◇ 연령 및 경력은 2026.2.28.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서식 1>

특수학교 교장(감) 전보 내신서

직위명								내신구분	
시군명	학교명	급지	성 명 (한 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전공과목	소지자격	교직 내역별 경력년수	
								교 사	교 감	전문직	교 장	총경력
						특수						

근 무 년 수			특 구 역 근무년수	전보 희망지		전보 사유	상벌	학교경영실적	생 활 근거지	비고
계	현임교	가 산 년 수		1	2					
( )년	0	학교표창 ( )회 ( )년 ( )월								
( )월	自: 至: ( )년 ( )월	기타 ( )% ( )년 ( )월 / ( )년 ( )월	自: 至: ( )년 ( )월							

1쪽

위와 같이 전보 내신합니다.

2025 년 월 일

교장 (인)
본인확인 (인)

◇ 근무년수계 란에는 현임교 근무년수와 가산년수를 더하여 기재한다.(가산년수 관련 학교표창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내신구분란에 일반, 비정기, 동일교만, 특구역만 중 선택한다.
◇ 연령 및 경력은 2026.2.28.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서식 2 한셀 프로그램

<서식 2>

중등학교 교장(감) 전보내신자 명부

직위 0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연번	학교 (급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전공	경력사항	소지자격	경력별 근무 년수 교사	교감	전문직	교장	총경력	전보년수 현임교	가산년수	계	희망지 1	2	전보내신구분	생활근거지
1	0	0	1900/01/00	0	교 사 : 장학사 : 교 감 : 장학관 : 교 장 :	0	0.00	0.00	0.00	0.00	0.00				0	0	0	0
		0																
2					교 사 : 장학사 : 교 감 : 장학관 : 교 장 :													
3					교 사 : 장학사 : 교 감 : 장학관 : 교 장 :													
예시	수원북중	가나다	1966/09/02	지구과학	교 사 : 전라남도(5.00), 강원도(7.00) 00중(2.00), 00정산고(5.06) 00종고(1.06) 장학사 : 00교육청(1.06), 본청 중등교육과(3.00) 교 감 : 00중(4.00) 장학관 : 교 장 : 00중(2.06)	중등교장	21.00	4.00	4.06	2.06	32.00	2.06	0.06	3.00	용인	군포의왕	일반	수원 권선구
	특	남	59															

<서식 2>

특수학교 교장(감) 전보내신자 명부

직위 0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연번	학교 (급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전공	경력사항	소지자격	경력별 근무 년수 교사	교감	전문직	교장	총경력	전보년수 현임교	가산년수	계	희망지 1	2	전보내신구분	생활근거지
1	0	0	1900/01/00	특수	교 사 : 장학사 : 교 감 : 장학관 : 교 장 :	0	0.00	0.00	0.00	0.00	0.00				0	0	0	0
		0																
2					교 사 : 장학사 : 교 감 : 장학관 : 교 장 :													
예시	수원북중	가나다	1962/09/02	지구과학	교 사 : 전라남도(5.00), 강원도(7.00) 00중(2.00), 00정산고(5.06) 00종고(1.06) 장학사 : 00교육청(1.06), 본청 중등교육과(3.00) 교 감 : 00중(4.00) 장학관 : 교 장 : 00중(2.06)	중등교장	21.00	4.00	4.06	2.06	32.00	2.06	0.06	3.00	용인	군포의왕	일반	수원 권선구
	특	남	59															

서식 3-1 한셀 서식

2026년 상반기 중등 교장 퇴직(임기만료) 예정자 현황

장학사(교감) 성명 (서명)

연번	지역명	학교명	직위	성명	퇴직(임기만료) 종별	퇴직예정일 (임기만료일)	비고
1	*수원*	*정기중*	*교장*	*가나다*	*임기만료*	*2026.02.28.*	*(예시)*
2	*수원*	*자율고*	*교장*	*나다라*	*정년퇴직*	*2026.02.28.*	*(예시)*
3	*수원*	*균형중*	*교장*	*다라마*	*명예퇴직*	*2026.02.28.*	*임기만료*
4	*수원*	*미래고*	*교장*	*라마바*	*의원면직*	*2026.02.28.*	*임기만료*
5							
6							
7							
8							
9							
10							

1. 퇴직예정 기간 : 현재 ~ 2026. 2. 28.
2. 퇴직(임기만료) 종별은
   - 임기만료 : 교장 임기 8년을 마친 경우(공모교장 임기 제외)
   - 퇴직 :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기재
   - 단, 임기만료자가 명예퇴직, 의원면직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비고란에 임기만료로 기입
3. 교육지원청은 취합분을 작성하여 제출

서식 3-2 한셀 서식

2026년 상반기 중등 교감 퇴직 예정자 현황

장학사(교감) 성명 (서명)

연번	지역명	학교명	직위	성명	퇴직(임기만료) 종별	퇴직예정일 (임기만료일)	비고
1	*수원*	*자율고*	*교감*	*가나다*	*정년퇴직*	*2026.02.28.*	*(예시)*
2	*수원*	*균형중*	*교감*	*나다라*	*명예퇴직*	*2026.02.28.*	*(예시)*
3	*수원*	*미래고*	*교감*	*다라마*	*의원면직*	*2026.02.28.*	*(예시)*
4							
5							
6							
7							
8							
9							
10							

1. 퇴직예정 기간 : 현재 ~ 2026. 2. 28.
2. 퇴직 종별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정 기간 기재
3. 교육지원청은 취합분을 작성하여 제출

서식 4 한셀 프로그램

(서식4) 중등·특수교장(감) 전보내신서 제출자의 상피제 반영 자료

교장 ooo

연번	조사 대상자				재직하는 배우자 및 자녀						재학하는 자녀 및 손자녀						비고
	지역	소속	직급	성명	지역	소속	직급	성명	관계	2026. 3. 1.자 변동 예정사항	지역	소속	학년	성명	관계	2026. 3. 1.자 변동 예정사항	
1	수원	00중	교장	김00	용인	00고	교사	이00	배우자								
2	수원	00고	교감	길00							성남	00고	2학년	유00	자녀		

1 페이지

* **제출 대상:** **교장(감)** 전보내신서 제출자

* **작성 내용**: 경기도 내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하는 배우자 및 자녀**,
경기도 내 공립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손자녀 포함, 2026. 2. 28.기준 중1-고3)**

* 2026. 2. 28.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2026. 3. 1.자로 변동 예정사항이 있는 경우도 기재

서식 5

학교경영 우수실적 평가서

학교명 : 학교	직위 : 교장	성명 : (서명)
현임교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년 월)		

학교경영 우수실적
※ 작성요령 – 제출 대상 : 교장전보자 및 전보유예자만 작성(단, 징계에 의한 전보자는 작성하지 않음) – 현임교 근무 기간 중에 추진한 학교 경영 실적 중 대내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상의 실적을 2가지 이내로 선정하여,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6하 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 필요한 경우 실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되, 표창장 사본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람.

서식 6

<서식6>

교감승진 우선임용 희망서
(교육적 필요 지정지역)

경기도교육청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장제5조제4항제3호에 의거 교육적 필요 지정지역에 교감승진 우선 임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임용일	지역	소속	직급	성명	희망지역	
					1희망	2희망
2026. 3. 1.			교사			

※ 유의 사항

° 소속 : 정식 명칭 기재

° 2026. 3. 1.자 교육적 필요 지정지역 : 연천, 포천

° '연천', '포천'을 희망 순서에 따라 기재 (두 개 모두 희망 가능)

1 페이지

2025년 월 일

교장 : (인)

본인확인 : (인)

○○중/고등학교장 (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7-1 한셀 양식

(서식7_1) 2026. 3. 1.자 중등 교장 전보내신자 현황_교육지원청 작성용

장학사 ooo 2026. 3. 1.자

연번	지역 (교육지원청명)	급 (중/고)	소속	직급	성명	교과	현임교 근무년수 (년)	가산년수 (년)	전보년수 (년)	전보구분 (관내 / 청간)	유예신청 여부 (신청 / 무)	관내 경우만(무순, 교육장 의견)		1희망지	2희망지	2025학년도 학급 수 (특수학급 제외)	비고	재직하는 배우자 및 자녀						재학하는 자녀 및 손자녀					
												추천교1	추천교2					지역	소속	직급	성명	관계	2026. 3. 1.자 변동예정사항	지역	소속	학년	성명	관계	2026. 3. 1.자 변동예정사항
(예시)	구리남양주	고	00고	교장	000		4.06	0	4.06	관내	무	경기고	미래고	구리남양주	희망하지 않음	5	중임대상	화성오산	화성중	교감	이&&	배우자	_	화성오산	화성중	2학년	이&&	자녀	_
(예시)	광주하남	중	00중	교장	000		5	0	5	관내	신청	안전중	안전고	광주하남	희망하지 않음	3	제11조의2 제4항제1호	수원	경기중	교사	김##	자녀	_	수원	경기중	1학년	김##	손자녀	_
(예시)	고양	중	00중	교장	000		2	1.04	3.04	청간	무	_	_	안산	성남	13	비정기전보대상(징계처분자)	_	_		_	_	_	_	_		_	_	_
(예시)	수원	고	00고	교장	000		3	0	3	청간	무	_	_	용인	화성오산	42		_	_		_	_	_	_	_		_	_	_
1									0																		_		
2									0																				
3									0																				
4									0																				
5									0																				
6									0																				
7									0																				

* 교육지원청에서 전보내신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함
* 전보내신서, 전보내신명부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K-에듀파인시스템으로만 제출함(출력물 제출하지 않음)
* 상피제 내용은 (서식4)를 활용하여 작성

서식 7-2 한셀 양식

(서식7_2) 2026. 3. 1.자 중등 교감 전보내신자 현황_교육지원청 작성용

* '관내'부터 '청간' 순서로 기재

장학사 ooo 2026. 3. 1.자

연번	지역 (교육지원청명)	급 (중/고)	소속	직급	성명	현임교 근무년수	가산년수 (년)	전보년수 (년)	전보구분 (관내 / 청간)	유예신청 여부 (신청 / 무)	청간 경우만		2025학년도 학급 수 (특수학급 제외)	비고	재직하는 배우자 및 자녀						재학하는 자녀 및 손자녀					
											1희망지	2희망지			지역	소속	직급	성명	관계	2026. 3. 1.자 변동예정사항	지역	소속	학년	성명	관계	2026. 3. 1.자 변동예정사항
1	구리남양주	고	00고	교감		4.06	0	4.06	관내	무	_	_	5		화성오산	화성중	교감	이&&	배우자	_	화성오산	화성중	2학년	이&&	자녀	_
2	광주하남	중	00중	교감		5	0	5.00	관내	신청	_	_	3	제11조의2 제4항제2호	수원	경기중	교사	김##	자녀	_	수원	경기중	1학년	김##	손자녀	_
3	고양	중	00중	교감		2	1.04	3.04	청간	무	안산	성남	13	비정기전보대상(징계처분자)	_	_		_	_	_	_	_		_	_	_
4	수원	고	00고	교감		3	0	3.00	청간	무	용인	화성오산	42	TO감(복수해제)	_	_		_	_	_	_	_		_	_	_
5								0																_		
6								0																		
7								0																		
8								0																		
9								0																		
10								0																		
11								0																		

* 교육지원청에서 전보내신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함
* 전보내신서, 전보내신명부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K-에듀파인시스템으로만 제출함(출력물 제출하지 않음)
* 상피제 내용은 (서식4)를 활용하여 작성

서식 8

2026. 3. 1.자 교장 관내 전보 교육장 의견서

	확인자	교육장	(인)	직인
○○교육지원청	작성자	장학사	(인)	

연번	교장 내신자					추천교(무순)		비고
	소속	성명	교과	출신대	성별	추천교1	추천교2	
1	*경기중*	*한교장*	*일반사회*	*미래대*	*남*	*미래중*	*미래고*	*예시*
2	*교원고*	*양교장*	*지구과학*	*안전대*	*여*	*안전중*	*안전고*	*예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승진 · 평정업무 처리요령

1부

(중등)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Ⅰ 일반사항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 2024. 3. 1., 이하 '「승진규정」')을 숙독하고 본 요령을 준수하여 착오 없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 기준일은 2026. 2. 28. 현재로 한다.
3.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 및 확인의 책임을 명심하고 정확 ·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Ⅱ 평정대상

1. 대상 : 공립 중 · 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가. 교원으로서 승진대상자

1) 교장 승진대상자 : 교감으로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교감 승진대상자 : 교사로서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

> ▣ 교장, 교감 승진대상자 중 승진명부작성일 기준, 아래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1. 정년 잔여 1년 미만인 자(단, 교장 중임은 제외)
> 2.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 3. 징계처분자 중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 4. 교육공무원 4대 비위(금품 ·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중 성폭행 등 성관련 비위: 성희롱, 성추행, 간통, 불륜 등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7902(2020. 11. 6.))
> 5. 2022. 1. 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자 (교육부 교원정책과-5224(2021. 6. 25.))
> 6. 기타 교장, 교감으로서 자질 및 승진 결격사유 해당자

나. 교원으로서 자격연수 대상자

1)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 중등학교 교감자격 취득 후 매년 2월말일(2026. 2. 28.) 현재 3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원 경력 포함)과 1년 이상의 교감 실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교사로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 가)와 나)의 조건을 갖춘 자

가)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보건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매년 2월 말일(2026. 2. 28.) 현재 3년 이상의 중등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을 기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자 또는 임용일(교사 신규채용) 이후 한국사 관련 연수(합산 60시간 이상)를 이수한 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관련)

▣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강습명부작성일 기준, 아래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
2.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 미경과자
   * 징계처분이 끝난 날: 징계처분(집행) 종료일(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1265(2022. 3. 16.))
3.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한 학위를 인사평정자료로 제출한 자
   (다만, 부당 학위가점을 활용하여야만 자격연수가 가능하였던 교육공무원은 자격연수에 활용된 점수 상당의 대체평정점수를 취득한 경우 자격연수 등 진행 가능)
4. 4대 비위로 징계받은 자, 4대 비위로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기록이 정년 내에 말소되지 않거나 말소 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교감의 경우 2017. 10. 1.부터 시행)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656(2017. 2. 3.)호 근거, 경기도교육청 경교인 2017-7(2017. 3. 28.)호, 2017. 10. 1.부터 시행)
   * **4대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간통, 불륜 등 성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교육부 교원정책과-7902(2020. 11. 6.), 경기도교육청 경교인-22(2021. 7. 9.))
5. 2022. 1. 1. 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자
   (교육부 교원정책과-5224(2021. 6. 25.), 경기도교육청 경교인-22(2021. 7. 9.))

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평정 대상자

1) 장학(교육연구)사 중 매년 2월 말일 기준 교육전문직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감 경력이 있는 장학(교육연구)사는 1년 미만이어도 평정 대상으로 서류 제출
   ※ 임기제장학사는 근무성적평정 서류 제출 대상이나 승진평정 서류 제출은 하지 않음
2)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장학(교육연구)관 중 매년 2월 말일 기준 교감자격취득 후 상응직 교육경력(교감 + 교육전문직원) 3년 이상인 자 중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이후 교육전문직 경력 1년 이상인 자
   - 또는 장학(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 이후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5603(2021. 3. 30.)호)

Ⅲ 평정영역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배점</th><th>내 용</th></tr>
<tr><td colspan="2">1. 경력
평정</td><td>70점</td><td>• 평정기간 : 총 20년(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td></tr>
<tr><td colspan="2">2.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td><td>100점</td><td>• 명부작성 시 연도별 반영 비율
- 교사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중 유리한 3년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교감 : 최근 3년 간의 평정점 반영
(최근 1년×34/100 + 2년×33/100 + 3년×33/100)</td></tr>
<tr><td rowspan="2">3.
연수
성적
평정</td><td>교육
성적</td><td>27점
(15점)</td><td>• 평정점 : 교감승진후보자 27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 15점
▸ 자격연수 : 9점
▸ 직무연수 (10년 이내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연수)
- 교감 승진후보자 : 18점(성적평정 6점+이수실적 12점)
- 교장, 장학(연구)관 승진후보자 : 6점(성적평정)</td></tr>
<tr><td>연구
실적</td><td>3점</td><td>• 연구대회입상실적
<table><tr><th></th><th>전국 규모</th><th>시 · 도 규모</th></tr><tr><td>1등급</td><td>1.50점</td><td>1.00점</td></tr><tr><td>2등급</td><td>1.25점</td><td>0.75점</td></tr><tr><td>3등급</td><td>1.00점</td><td>0.50점</td></tr></table>
• 학위취득실적
<table><tr><th></th><th>직무 관련</th><th>기 타</th></tr><tr><td>박사</td><td>3.00점</td><td>1.50점</td></tr><tr><td>석사</td><td>1.50점</td><td>1.00점</td></tr></table></td></tr>
<tr><td>4.
가산점
평정</td><td colspan="2">10점</td><td>• 공통가산점(3.50점) :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1.00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0.50점),
직무연수 실적 학점(1.00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1.00점)

• 선택가산점(7.50점) :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 등

※ 단,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공통/선택가산점 합산하여 1점 만점임.</td></tr>
</table>

◉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Ⅳ 경력평정(「승진규정」 제2장)

1.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별 평정점(「승진규정」제8조 내지 제11조, 부칙 제7조)

가. 경력평정기간은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으로 총 20년을 평정

나. 경력평정점은 「승진규정」제9조 관련 [별표 1] 및 제10조 관련 [별표 2]를 참조하되, 2026. 2. 28.자 평정 시 기본경력 평정은 「승진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하고, 합계에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경력평정 기간 중 일시 퇴직 기간,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정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승진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2. 평정자와 확인자(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시)

기 관 명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중 · 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 감	교 장
교육지원청	교사, 장학사	소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소속부장	기관장
도교육청	장학(교육연구)사	소속장학관(사무관)	교원인사정책과장

※ 교장 유고 시 교감의 확인자는 교육국(과)장,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
※ 교감 유고 시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

[별표 2]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승진규정」 제10조 관련 및 부칙 제2조 관련)

구 분	등 급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평정만점
기본경력(15년)	가 경력	월수 × 0.3555	일수 × 0.0118	64.00
	나 경력	월수 × 0.3333	일수 × 0.0111	60.00
	다 경력	월수 × 0.3111	일수 × 0.0103	56.00
초과경력(5년)	가 경력	월수 × 0.1000	일수 × 0.0033	6.00
	나 경력	월수 × 0.0833	일수 × 0.0027	5.00
	다 경력	월수 × 0.0666	일수 × 0.0022	4.00

※ 교육공무원의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0.0833=4.998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한다.)

[별표 1] 경력의 등급 및 종별(「승진규정」제9조 관련)

직위	등 급	경 력 종 별
교 감	가경력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 · 교육연구관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 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교 사	가경력	1. 각급학교 교장 · 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장학관 · 교육연구관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 교원(임시 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장학사 · 교 육 연구사	가경력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나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를 제외한다) 및 기간제 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2. 5급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3. 경력평정상의 유의점

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1) 10할 평정 대상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기간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및 만 19세 미만의 아동(「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의 입양에 따른 휴직 기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 · 해외기관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2) 5할 평정 대상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유학휴직기간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휴직기간
- 국제기구 · 해외기관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 상근이라 함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단, 2000. 3. 31.이전에 근무한 자는 1주당 상근 10시간 이상,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 '94. 9. 22. 이전에 국제기구 · 해외기관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기간을 산정함(100% 인정)

나.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되나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다. 교사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관련 호봉경력 인정 (교직단체지원과-1252, 2004. 7. 9.), 「교육공무원 누락 경력 처리지침」(복지25700-212, 1991. 10. 5.)에 의거 '교사채용시험 응시자격 위반경력'을 인정함(※ **단, 관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경력에 한함**)

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교사는 '가'경력으로, 교감 · 장학사 · 교육연구사는 '나' 경력으로 평정한다.(2001. 7. 7. 개정)

※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평정경력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으로 계산함

- 「병역법」 및 「군 인사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육 · 해 · 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군 복무 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교육부 교정01210-1213, 1994. 12. 6.,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
- 장기 복무자(하사관 이상 장교로 근무한 자도 3년 범위에서 인정)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대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 경력에서 제외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 사회복무요원(방위소집 복무자, 공익근무요원 포함)은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함
  - 1986. 1. 1. 이후에 사회복무요원(방위소집 복무자, 공익근무요원 포함)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함
- 특례보충역(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방위산업체(병역특례업체)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 기간으로 불인정함

마.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 특별 사면령에 의거 사면된 경우는 경력 평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바. 승진규정 [별표1]의 평정 대상 경력 중 대학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특별법 또는 개별설치령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은 포함하되, 경찰대학의 경찰학과정,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의 군사학과정, 국방대학원의 비학위과정 등 교원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 준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담당 교원의 경력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교원정책과-505, 2008. 2. 12.)

사. 경력평정표 기록 시 최근경력부터 위에서 아래로 기록한다.

(예) ○○고등학교(교감) 2021. 3. 1. ~ 2026. 2. 28.

○○고등학교(교사) 2016. 3. 1. ~ 2021. 2. 28.

아.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자. 경력평정점 산출에 있어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합계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낸다.(「승진규정」 제10조제2항)

V 근무성적평정 등(「승진규정」 제3장)

1. 평정의 기준(「승진규정」 제16조 및 제28조의2)

평정단위 학년도(2025. 3. 1. ~ 2026. 2. 28.)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지 제2호서식], 교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2.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지 제3호서식], 교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되, 교사의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표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3.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되, 남·여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의 예외(「승진규정」 제20조 및 제28조의5)

가.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2025. 3. 1.~2026. 2. 28.)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다만, 휴직, 직위해제 등이 된 자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여야 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2015. 1. 23.)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의 합산)"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나.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2016학년도는 12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 2개월 이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학교)에서 평정한다.

※ 원 소속기관(학교)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받아야 함 (교원정책과-3503, 2007. 7. 26.)

※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 및 타시도 파견(교환)근무하는 자도 원 소속기관(학교)에서 평정함.

라.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마.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바.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5. 평정점의 분포비율(「승진규정」제21조 및 제28조의6)

평어	평정점	분포비율(%)	비고
수	95점 이상	30	※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우	90점 이상 ~ 95점 미만	40	
미	85점 이상 ~ 90점 미만	20	
양	85점 미만	10	

※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3호)
※ 평정자와 확인자는 소속 평정 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
※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평정점 분포비율은 평정자 및 확인자, 교사 다면평가자가 각각 평정점을 부여할 때와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할 때 지켜야 할 분포비율에 해당함

6. 평정점 환산율(「승진규정」제22조 및 제28조의7)

평정대상자	평정 방법	환산율				합산점	비고
		근무성적평정점		다면평가점			
		평정자의 평정점	확인자의 평정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교 사	(만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환산)	20점 (20%)	40점 (40%)	32점 (32%)	8점 (8%)		
교감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만점)	100점	100점			100점	
	(환산)	50점 (50%)	50점 (50%)				

7.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승진규정」제40조제3항, 제4항)

가.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 평정대상자,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평정대상자인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3/100)

나. 교사로서 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 평정대상자는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합산점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 근무성적 평정점과 합산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8. 평정의 유의점

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점 및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총점 및 조정점)가 모두 평정점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각 다면평가자의 다면평가점(정성평가점)도 평정점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나. 교사의 다면평가는 「승진규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9 및 「교사 다면평가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평정단위 학년도 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조사)결과 행정 처분된 자는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구분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	
	중징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평정기준	`수', `우' 불가	`수' 불가	1회당 2.5점 감점	1회당 0.3점 감점	2회에 0.1점 감점 (추가 1회당 0.1점 추가 감점)

※ 감점 영역: 조정점에서 감점
※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은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
(예1) 2025. 5. 16. 종합감사 시 경고 1회, 주의 2회를 받은 경우 → 경고 1회, 주의 1회
(예2) 2025. 5. 16. 종합감사 시 주의 3회, 2025. 10. 10. 특별감사 시 주의 1회를 받은 경우 → 주의 2회
※ 소송 또는 소청 등을 반영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근무성적평정 반영은 원징계 학년도 또는 재징계 학년도 중 1회만 반영함
- 원징계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반영한 경우, 학년도를 달리한 재징계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
※ 중징계(강등, 정직) 처분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수', `우' 평정이 불가함
※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수' 평정이 불가함
※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항목에 대하여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함
※ 교사 **다면평가**에서는 위의 징계 또는 행정 처분된 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라. 복수 교감의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 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교육부 인사실무편람 2016. 5.)

마. 복수 교감인 학교는 교감 2인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공동으로 평정하고 날인한다.

바. 특수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는 각각 별도로 평정한다.

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 또는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승진규정」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6제2항)

아. 평정자는 평정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연수파견, 휴직 중에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현 소속교에서 평정함)

자.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교감의 해당 학년도 근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차. 평정단위 학년도(2025. 3. 1. ~ 2026. 2. 28.) 기간 중 휴·복직 등으로 소속교를 달리한 경우 전소속교와 현소속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현소속교에서 평정한다.

9.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

기관명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고등학교	일반(보건 포함)ㆍ특수ㆍ사서 ㆍ전문상담 ㆍ영양ㆍ실기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교육국(과)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기관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도교육청	장학(교육연구)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 교장 유고 시 : 교감의 평정자는 교육국(과)장,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
※ 교감 유고 시 :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

10. 근무성적 평정시 직급별, 평정요소별 평정기준은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승진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교사는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을 참고한다.

11.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승진규정」 제26조 및 제28조의9제2항)

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 5. 25.부터 시행)

※ **"특별한 사정"** :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예)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일련의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시기(2026. 3. 1. ~ 2026. 3. 31.)와 같이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인사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기

※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근무성적평정표(합산표) 상의 조정점을 의미함

나.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점 공개 범위 : 총점, 조정점, 평어, 순위

Ⅵ 연수성적평정(「승진규정」 제4장)

1.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table>
<tr><td rowspan="4">연수성적</td><td rowspan="3">교육성적</td><td rowspan="2">직무연수성적</td><td>직무연수환산성적</td></tr>
<tr><td>직무연수이수실적</td></tr>
<tr><td colspan="2">자격연수성적</td></tr>
<tr><td rowspan="2">연구실적</td><td colspan="2">연구대회입상실적</td></tr>
<tr><td colspan="2">학위취득실적</td></tr>
</table>

※ **동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제29조에 의거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2020. 2. 28.>(2020. 3. 1.시행)

<table>
<tr><td rowspan="3">**연수성적**
(15점)</td><td rowspan="3">**교육성적**</td><td rowspan="2">직무연수성적</td><td>직무연수환산성적</td></tr>
<tr><td>직무연수이수실적</td></tr>
<tr><td colspan="2">자격연수성적</td></tr>
</table>

단, 2021. 2. 28.자 이전 연구대회 입상 실적 및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을 인정한다.(「승진규정」대통령령제30495호, 2020. 2. 28., 일부개정)(2020. 3. 1.시행)

2. **교육성적평정(「승진규정」 제32조, 제33조)**

교육성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 1개와 평정기준일(2026. 2. 28.)로부터 10년 이내(특례 : 2016. 1. 1.~2026. 2. 28.)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120시간 또는 18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함)성적 및 직무연수 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연수종료일 기준 해당학년도에 반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6833호, 2015. 12. 31.)
부칙 제3조(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가. 자격연수 성적 평정

1)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승진규정」 제32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1항)

-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도)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중 하나
- 교감 승진후보자 : 교감 자격연수 성적
-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 교감 자격연수 성적

- 교장 승진후보자 : 교장 자격연수 성적
-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장학사 · 교육연구사)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 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하도록 함(단, 본인이 선택한 과목 계열로 교감 면접대상 순위명부 작성됨)(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1600(2011. 6. 7.,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 혁신과-11577(2011. 6. 13.)호.)

2)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단,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명부작성을 위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2. 2. 9.)

- 유의사항 : 교육성적이 각각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함
-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B학점 미만 D학점 이상 성적은 만점의 80%로 평정함

※ 자격연수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는 학위취득 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없음
-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둘 이상일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함
- 연수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성적으로 평정한다.
  -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
  -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
  - 제3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
- 당해 직위 또는「승진규정」[별표 1]에 의하여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졸업 또는 수료성적	평 정 점
A학점 이상	만점의 90%
B학점 이상	만점의 85%
D학점 이상	만점의 80%

나. 직무연수성적 평정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180시간, 1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함)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 이수실적(교장 · 장학관 ·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 평정 인정하지 않음
  (예: ○○교사 교수법(60시간)을 94점으로 이수(2016. 3. 1.)→○○교사 교수법(60시간)을 97점으로 이수(2018. 10. 9.) 할 경우, 후의 연수과정 인정하지 않음)
  (교직 81840-1873, 2000. 6. 13., 교직 81840-141, 2001. 1. 17.)
- 교육정보화 과정의 자격증 관련 과정 중 상위과정의 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하위과정의 자격과정을 이수 시에는 연수결과를 인정하지 않음(예 :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2003. 8. 21.)→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 취득과정 신청(2004. 2. 21.) 할 경우 후의 연수과정 인정하지 않음. 단, 하위자격증취득과정 이수 시 상위자격 취득과정 신청은 가능함(교육인적자원부「2005년도 교원연수 운영 방향」)

1) 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 대상자

-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2026. 2. 28.)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개
- 평 정 점 : 18점 만점(직무연수 3개를 대상으로 함)
- 평정방법 : $6점 \times \frac{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 \times 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함)
- 직무연수환산성적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예시> K교사의 직무연수평정(평정일 : 2026. 2. 28.)

☞ 이수실적 : 2015. 11. 24. 60시간 직무연수이수(성적 97.0점→환산성적 100점)
2016. 7. 30. 60시간 직무연수이수(성적 94.2점→환산성적 95점)
2017. 7. 30. 120시간 직무연수이수(성적 90.0점→환산성적 90점)
2022. 7. 30. 60시간 직무연수이수(성적 95.0점→환산성적 95점)

☞ 평정대상연수 : 교육성적평정 ('22년 연수성적 95점에 대한 환산성적 95점 반영)
이수실적평정 ('16년 및 '17년 이수실적 반영)
(※ 2015년 이수성적은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성적이나 평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됨)

☞ 평정점 계산 : 6점×$\frac{95}{100}$('22년 연수성적)+6점×2회('16년, '17년 실적)=17.7점

☞ K교사의 직무연수평정점 ⇒ 17.7점

2)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 ·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 대상자

- 평정대상 : 평정대상자가 당해 직위에서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의 연수이수 성적을 평정대상으로 함
- 교감 : 교감 직위 또는 교감 자격 취득 후 장학(교육연구)사 재직 시 연수실적
- 장학(교육연구)사 : 교감, 장학(교육연구)사에서의 연수실적
- 평정점 ⇒ 6점 만점
- 평정방법 ⇒ 6점×$\frac{\text{직무연수환산성적}}{\text{직무연수성적만점}}$

<참고>

◦ 교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실적 ⇒ 평정대상이 아님

◦ 장학(교육연구)사로 임용되기 전의 교육전문직원 후보자과정 연수
⇒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이전에 교사의 직위에서 이수한 실적일 경우에는 평정대상이 아님

3. 연구실적평정(「승진규정」 제34조 내지 제37조)

가.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 학위취득 연월일 기준 및 입상 연월일 기준 해당(학)년도에 반영

나.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1) **'당해 직위'** 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함

예)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입상실적
장학(교육연구)사 ⇒ 교감 · 장학사 · 교육연구사 직위에서의 입상실적
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로 전직한 자 ⇒ 초등학교 재직 시 입상실적도 포함

2) 연구대회 입상 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0%,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50%,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0%를 인정함

3)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 ·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5) 연구대회

가) 전국규모의 연구대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516호)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종전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대한체육회)
-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종전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 교육방송연구대회(한국교육방송공사)
- 디지털교육연구대회(종전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전산개발경진대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ICT활용교육연구대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명칭변경 2024. 3. 15(교육부훈령 제480호)
-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종전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진로연계교육발표대회(종전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부) : 신설 2006. 12. 4. (교육부훈령 제714호)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교육부, 통일교육원)
- 학교환경교육연구대회(교육부) : 신설 2025. 3. 18.(교육부훈령 제516호)
- 자유학기제실천사례연구대회(교육부) : 수상 인원에서 교장은 제외(신설 2016. 4. 11.(교과부훈령 제168호), 폐지 2024. 3. 15.(교과부훈령 제480호))
- 전국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교육부) : 신설 2011. 2. 25.(교과부훈령 제204호), 폐지 2016. 4. 10.(교과부훈령 제403호)
- 올해의스승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교육부) : 2005년 이전 입상자와 2008년부터 2019. 7. 17.까지 입상자(교육부훈령 제740호(2007. 12. 3.), 교과부 훈령 제26호(2008. 6. 30.), 교육부훈령 제295호(2019. 7. 18.))
- 전국교과교육연구발표대회(종전 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 : 폐지(교육부훈령 제403호(2022. 4. 8.))
-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폐지 (교육부훈령 제403호(2022. 4. 8.))

나) 시 · 도 규모 연구대회(경기도교육청 주관)

- 교육과정실천사례연구대회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발표대회
- ICT활용교육연구대회
- 중등수업실기연구대회(종전 특별연구교사제)
-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
  (현 학교운동부연구상, 종전 학교체육연구상)
- 경기도과학전람회
- 독서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자료전
- 향토문화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특기적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학급경영아이디어발표대회(초등)
- 학생상담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개별화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특수)
- 교육방송연구대회
-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종전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대회)
- 교육시책현장연구제
-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경기도기능지도연구대회
- 교수학습자료개발연구교사대회
- 경기도창안품전시회
- 교실수업개선자료전시회
- 교육용 S/W 공모전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 학교안전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창의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초등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초등)
- 초등독서논술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학습부진아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초등)
-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 기타 공인 연구대회(교육부훈령 제168호, 2016. 4. 11.에 근거한 연구대회)

다. 연구실적평정점(「승진규정」 제37조)

1)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만을 반영[1]한다.

입상 등급	전국 규모 연구대회	시 · 도 규모 연구대회
1등급	1.50 점	1.00 점
2등급	1.25 점	0.75 점
3등급	1.00 점	0.50 점

3)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교감↔장학사)에서의 석 ·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함(단,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박 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	3.00 점
	기타의 학위	1.50 점
석 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	1.50 점
	기타의 학위	1.00 점

1) 2015년 이전: 매년 1. 1.~12. 31., 2016(학)년도: 2016. 1. 1.~2017. 2. 28., 2017학년도 이후: 매년 3. 1.~다음해 2월말 기간 중 각 1회 최상위 실적만 반영(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6833호, 2015. 12. 31., 일부개정, 2016. 1. 1.시행] 부칙 제2조, 교육부교원정책과-3618(2016. 6. 29.), 경기도교육청교원정책과-14592(2016. 7. 4.), 민주시민교육과-9187(2016. 7. 5.))

- 「승진규정」제37조제3항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를 의미함
- '05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대학원 학위과정(수강기간 : 학위취득까지 기간을 의미함) 또는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되, '06. 12. 31.자 평정 시부터 적용하고, '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교원정책과-3378(2004. 12. 29.) 지침에 따라 1개의 석사학위 취득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인정(교원정책과-3364, 2006. 8. 24.)

※ 2009. 12. 31.자 평정 시부터 '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도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한다는 교육부의 지침(교원정책과-3504, 2007. 7. 26.)은 '05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개의 석사학위를 계속 인정하되, '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변경됨(교직발전기획과-1003, 2008. 5. 20.)

<참고>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 자격을 받은 후의 실적만 인정
  장학(교육연구)사 ⇒ 교감 · 장학사 · 교육연구사 직위에서의 실적만 인정
- 연구실적평정점 3점 중 학위취득 실적 평정점은 3점까지 인정됨
  (「승진규정」제37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 논문은 불인정(교정 07000-353, 1999. 4. 4)

※ 연구대회 등급의 기준

구 분	과학전람회	자료전시회	연구논문	미술전람회(국전에 한함)
1등급(최상위 입상)	특상(최고상)	특상 (특선)	우 수	부문별 우수상
2등급(차상위 입상)	우 수 상	우량 (수)	우 량	특 상
3등급(기타 입상)	장 려 상	노력 (장려)	장 려	입 선

(단,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 미술전람회(국전에 한함)는 '91. 9. 20. 이전에 입상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3) 푸른기장증에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국교총에서 발급한 등급표시 확인서를 첨부한다.

(4) 교과서 편찬위원 : '86. 4. 26.이전 경력에 대해 0.5점으로 평정

(5) 기타 유의사항

- '94. 9. 22. 이후 장학(교육연구)사로 임용되어 그 경력이 있는 교감의 연구실적 평정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구실적에 한함
- '94. 9. 21. 이전 장학(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감자격증을 받기 전에 장학(교육연구)사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평정대상에 포함

Ⅶ 가산점평정(「승진규정」 제41조)

○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공통가산점 관련) 및 제5항(선택가산점 관련)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단, 경력평정에 인정하는 휴직기간일지라도 가산점 평정에서는 그 경력기간을 제외함)

○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 공통가산점 □

1. 연구 · 시범 · 실험학교 근무 경력(1.00점 만점)(2022. 4. 1.부터 만점 축소 시행)

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시범 · 실험학교 포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

다. 1월마다 0.018점(1개월 미만은 일 0.0006점)

라. 교육부장관 지정은 2010. 2. 28.자 종료

2.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0.50점 만점)(2022. 4. 1.부터 만점 축소 시행)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3.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1.00점 만점)

가. 학점화로 인정된 임용 후 직무연수에 대하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1학점당 0.02점, 연도별 0.08점까지 인정

나.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은 당해 연도 연수 60시간까지만 인정(연수 종료일이 기준일)

다.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이수 할 수 없음 (예 : 성교육과 성상담)
(교직 81840-1873, 2000. 6. 13., 교직 81840-141, 2001. 1. 17.)

라.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음(「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7호, 2012. 6. 8., 「교육부 예규」제12호, 2014. 4. 25.)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 :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조직 및 인사제도 운영)'를 감사한 후 2013. 12. 31.자 평정부터 하나의 직무연수로 '직무연수성적 평정'과 공통가산점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중복평정 할 수 없도록 조치함(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 6.)

※ 2012. 12. 31.자 평정부터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중 대학원 학위 취득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하지 않음(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537, 2013. 1. 11.)

※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교육부예규 제30호, 2016. 12. 30.) 부칙 제2조(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함.

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1.00점 만점)

-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평정대상기간 : 매년 3. 1. ~ 다음해 2월말)
  * 교육공무원 기타 평정과 같이 '16년도 실적은 한시적으로 1년 2개월('16. 1. 1. ~'17. 2. 28) 간 평정하며, 이후 '17년부터 학년도 단위 적용 (교육부 교원정책과-6072(2016. 10. 6.))
- 2013. 1. 1.이후 실적부터 적용(승진후보자 명부적용은 2014. 1. 31.자부터임)

□ 선택가산점 □

1. 1급 정교사 또는 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부장교사) 근무경력(2.00만점)

가. 1월마다 0.027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9점)
  ◦ 1급 정교사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17635호, 2002. 6. 25.)
  ◦ 1997. 12. 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은 1.43점임

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시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인정(2005. 12월 평정 시부터 인정)
  ◦ 보직교사 임면사항을 보고하고, 학교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 인정

2.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0.75점 만점)

가. 장학(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에 한함

나. 현직 장학(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점 평정
  ◦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다. 1997. 12. 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은 0.45점임

라. 장학(교육연구, 임기제장학)사 경력이 있는 교사의 가산점 평정은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 단, 2025. 3. 1.자 이후의 임용부터 적용함.

3. 도서 · 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1.50점 만점)

◦ 가산점 부여 기준

지역 구분		월 평정점	일 평정점	비 고
'67. 4. 1.~ '85. 12. 31.	'86. 1. 1. 이후			
특지	가 지역	0.045	0.0015	○'97. 12. 31. 이전 경력 : 교육부장관 인정점과 교육감 인정점을 동시 평정(월/일 평정점×2) ○'98. 1. 1.~ 이후의 경력 : 교육부장관 인정점만 인정
갑지	나 지역	0.039	0.0013	
을지	다 지역	0.033	0.0011	
병지	라 지역	0.027	0.0009	
평정 상한점		1.50		

4. 농 · 어촌지역 및 공단지역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1.50점 만점)

가. 면 지역의 농 · 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09. 2. 28.이전 읍 · 면학교에 근무한 경력 포함)은 1월마다 0.015점(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을 가산함

나. 읍 지역의 농 · 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09. 2. 28.이전 도 · 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근무한 경력 포함)은 1월마다 0.012점(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을 가산함

다. 공단(안산의 반월공단, 시흥의 시화공단)지역 소재학교 근무경력은 공단 경계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월마다 0.009점(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을 가산함 (단,'09. 2. 28.이전의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정)

기준	대상학교		평정점 부여기준
	안산	시흥	
2km에서 3km이내	양지중,고잔고,원일중,단원중, 석수중,단원고	군자중,군자공고,함현중,함현고	'09. 2. 28 이전 :동 지역으로 평정
2km이내	관산중,별망중,원곡중,선일중, 초지중,안산해양중,원곡고, 초지고,양지고	정왕중,송운중,서해중,시흥중, 군서중,시화중,월곶중,군서고, 정왕고,서해고,시화공고	'09. 2. 28 이전 :읍 · 면 지역으로 평정

라. 농 · 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인정기준의 범위

◦ '95. 1. 1.부터 '95. 12. 31.까지는 학교가 소재한 읍 · 면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6. 1. 1.부터 '97. 12. 31.까지는 학교가 소재한 읍 이하 지역이나 인접 군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인접지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경계선이 맞닿은 경기도 내의 군지역을 말함)

◦ '98. 1. 1.부터는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함

◦ 읍 · 면 지역의 학교 중 도 · 농복합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동(洞)지역으로 변경된 학교는 도 · 농복합시로 승격된 학년도의 2월말까지 농 · 어촌지역 가산점을 부여함 (2005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부터 적용)

5.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1.50점 만점)

가. 2004. 1. 1.경력부터 평정함(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고양시의 덕이고, 대화고, 파주시의 운정고는 2012. 3. 1.부터 접경지역 가산점을 부여함

다. 2013. 3. 1.자 신규지정교(생연중, 문산중, 문산제일고, 포천고, 동두천여중, 동두천중, 보영여중, 동두천고, 보영여고, 한국문화영상고)는 2013. 3. 1.경력부터 읍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평정점을 부여함(2013. 12. 31. 평정 기준으로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라. 2014. 3. 1.자 재지정교(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고, 송내중앙중, 신흥중, 신흥고)는 2014. 2. 28.까지 기존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2014. 3. 1.부터는 읍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평정점 부여함

마. 위'다'항의 10개교,'라'항의 5개교를 제외한 기존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대상교(기관)는 2014. 2. 28.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함

6.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1.00점 만점)

가.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2004. 1. 1.부터 적용(대안학교(경기대명고) 근무경력 가산점은 2003. 1 .1.부터 적용)하되, 2006. 1. 1.이후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09. 3. 1.부터 폐지하되 '09. 2. 28.까지의 경력은 인정하며, 대안학교(경기대명고) 근무경력은 계속 인정

특성화고등학교 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명	적용기간	비고
경기대명고등학교	2003. 1. 1. ~ 현 재	
한국도예고등학교	2004. 1. 1. ~ 2009. 2. 28.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2004. 1. 1. ~ 2009. 2. 28.	
양영디지털고등학교	2006. 3. 1. ~ 2009. 2. 28.	

7.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0.60점 만점)

가. 2005. 1. 1.이후 경력부터 평정 (※ '09. 3. 1.부터 폐지하되, '09. 2. 28.까지 취득한 가산점 경력은 계속 인정)

나.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0.80점 만점)

가. 2011. 3. 1. 경력부터 평정

나. 1월마다 0.0081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7점)

다. 부여 대상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

9. 연구학교(시범 · 실험학교 포함) 근무경력(1.00점 만점, 공통가산점 포함)(2022. 4. 1.부터 만점 축소시행)

가. 도교육감 지정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지역교육장 지정 : 1월마다 0.007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5점)

- 2003. 1.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대용학교에서 교육실습생을 지도한 경력은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와 같은 가산점 부여

10. 교육감지정 선도학교 및 중심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1.00점 만점)(2022. 4. 1.부터 만점 축소시행)

가. 교육감지정 선도학교(주 5일제 선도학교, 교정 81105-187, 2003. 2. 19.), 중심학교(교과별 교수학습 도움센터 중심학교, 교정 81160-287, 2003. 3. 7.) 근무경력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선도학교 2003. 3.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중심학교 2003. 4.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다. 2006. 1. 1. 이후의 도농교류체험학습 유공교원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과학교육 선도학교, 교육과정클러스터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구분 / 항목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과학교육 선도학교	교육과정클러스터
관련 근거	교정-358 (2004. 2. 25.)	교정-3749 (2004. 7. 14.)	과산81320-1693 (2003. 9. 20.) 과학산업교육과-6599 (2004. 6. 14.) 과학산업교육과-10489 (2008. 8. 28)	학교혁신과-18020 (2011. 12. 20.)
월 평정점	0.015	0.015	0.015	0.015
일 평정점	0.0005	0.0005	0.0005	0.0005
상한점	1.00	1.00	1.00	1.00
가산점부여 인원	교당 5인 이내	교당 3인 이내	2009. 2. 28.이전 : 교당 2인 이내 2009. 3. 1.이후 : 교당 3인 이내	2017. 2. 28.이전 : 교당 5인 이내 2017. 3. 1.이후 : 1과목 개설 시 교당 4인 이내, 2과목 이상 개설 시 교당 5인 이내
대상 선발 방법	학교정책과에서 심의 후 교원인사과로 명단 제출	학교정책과에서 심의 후 교원인사과로 명단 제출	진로직업정책과에서 심의 후 교원인사과로 명단 제출	학교교육과정과에서 심의 후 교원정책과로 명단 제출(종료)
적용기준일	2004. 3. 1.	2004. 8. 1.	'03. 10. 1. ('04. 7. 1.), '09. 3. 1.	2012. 3. 1. ~ 2020. 2. 29.

마.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구분 / 항목	다문화특별학급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5093(2017. 4. 21.)
월 평정점	0.015
일 평정점	0.0005
상한점	1.00
가산점부여 인원	다문화교육 담당교감, 다문화교육 업무담당부장, 특별학급 담임교사, 특별학급 교과 담당교사, 특별학급 창의적체험활동 담당교사
대상 선발 방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결재하여 학교정책과 명단 제출
인정	2014. 3. 1. ~ 2017. 2. 28.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5093(2017. 4. 21.), 경교인-2017-16(2017. 5. 23.))

11. 담임교사,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지도교사, 전국체육대회 · 전국동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지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 지도, 영재교육 담당교사,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3.00점 만점)

가. 담임교사 등 근무경력 : 1월마다 0.021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7점)

나. 중등교원 임용 후의 모든 경력 중 2004. 12. 31.자 평정 시에는 3년만 인정하고 연차적으로 1년씩 가산하여 평정함

다.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 지도교사는 실습소당 1년에 1명 인정

라.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2003. 1. 1부터 적용) 인정범위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NTTP 연구년제 파견 제외),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전 경기도호국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예절교육원), 경기도학생체육관, 경기도공동실습소, 경기도학생야영장, 경기도학생수영장, 경기도교직원수덕원(※신설교 겸임교사 근무경력은 겸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에서 제외함)

마.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를 직접 지도한 학교운동부 지도 실적,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를 직접 지도한 실적은 업무처리과(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전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바. 영재교육담당교사 가산점은 2009. 3. 1.~2022. 2. 28.까지 실적을 평정하되, 부여대상은 영재교육을 3년 이상 담당하고, 영재교육 기초연수(60시간)를 이수하고, 현재 과학영재학교·영재교육원·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업무 담당자로서 연 30시간(교과수업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한 교사로 함(단, 영재학급당 1명 이내만 부여함)

사. 중등 다문화 특별학급 유공 교원의 선택가산점은 평정기준의 담임, 순회, 파견교사 영역으로 부여하며 다문화교육 업무담당부장, 특별학급 담임교사, 특별학급 교과 담당교사, 특별학급 창의적체험활동 담당교사에 한하여 부여함 (2017. 3. 1.부터 적용)(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5093(2017. 4. 21.), 경교인2017-16(2017. 5. 23.) 단, 다문화교육담당교감의 유공교원 선택가산점은 2017. 3. 1.-2019. 2. 28.까지만 인정(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7809(2018. 12. 24.), 경교인2019-01(2019. 1. 7.))

12. 국제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 평정(0.72점 만점)

가. 국제올림피아드(수학,물리,화학,생물,환경,정보) 한국대표로 선발된 학생의 지도 실적에 대하여 1월마다 0.021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7점)

나. 2003. 1. 1. 이후 실적부터 평정

13. 발명교실 지도교사 가산점 평정(0.72점 만점)

가. 2007. 3. 1. ~ 2022. 2. 28. 실적 평정(※ 2021학년도까지 인정)

나.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다. 부여 대상 : 60시간 이상의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받고, 발명교실 설치학교에서 발명교실 담당 주무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연 40시간 이상의 발명교실 업무담당 및 지도교사 실적이 있는 교원

라. 발명교실 설치기관별 가산점 부여 인원 : 2009. 2. 28. 이전 1명 이내, 2009. 3. 1. 이후 3명 이내

14.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0.64점 만점)

가.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경력은 1월마다 0.009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 2008. 1. 1. 이후 경력은 1월마다 0.006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점)

나. 한국 4-H 지도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008. 3. 1. 이후의 지도 경력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되, 2008. 2. 29. 이전의 해당 단체 활동 지도 실적을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으로는 인정함

다. 2007. 3. 1. 이후 예절체험학습장(도지정 연구학교에 해당)운영 유공교원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과 중복 불인정(단, 2007. 2. 28. 이전 실적은 청소년단체 가산점과 중복 허용, 초등교육과-6315, 2007. 3. 15.)

라.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지도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009. 3. 1. 이후의 지도 경력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되, 2009. 2. 28. 이전의 해당 단체 활동 지도 실적을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으로는 인정함

마. 가산점 인정 단체 현황(※ 2021학년도까지 인정)

연번	단체명	인정시기	비고
1	한국우주소년단경기지방본부	2002. 1. 1. ~ 2022. 2. 28.	
2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경기도본부	2002. 1. 1. ~ 2022. 2. 28.	
3	한국걸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4	한국걸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5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6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7	한국청소년경기도남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8	한국청소년경기도북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9	한국해양소년단경기남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10	한국해양소년단경기북부연맹	2002. 1. 1. ~ 2022. 2. 28.	2001. 2. 27. 설립
11	한국 4-H 경기도후원회	2008. 3. 1. ~ 2022. 2. 28.	
12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경기도지부	2009. 3. 1. ~ 2022. 2. 28.	

바.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일부개정, 교원인사과-4570(2013. 5. 28.))

◦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의 규정에 의한 지도교사

◦ 소속단체의 직무연수(30시간 이상의 지도교사 훈련)를 수료하고 소정의 자격증을 받은 지도자(비연수 포함)

◦ 소속단체의 가맹 등록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청소년단체활동을 지도한 자로서 해당 육성단체(학교) 조직기구에 의한 임명과 해당 청소년단체의 승인을 받은 지도교사

◦ 자격요건 다항을 충족하고 가산점부여 해당년도에 훈련과정을 이수한 지도교사

사.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

◦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수에 따른 대상인원수 : 학교별 소속단체(조직) 기준인수 규정에 의하여 학교별 청소년단체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단체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배정

청소년단체별 가입 학생 수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비 고
20명 ~ 60명 (단, 6학급이하 학교 10명 ~ 60명)	1명	
61명 ~ 100명	2명	
101명 이상	3명	

◦ 가산점 부여 별도 대상자 및 인원수

학교 외의 청소년단체별 조직기구에서 활동하는 지도교사 중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청소년단체 가입 지도교사 수의 3% 이내

아.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의 활동 인정기준

◦ 소속학교 및 해당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자

(단, 1일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월 8시간까지 인정하며,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별 행사 및 도 단위(중앙 포함)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석한 실적이 있는 자

자. 가산점 내용 : 지도활동 2년차부터 1월마다 0.006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점)

(※ 2007. 12. 31.이전 경력까지는 1월마다 0.009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

차. 제출서류 : 청소년단체장 발행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 부여 확인서

15.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중 현 근무교와 다른 급 학교교원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인정하지 아니함(단, '98. 1. 1. 이후 취득한 가산점은 전직된 경우에도 인정함)

16. 타 시 · 도에서 전입한 교사 중 타 시 · 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경기도 가산점 평정 항목과 부여 취지가 일치하는 항목만 경기도 평정점에 준하여 인정함(타 시 · 도에서 전입한 경우 해당 가산점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17. 가산점 초과 제한의 범위

가. 도서 · 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경력, 농 · 어촌, 접경, 공단지역 학교 근무경력,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 고등학교 근무경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1.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지정 연구학교(시범 · 실험학교 포함)근무경력 가산점과 교육감 지정 선도학교, 중심학교 및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은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도 · 농교류체험학습 유공교원 가산점은 2006. 1. 1. 이후 경력은 불인정)

다.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근무경력,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교사 근무경력과 전국체육대회 · 전국동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지도경력,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 지도경력, 영재교육 담당교사,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국제올림피아드(수학, 물리, 화학, 생물, 환경, 정보)에 한국대표로 선발된 학생의 지도교사 경력(2003. 1. 1. 이후), 발명교실(2009. 3. 1. 이후),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담임경력 가산점과 동일하게 평정하되, 담임가산점과 합산하여 3.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1급 정교사 또는 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은 합산하여 2.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8.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 평정 금지

가. 연구학교 근무경력 중복(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도 · 농교류체험,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근무경력 포함)

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중복

다. 보직교사, 학급담임교사,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국제올림피아드, 발명교실(2009. 3. 1. ~ 2022. 2. 28.), 영재교육 담당교사, 공동실습소 운영교사 경력, 전국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표 직접지도경력,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교사 경력(2013. 3. 1. ~ 2022. 2. 28., 2013. 2. 28. 이전 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타 경력과 중복 평정 인정), 다문화 특별학급 유공 교원 중 어느 두 가지의 중복 (경교인2013-7.(2013. 1. 25.))

라. 도서 · 벽지 · 접적지역 학교, 접경지역 학교, 농 · 어촌지역 학교, 공단지역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중 어느 두 가지의 중복

마. 2009. 2. 28.이전의 발명교실 지도교사 실적과 도서 · 벽지 · 접적지역 학교, 접경지역 학교, 농 · 어촌지역 학교, 공단지역 학교 등 지역 가산점 부여학교 근무기간의 중복

바. 예절체험학습장 운영 유공교원 가산점(도지정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은 2006학년도 실적부터 인정하나 2007학년도부터는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과 중복 불인정

(단, 2006학년도 실적은 청소년단체가산점과 중복 허용, 초등교육과-6315, 2007. 3. 15.)

사. 동일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5960 (2013. 11. 14.))

- 2014. 1. 1.부터 동일 기간 중에 2개 이상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동일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사례 :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
- 2013. 12. 31.까지 이수한 연수의 중복연수 평정기준
  - 학기 중 기간 중복 : (원칙)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기간 중복이 1/4 초과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
  - 방학 중 기간 중복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
  - 정책연수 중복 허용

    (예) 2013 학생인권 상담 및 사이버 연수, 창의지성교육의 이해 원격 직무연수(사이버),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 대처방안 원격직무연수

표 1

도서 · 벽지 및 접적지역 지정 기관(학교) 대상학교 현황(「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2021. 4. 13.))

구분	기관(학교)명	기 간	급지
벽지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01. 1. 1 ~ 현 재	라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01. 1. 1 ~ 05. 2. 28	나
		05. 3. 1 ~ 현 재	다
	대부중·고	67. 4. 1 ~ 73. 2. 28	다
		73. 3. 1 ~ 83. 11. 30	라
		83. 12. 1 ~ 00. 12. 31	다
		01. 1. 1 ~ 16. 6. 16	라
	상품중	67. 4. 1 ~ 89. 8. 31	라
접적	문산북중·문산고	86. 1. 1 ~ 00. 12. 31	다
		01. 1. 1 ~ 11. 2. 28	나
	교하중	73. 3. 1 ~ 85. 12. 31	라
		86. 1. 1 ~ 00. 12. 31	다
		01. 1. 1 ~ 07. 2. 28	나
		07. 3. 1 ~ 11. 2. 28	다
	탄현중	67. 4. 1 ~ 68. 4. 30	라
		68. 5. 1 ~ 78. 6. 20	다
		78. 6. 21 ~ 현 재	나
	파평중	67. 4. 1 ~ 85. 12. 31	라
		86. 1. 1 ~ 현 재	다
	어유중	80. 10. 14 ~ 현 재	라
	지산중	03. 9. 1 ~ 11. 2. 28	다
	두일중	07. 3. 1 ~ 11. 2. 28	나
	문산동중	86. 1. 1 ~ 11. 2. 28	다
	적성융합고 (경기세무고, 적성종고)	67. 4. 1 ~ 85. 12. 31	라
		86. 1. 1 ~ 현 재	다
	문산중·제일고	05. 3. 1 ~ 11. 2. 28	라
	교하고	07. 3. 1 ~ 11. 2. 28	다
	파주중	86. 1. 1 ~ 00. 12. 31	라
		01. 1. 1 ~ 05. 2. 28	(해제)
		05. 3. 1 ~ 현 재	라
	세경고(파주공고)	86. 1. 1 ~ 현 재	라
	문산(여중)수억중·여고	86. 1. 1 ~ 00. 12. 31	라
		01. 1. 1 ~ 11. 2. 28	다
	파주(여중)광일중·여고	86. 1. 1 ~ 11. 2. 28	라
	삼광중·고	67. 4. 1 ~ 85. 12. 31	라
		86. 1. 1 ~ 16. 6. 16	다
	파주고	86. 1. 1 ~ 00. 12. 31	다
		01. 1. 1 ~ 11. 2. 28	나
	백학중	67. 4. 1 ~ 현 재	나
	대광중	67. 4. 1 ~ 현 재	다
	군남중	76. 4. 1 ~ 85. 12. 31	라
		86. 1. 1 ~ 현 재	다
	연천중·고	82. 3. 31 ~ 85. 12. 31	라
		86. 1. 1 ~ 00. 12. 31	(해제)
		01. 1. 1 ~ 16. 6. 16	라
	고양송산중	07. 3. 1 ~ 11. 2. 28	라

구분	기관(학교)명	기 간	급지
접적	백송고(구, 고양여고)	07. 3. 1 ~ 11. 2. 28	라
	고양예술고	07. 3. 1 ~ 11. 2. 28	라
	관인중·고	67. 4. 1 ~ 73. 2. 28	라
		73. 3. 1 ~ 85. 12. 31	다
	하성중·고	73. 3. 1 ~ 85. 12. 31	라
		86. 1. 1 ~ 11. 2. 28	나
		11. 3. 1~ 현 재	라
	분진중	86. 1. 1 ~ 11. 2. 28	나
		11. 3. 1~ 현 재	라
	양곡중·고	01. 1. 1 ~ 11. 2. 28	라
	통진중·고	86. 1. 1 ~ 11. 2. 28	다
	김포외국어고	07. 3. 1 ~ 11. 2. 28	나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호국교육원)	01. 1. 1 ~ 25. 7. 17.	라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	01. 1. 1 ~ 현 재	나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	01. 1. 1 ~ 현 재	다
도서 (인천)	용유중	67. 4. 1 ~ 89. 8. 31	다
		89. 9. 1 ~ 00. 12. 31	나
		01. 1. 1 ~ 05. 2. 28	다
		05. 3. 1 ~ 11. 2. 28	라
	덕적중·고	67. 4. 1 ~ 00. 12. 31	나
		01. 1. 1 ~ 현 재	다
	영흥중	67. 4. 1 ~ 89. 8. 31	다
		89. 9. 1 ~ 00. 12. 31	나
		01. 1. 1 ~ 11. 2. 28	다
		11. 3. 1 ~ 현 재	라
	북도중	67. 4. 1 ~ 00. 12. 31	다
	영종중·상고	67. 4. 1 ~ 11. 2. 28	라
접적 (인천)	백령중·고 (백령종고)	67. 4. 1 ~ 현 재	가
	연평중·고	67. 4. 1 ~ 현 재	가
	대청중·고	67. 4. 1 ~ 현 재	가
	대청중 소청분교	67. 4. 1 ~ 98. 2. 28	가
	서도중 볼음분교	67. 4. 1 ~ 70. 6. 30	다
		70. 7. 1 ~ 73. 2. 28	나
		73. 3. 1 ~ 85. 12. 31	다
		86. 1. 1 ~ 18. 12. 31	나
	서도중·고	67. 4. 1 ~ 70. 6. 30	다
		70. 7. 1 ~ 73. 2. 28	나
		73. 3. 1 ~ 82. 9. 30	라
		82. 10. 1 ~ 85. 12. 31	다
		86. 1. 1 ~ 현 재	나
	교동중·고	67. 4. 1 ~ 70. 6. 30	다
		70. 7. 1 ~ 73. 2. 28	나
		73. 3. 1 ~ 85. 12. 31	다
		86. 1. 1 ~ 현 재	나
	강서중	86. 1. 1 ~ 현 재	나
	강서중양사분교	86. 1. 1 ~ 92. 2. 29	나

※ 1985. 12. 31. 이전의 급지명 변경 내역 : 특⇒가, 갑⇒나, 을⇒다, 병⇒라

표 2

농·어촌 및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 현황 (2026. 2. 28.자 현재)

지역	대상기관(학교)	평정기간	급지 09. 2. 28 이전	급지 09. 3. 1 이후
가평	가평중,가평고	95. 1. 1 ~ 현 재	읍·면	읍
	가평북중,설악중,조종중,청평중 설악고,조종고, 청평고(구 청평공고)	95. 1. 1 ~ 현 재	읍·면	면
고양	고양중,덕양중,고양고	04. 3. 1 ~ 09. 2. 28	동	×
	목암중	05. 3. 1 ~ 09. 2. 28	동	×
광명	소하중	05. 3. 1 ~ 09. 2. 28	동	×
광주하남	경안중,광주중앙고	95. 1. 1 ~ 01. 3. 20	읍·면	×
	광주고	01. 3. 1 ~ 01. 3. 20	읍·면	×
	경안중,광주고,광주중앙고	02. 1. 1 ~ 05. 2. 28	읍·면	×
		05. 3. 1 ~ 09. 2. 28	동	×
	광주중	95. 1. 1 ~ 01. 3. 20	읍·면	×
		03. 1. 1 ~ 09. 2. 28	동	×
	광주광남중	06. 3. 1 ~ 09. 2. 28	동	×
	탄벌중	05. 3. 1 ~ 09. 2. 28	동	×
	광수중,광일중	95. 1. 1 ~ 현 재	읍·면	면
	곤지암중,곤지암고	95. 1. 1 ~ 현 재	읍·면	읍
	초월중	12. 3. 1 ~ 현 재	×	읍
	초월고	14. 3. 1 ~ 현 재	×	읍
	신현중	16. 11. 1 ~ 2023. 2. 28.	×	읍
	매양중	17. 3. 1 ~ 2023. 2. 28.	×	읍
구리남양주	금곡중,장내중,평내중 호평중	05. 3. 1 ~ 09. 2. 28	동	×
	덕소중,화광중	95. 1. 1 ~ 현 재	읍·면	읍
	마석중	98. 3. 1 ~ 현 재	읍·면	읍
	별내중	99. 12. 1 ~ 현 재	읍·면	면
	송라중,진접중	04. 3. 1 ~ 현 재	읍·면	읍
	양오중	06. 3. 1 ~ 현 재	읍·면	읍
	어람중	07. 3. 1 ~ 현 재	읍·면	읍
	오남중,남양주고(구 남양주공고)	97. 3. 1 ~ 현 재	읍·면	읍
	와부중	02. 3. 1 ~ 현 재	읍·면	읍
	진건중	95. 3. 1 ~ 현 재	읍·면	읍
	퇴계원중,퇴계원고	95. 1. 1 ~ 2020. 2. 29	읍·면	면
		20. 3. 1 ~ 현 재		읍
	광릉중,예봉중,와부고	08. 3. 1 ~ 현 재	읍·면	읍
	판곡중	07. 3. 1 ~ 09. 2. 28	동	×
	진건고	01. 3. 1 ~ 현 재	읍·면	읍
	청학고	00. 3. 1 ~ 현 재	읍·면	면
	평내고,호평고	06. 3. 1 ~ 09. 2. 28	동	×
	오남고	09. 3. 1 ~ 현 재	×	읍
	풍양중	09. 9. 1 ~ 현 재	×	읍
	주곡중,진접고	10. 3. 1 ~ 현 재	×	읍
	마석고	11. 3. 1 ~ 현 재	×	읍
	천마중	15. 3. 1 ~ 현 재	×	읍
부천	덕산중,덕산고	05. 3. 1 ~ 09. 2. 28	동	×
	수주중	08. 3. 1 ~ 09. 2. 28	동	×
김포	감정중	06. 3. 1 ~ 09. 2. 28	동	×
	고촌중	01. 3. 1 ~ 10. 2. 28	읍·면	면
		10. 3. 1 ~ 현 재	-	읍
	김포여중,김포중,김포고 김포제일고	95. 1. 1 ~ 98. 3. 31	읍·면	×
	금파중,김포여중,김포중,풍무중 김포고, 김포제일고, 사우고	04. 1. 1 ~ 09. 2. 28	동	×
	대곶중	95. 1. 1 ~ 03. 12. 31	읍·면	×
		14. 3. 1 ~ 현 재		면
	장기중	02. 1. 1 ~ 08. 2. 29	읍·면	×
	장기중,고창중	08. 3. 1 ~ 09. 2. 28	동	×
	신곡중	08. 3. 1 ~ 10. 2. 28	읍·면	면
		10. 3. 1 ~ 현 재	-	읍
	풍무고	05. 3. 1 ~ 09. 2. 28	동	×
	신양중,마송중,마송고	14. 3. 1 ~ 현 재		읍
	고촌고	2020. 3. 1 ~ 현 재		읍
	향산중	2020. 9. 1 ~ 현 재		읍

지역	대상기관(학교)	평정기간	급지 09. 2. 28 이전	급지 09. 3. 1 이후
동두천양주	고암중,덕계중	01. 3. 1 ~ 03. 10. 18	읍·면	×
	덕정중	95. 1. 1 ~ 03. 10. 18	읍·면	×
	덕정고	99. 3. 1 ~ 03. 10. 18	읍·면	×
	고암중,덕계중,덕정중 덕정고	04. 1. 1 ~ 09. 2. 28	동	×
	덕현중,회천중	06. 3. 1 ~ 09. 2. 28	동	×
	삼숭중	05. 9. 1 ~ 09. 2. 28	동	×
	생연중,덕계고	04. 3. 1 ~ 09. 2. 28	동	×
	양주백석중	02. 3. 1 ~ 03. 12. 31	읍·면	×
		14. 3. 1 ~ 현 재		읍
	송내중앙중,삼숭고	08. 3. 1 ~ 09. 2. 28	동	×
	양주백석고	14. 3. 1 ~ 현 재		읍
시흥	군서중	04. 3. 1 ~ '21. 2. 28	읍·면	공단
	군자중,함현중,함현고 군자디지털과고(구, 군자공고)	02. 1. 1 ~ 03. 12. 31	읍·면	×
		04. 1. 1 ~ 현 재	동	공단
	논곡중	06. 3. 1 ~ 09. 2. 28	동	×
	서해중,송운중,시흥중,정왕중 서해고,정왕고, 경기스마트고(시화공고)	02. 1. 1 ~ 현 재	읍·면	공단
	시화중,월곶중,군서고	06. 3. 1 ~ 현 재	읍·면	공단
	연성중,장곡중,장곡고	03. 1. 1 ~ 09. 2. 28	동	×
	응곡중,시흥매화중	08. 3. 1 ~ 09. 2. 28	동	×
	시흥능곡중	08. 9. 1 ~ 09. 2. 28	동	×
	시흥고	03. 3. 1 ~ 09. 2. 28	동	×
	배곧중	15. 8. 18 ~ 현 재	×	공단
	배곧고	16. 3. 1 ~ 현 재	×	공단
	배곧해솔중	19. 9. 1 ~ 현 재	×	공단
	군서미래국제학교	'21. 3. 1 ~ 현 재	×	공단
	시화나래중	23. 3. 1 ~ 현 재	×	공단
	배곧라라중	24. 3. 1 ~ 현 재	×	공단
안산	관산중,별망중,원곡중 원곡고,초지고	03. 1. 1 ~ 현 재	읍·면	공단
	단원중,석수중	06. 3. 1 ~ 현 재	동	공단
	원일중	03. 1. 1 ~ 03. 12. 31	읍·면	×
	양지중,원일중,고잔고	04. 1. 1 ~ 현 재	동	공단
	초지중	04. 3. 1 ~ 현 재	읍·면	공단
	선일중,양지고	04. 1. 1 ~ 현 재	읍·면	공단
	안산해양중	06. 3. 1 ~ 현 재	읍·면	공단
	단원고	05. 3. 1 ~ 14. 4. 15	동	공단
		14. 4. 16 ~ 17. 3. 28		면
		17. 3. 29 ~ 현 재		공단
	신길중,신길고,선부고	09. 3. 1 ~ 현 재	×	공단
	대부중,대부고	16. 6. 17 ~ 현 재	×	읍
	안산해솔중	'21. 3. 1 ~ 현 재	×	공단
안성	공도중	95. 1. 1 ~ 현 재	읍·면	읍
	서운중,양성중,일죽중 죽산중,일죽고,죽산고	95. 1. 1 ~ 현 재	읍·면	면
	비룡중	06. 3. 1 ~ 09. 2. 28	동	×
	안성여중,안성중,안성고	95. 1. 1 ~ 98. 3. 31	읍·면	×
		04. 1. 1 ~ 09. 2. 28	동	×
	안성여고	95. 1. 1 ~ 98. 3. 31	읍·면	×
		03. 1. 1 ~ 09. 2. 28	동	×
	양진중	08. 3. 1 ~ 현 재	읍·면	읍
	경기창조고	10. 3. 1 ~ 현 재	×	읍
	만정중	11. 3. 1 ~ 현 재	×	읍
	신나는학교	23. 3. 1. ~ 현 재	×	면
양평	양평중,양평고	95. 1. 1 ~ 현 재	읍·면	읍
	강하중,국수중,양수중,지평중 청운중,청운고 ,양평전자과학고(양평공고),지평고	95. 1. 1 ~ 현 재	읍·면	면
여주	세종중	06. 3. 1 ~ 14. 2. 28	읍·면	읍
	강천중,상품중,이포중,점동중 흥천중,이포고,점동고	95. 1. 1 ~ 현 재	읍·면	면
	여주여중, 세종고(여주여고)	95. 1. 1 ~ 14. 2. 28	읍·면	읍
	여주중	95. 1. 1 ~ 11. 2. 28	읍·면	읍
		11. 3. 1 ~ 현 재	-	면
	여주자영농고	95. 1. 1 ~ 14. 1. 12	읍·면	읍
		14. 1. 13 ~ 현 재		면

지역	대상기관(학교)	평정기간	급지 09. 2. 28 이전	급지 09. 3. 1 이후
연천	연천중,연천고	95. 1. 1 ~ 00. 12. 31	읍·면	×
		16. 6. 17 ~ 현 재	×	읍
	전곡중,전곡고	95. 1. 1 ~ 03. 12. 31	읍·면	×
		14. 3. 1 ~ 현 재		읍
	청산중	95. 1. 1 ~ 03. 12. 31	읍·면	×
		14. 3. 1 ~ 현 재		면
용인	고림중,보라중	07. 3. 1 ~ 09. 2. 28	동	×
	구성중	01. 3. 1 ~ 06. 2. 28	읍·면	×
	기흥중,신갈중,수지고 (※ 99. 12. 31.현재 근무자는 01. 2. 28까지 인정)	95. 1. 1 ~ 99. 12. 31	읍·면	×
	나곡중,상갈중	03. 1. 1 ~ 09. 2. 28	동	×
	대지중 (※ 99. 12. 31.현재 근무자는 01. 2. 28까지 인정)	99. 3. 1 ~ 99. 12. 31	읍·면	×
	수지중 (※ 99. 12. 31.현재 근무자는 01. 2. 28까지 인정)	95. 3. 1 ~ 99. 12. 31	읍·면	×
	모현중,,송전중	95. 1. 1 ~ 18. 2. 28	읍·면	면
	용인바이오고	18. 3. 1 ~ 현 재	×	읍
	백암중, 백암고, 원삼중	95. 1. 1 ~ 현 재	읍·면	면
	포곡중	95. 1. 1 ~ 현 재	읍·면	읍
	소현중,구성고	04. 3. 1 ~ 06. 2. 28	읍·면	×
	소현중	06. 3. 1 ~ 07. 2. 28	동	×
	언동중,용인신촌중,보정고	05. 3. 1 ~ 06. 2. 28	읍·면	×
	영문중	02. 3. 1 ~ 현 재	읍·면	읍
	용천중	06. 3. 1 ~ 18. 2. 28	읍·면	면
		18. 3. 1 ~ 현 재	×	읍
	용신중	04. 3. 1 ~ 09. 2. 28	동	×
	용인중,용인고	95. 1. 1 ~ 96. 2. 29	읍·면	×
		04. 1. 1 ~ 09. 2.28	동	×
	이현중	02. 3. 1 ~ 06. 2. 28	읍·면	×
	포곡고	09. 3. 1 ~ 현 재	×	읍
	용인삼계고	15. 3. 1 ~ 현 재	×	읍
	한숲중	18. 9. 1 ~ '21. 2. 28	×	면
		'21. 3. 1 ~ 현 재	×	읍
	처인고	'21. 3. 1 ~ 현 재	×	읍
	처인중, 도현중	25. 3. 1. ~ 현 재	×	읍
이천	이천경남중,대월중,마장중 모가중,백사중,율면중 마장고,이천세무고(이천경남고),율면고	95. 1. 1 ~ 현 재	읍·면	면
	장호원중,장호원고	95. 1. 1 ~ 현 재	읍·면	읍
	부발중	02. 3. 1 ~ 현 재	읍·면	읍
	효양중	98. 3. 1 ~ 현 재	읍·면	읍
	이천중,설봉중,이천송정중	95. 1. 1 ~ 96. 2. 29	읍·면	×
	이천고,이천제일고	03. 1. 1 ~ 09. 2. 28	동	×
	증포중	06. 3. 1 ~ 09. 2. 28	동	×
	효양고	04. 3. 1 ~ 현 재	읍·면	읍
	한국도예고	02. 3. 1 ~ 현 재	읍·면	면
	이천사동중	10. 3. 1 ~ 현 재	×	면
	경기새울학교	13. 6. 1 ~ 현 재	×	면
파주	금릉중,금촌고	05. 3. 1 ~ 09. 2. 28	동	×
	금촌중	06. 3. 1 ~ 09. 2. 28	동	×
	문산중,문산제일고	95. 1. 1 ~ 96. 2. 29	읍·면	×
		02. 1. 1 ~ 05. 2. 28	읍·면	×
	법원여중	95. 1. 1 ~ 03. 12. 31	읍·면	×
		14. 3. 1 ~ 현 재		읍
	봉일천중	95. 1. 1 ~ 현 재	읍·면	읍
	지산중	02. 3. 1 ~ 03. 8. 31	읍·면	×
	봉일천고	07. 3. 1 ~ 현 재	읍·면	읍
	문산북중	14. 3. 1 ~ 현 재		읍
	선유중	14. 3. 1 ~ 현 재		읍
	문산고	14. 3. 1 ~ 현 재		읍

지역	대상기관(학교)	평정기간	급지 09. 2. 28 이전	급지 09. 3. 1 이후
평택	안일중, 경기물류고	95. 1. 1 ~ 현 재	읍·면	읍
	청북중	95. 1. 1 ~ 17. 2. 28	읍·면	면
		17. 3. 1 ~ 현 재	×	읍
	포승중	95. 1. 1 ~ 현 재	읍·면	읍
	현화중	00. 3. 1 ~ 현 재	읍·면	읍
	도곡중	07. 3. 1 ~ 현 재	읍·면	읍
	현화고	07. 3. 1 ~ 현 재	읍·면	읍
	청옥중	12. 3. 1 ~ 17. 2. 28	×	면
		17. 3. 1 ~ 현 재	×	읍
	청북고	15. 3. 1 ~ 17. 2. 28	×	면
		17. 3. 1 ~ 현 재	×	읍
	평택화양중	25. 9. 1. ~ 현 재	×	면
포천	갈월중	01. 3. 1 ~ 현 재	읍·면	읍
	대경중	05. 3. 1 ~ 현 재	읍·면	읍
	송우중	06. 3. 1 ~ 현 재	읍·면	읍
	경북중,내촌중,일동중 일동고,포천일고	95. 1. 1 ~ 현 재	읍·면	면
	관인중,삼성중,영북중 영중중,이동중,포천여중 포천중,관인고,영북(종)고	95. 1. 1 ~ 03. 12. 31	읍·면	×
		14. 3. 1 ~ 현 재		면
	송우고	07. 3. 1 ~ 현 재	읍·면	읍
	포천고	95. 1. 1 ~ 03. 10. 18	읍·면	×
		04. 1. 1 ~ 09. 2. 28	동	×
화성오산	양감중,정남중	95. 1. 1 ~ 현 재	읍·면	면
	동탄중	95. 1. 1 ~ 10. 2. 28	읍·면	면
	발안중,발안바이오과학고	95. 1. 1 ~ 현 재	읍·면	읍
	기안중	05. 3. 1 ~ 06. 2. 28	읍·면	×
		06. 3. 1 ~ 07. 2. 28	동	×
	남양중,남양고	95. 1. 1 ~ 01. 3. 20	읍·면	×
		02. 1. 1 ~ 07. 2. 28	읍·면	×
		07. 3. 1 ~ 09. 2. 28	동	×
		14. 10. 20 ~ 현 재		읍
	대호중	06. 1. 1 ~ 09. 2. 28	동	×
	동학중	02. 3. 1 ~ 06. 2. 28	읍·면	×
	매홀중,성호중,성호고	05. 3. 1 ~ 09. 2. 28	동	×
	병점중	05. 3. 1 ~ 06. 2. 28	읍·면	×
	봉담중	00. 3. 1 ~ 현 재	읍·면	읍
	안화중,병점고	04. 3. 1 ~ 06. 2. 28	읍·면	×
	진안중	01. 3. 1 ~ 06. 2. 28	읍·면	×
	화성동화중	07. 10. 17 ~ 현 재	읍·면	읍
	와우중,봉담고	08. 3. 1 ~ 현 재	읍·면	읍
	향남중	08. 9. 1 ~ 현 재	읍·면	읍
	향남고	09. 3. 1 ~ 현 재	×	읍
	향일고	12. 3. 1 ~ 현 재	×	읍
	하길중	15. 3. 1 ~ 현 재	×	읍
	방교중	16. 9. 1 ~ 18. 2. 28	×	면
	하길고	16. 3. 1 ~ 현 재	×	읍
	창의고(신리고)	17. 3. 1 ~ 18. 2. 28	×	면
	신백중	'20. 3. 1 ~ 현 재	×	읍
	수현중	'21. 3. 1 ~ 현 재	×	읍
	와우고	'23. 3. 1. ~ 현 재	×	읍
	화담중, 화담고, 화성상신중	25. 3. 1. ~ 현 재	×	읍
	청연중	25. 3. 1. ~ 현 재	×	면

※ 동두천시의 동두천중, 동두천여중, 보영여중, 동두천고, 동두천정산고, 보영여고는 2005. 3. 1 ~ 2009. 2. 28까지 도·농복합시의 동지역 가산점을 부여함.

※ 안산 대부도 지역의'교육감지정 교육특별지역'재지정은 대부지역 학교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해지 전까지 지정한다.(경교인2022-7(2022. 2. 22.))

표 3

접경지역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 현황(2026. 2. 28.자 현재)

설립	소재지	기관(학교)명	기 간
공립	동두천시	동두천중앙중	04. 1. 1 ~ 09. 2. 28
		동두천중앙고	04. 1. 1 ~ 현 재
		동두천외고	05. 3. 1 ~ 현 재
		송내중앙중	09. 3. 1 ~ 현 재
		생연중	13. 3. 1 ~ 현 재
	양주시	양주백석중	04. 1. 1 ~ 14. 2. 28
		양주백석고	06. 3. 1 ~ 14. 2. 28
	고양시	대송중	04. 3. 1 ~ 14. 2. 28
		고양송산중	06. 3. 1 ~ 07. 2. 28
			11. 3. 1 ~ 14. 2. 28
		가좌고	08. 3. 1 ~ 14. 2. 28
		덕이중	11. 3. 1 ~ 14. 2. 28
		대화고	12. 3. 1 ~ 14. 2. 28
		덕이고	12. 3. 1 ~ 14. 2. 28
	파주시	법원여중	04. 1. 1 ~ 14. 2. 28
		두일중	06. 3. 1 ~ 07. 2. 28
			11. 3. 1 ~ 14. 2. 28
		교하중	11. 3. 1 ~ 14. 2. 28
		한빛중	09. 9. 1 ~ 14. 2. 28
		해솔중	10. 3. 1 ~ 14. 2. 28
		동패중	10. 3. 1 ~ 14. 2. 28
		문산북중	11. 3. 1 ~ 14. 2. 28
		선유중	11. 9. 1 ~ 14. 2. 28
		지산중	11. 3. 1 ~ 14. 2. 28
		한가람중	11. 3. 1 ~ 14. 2. 28
		문산고	11. 3. 1 ~ 14. 2. 28
		동패고	11. 3. 1 ~ 14. 2. 28
		교하고	06. 3. 1 ~ 07. 2. 28
			11. 3. 1 ~ 14. 2. 28
		운정고	12. 3. 1 ~ 14. 2. 28
		문산중	13. 3. 1 ~ 현 재
		문산제일고	13. 3. 1 ~ 현 재
	연천군	전곡중	04. 1. 1 ~ 14. 2. 28
		청산중	04. 1. 1 ~ 14. 2. 28
		전곡고	04. 1. 1 ~ 14. 2. 28
	포천시	관인중	04. 1. 1 ~ 14. 2. 28
		영북중	04. 1. 1 ~ 14. 2. 28
		영중중	04. 1. 1 ~ 14. 2. 28
		삼성중	04. 1. 1 ~ 14. 2. 28
		포천중	04. 1. 1 ~ 14. 2. 28
		이동중	04. 1. 1 ~ 14. 2. 28
		포천여중	04. 1. 1 ~ 14. 2. 28
		관인고	04. 1. 1 ~ 14. 2. 28
		영북고	04. 1. 1 ~ 14. 2. 28
		포천고	13. 3. 1 ~ 현 재
		평화교육연수원 (예절교육연수원)	09. 3. 1 ~ 14. 2. 28
	김포시	대곶중	04. 1. 1 ~ 14. 2. 28
		신양중	10. 3. 1 ~ 14. 2. 28
		마송중	10. 3. 1 ~ 14. 2. 28
		마송고	10. 3. 1 ~ 14. 2. 28

설립	소재지	기관(학교)명	기 간
사립	동두천시	신흥중	04. 1. 1 ~ 현 재
		신흥고	04. 1. 1 ~ 현 재
		동두천여중	13. 3. 1 ~ 현 재
		동두천중	13. 3. 1 ~ 현 재
		보영여중	13. 3. 1 ~ 현 재
		동두천고	13. 3. 1 ~ 현 재
		보영여고	13. 3. 1 ~ 현 재
		한국문화영상고	13. 3. 1 ~ 현 재
	양주시	남문중	04. 1. 1 ~ 14. 2. 28
		조양중	04. 1. 1 ~ 14. 2. 28
		한국외식과학고 (남문고)	04. 1. 1 ~ 14. 2. 28
	파주시	율곡중	04. 1. 1 ~ 14. 2. 28
		광탄중	04. 1. 1 ~ 14. 2. 28
		파주중	04. 1. 1 ~ 05. 2. 28
		문산동중	11. 3. 1 ~ 14. 2. 28
		율곡고	04. 1. 1 ~ 14. 2. 28
		광탄고	04. 1. 1 ~ 14. 2. 28
		파주광일중	11. 3. 1 ~ 14. 2. 28
		파주고	11. 3. 1 ~ 14. 2. 28
		파주여고	11. 3. 1 ~ 14. 2. 28
		문산수억중·문산여고	11. 3. 1 ~ 14. 2. 28
	김포시	김포외고	06. 3. 1 ~ 07. 2. 28
			11. 3. 1 ~ 14. 2. 28
		양곡중·고	11. 3. 1 ~ 14. 2. 28
		통진중·고	11. 3. 1 ~ 14. 2. 28
	고양시	고양예술고	11. 3. 1 ~ 14. 2. 28
		고양여고	11. 3. 1 ~ 14. 2. 28

표 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준(중등) <2026. 2. 28. 평정 시 기준>

	순	평정 내용	월평정점	일평정점	상한점	비고
공통가산점	1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	0.018	0.0006	1.00	※ 2022. 4. 1.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
	2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0.015	0.0005	0.50	※ 2022. 4. 1.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
	3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연 0.08	-	1.00	
	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	연 0.1	-	1.00	※ 2016. 12. 30.부터 시행
		공통가산점 계	-	-	3.50	

	순	평정 내용	구분	월평정점	일평정점	상한점	합산 상한점	비고
선택가산점	1	보직교사	-	0.027	0.0009	2.00 (1.43)	2.00	( )안은 `97. 12. 31. 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임
	2	교육전문직원	-	0.012	0.0004	0.75 (0.45)		
	3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가지역	0.045	0.0015	1.50	1.50	*공단:`09. 3. 1. 이후 경력부터 적용 (`09. 2. 28. 이전 경력은 읍면/동 가산점 적용) 종전:`04. 1. 1. 이후 적용된 상한점 차등 규정 폐지
			나지역	0.039	0.0013			
			다지역	0.033	0.0011			
			라지역	0.027	0.0009			
	4	농어촌, 공단 및 접경지역	면(읍면)	0.015	0.0005	1.50		
			읍(동)	0.012	0.0004			
			*공단	0.009	0.0003			
			접경	0.015	0.0005			
	5	특성화고(대안학교)	-	0.015	0.0005	1.00		
	6	고등학교 근무	-	0.012	0.0004	0.60		
	7	산업수요맞춤형고교 근무	-	0.0081	0.00027	0.80		
	8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및 선도(중심)학교	도지정	0.015	0.0005	-	(1.00)	( )안은 공통가산점 포함 ※ 2022. 4. 1.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
			시군지정	0.0075	0.00025			
	9	담임, 순회, 파견, 겸임, 공동실습소운영, 소체, 체전, 기능대회, 영재교육, 다문화특별학급담당교사	-	0.021	0.0007	3.00	3.00	
	10	국제올림피아드 지도	-	0.021	0.0007	0.72		
	11	발명교실 지도	-	0.012	0.0004	0.72		
	12	청소년 단체 지도	-	0.006 (0.009)	0.0002 (0.0003)	0.64		( )안은 `07. 12. 31.이전 경력에 대한 평정점임
		선택가산점 계		-	-	-	7.50 (6.50)	( )안은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임
		합계					10.00	

※ 위 평정 기준은 각 평정 시점 도달 이전에 관련 법령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Ⅷ 평정서류 제출방법

1. 자격 및 승진 평정 시 항목별 유의 사항

항목	평 정 요 령	상한점	유 의 사 항
① 경력 평정	총 점 • 기본경력(15년) 가경력 : 월수 × 0.3555 일수 × 0.0118 나경력 : 월수 × 0.3333 일수 × 0.0111 다경력 : 월수 × 0.3111 일수 × 0.0103 • 초과경력(5년) 가경력 : 월수 × 0.1000 일수 × 0.0033 나경력 : 월수 × 0.0833 일수 × 0.0027 다경력 : 월수 × 0.0666 일수 × 0.0022	70 (64) 64 60 56 (6) 6 5 4	• 제출서류 : **사립학교 경력자는 별도 제출** • 인사기록카드 원본 대조 확인(공립 경력) • 군경력·휴직·의원면직·직위해제·정직 등 중단 경력 확인 • 임용 후 단기이동한 자의 직명 확인 • 기간제(임시)교사·강사경력 : '나' 또는 '다' 경력 • 경력평정기간 : 20년('26. 2. 28. 기준) 확인 • `합계'란에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근무성적 평 정 (교사 다면평가 포함)	• 수(95점이상) 30% • 우(90점이상-95점미만) 40% • 미(85점이상-90점미만) 20% • 양(85점미만) 10%	100	• 제출서류 :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로 갈음함 • 대상 : 25. 3. 1. ~ 26. 2. 28.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징계처분(25. 3. 1.이후) 확인 • 승진규정 및 교사다면평가 시행계획에 의거 평정 실시 • 근무성적 조정점 조견표 참조
③ 연수성적 평 정 -교육성적	총 점 • 자격연수 평정점(교감자격연수) =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 • (교감승진, 교장자격연수, 교장승진) =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 교사의 직무연수 인정범위 및 실적평정 ▸ 현직위 재직 중 최근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개 ▸ 6점× $\frac{\text{직무연수환산성적}}{\text{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함) • 교감 및 장학(교육연구)사의 직무연수 인정범위 및 실적평정 ▸ 당해 직위에서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 ▸ 6점× $\frac{\text{직무연수환산성적}}{\text{직무연수성적만점}}$	27 (15) 9 (18) (6)	• 제출서류 : 교육성적 사본(원본대조필) • 연수성적이 평어로 표기된 경우 - 최상위 등급(또는 A학점 이상) : 90점 - 차상위 등급(또는 B학점 이상) : 85점 - 제3등급이하(또는 D학점 이상) : 80점 • 직무연수 성적이 없거나 60점이상 80점 미만의 성적일 경우 해당 직무연수 성적은 80점으로 간주함 (단, 60점 미만의 직무연수는 평정에서 제외함) •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의 연수성적 평정 만점은 15점임(「승진규정」 제32조 및 제33조 참조)

항목	평 정 요 령	상한점	유 의 사 항
③ 연수성적 평 정 -연구실적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전국 규모 / 1.50 / 1.25 / 1.00 시도 규모 / 1.00 / 0.75 / 0.50 박사 학위 /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3.00 / • 기타의 학위 1.50 석사 학위 /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1.50 / • 기타의 학위 1.00 • '05년 1학기까지의 대학원 입학자는 석사 2개 인정 • 석사, 박사 동시 소지자는 박사만 인정 • 동일전공 중복평정 금지	3.00	• 제출서류 : 연구실적 사본(원본대조필) • 1년에 1편만 평정 • 연구 성적의 적용가능 여부 확인 • 석사학위 실적을 자격 연수성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연구실적 인정 불가 • 같은 내용으로 2중 적용여부 확인 (전국 · 시도 규모 입선 2중 사용 불가) • 초등 재직 시 취득한 연구실적 인정 • 2인작 70%, 3인작 50%, 4인작 이상 30% 인정 ※ 동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제29조에 의거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2020. 2. 28.>(2020. 3. 1.시행) **단, 2021. 2. 28.자 이전 연구대회 입상 실적 및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을 인정한다.**
④ 가산점 평 정 -연구학교 (시범,실험 학교포함)	• 교육부장관지정 : 월 0.018점, 일 0.0006점 • 교육감지정(선도학교, 중심학교,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포함) : 월 0.015점, 일 0.0005점 • 교육장지정 : 월 0.0075점, 일 0.00025점	1.00	• 제출서류 : 유공교원 명단 사본(원본대조필) • **교육부장관지정 : 2010. 2. 28. 종료** • 선도학교 '03. 3. 1.자 실적부터 적용 • 중심학교 '03. 4. 1.자 실적부터 적용 • **교육장 지정 '03. 1. 1.부터 적용**
④ 가산점 평 정(공통)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 월 0.015점, 일 0.0005점	0.50	• 인사기록카드 원본 대조 확인
④ 가산점 평 정(선택) -보직교사	• 월 0.027점, 일 0.0009점	2.00	• 인사기록카드 원본 대조 확인 • 1급정교사, 교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로서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한함 (전문상담교사는 '02. 6. 25. 이후부터 적용) • 윤리부장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87. 6. 18. 이전 : 국민윤리 1급 정교사 - '87. 6. 18.-'97. 8. 31. : 국민윤리, 일반사회 1급 정교사 - '97. 9. 1. 이후 : 국민윤리, 일반사회, 역사, 지리 1급 정교사
④ 가산점 평 정(선택)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월 0.012점, 일 0.0004점	0.75	• 인사기록카드 원본 대조 확인 • 교육전문직원 경력에 한함

항목	평 정 요 령	상한점	유 의 사 항
④ 가산점 평 정(선택) -도서·벽지· 접적지역	지역 / 월 평정점 / 일 평정점 가 / 0.045 / 0.0015 나 / 0.039 / 0.0013 다 / 0.033 / 0.0011 라 / 0.027 / 0.0009	1.50	• 인사기록카드 원본 대조 확인 • 근무 시점 및 기간 계산에 유의 **※ 타 시 · 도 전입자는 해당 교육청 발행 도서벽지 확인서 제출**
④ 가산점 평 정(선택) -농 · 어촌 및 공단 지역학교	•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 면지역('09. 2. 28이전 읍 · 면지역) 월 0.015, 일 0.0005 - 읍지역('09. 2. 28이전 동지역) 월 0.012, 일 0.0004 • 공단지역 - 반경 3km 이내 지역 : 월 0.009, 일 0.0003 ※ '09. 2. 28 이전 - 반경 2km 이내 지역 : 월 0.015, 일 0.0005 - 반경 2km~3km 이내 지역 : 월 0.012, 일 0.0004	1.50	• 제출서류 : **'95. 1. 1. ~ '97. 12. 31. 근무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당시 본인 주소지 확인필)** •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 가산점 부여기준 - '95. 1. 1. ~ '95. 12. 31. : 학교가 소재한 읍 · 면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6. 1. 1. ~ '97. 12. 31. : 학교가 소재한 읍 이하 지역이나 인접 군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8. 1. 1. ~ '01. 12. 31. : 읍이하 지역 소재 학교 근무자 - '02. 1. 1.이후 : 읍이하 지역 소재 학교 및 동지역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근무자 • 동지역 및 공단지역 가산점은 별도로 지정된 학교에 한함(가산점 부여대상교 현황은「표2」참조)
④ 가산점 평 정(선택) -담임교사	• 월 0.021점, 일 0.0007점	3.00	• 제출서류 : 담임교사경력증명서 <서식7> ※ 과거 재직교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증명서 모두 제출(단, 2014년도 부터는 나이스기록으로 확인) • 교원 임용 후의 모든 담임경력
④ 가산점 평 정(선택)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 월 0.006점, 일 0.0002점 ※ '07. 12. 31. 이전 경력은 월 0.009점, 일 0.0003점	0.64	• 제출서류 :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 부여 확인서 첨부(청소년단체 발행) • 청소년단체활동 운영지침 참고 • '02. 1. 1. 실적부터 적용 ※ 2021학년도까지 부여, 2022학년도부터 폐지

2. 자격 및 승진 평정표 작성 시 유의 사항(G-인사이트)

※ G-인사이트 자격 및 승진 평정표 작성 시 기제출자(2025. 2. 28.자 평정 서류 제출자)와 신규제출자의 작성 시 유의 사항이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할 것

1. 강습 · 승진후보자 평정표 작성

가. 인적사항

1) [승진(강습)평정개요]에서 '교장승진', '교장강습', '교감승진', '교감강습' 중 선택

2) [자격증 표시교과] 교장승진자는 '중등교장', 교장강습자와 교감승진자는 '중등교감', 교감강습후보자는 '중등1정'과 전공교과 반영하되, 소지자격증과 일치시킴

- (예) '중등교장'(국어), '중등교감'(생물), '중등1정'(지리)

3) [자격증 번호] 교장승진자는 '중등교장', 교장강습자와 교감승진자는 '중등교감', 교감강습후보자는 '중등1정' 자격증 번호 반영

4) [현재 지도교과], [후임교과] 교감승진후보자만 반영

5) [소지자격증] "자격증 표시교과"란과 동일하게 반영(명부 · 평정표 일치)

6) [자격 취득일] 해당 소지자격 취득일을 반영

7) [교육 실경력] 최초 발령일로부터 2026. 2. 28.까지의 실경력 반영

※ 기간제(임시) 교사 경력은 인정하며, 임용전 군복무 경력, 강사 경력, 사립학교 경력 중 임용보고가 되지 않은 기간제(임시)교사 경력은 제외함

8) [교육 총경력] 임용전 군복무 경력, 강사, 기간제(임시)교사 경력을 포함한 2026. 2. 28.까지의 경력 반영

9) [상응직 경력] 교장 승진 및 강습후보자는 교감경력과 전문직경력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교감승진 및 강습후보자는 중등 1정 자격 취득 후의 경력을 반영

10) [한국사 이수] '교감강습'평정 서류 제출자만 해당하며, '자격증(기제출)', '자격증(신규제출)', '연수이수(기제출)','연수이수(신규제출)'중에서 선택

11) 직접 입력 항목

- [자택주소] 인사 발령 시 생활근거지로 참고하므로 정확히 기재
- [전화번호]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 [부부교원] 해당자가 있을 경우 기재

나. 평정점 집계표

1) [소속장 평정] 경력평정표와 연수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에 기록된 것을 확인

2) [근무성적], [계열순위], [전체순위], [확인자평정]은 공란으로 제출

2. 경력평정표 작성

가. 총경력 평정기간은 20년을 기준으로 함

1) 기본경력(15년) : 2026. 2. 28.부터 소급하여 15년

2) 초과경력(5년) : 15년 초과 후 5년

나. 경력평정표 작성 유의사항

1) 「승진규정」 제11조에 의거 경력기간 계산에 유의하고, G-인사이트에 경력 기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누락된 경력이 있거나 반영된 경력 중 오류가 있는 경우 삭제 후 행을 추가하여 기재(증빙자료 첨부)

2) 임용 전 군경력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평정기간을 준수하여 20년에서 부족된 기간만 산입함

3) 최초 시작 경력 계산 시 사립학교 경력, 기간제(임시)교사, 강사경력 기간을 정확히 산출

- 인사기록에 기간제(임시)교사, 강사, 정교사 경력 구분이 안 된 경우는 경력증명서 첨부
- 사립학교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감(교육장) 발행 임용대장 사본 첨부(원본 대조필)
- **기제출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임용전경력]에서 확인하며, 신규 제출자의 경우 G-인사이트 에 해당 경력을 기재하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

4) 평정점 합계의 '소계'란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록하고, '합계'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록함

5) **인사기록카드는 NEIS에서 현임교 교감(유고 시 교장)이 「인사카드(전체)」 서식을 출력하여, 맨 앞쪽 출력자 성명 옆에 출력자가 날인하여 제출**

※ NEIS 「인사카드(전체)」 출력방법 : NEIS 로그인 → 기본메뉴 → 인사기록(기본사항) → '출력' 클릭 → 인사카드(전체) 선택 → 출력 (※ 반드시 A4 용지에 양면 '위로 넘김(짧은 쪽 넘김)'으로 출력하며, 「인사카드(법정양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임용일, 자격증(1정, 교감, 교장) 및 발급일자, 병적사항, 경력의 학교 이동사항 및 휴직경력 등 **평정표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

3. 연수성적 평정표 작성

※ 연수성적평정의 경우 기제출자는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만 해당 사항을 G-인사이트에 기재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 **※ 신규제출자는 연수성적평정에서 '자격연수', '학위기', '연구대회' 실적 사항을 G-인사이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함. 단, 연수성적평정의 '직무연수' 실적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함.**

가. 교육성적은 자격연수 성적 1개와 직무연수 성적 3개(교사의 경우임.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1개)를 기재(**단, 직무연수 성적은 2016. 1. 1.이후의 실적만 반영되며, G-인사이트에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연수를 선택하여 반영**)

※ 2013. 12. 31.자 평정부터 하나의 직무연수로 연수성적과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중복 평정할 수 없도록 조치함(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 6. 3.)

-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교육정보화 과정의 자격증 관련 과정 중 상위과정의 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하위과정의 자격과정을 이수 시에는 연수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나. 연구실적은 1년에 1개의 실적만 G-인사이트에서 선택하여 반영(석 · 박사학위 취득 실적은 별도 평정)

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박사학위 취득실적만을 사용하고, 200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때 모두 사용함

(※ 제출된 서류로 학위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 사본,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라. 석사학위로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연수성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격(전문상담교사, 1급정교사 자격 취득 후의 사서교사) 취득 시의 점수를 자격연수 성적으로 사용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음

마. 주간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원 수강 기간 중 학교장의 허가 및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근무상황부 또는 내부결재 공문 사본 등)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바. 초등 재직 시 취득한 학위취득 실적과 연구실적은 평정함

4. 가산점 평정표

가. 도서 · 벽지 · 접적지역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97. 12. 31.이전의 근무 경력에 대하여만 교육감 인정점(상한점 1.50점)을 합산하여 1.50점까지 평정하고, '98. 1. 1.이후의 경력부터는 교육감 부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나. 직무대리 보직교사 경력은 평정에서 제외

5. 평정경력 기간 계산법

- 평정경력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영
- 1개월 미만의 일 단위 계산은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함

(단, 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중 병가, 연가 등으로 1개월 미만의 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일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하여 계산함)

6. 증빙서류 확인

가. 증빙서류 사본의 원본 대조필은 반드시 해당학교 교감이 원본과 대조한 후에 서명 날인함 (※「NEIS 인사카드(전체)」 출력물 포함)-교감 유고 시 교장이 출력 및 서명 날인

나. 평정은 NEIS 인사카드 기록 사항을 기본 근거로 하되, 일부 평정 항목은 증빙서류 사본을 근거로 하여 평정함.

다. G-인사이트의 해당 평정 항목에 첨부한 증빙서류는 교감이 서명 날인 한 원본 대조필 파일만 인정하며, 종이 서류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G-인사이트를 통해 첨부하지 못한 증빙서류는 인사기록 카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7. 평정서류 제출 간소화 조치에 따라 직전 연도 평정서류 제출자는 금년도 제출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4. 추가 제출서류 목록 참조) (단, 2024. 2. 29.자 평정서류 제출한 자가 2025. 2. 28.자에 미제출한 경우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 제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동점자의 순위결정(「승진규정」 제45조 관련)
   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나. 현직위에 장기 근무한 자
   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라. 고령자
   ※ 자격연수 대상자 작성 시 동점자 처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에 준한다.

3. 자격 및 승진 평정 서류 제출 방법

【강습 평정서류 제출자】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 2026. 2. 28. 현재 교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경력 및 교감 실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 2026. 2. 28. 현재 정교사 1급 또는 보건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중등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평정서류 제출 가능한 평정점 안내는 평정서류 제출 공문 내용으로 알림

【평정서류 제출방법】

○ 제 평정 서류 및 근무성적 평정표는 정기인사자료 제출 일정과 동일함(교육전문직원 포함)

○ 제 평정 서류는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제출서류 목록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교장 · 교감 강습 · 승진후보자 제출서류 및 편철순서】

1. ( ) 강습·승진 후보자 평정표 1부 <서식 2>
2. 경력 평정표 1부 <서식 3>, [별지 제1호 서식]
3. 연수성적 평정표 1부 <서식 4>, [별지 제5호 서식]
4. 가산점 평정표 1부 <서식 5>, [별지 제7호 서식]
5.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평정표 <서식 6>
- 한 학년도에 60시간 초과 입력 금지, 1점 만점 초과 입력 지양
(※ 1번 ~ 5번의 서류는 G-인사이트 출력물로 반드시 최종 마감 후 출력하여 제출)

6. 「자격연수 성적」 증빙 서류(연수 이수증 사본)
- 신규 제출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하며, 기제출자는 인사기록카드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1정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도교육청 민원서류 인정 불가)
- 반드시 연수 성적이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7. 「직무연수 성적 반영 분」 증빙 서류(연수 이수증 사본)
- 인사기록카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만 증빙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 연수 이수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연수의 증빙 서류(이수증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음

8. 「연구대회 입상 상장」 사본 각 1부
- 신규 제출자 및 변경된 사항이 있는 기제출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 연도별 내림차순(최근에 입상한 상장이 위에 오도록)으로 편철
- 타시·도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해당 실적이 해당 시도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파일 첨부

9. 「학위기」 사본 1부
- **신규 제출자 및 변경된 사항이 있는 기제출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 학위 취득 성적으로 **1정 성적 대체 시 대학원 전학기 성적증명서** 필히 파일 첨부
- 박사학위 소지자 및 주간대학원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복무관리 입증서류 파일 첨부

10. 「연구(시범, 실험)학교 유공교원 증빙서」 각 1부
- **유공교원 명단 사본(단, 경기도교육청 DB 검색으로 명단 확인이 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 2024, 2025학년도 유공교원 명단은 증빙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11. 타시 · 도 「도서 · 벽지 · 접적 지역 근무경력 증빙서」
- **타시도 해당 시도교육청 발행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12.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경력 증빙서」 각 1부 <서식 8>
- **타시도 전입자와 사립학교 근무경력자 중 해당자만 증빙자료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13.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 주민번호 변경자 또는 '95. 1. 1. ~ '97. 12. 31. 기간 중 농어촌가산점 평정대상자에 한함)
- **평정서류 신규제출자 중 개명, 주민번호 변경자 또는 '95.1.1. ~'97.12.31. 기간 중 농어촌가산점 평정 대상자에 한하여 G-인사이트에 증빙자료 첨부**
- 남 교원은 병적사항이 NEIS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생략(NEIS에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1995. 1. 1. ~ 1997. 12. 31.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자는 해당 기간의 주소지가 나타난 「주민등록초본」 필히 제출(해당 기간 동안의 주소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4. 「담임교사 경력증명서」 학교별 각 1부 <서식 7>
- 겸임, 파견, 전국체전 · 동계체전 · 소년체전 · 기능경기대회 도대표 지도경력 증빙서 포함
- 현 재직교 담임경력증명 : 현 재직교에서 발행(단, 2014학년도부터는 나이스 기록 확인)
- 과거 재직교 담임경력증명 : 과거 재직교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담임경력 증명서 모두 파일 첨부

15.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 증빙서」 1부 <서식 9>
- **신규 제출자 및 변경된 사항이 있는 기제출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16. 기타 경력(재외국민 교육기관, 발명교육, 전문직 경력 등) 증빙서
- **신규 제출자 및 변경된 사항이 있는 기제출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G-인사이트에 파일 첨부**

17. 「사립학교 근무경력 증빙서」 1부
- 타시 · 도 전입자만 해당, 경기도 사립학교 근무자는 별도 확인
- 교육감(고), 교육장(중)이 발행한 현원대장(임용대장 또는 발령대장) 사본 파일 첨부

(※ 6번 ~ 17번의 서류는 G-인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빙 서류를 인편 제출)

18. 「NEIS 인사기록(전체)」 출력본 1부(교감)(교감 유고 시 교장 출력 날인)
- 맨 앞쪽 출력자 성명 옆에 출력자가 날인하여 제출

※ NEIS 「인사카드(전체)」 출력방법 : NEIS 로그인 → 인사기록(기본사항) → 인사카드 구분 → 인사카드(전체) 선택 → 출력 (※ 반드시 A4 용지에 양면 **'위로 넘김'**으로 출력하며, 「인사카드(법정양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필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임용일, 자격증(1정, 교감, 교장) 및 발급일자, 병적사항, 경력의 학교 이동사항 및 휴직경력 등 **평정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

4. 2025.02.28.자 평정서류 제출자(기제출자)의 추가 제출서류 목록

2025년도(작년) 제출서류	2026년도(올해) 제출서류		추가 제출 서류	비고
	제출	미제출		
1. (　) 자격 · 승진 후보자 평정표 1부 <서식 2>	O			
2. 경력 평정표 1부 <서식 3>	O			
3. 연수성적 평정표 1부 <서식 4>	O			
4. 가산점 평정표 1부 <서식 5>	O			
5.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평정표 <서식 6> **- 한 학년도에 60시간 초과 입력 금지, 1점 만점 초과 입력 지양**	O			
6. 「자격연수 성적」 증빙 서류 **- 1정 연수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도교육청 민원서류 인정 불가)**		O		교과(계열)변경의 경우 제출
7. 「직무연수 성적 반영 분」 증빙 서류		O		인사기록카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제출
8. 「연구대회 입상 상장」 사본 **- 타시도 연구대회는 연구실적 인정 여부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			O	신규 취득자 제출
9. 「학위기」 사본 1부			O	신규 취득자 제출
10. 「연구(시범, 실험)학교 유공교원 증빙서」			O	신규 취득자 제출
11. 타시도「도서 · 벽지 · 접적 지역 근무경력 증빙서」 - 해당 시도교육청 발행 서류			O	신규 취득자 제출
12.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경력 증빙서」<서식 8>		O		추가서류 있을 경우 제출
13.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 주민번호 변경자 또는 '95.1.1.~'97.12.31. 기간 중 농어촌가산점 평정대상자에 한함)		O		
14. 「담임교사 경력증명서」 학교별 각 1부 <서식 7> - 겸임,파견,전국체전,소년체전,기능경기대회 등		O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제출
15.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 증빙서」<서식 9>		O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제출
16. 기타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 발명교육, 전문직경력 등)증빙서			O	신규 취득자 제출
17. 「사립학교 근무경력 증빙서」 (현원명부)		O		
18. 「NEIS 인사기록(전체)」 출력본(교감출력 및 날인)	O			

5. (　　) 자격·승진 후보자 제출서류 목록표

◆소속 : (　　)　◆직 : (　　)　◆성명 : (　　)

※ 2025. 2. 28.자 평정서류 제출 여부 : 제출자 □, 미제출자 □

– 2025. 2. 28.자 강습서류를 제출하고 2026. 2. 28.자 승진서류를 신규로 제출하는 자도 서류 간소화 대상임

제출 서류 목록	제출		비고
	출력물	G-인사이트	
1. (　) 자격 · 승진 후보자 평정표 1부.	□	×	출력물 필수 제출
2. 경력 평정표 1부.	□	×	
3. 연수성적 평정표 1부.	□	×	
4. 가산점 평정표 1부.	□	×	
5.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평정표 **– 한 학년도에 60시간 초과 입력 금지**	□	×	
6. 「NEIS 인사기록(전체)」 출력본(교감출력 및 날인)	□	×	
7. 「자격연수 성적」 증빙 서류 **– 1정 연수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도교육청 민원서류 인정 불가)**	□	□	교감자격 신규만 제출
8. 「직무연수 성적 반영 분」 증빙 서류	□	□	인사기록에 없는 경우만 제출
9. 「연구대회 입상 상장」 사본 **– 타시도 연구대회는 연구실적 인정 여부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	□	□	교감자격 신규 또는 기제출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10. 「학위기」 사본 1부	□	□	
11. 「연구(시범, 실험)학교 유공교원 증빙서」	□	□	경기DB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출
12. 타시도「도서 · 벽지 · 접적 지역 근무경력 증빙서」 – 해당 시도교육청 발행 서류	□	□	타시도 전입자만 해당
13.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경력 증빙서」**(타시도전입자 및 사립학교 근무경력자 중 해당자만 제출)**	□	□	타시도전입자 및 시립학교 근무자 중 해당자만 제출
14.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 주민번호 변경자 또는 '95.1.1. ~'97.12.31. 기간 중 농어촌가산점 평정대상자에 한하여 수기 입력 후 증빙자료 첨부)**	□	□	
15. 「담임교사 경력증명서」 학교별 각 1부 <서식 7> – 겸임,파견,전국체전,소년체전,기능경기대회 등	□	□	인사기록에 없는 경우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기제출자 제출
16.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 증빙서」<서식 9>	□	□	
17. 기타경력 증빙서(재외국민교육기관, 발명교육, 전문직경력 등)	□	□	
18. 「사립학교 근무경력 증빙서」([인사기록카드]–[임용전경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기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	□	□	교감자격 신규만 제출

※ 인사기록카드에 누락되거나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G-인사이트에서 수기 입력 후 증빙자료를 첨부함.
※ 본 목록표는 제출하는 서류의 □란에 V표시하여, 맨 위(1번 서류 위)에 편철하여 제출함.

6. 자격 및 승진 평정 관련 서식 목록

□ 강습 · 승진후보자 명부(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 미기재, '참고자료용'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음

□ 확인서(위 · 변조 등)
: <서식 1>

□ 강습 · 승진후보자 평정표
: <서식 2>

□ 경력평정표
: <서식 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연수성적평정표
: <서식 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가산점 평정표
: <서식 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7호서식]

□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평정표
: <서식 6>

□ 담임교사 경력증명서
: <서식 7>

□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증명서
: <서식 8>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 확인서
: <서식 9>

참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6호 서식]

(　　)강습 · 승진후보자 명부(제4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기관명 :　　작성자 : 직　　성명　　(인)

순	소속	직	성명	평 정 점						비고
				경력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		가산점	합계	
						교육 성적	연구 실적			
					미기재					

※ 본 서식은 참고 자료용이므로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음

서식 1

확 인 서

소속 :
직위 :
성명 :

본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평정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평정서류를 제출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제출한 평정서류와 증빙자료에 위·변조, 위작, 허위 등이 없습니다.

2. 본인이 제출한 평정서류와 증빙자료가 위·변조, 위작, 허위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자격연수 취소, 승진임용 취소 등의 인사조치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사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2

(　　) 강습 · 승진후보자 평정표

가. 인적사항

학교장(직인)

※ 자격증 표시교과(　　)　　자격증 번호(　　)
현재 지도교과(　　)　　후임교과(　　)

시 군 명		소 속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주 민 등록번호	
교육실경력	(　) 년 (　) 월	상응직 경력	총(　.　)년	교감 (　.　)년	
교육총경력	(　) 년 (　) 월			교육전문직원(　.　)년	
소지자격증		자격증취득일			

※ 자택주소 :
※ 전화번호 : 학교(　　) 자택(　　) H · P(　　)
※ 부부교원 : 성명(　　) 시 · 군 및 학교(　　) 현임교 발령일(　　)

나. 평정점집계표

구 분		소 속 장 평 정	※확인자 평정(기재안함)	비 고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 기재 안함		
경 력 평 정 점				
교육성적	자격연수			
	직무연수	*(최상위 직무연수성적 평정점 기재)*		
		(교사: 실적 有 6점, 교감·교육전문직원: 공란)		
		(교사: 실적 有 6점, 교감·교육전문직원: 공란)		
연구실적				
가 산 점				
총 점		*(근무성적을 제외한 총점 기재)*		
※계열순위(기재안함)				
※전체순위(기재안함)				

※ 본 서식은 G-e인사이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쇄하여 출력물로 제출함.

서식 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 11. 6>

경력평정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 직위: ○ 성명: ◆㊞

2. 경력평정

경력별		근무처 직명	재직기간	재직 월/일수	월/일 평정점	평정점 합 계
기본경력	‘가’경력			월: 일:	월: 일:	
	‘나’경력			월: 일:	월: 일:	
	‘다’경력			월: 일:	월: 일:	
	소계			월: 일:		
초과경력	‘가’경력			월: 일:	월: 일:	
	‘나’경력			월: 일:	월: 일:	
	‘다’경력			월: 일:	월: 일:	
	소계			월: 일:		
합계				월: 일:		

3. 평정자 · 확인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				
확인자				

※ 본 서식은 G-인사이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쇄하여 출력물로 제출함.

서식 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5호 서식]

연수성적평정표(제31조제2항 관련)

1. 평정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2. 교육성적평정

교육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성적 또는 환산성적	평정점
자격연수					
직무연수					
직무연수					
직무연수					
계					

3.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대회 주관기관	대회명	입상일	전국 규모			시 · 도 규모			평정점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4. 학위 취득실적 평정

석사 · 박사 구분	직무 관련 구분	학위명	학위 수여기관	학위 취득일	평정점
석사	직무 관련				
	기타				
박사	직무 관련				
	기타				

5. 연수성적 평정점	

6. 평정자 · 확인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				
확인자				

※ 본 서식은 G-인사이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쇄하여 출력물로 제출함.

서식 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7호 서식]

가산점 평정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2. 공통가산점 평정

가산점 종류	근무기관 (연수기관 등)	근무기간 (연수기간 등)	평정대상 기 간	평정기준	평정점	평정점 합 계
소계						

3. 선택가산점 평정

가산점 종류	근무기관 (연수기관 등)	근무기간 (연수기간 등)	평정대상 기 간	평정기준	평정점	평정점 합 계
소계						

4. 가산점 평정 합계(2 + 3)

5. 평정자 · 확인자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				
확인자				

작성방법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택가산점의 경력 또는 실적에 대해서는 가산점 종류에 따라 근무기관란, 근무기간란, 평정대상기간란에 관련 내용을 적는다.
2. 월 단위로 산정되는 가산점의 경우에는 평정기준란 및 평정점란에 월 · 일로 기재한다.

※ 교감강습대상자 및 교감승진대상자의 본 서식은 1, 2로 구분되어 있음에 유의.

※ 모든 서류 제출자는 대상자별로 작성된 내용을 G-인사이트에서 인쇄하여 출력물로 제출함.

서식 6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평정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2. 가산점 평정

연수기관 (연수명)	연수기간	연수시간	평정점
합 계			

3. 평정자 · 확인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인)
평정자				
확인자				

※ 본 서식은 G-인사이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쇄하여 출력물로 제출함.

서식 7

담임교사 경력증명서

현소속		직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본 교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담 임 근 무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학년 반)(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학년 반)(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학년 반)(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학년 반)(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학년 반)( )개월 총( )개월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	대조자	확인자

( )학교장 (직인)

서식 8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증명서

현소속		직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농 어 촌 학 교 근 무 기 간						
재직학교명	( )학교					
재직 기간	. . .부터 . . .까지(개월)					
재직 당시 학교 주소						

※ 재직 당시의 학교 주소가 읍, 면지역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과거 주소명으로 기재할 것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	대조자	확인자

( ) 학 교 장 (직인)

서식 9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 확인서

1. 인적사항

◇ 소속단체 :

◇ 현소속교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승진가산점

◇ 총평정점 :　　점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기간 및 연 평정점

지도년차	활동기간	활동장소	연간활동시간	연 평정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년		시간	점	

※ 첨부 : 연도별 세부활동 내용 1부.

위와 같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소 년 단 체 장)　　직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요령

2부

(중등)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I 학교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지원청[도교육청 포함]에서의 확인사항

1.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

기관명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고등학교	일반(보건 포함) · 특수사서 · 전문상담 · 영양 · 실기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교육국(과)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도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 교장 유고 시 교감의 평정자는 교육국(과)장,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
※ 교감 유고 시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

2. 「교사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현황 확인(G-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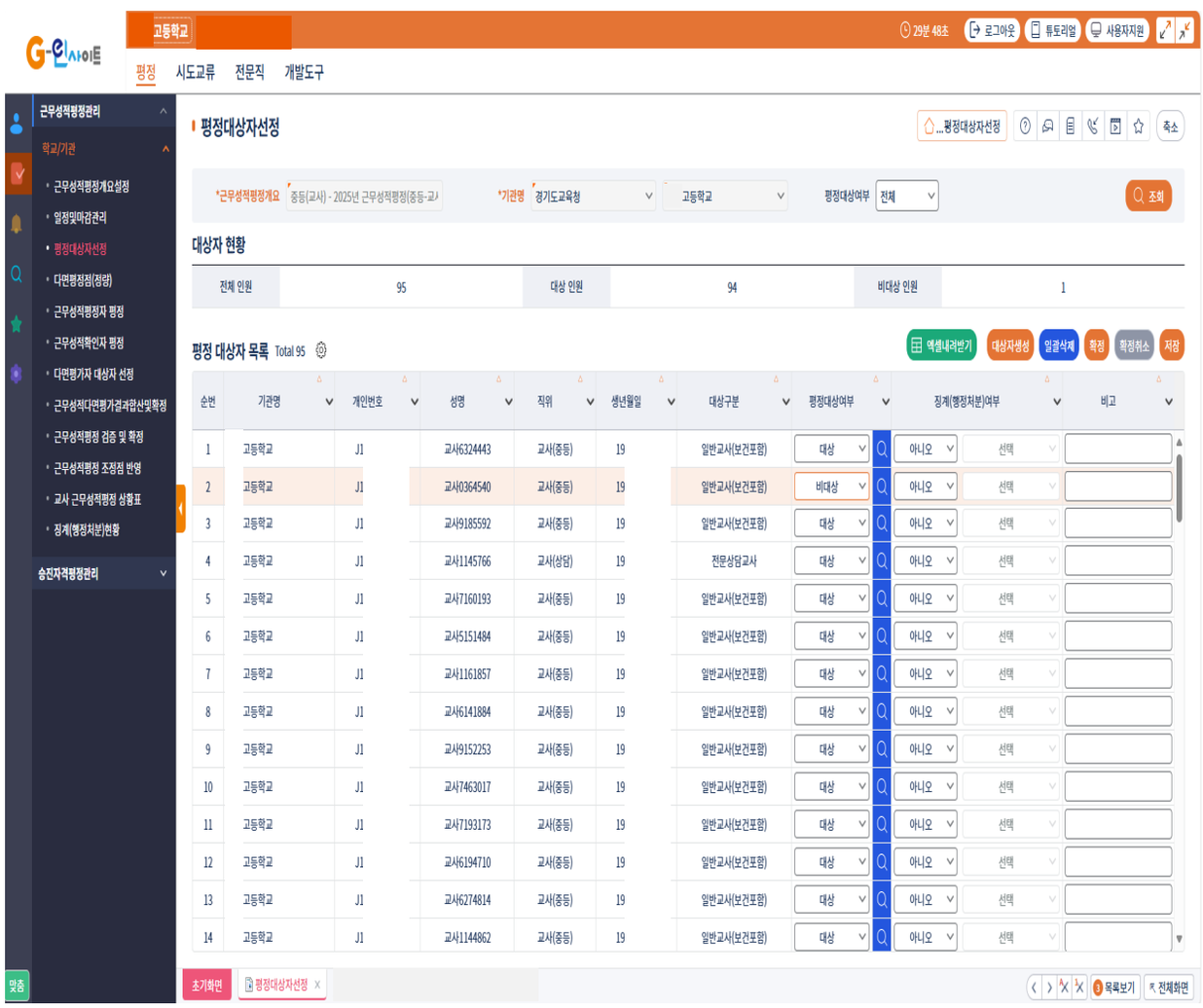

가. 전체교사 수(휴직자, 파견자 포함)와 근무성적평정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인원이 다를 경우에는 G-인사이트에서 수정한다.

- 일반교사의 전체인원은 중등교원 소요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 휴직 · 직위해제 및 휴가 등 기타 사유로 평정 단위 학년도(2025. 3. 1. ~ 2026. 2. 28.)의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2015.1.23.)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의 합산)"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 **보건교사 및 거점학교배치형 교과순회전담교사**는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함(보건교사는 2014년, 교과순회전담교사는 2021년 평정부터 적용)

나. '수', '우', '미', '양' 인원의 합계는 평정대상 인원과 같아야 함.

다.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 : 2개월 미만 근무한 자, 수석교사, 중도퇴직자, 전직자, 승진자, 교육훈련 파견자(4호, 7호, 교사 연구년제 파견 포함),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전일제(시간)강사 등

라. 징계 및 행정처분자 확인 : 해당 학년도(2025. 3. 1. ~ 2026. 2. 28.)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조사)결과 행정처분된 자를 확인

(* 교사 '다면평가'시에는 징계 및 행정처분자에 대한 감점 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년도 징계사유, 기간, 처분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징계 및 행정처분대장**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징계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제출

3. 「교사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4호 서식)」 양식 및 작성 요령

가. 교감과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의 서식이 다르므로 주의

(*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 교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나. **특수, 사서, 실기,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따로 작성하며, 일반교사(보건 포함)의 평정 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다. 소속은 현 소속교를 기재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 및 타시도 파견(교환)근무하는 자도 원 소속기관(학교)에서 평정함)

라. 평정자와 확인자는 **5가지 평정요소별(④~⑧)로 급간 분포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으나, '⑨평정점'은 반드시 동점자 없이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함
(근거 : 승진규정 제28조의3 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고)
(※ 이때, 최종적으로 '⑪총점'과 '교사 다면평가점'을 합한 점수도 동점자 없이 급간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함에 유의 - 근거 : 「승진규정」제28조의6)

마. '**⑩환산점**'은 평정자는 '**⑨평정점**×20/100', 확인자는 '**⑨평정점**×40/100'로 계산함

바. ④부터 ⑪까지의 모든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함(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서식](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교장 성명 이 교 장 (인)	직위 교감 성명 박 교 감 (인)

평정대상자 소속	평정대상자 성명	평정사항 / 평정요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정점	⑩ 환산점	⑪ 총점
			④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지도 (40점)	⑥ 생활지도 (30점)	⑦ 전문성개발 (5점)	⑧ 담당업무 (15점)			
△ △ 고등학교	이율곡	평정자	10.00	40.00	29.50	5.00	15.00	99.50	19.90	59.03
		확인자	9.70	39.85	28.30	4.99	14.98	97.82	39.13	
△ △ 고등학교	이순신	평정자	9.80	39.00	29.30	4.99	14.99	98.08	19.62	58.43
		확인자	9.70	38.55	29.00	4.98	14.80	97.03	38.81	
⋮	⋮	평정자	⋮	⋮	⋮	⋮	⋮	⋮	⋮	⋮
		확인자	⋮	⋮	⋮	⋮	⋮	⋮	⋮	

Ⅱ 교사「다면평가」 실시 및「근무성적평정」과 합산

1. 근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8조의2 ~ 제28조의9

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함

나. 해당 학년도 초에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

다.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선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제2항)하되, 기준 인원보다 1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

1.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2.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이상
3.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이상
4.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이상
5.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이상
6.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이상

라.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함

-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다면평가 대상 :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학년도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교사 전체**

※ 2개월 미만 근무자, 수석교사, 중도퇴직자, 승진자, 전직자, 교육훈련 파견자(4호,7호),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전일제(시간)강사 등은 대상(평정인원)에서 제외함.

3. 평가점수 산출 방법

가. 교사 다면평가(정성평가)

1) 다면평가자는 **본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 **다면평가자별 '다면평가점(정성평가점)'은 급간 분포비율에 맞춰야 함**(강제배분법)

※ 다면평가자는 본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전체 평가대상자 인원에서 다면평가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급간 분포비율을 맞춤

[예시]

≪ 다면평가자 평가표 ≫

다면평가자 : 성명 홍 길 동 (인)

평가대상자		평가사항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다면평가점 (총점)
연번	성명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 (4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 (5점)	담당업무 (15점)	(100점)
1	성춘향	9.75	38.66	30.00	5.00	14.98	98.39
2	임꺽정	10.00	39.55	29.80	4.99	15.00	99.34
3	홍길동						
4	이순신	7.55	37.25	29.01	4.90	14.30	93.01
5	강감찬	8.25	35.22	29.70	4.82	14.29	92.28
6	장보고	7.55	37.25	28.80	4.70	14.02	92.32
7	이성계	7.55	37.25	29.00	4.65	13.92	92.37
8	허준	8.75	36.00	25.45	4.55	13.87	88.62
9	장영실	8.80	35.00	26.50	4.28	13.33	87.91
10	정몽주	8.75	35.00	24.60	3.99	12.98	85.32
11	이율곡	10.00	40.00	28.90	4.00	12.77	95.67

3) 다면평가요소별 집계표에는 다면평가자별 평가요소 평가점을 합한 '계'와 이를 다면평가자 수로 나눈 '평균'을 기재한다.

–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다면평가요소별 집계표 1 ≫

□ 평가요소 1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작성자 교감 박교감 (인)
확인자 교장 이교장 (인)

평가대상자		다면평가자별 평가점					계	평균 (10점 만점)
연번	성명	홍길동	이순신	허준	정몽주	이율곡		
1	성춘향	9.75	9.22	9.98	9.99	9.99	48.93	9.79
2	임꺽정	10.00	9.23	9.88	9.77	9.60	48.48	9.70
3	홍길동		9.56	9.90	9.56	9.55	38.57	9.64
4	이순신	7.55		8.25	8.25	8.25	32.30	8.07
5	강감찬	8.25	9.44	9.65	9.55	9.65	46.54	9.31
⋮	⋮	⋮	⋮	⋮	⋮	⋮	⋮	⋮

4) 「교사 다면평가표(정성평가): (<서식 13>,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⑨평가점'**은 평가요소별 점수의 합계이며, **'⑩환산점'**은 **⑨평가점×32/100**로 계산함.

(※본 서식에서 급간 분포비율에 맞춰 강제 배분하여야 할 항목은 없음)

[예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다면평가표(정성평가) (제28조의3 제1항 관련)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교장 성명 이교장 (인)				직위 교감 성명 박교감 (인)		
		평가사항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가점	⑩ 환산점
		평가요소	④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 △ 고등학교	성춘향	다면 평가자	9.79	39.54	28.79	4.65	14.58	97.35	31.15
△ △ 고등학교	임꺽정	다면 평가자	9.70	38.56	29.00	4.25	14.36	95.87	30.68
⋮	⋮	⋮	⋮	⋮	⋮	⋮	⋮	⋮	⋮

나. 교사 다면평가(정량평가)

1) 「교사 다면평가표(정량평가) (<서식14>,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⑧평가점'은 평가요소별 점수의 합계이며, **'⑨환산점'**은 **⑧평가점×8/100**로 계산함.

(* 본 서식에서 급간 분포비율에 맞춰 강제 배분하여야 할 항목은 없음)

[예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다면평가표(정량평가) (제28조의3제1항 관련)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교장 성명 이교장 (인)				직위 교감 성명 박교감 (인)	
		평가사항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⑧ 평가점	⑨ 환산점
		평가요소	④ 학습 지도 (30점)	⑤ 생활 지도 (30점)	⑥ 전문성 개발 (10점)	⑦ 담당 업무 (30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 △ 고등학교	성춘향	다면 평가자	29.54	28.79	9.65	29.58	97.56	7.80
△ △ 고등학교	임꺽정	다면 평가자	28.56	29.00	9.25	29.36	96.17	7.69
⋮	⋮	⋮	⋮	⋮	⋮	⋮	⋮	⋮

다.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서식 15>, 별지 제4호의2서식)」의 '⑤총점'은 정성평가, 정량평가 환산점의 합산점임 (※본 서식에서 급간 분포비율에 맞춰 강제 배분하여야 할 항목은 없음)

[예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제28조의3 제1항 관련)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교장 성명 이교장 (인)		직위 교감 성명 박교감 (인)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④ 환산점		⑤ 총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고등학교	성춘향	31.15	7.80	38.95
△△고등학교	임꺽정	30.68	7.69	38.37

라.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 요령

- '③조정자' : 중·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지원청 교육국(과)장 날인
- '④확인자'는 교장, '⑤평정자'는 교감의 직위, 성명 기재 후 날인
- '평가 대상자 소속' : 현소속교 기재
- '⑥환산점' :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의 `환산점'을 그대로 옮겨 적음
- '⑦총점' : '⑥환산점'의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자 점수를 합산
- '⑧조정점' : '⑦총점' 및 '⑨순위'에 의한 조정점 조견표 상의 점수 기재
  (※ 단, 징계 및 행정처분자 중 감점 대상자는 조정점에서 감점하며, 원 조정점과 감점 후의 조정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기함. 예 : ~~97.80~~ 97.50)
- '⑨순위' : '⑦총점'에 의한 평어 및 순위를 기재
  (※ 징계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 대상자도 변경된 조정점에 따라 평어 및 순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⑦총점'에 기재된 점수에 의해 평어 및 순위를 산출함)
- '비고' :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 기재

  ※ 본 서식의 '⑦총점'은 모두 동점자 없이 급간 분포비율에 맞도록(강제 배분 방식) 평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⑧조정점' 및 '⑨순위'가 분포비율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함
- 징계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조정점에서 감점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⑧조정점'의 분포비율이 강제 배분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예] <예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서 "홍길동"의 조정점은 감점되어 89.97이지만 평어는 원 총점에 해당하는 "우", 순위는 8/11임

  ※ 모든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 기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별지 제4호의3 서식] 예시 자료 : 뒷면 참고**

[예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3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제28조의3 제1항 관련)

① 평정기간	② 평정 분포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	직위 교육국(과)장 성명 **김국장**(인)	직위 교장 성명 **이교장**(인)	직위 교감 성명 **박교감** (인)

점수 및 순위				⑥ 환산점	⑦ 총점	⑧ 조정점	⑨ 순위		비고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평정종류					평어	순위	
고등학교	이순신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9.49	98.57	100.00	수	1/11	
			확인자	39.20					
		다면평가		39.88					
고등학교	이율곡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9.64	97.71	99.20	수	2/11	
			확인자	39.82					
		다면평가		38.25					
고등학교	장보고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9.64	96.17	98.40	수	3/11	
			확인자	37.98					
		다면평가		38.55					
고등학교	허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8.50	94.88	94.99	우	4/11	
			확인자	38.12					
		다면평가		38.26					
고등학교	정몽주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8.75	94.50	94.36	우	5/11	
			확인자	37.12					
		다면평가		38.63					
고등학교	장영실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8.45	93.00	93.73	우	6/11	
			확인자	36.95					
		다면평가		37.60					
고등학교	임꺽정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8.03	92.70	93.10	우	7/11	
			확인자	36.30					
		다면평가		38.37					
고등학교	홍길동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8.00	91.65	89.97 ~~92.47~~	우	8/11	불문경고 1회
			확인자	36.00					
		다면평가		37.65					
고등학교	강감찬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7.95	89.75	89.99	미	9/11	
			확인자	35.50					
		다면평가		36.30					
고등학교	이성계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7.70	89.50	89.19	미	10/11	
			확인자	35.55					
		다면평가		36.25					
고등학교	성춘향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6.25	88.74	88.39	미	11/11	
			확인자	33.54					
		다면평가		38.95					

4. **출력물 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류

- 「교사 근무성적 등 평정 상황표」 1부.
- **「근무성적평정표」, 「다면평가표(합산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나.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류

- 「교사 근무성적 등 평정 상황표」 각 1부.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다. 제출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라. **직인 및 도장 날인 누락 여부(특히 을지), 평정자, 확인자 날인 누락 여부 확인** 必

Ⅲ 각 학교에서 교감 근무성적평정

1. 평정자의 평정점 작성 시 경징계 처분자는 '수'평정 불가, 중징계 처분자는 '수','우' 평정이 불가함. (단,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항목에 대하여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함.)

2. 학교에서 복수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은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 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평정점은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함)

3. 각 학교에서 작성하는 「교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호서식]」는 **평정자의 점수(⑤~⑩)만 기재**하고, 총점 이후의 란(⑪~⑬)은 공란으로 두며, '**④평정자**'에 학교장이 날인한 후 원본을 밀봉하여 인비로 제출함.
   ※ 교감의 평정점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학교장이 직접 작성하고, 인비 처리하여 학교 제출자에게 인계

Ⅳ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성적평정(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1. **관내 교감 근무성적평정 집계표 작성** : [별지 제3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함
   가. 5가지 평정요소별로 분포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으나, 확인자(교육장)의 '⑨평정점'은 동점자 없이 반드시 분포비율(수 30%, 우 40%, 미 20%, 양 10% - 양의 비율은 미에 가산 가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③확인자'는 교육장 날인, '②조정자' 및 '④평정자'란은 공란으로 둔다.
   다. '⑫조정점'란을 제외하고 전체를 기록한다. (단, 전문직원 평정표는 `⑬순위'란도 공란)
   라. 교육지원청의 교감근평집계표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소속을 2025학년도 현임교로 기재한다.
   마.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점 작성 시 경징계 처분자는 '수' 평정 불가, 중징계 처분자는 '수', '우' 평정이 불가함.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항목에 대하여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함.)
   ☞ **[별지 제3호 서식] 예시 자료 : 뒷면 참고**

2. **각 학교별 평정자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교감 근무성적평정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에 확인자의 점수(⑤~⑩)와 총점을 기재 후 확인자(교육장) 날인 후 제출**

[예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3호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감)근무성적평정 집계표 (제17조 관련)

① 평 정 기 간	② 조 정 자	③ 확 인 자	④ 평 정 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교육장 성명 홍길동 (인)	직위 성명 (인)

평정대상자 소속	평정대상자 성명	평정사항 / 평정요소	근무수행태도 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0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⑥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40점)	⑦ 교원 지원 (20점)	⑧ 행정·사무관리 (20점)	⑨ 평정점	⑩ 환산점	⑪ 총 점	⑫ 조정점	⑬ 순위 평어	⑬ 순위 순위	비고
○ ○ 중학교	김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9.235		수	1/8	
		확인자	19.49	40.00	18.98	20.00	98.47	49.235					
● ● 고등학교	박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7.805		수	2/8	
		확인자	19.49	37.96	19.50	18.66	95.61	47.805					
□ □ 중학교	최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7.030		우	3/8	
		확인자	18.32	39.00	17.76	18.98	94.06	47.030					
■ ■ 고등학교	황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6.965		우	4/8	
		확인자	18.47	35.96	20.00	19.50	93.93	46.965					
▷ ▷ 중학교	이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6.255		우	5/8	
		확인자	18.87	37.32	18.34	17.98	92.51	46.255					
▸ ▸ 고등학교	정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4.990		미	6/8	
		확인자	18.32	36.68	17.98	17.00	89.98	44.990					
△ △ 고등학교	백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4.820		미	7/8	
		확인자	18.00	35.32	18.66	17.66	89.64	44.820					
▲ ▲ 중학교	임교감	평정자	20.00	40.00	20.00	20.00	100.00	50.000	93.430		미	8/8	
		확인자	17.50	34.68	17.34	17.34	86.86	43.430					

3.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가.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승진규정」 제22조제2항)

⇒ 각 교육지원청에서 중등학교 교감,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함

다.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

4.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야 함(「승진규정」 제28조의8)

나. 설치 :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고등학교 포함)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설치함

다. 구성 :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7인,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됨

라. 심의사항 : 학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분포 간 개인별 점수차를 균등하게 조정함

마.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

[Q&A] 근무성적 등 평정 관련 등

Q1. 학교에서 근무성적 등 평정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은?

A1.• 1.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용과 교사용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
2. 근무성적평정표 및 자기실적평가표의 평정기간(2025. 3. 1. ~ 2026. 2. 28.)작성 날짜 확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9조 및 제28조의2에 의거, **평정기간 수정 금지**)
3.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및 학교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
4. 근무성적 평정상황표는 전체인원을 면밀히 파악
5. 교사 다면평가 관련 서류([별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서식]) 작성요령 숙지
6. 징계결과나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Q2. 징계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A1.•

구분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 처분	
	중징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평정 기준	'수', '우' 불가	'수' 불가	1회당 2.5점 감점	1회당 0.3점 감점	2회에 0.1점 감점 (추가 1회당 0.1점 추가 감점)

※ **감점 영역 : 조정점에서 감점**
※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은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
(예1) 2025. 5. 16. 종합감사 시 경고 1회, 주의 2회를 받은 경우 → 경고 1회, 주의 1회
(예2) 2025. 5. 16. 종합감사 시 주의 3회, 2025. 10. 10. 특별감사 시 주의 1회를 받은 경우 → 주의 2회
※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항목에서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 불가

Q3. 겸임 또는 파견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A1.• 1.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외의 파견은 평정 할 수 없음
2. 2개월 이상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파견자는 현소속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현소속교에서 평정함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제7호 파견은 제외)
3. 2개월 이상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파견자 및 해외교육기관 파견자도 현소속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현소속교에서 평정함.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제7호 파견은 제외)
4. 한국교원대, 서울대, 충남대, 일본문부성, 전문연구년제 파견자(4호 연수 파견자에 해당), 경기도교육연구원 파견자는 현소속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하지 않음(제4호 또는 제7호 파견자에 해당되는 경우)

<용어 정리>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의거

가.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나.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

다.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참고>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개선 지침」통보

(중등교육과-22392호, 2007. 8. 1.)

가.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평정함.

< 참고 자료 (예시) >

·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장의 근무성적평정 지표별 의견서
·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다면평가 자료
· 해당 교육공무원의 해당 학년도 주요 활동 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초과근무확인서, 표창장 사본, 사진, 포트폴리오, 관련 공문 등)

나. 겸임 또는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서류 제출 시,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Q4. **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A4 1.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함(**"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2.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의 합산*)"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시1] 2025. 7. 18. ~ 2026. 2. 28. 육아휴직 교사로서 휴직 전 출산휴가 90일(2025. 4. 19. ~ 7. 17.) 사용 시 : 실제 근무기간(2025. 3. 1. ~ 2025. 4. 18.)은 2개월 미만
☞ 다면평가에서 제외

[예시2] 2025. 4. 30. ~ 2026. 2. 28. 휴직 교사의 경우
: 실제 근무기간 2025. 3. 1. ~ 2025. 4. 29.(60일)은 역에 의한 계산에 의해 2개월 미만
☞ 다면평가에서 제외

[예시3] 2025. 3. 1. ~ 2025. 12. 31. 휴직 교사의 경우
: 실제 근무기간 2026. 1. 1. ~ 2026. 2. 28.(59일)은 역에 의한 계산에 의해 2개월 근무
☞ 휴가 미사용할 시 다면평가 대상자임

Q5. **수석교사, 보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A5 • **수석교사** : 근무성적평정 대상에 제외함

• **보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함

Q6.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방법은?**

A6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근무성적 확인자(교육장)가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함

• **다면평가자 선정** : 근무성적 확인자(교육장)가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 중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되, 기준 인원보다 1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 : 학교에서 특수 · 사서 · 전문상담 · 영양 · 실기교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평정하는 것과 같이 교육지원청 내 장학사와 별도로 평정하되, 일반교사들에 적용되는 평정 절차 및 관련 서식은 그대로 적용함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확인점을 심의

Q6-1. 도교육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방법은?

A6-1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근무성적 확인자(교육정책국장)가 도교육청 내 관할 교육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함
- **다면평가자 선정** : 근무성적 확인자(교육정책국장)가 도교육청 내 관할 교육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 중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되, 기준 인원보다 1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 : 학교에서 특수·사서·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평정하는 것과 같이 도교육청 내 장학사와 별도로 평정하되, 일반교사들에 적용되는 평정 절차 및 관련 서식은 그대로 적용함
  (단, 「학습지도」 평가영역의 점수는 「전문성 개발」, 「담당 업무」평가요소의 합산에 대한 평가점을 참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정함)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심의** : 도교육청에 설치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확인점을 심의해야 함

Q7. 복수교감에 대한 학교장의 평정방법은?

A7
- 복수교감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 성실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평정대상자들의 평정점([별지제3호서식] ⑨평정점)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공립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 근무성적평정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방법

가. 신고자가 할 일

- 대상: 평정대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의 평정자 등에 해당하는 본인
  -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다면평가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등
- 시기: 사적이해관계자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방법: 서면으로 신고 및 회피 신청(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 신고 포함)
  - ‣ 본인이 소속기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참고1] 사적이해관계자 중 가족의 범위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가목,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예: 부모, 외조부모, 여동생, 외손녀 등)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예: 사위, 며느리 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예: 장인, 시어머니, 처형, 매제 등)

나. 소속기관이 할 일

- 안내: 소속 직원에게'이해충돌방지법'관련 안내 연수 필요
- 담당: 소속기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시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
- 조치방법: 서면(전자문서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유형으로 이행
  - ‣ 조치유형: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수행 일시 중지 명령 등
- 조치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별지 제4호 서식)

[참고2] 근무성적평정 관련 직무대리자 지정 시 참고사항
- 평정대상자보다 상위자 및 가급적 동일·유사 업무 수행자로 직무대리자 지정 권장
- **※ 사안 발생 시: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순으로 협의 바람**

※ 기타 세부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감사관-9767(2022.7.7.)) 참조

□ 근거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8조(시행 2022.4.1.)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이하 '이해충돌방지법')
3. 2025.2.28.자 기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 중등)
4. 경기도교육청 감사관-9799(2021.7.8.), -12684(2021.9.2.), -9767(2022.7.7.)호.

V 근무성적평정 서류 제출방법

1. 근무성적평정 제출서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류]

1. 「교감 개인별 자기실적 평가서」 각 1부.
2. 학교별 「교감 근무성적평정표」 1부.
   (※ 학교장 평정점만 기재·날인 후, 밀봉하여 인비로 제출)
3. 교감 근무평정 참고자료(위촉장, 표창장 등)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4.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단면출력)**

※ 「교사 다면평가표(정성, 정량)」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위 4번의 제출서류는 모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를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그 밖의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관련 서류(회의록, 내부결재 문서 등)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근무성적 평정 관련 서류]

1.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각 1부. (교감, 교육전문직원 별도 작성)
2.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평정표」각 1부.

※ 중등 교감 조정점 및 순위는 기재하지 않음.(교육전문직원 별도 안내)

※ 관내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별 「교감 근무성적평정표」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

3. 「교육지원청 평정상황 집계표」 1부.
4.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 관내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와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

5.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1부.
6.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7.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1부.
8.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각 1부
9. 교육지원청 징계 및 행정처분대장 사본 1부.
   (해당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확인하는 공문 출력물 제출, 징계 및 행정처분 대장은 교사 및 교감의 징계 사항을 합하여 교사 근평관련 서류 접수 시 제출)
10. 교육지원청 교사 근평 취합용 한셀 파일 제출

2. 근무성적평정 제출서류 목록표(교육지원청용)

( )교육지원청

구분	연번	제출서류 목록	서류확인(○, ×)	
교감	1	근무성적평정 상황표		
	2	근무성적평정 집계표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 / 교과순회 전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4	근무성적평정 상황표		
	5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6	교사 근무성적평정 상황 집계표 (교육지원청)	중학교	
			고등학교	
	7	학교별 근무성적평정 상황표	중학교	
			고등학교	
	8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일반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9	학교별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상담, 사서, 실기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징계 및 행정처분	10	교육지원청 징계 및 행정처분대장 사본		
파일	11	교육지원청 교사 근평 취합용 파일		

3.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식 목록

□ 교사 근무성적 등 평정 상황표
: <서식 10> (학교 작성용)

□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 <서식 11>「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 <서식 12>「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서식]

□ 교사 다면평가표(정성평가)
: <서식 13>「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 교사 다면평가표(정량평가)
: <서식 14>「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 <서식 15>「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 <서식 16>「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3서식]

□ 교감등 근무성적 등 평정 상황표
: <서식 17> (교육지원청 작성용)

□ 교감등 자기실적평가서
: <서식 18>「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2호서식]

□ 교감등 근무성적평정표
: <서식 19>「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3호서식]

□ 다면평가자 서약서
: <서식 20>

□ 평정대상 인원별 근무성적 분포 조견표(중등)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 조견표(중등)

서식 10 (학교 작성 참고용)

교사 근무성적 등 평정 상황표

작성자 : 교감 (인)

확인자 : 교장 (인)

학교명	구 분	전체인원	근평대상	근평제외	수	우	미	양
	일반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합계							

학급수	① 교과교사 정원 (학급수 × 배치기준값) + (수석교사(0.5)) + (증치)	② 보건교사	③ 일반교사 타교복직예정자 (현원제외자)	①+②+③ 일반교사전체인원

정원 특이사항	-

※ 근평 제외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자의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되, 타교복직(귀)예정자이자 근평대상자인 경우도 추가로 기재

제외 사유-종류별	인원	성명(과목)	기간 - 상세히	기타

파견 대상자	파견 종류	파견지	파견 기간	근평 대상 여부

※ 작성 유의사항

1. 교사 근무성적평정은 교사 `구분(일반 · 특수 · 사서 · 실기 · 전문상담 · 영양교사)'별로 각각 평정하여야 함 **(교과순회전담교사는 일반교사에 포함)**
2. '일반교사' : **1, 2급 정교사 및 1, 2급 보건교사**(특수교사 제외)를 의미
3. '전체인원' : 현임교에 소속된 인원**(타교복직예정인 휴직자, 파견자 포함)**
4. '근평대상' : 현임교에 소속되어 평정기간(2025. 3. 1. ~ 2026. 2. 28.)중 2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임
5. '비고'란 : 근평대상이 아닌 이유를 기재(수석교사 ○명, 정원외기간제 ○명, 휴직 및 파견자 ○명으로 기재 후 각 항목별 **성명, 사유, 기간** 등을 모두 기재)
6. 일반교사 전체교사수 = (1)교과교사 정원 + (2)보건교사 + (3)타교복직예정자

징계 및 행정처분(주의 2회, 경고 1회 이상)자 근무성적 등 평정명부

소속	직	성명	처분 종류	처 분 년월일	근무성적 등				조정점
					다면평가점 (40)	평정자 (20)	확인자 (40)	총점 (100)	
									감점전/감점후
									/
									/

※ 작성대상 : 평정기간(2025. 3. 1. ~ 2026. 2. 28.)중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조정점 감점 대상자 : '불문(경고)', '경고', '주의 2회 이상'인 자

※ 견책, 감봉 처분자는 확인자와 평정자 모두 '수' 평정 불가,
정직, 강등 처분자는 확인자와 평정자 모두 '수', '우' 평정 불가

서식 1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6. 12. 30.>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1. 평가 지침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속 : ○ 직위 : ○ 성명 :

4. 평가자 기초 자료

○ 담당 학년 및 학급:
○ 담당 과목:
○ 담임 여부:
○ 담당 업무:
○ 보직교사 여부:
○ 주당 수업시간 수:
○ 연간 수업공개 실적:
○ 연간 학생 상담 실적:
○ 연간 학부모 상담 실적:
○ 그 밖의 실적사항:

5. 자기실적 평가

가. 학습지도

○ 학습지도 추진 목표(학년 초에 계획되었던 학습지도 목표)
○ 학습지도 추진 실적(학년 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생활지도

○ 생활지도 추진 목표
○ 생활지도 추진 실적

다. 전문성개발

○ 전문성개발 추진 목표
○ 전문성개발 추진 실적

라.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추진 목표
○ 담당 업무 추진 실적
○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 자기 평가 종합 상황

자기 평가	목표달성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을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서식 1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사항 / 평정요소			근무수행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정점	⑩ 환산점	⑪ 총점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④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비고

1.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2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40/100
2.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갑지)

(을지) 기관명 : (직인)

평정사항 / 평정요소			근무수행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정점	⑩ 환산점	⑪ 총점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④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을지)

※ *평정사항 _ 교사용*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사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 ·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 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서식 1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사항 / 평가요소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④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⑨ 평가점	⑩ 환산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 32/100
2. 다면평가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해야 하며,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3.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갑지)

(을지) 기관명 : (직인)

평가사항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요소	④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점)	⑨ 평가점	⑩ 환산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을지)

※ *정성평가 평가사항 _ 교사용*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1.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비고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영양·보건·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따른 학습지도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서식 1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사항 / 평가요소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④ 학습 지도 (30점)	⑤ 생활 지도 (30점)	⑥ 전문성 개발 (10점)	⑦ 담당 업무 (30점)	⑧ 평가점	⑨ 환산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비고

1. 환산점 = 평가점 × 8/100
2.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갑지)

(을지) 기관명 : (직인)

평가사항 / 평가요소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⑧ 평가점	⑨ 환산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④ 학습 지도 (30점)	⑤ 생활 지도 (30점)	⑥ 전문성 개발 (10점)	⑦ 담당 업무 (30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을지)

※ *정량평가 평가사항 _ 교사용*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연구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등) 횟수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학습지도 곤란도(통합수업 지도/복식학급 지도/학습부진아 지도/다학년 지도/다교과 지도/보강수업)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
		다. 전문성개발 (10점)	1) 연수이수 실적
			2) 수업동아리 및 교과연구회 활동 실적
			3) 연구대회 및 연구개발 실적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다문화 · 탈북학생 지원/방과후학교 운영/자유학기제 운영)
			2) 업무 추진 실적(보직/학년대표/교과대표/일반교사)
비고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서식 1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2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④ 환산점		⑤ 총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갑지)

(을지) 기관명 : (직인)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④ 환산점		⑤ 총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을지)

서식 1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4호의3서식] (갑지) 기관명 : (직인)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정기간	② 평정 분포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 수(95점 이상) 30% ◦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점수 및 순위 / 평정 종류		⑥ 환산점	⑦ 총점	⑧ 조정점	⑨ 순위		비고
							평어	순위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갑지)

(을지) 기관명 : (직인)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 대상자 성명	점수 및 순위 / 평정 종류		⑥ 환산점	⑦ 총점	⑧ 조정점	⑨ 순위		비고
							평어	순위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을지)

서식 17 (교육지원청 작성 참고용)

‘교감 등’ 근무성적 등 평정 상황표

작성자 : 교육국(과)장 (인)
확인자 : 교육장 (인)

교육지원청명	구 분	전체교감수	근평대상	수	우	미	양
	교감						

비고(※ 전체교감수와 근평대상이 다른 이유 기재)

※ 작성 유의사항
1. 전체교감 수 : 현임 교육지원청 소속된 인원(휴직 또는 파견자 포함)
2. 근평 대상 : 현임교에 소속되어 평정기간(2025. 3. 1. ~ 2026. 2. 28.)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임
3. 교감, 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순회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별로 평정함
4. 비고 : 근평대상이 아닌 이유인 휴직 및 파견자 ○명(**성명, 사유, 기간**) 등을 기재

징계 및 행정처분(주의 2회 · 경고 1회 이상)자 근무성적 등 평정명부

소속	직	성명	처분 종류	처 분 년월일	근무성적 등		
					평정자 (50)	확인자 (50)	총점 (100)

※ 작성대상 : 평정기간(2025 3 .1. ~ 2026. 2. 28)중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조정점 감점 대상자 : `불문경고', `경고', `주의 2회 이상' 인 자
※ 견책, 감봉 처분자는 확인자와 평정자 모두‘수’평정 불가,
정직, 강등 처분자는 확인자와 평정자 모두 `우'이상 평정 불가
※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교사는 <서식10>을 참고하여 ‘징계 및 행정처분’ 양식을 작성**

서식 18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31.>

(　　)자기실적평가서 _ *'교감 등' 용*

1. 평가 지침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속 :　　○ 직위 :　　○ 성명 :

4. 담당 업무

5. 자기실적 평가

가.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목표(학년 초에 계획되었던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목표)

○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실적(학년 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교원지원

○ 교원지원 추진 목표

○ 교원지원 추진 실적

다. 행정 · 사무관리

○ 행정 · 사무관리 추진 목표

○ 행정 · 사무관리 추진 실적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담당 업무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서식 1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지 제3호 서식] 기관명: (직인)

(　　)근무성적평정표 _ *'교감등' 용*

① 평정기간	② 조정자	③ 확인자	④ 평정자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	직위 제1부교육감 성명 (인)	직위 교육장 성명 (인)	직위 교장 성명 (인)

평정사항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정점	⑩ 환산점	⑪ 총점	⑫ 조정점	⑬ 순위
평정요소			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0점)	⑥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40점)	⑦ 교원 지원 (20점)	⑧ 행정·사무 관리 (20점)					
평정대상자 소속	평정대상자 성명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비고

1.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50/100
2.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라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라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

※ *평정사항 _ '교감등' 용*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1. 교감	가. 근무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20점)	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1)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40점)	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나)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다) 교사의 자질 · 능력 · 경험에 따라 학년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가?
			라) 교원연구 · 연수 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가?
		2) 교원지원(20점)	가) 교사들에게 필요한 장학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가?
			나) 교직원의 복무 ·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다)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
			라)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3) 행정 · 사무관리(20점)	가)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나) 교내의 모든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다) 교육시설 · 설비를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라) 학교 안전관리 및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서식 20

다면평가자 서약서

본인은 다면평가자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장이 정한 다면평가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다면평가자로서 학교장이 정한 다면평가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다면평가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다면평가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배하여 다면평가자에서 해촉되고, 본인의 평가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동의서 1통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인)

○○학교장 귀하

평정대상 인원별 근무성적 분포 조견표(중등)

평정대상인원	수 30%	우 40%	미 20%	양 10%
1	1			
2	2[2]			
3	1	1	1	
4	1	2	1	
5	2	2	1	
6	2	2	1	1
7	2	3	1	1
8	2	3	2	1
9	3	3	2	1
10	3	4	2	1
11	3	5	2	1
12	4	5	2	1
13	4	5	3	1
14	4	6	3	1
15	5	6	3	1
16	5	6	3	2
17	5	7	3	2
18	5	7	4	2
19	6	7	4	2
20	6	8	4	2
21	6	9	4	2
22	7	9	4	2
23	7	9	5	2
24	7	10	5	2
25	8	10	5	2
26	8	10	5	3
27	8	11	5	3
28	8	11	6	3
29	9	11	6	3
30	9	12	6	3
31	9	13	6	3
32	10	13	6	3
33	10	13	7	3
34	10	14	7	3
35	11	14	7	3
36	11	14	7	4
37	11	15	7	4
38	11	15	8	4
39	12	15	8	4
40	12	16	8	4
41	12	17	8	4
42	13	17	8	4
43	13	17	9	4
44	13	18	9	4

평정대상인원	수 30%	우 40%	미 20%	양 10%
45	14	18	9	4
46	14	18	9	5
47	14	19	9	5
48	14	19	10	5
49	15	19	10	5
50	15	20	10	5
51	15	21	10	5
52	16	21	10	5
53	16	21	11	5
54	16	22	11	5
55	17	22	11	5
56	17	22	11	6
57	17	23	11	6
58	17	23	12	6
59	18	23	12	6
60	18	24	12	6
61	18	25	12	6
62	19	25	12	6
63	19	25	13	6
64	19	26	13	6
65	20	26	13	6
66	20	26	13	7
67	20	27	13	7
68	20	27	14	7
69	21	27	14	7
70	21	28	14	7
71	21	29	14	7
72	22	29	14	7
73	22	29	15	7
74	22	30	15	7
75	23	30	15	7
76	23	30	15	8
77	23	31	15	8
78	23	31	16	8
79	24	31	16	8
80	24	32	16	8
81	24	33	16	8
82	25	33	16	8
83	25	33	17	8
84	25	34	17	8
85	26	34	17	8
86	26	34	17	9
87	26	35	17	9
88	26	35	18	9

평정대상인원	수 30%	우 40%	미 20%	양 10%
89	27	35	18	9
90	27	36	18	9
91	27	37	18	9
92	28	37	18	9
93	28	37	19	9
94	28	38	19	9
95	29	38	19	9
96	29	38	19	10
97	29	39	19	10
98	29	39	20	10
99	30	39	20	10
100	30	40	20	10
101	30	41	20	10
102	31	41	20	10
103	31	41	21	10
104	31	42	21	10
105	32	42	21	10
106	32	42	21	11
107	32	43	21	11
108	32	43	22	11
109	33	43	22	11
110	33	44	22	11
111	33	45	22	11
112	34	45	22	11
113	34	45	23	11
114	34	46	23	11
115	35	46	23	11
116	35	46	23	12
117	35	47	23	12
118	35	47	24	12
119	36	47	24	12
120	36	48	24	12
121	36	49	24	12
122	37	49	24	12
123	37	49	25	12
124	37	50	25	12
125	38	50	25	12
126	38	50	25	13
127	38	51	25	13
128	38	51	26	13
129	39	51	26	13
130	39	52	26	13
131	39	53	26	13
132	40	53	26	13

2) ○ 교사 2인 평정인 경우 급간을 달리하여 평정하여야 함.
예) “수, 우 평정” 또는 “수, 미 평정” 또는 “우, 미 평정” 등
○ 복수 교감의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 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교육부 인사실무편람 2016. 5.)

근무성적평정 조정점 조견표(중등)

NO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99.20	99.26	99.26	99.26	99.31	99.31	99.31	99.31	99.34	99.34	99.34	99.36	99.36	99.36	99.38	99.38	99.38	99.38	99.45	99.45
3	98.40	98.52	98.52	98.52	98.62	98.62	98.62	98.62	98.68	98.68	98.68	98.72	98.72	98.72	98.76	98.76	98.76	98.76	98.90	98.90
4	94.99	97.78	97.78	97.78	97.93	97.93	97.93	97.93	98.02	98.02	98.02	98.08	98.08	98.08	98.14	98.14	98.14	98.14	98.35	98.35
5	94.36	94.99	94.99	94.99	97.24	97.24	97.24	97.24	97.36	97.36	97.36	97.44	97.44	97.44	97.52	97.52	97.52	97.52	97.80	97.80
6	93.73	94.36	94.36	94.40	94.99	94.99	94.99	94.99	96.70	96.70	96.70	96.80	96.80	96.80	96.90	96.90	96.90	96.90	97.25	97.25
7	93.10	93.73	93.73	93.81	94.40	94.40	94.43	94.43	94.99	94.99	94.99	96.16	96.16	96.16	96.28	96.28	96.28	96.28	96.70	96.70
8	92.47	93.10	93.10	93.22	93.81	93.81	93.87	93.87	94.43	94.46	94.48	94.99	94.99	94.99	95.66	95.66	95.66	95.66	96.15	96.15
9	89.99	92.47	92.47	92.63	93.22	93.22	93.31	93.31	93.87	93.93	93.97	94.48	94.48	94.49	94.99	94.99	94.99	94.99	95.60	95.60
10	89.19	89.99	89.99	92.04	92.63	92.63	92.75	92.75	93.31	93.40	93.46	93.97	93.97	93.99	94.49	94.49	94.54	94.54	94.99	94.99
11	88.39	89.19	89.25	89.99	92.04	92.04	92.19	92.19	92.75	92.87	92.95	93.46	93.46	93.49	93.99	93.99	94.09	94.09	94.54	94.58
12	---	88.39	88.51	89.25	89.99	89.99	91.63	91.63	92.19	92.34	92.44	92.95	92.95	92.99	93.49	93.49	93.64	93.64	94.09	94.17
13	---	---	87.77	88.51	89.25	89.30	89.99	89.99	91.63	91.81	91.93	92.44	92.44	92.49	92.99	92.99	93.19	93.19	93.64	93.76
14	---	---	---	87.77	88.51	88.61	89.30	89.33	89.99	91.28	91.42	91.93	91.93	91.99	92.49	92.49	92.74	92.74	93.19	93.35
15	---	---	---	---	87.77	87.92	88.61	88.67	89.33	89.99	90.91	91.42	91.42	91.49	91.99	91.99	92.29	92.29	92.74	92.94
16	---	---	---	---	---	87.23	87.92	88.01	88.67	89.33	89.99	90.91	90.91	90.99	91.49	91.49	91.84	91.84	92.29	92.53
17	---	---	---	---	---	---	87.23	87.35	88.01	88.67	89.33	89.99	89.99	90.49	90.99	90.99	91.39	91.39	91.84	92.12
18	---	---	---	---	---	---	---	86.69	87.35	88.01	88.67	89.33	89.35	89.99	90.49	90.49	90.94	90.94	91.39	91.71
19	---	---	---	---	---	---	---	---	86.69	87.35	88.01	88.67	88.71	89.35	89.99	89.99	90.49	90.49	90.94	91.30
20	NO	3	4	5	6	7	8	9	10	86.69	87.35	88.01	88.07	88.71	89.35	89.37	89.99	89.99	90.49	90.89
21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86.69	87.35	87.43	88.07	88.71	88.75	89.37	89.44	89.99	90.48
22	2	94.99	94.99	99.00	99.00	99.00	99.00	99.20	99.20	---	---	86.69	86.79	87.43	88.07	88.13	88.75	88.89	89.44	89.99
23	3	89.99	93.99	94.99	94.99	94.99	94.99	98.40	98.40	---	---	---	86.15	86.79	87.43	87.51	88.13	88.34	88.89	89.44
24	4	---	89.99	93.99	93.99	94.20	94.20	94.99	94.99	---	---	---	---	86.15	86.79	86.89	87.51	87.79	88.34	88.89
25	5	---	---	89.99	89.99	93.41	93.41	94.20	94.39	---	---	---	---	---	86.15	86.27	86.89	87.24	87.79	88.34
26	6	---	---	---	88.99	89.99	89.99	93.41	93.79	---	---	---	---	---	---	85.65	86.27	86.69	87.24	87.79
27	7	---	---	---	---	88.99	89.19	89.99	93.19	---	---	---	---	---	---	---	85.65	86.14	86.69	87.24
28	8	---	---	---	---	---	88.39	89.19	89.99	---	---	---	---	---	---	---	---	85.59	86.14	86.69
29	9	---	---	---	---	---	---	88.39	89.19	---	---	---	---	---	---	---	---	---	85.59	86.14
30	10	---	---	---	---	---	---	---	88.39	---	---	---	---	---	---	---	---	---	---	85.59

※ 교사의 경우 2인 이하의 조정점은 총점에 해당하는 급간의 최고점을 부여한다.
예1) 총점이 95.78인 경우 급간이 '수'이므로 조정점을 100점으로 부여함.
예2) 총점이 93.27인 경우 급간이 '우'이므로 조정점을 94.99점으로 부여함.
예3) 총점이 86.65인 경우 급간이 '미'이므로 조정점을 89.99점으로 부여함.

NO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99.45	99.50	99.50	99.50	99.55	99.55	99.55	99.55	99.59	99.59	99.59	99.62	99.62	99.62	99.65	99.65	99.65	99.65	99.67	99.67
3	98.90	99.00	99.00	99.00	99.10	99.10	99.10	99.10	99.18	99.18	99.18	99.24	99.24	99.24	99.30	99.30	99.30	99.30	99.34	99.34
4	98.35	98.50	98.50	98.50	98.65	98.65	98.65	98.65	98.77	98.77	98.77	98.86	98.86	98.86	98.95	98.95	98.95	98.95	99.01	99.01
5	97.80	98.00	98.00	98.00	98.20	98.20	98.20	98.20	98.36	98.36	98.36	98.48	98.48	98.48	98.60	98.60	98.60	98.60	98.68	98.68
6	97.25	97.50	97.50	97.50	97.75	97.75	97.75	97.75	97.95	97.95	97.95	98.10	98.10	98.10	98.25	98.25	98.25	98.25	98.35	98.35
7	96.70	97.00	97.00	97.00	97.30	97.30	97.30	97.30	97.54	97.54	97.54	97.72	97.72	97.72	97.90	97.90	97.90	97.90	98.02	98.02
8	96.15	96.50	96.50	96.50	96.85	96.85	96.85	96.85	97.13	97.13	97.13	97.34	97.34	97.34	97.55	97.55	97.55	97.55	97.69	97.69
9	95.60	96.00	96.00	96.00	96.40	96.40	96.40	96.40	96.72	96.72	96.72	96.96	96.96	96.96	97.20	97.20	97.20	97.20	97.36	97.36
10	94.99	95.50	95.50	95.50	95.95	95.95	95.95	95.95	96.31	96.31	96.31	96.58	96.58	96.58	96.85	96.85	96.85	96.85	97.03	97.03
11	94.61	94.99	94.99	94.99	95.50	95.50	95.50	95.50	95.90	95.90	95.90	96.20	96.20	96.20	96.50	96.50	96.50	96.50	96.70	96.70
12	94.23	94.61	94.61	94.64	94.99	94.99	94.99	94.99	95.49	95.49	95.49	95.82	95.82	95.82	96.15	96.15	96.15	96.15	96.37	96.37
13	93.85	94.23	94.23	94.29	94.64	94.64	94.66	94.66	94.99	94.99	94.99	95.44	95.44	95.44	95.80	95.80	95.80	95.80	96.04	96.04
14	93.47	93.85	93.85	93.94	94.29	94.29	94.33	94.33	94.66	94.68	94.70	94.99	94.99	94.99	95.45	95.45	95.45	95.45	95.71	95.71
15	93.09	93.47	93.47	93.59	93.94	93.94	94.00	94.00	94.33	94.37	94.41	94.70	94.70	94.72	94.99	94.99	94.99	94.99	95.38	95.38
16	92.71	93.09	93.09	93.24	93.59	93.59	93.67	93.67	94.00	94.06	94.12	94.41	94.41	94.45	94.72	94.72	94.73	94.73	94.99	94.99
17	92.33	92.71	92.71	92.89	93.24	93.24	93.34	93.34	93.67	93.75	93.83	94.12	94.12	94.18	94.45	94.45	94.47	94.47	94.73	94.74
18	91.95	92.33	92.33	92.54	92.89	92.89	93.01	93.01	93.34	93.44	93.54	93.83	93.83	93.91	94.18	94.18	94.21	94.21	94.47	94.49
19	91.57	91.95	91.95	92.19	92.54	92.54	92.68	92.68	93.01	93.13	93.25	93.54	93.54	93.64	93.91	93.91	93.95	93.95	94.21	94.24
20	91.19	91.57	91.57	91.84	92.19	92.19	92.35	92.35	92.68	92.82	92.96	93.25	93.25	93.37	93.64	93.64	93.69	93.69	93.95	93.99
21	90.81	91.19	91.19	91.49	91.84	91.84	92.02	92.02	92.35	92.51	92.67	92.96	92.96	93.10	93.37	93.37	93.43	93.43	93.69	93.74
22	90.43	90.81	90.81	91.14	91.49	91.49	91.69	91.69	92.02	92.20	92.38	92.67	92.67	92.83	93.10	93.10	93.17	93.17	93.43	93.49
23	89.99	90.43	90.43	90.79	91.14	91.14	91.36	91.36	91.69	91.89	92.09	92.38	92.38	92.56	92.83	92.83	92.91	92.91	93.17	93.24
24	89.44	89.99	89.99	90.44	90.79	90.79	91.03	91.03	91.36	91.58	91.80	92.09	92.09	92.29	92.56	92.56	92.65	92.65	92.91	92.99
25	88.89	89.44	89.49	89.99	90.44	90.44	90.70	90.70	91.03	91.27	91.51	91.80	91.80	92.02	92.29	92.29	92.39	92.39	92.65	92.74
26	88.34	88.89	88.99	89.49	89.99	89.99	90.37	90.37	90.70	90.96	91.22	91.51	91.51	91.75	92.02	92.02	92.13	92.13	92.39	92.49
27	87.79	88.34	88.49	88.99	89.49	89.54	89.99	89.99	90.37	90.65	90.93	91.22	91.22	91.48	91.75	91.75	91.87	91.87	92.13	92.24
28	87.24	87.79	87.99	88.49	88.99	89.09	89.54	89.58	89.99	90.34	90.64	90.93	90.93	91.21	91.48	91.48	91.61	91.61	91.87	91.99
29	86.69	87.24	87.49	87.99	88.49	88.64	89.09	89.17	89.58	89.99	90.35	90.64	90.64	90.94	91.21	91.21	91.35	91.35	91.61	91.74
30	86.14	86.69	86.99	87.49	87.99	88.19	88.64	88.76	89.17	89.58	89.99	90.35	90.35	90.67	90.94	90.94	91.09	91.09	91.35	91.49
31	85.59	86.14	86.49	86.99	87.49	87.74	88.19	88.35	88.76	89.17	89.58	89.99	89.99	90.40	90.67	90.67	90.83	90.83	91.09	91.24
32	---	85.59	85.99	86.49	86.99	87.29	87.74	87.94	88.35	88.76	89.17	89.58	89.61	89.99	90.40	90.40	90.57	90.57	90.83	90.99
33	---	---	85.49	85.99	86.49	86.84	87.29	87.53	87.94	88.35	88.76	89.17	89.23	89.61	89.99	89.99	90.31	90.31	90.57	90.74
34	---	---	---	85.49	85.99	86.39	86.84	87.12	87.53	87.94	88.35	88.76	88.85	89.23	89.61	89.64	89.99	89.99	90.31	90.49
35	---	---	---	---	85.49	85.94	86.39	86.71	87.12	87.53	87.94	88.35	88.47	88.85	89.23	89.29	89.64	89.66	89.99	90.24
36	---	---	---	---	---	85.49	85.94	86.30	86.71	87.12	87.53	87.94	88.09	88.47	88.85	88.94	89.29	89.33	89.66	89.99
37	---	---	---	---	---	---	85.49	85.89	86.30	86.71	87.12	87.53	87.71	88.09	88.47	88.59	88.94	89.00	89.33	89.66
38	---	---	---	---	---	---	---	85.48	85.89	86.30	86.71	87.12	87.33	87.71	88.09	88.24	88.59	88.67	89.00	89.33
39	---	---	---	---	---	---	---	---	85.48	85.89	86.30	86.71	86.95	87.33	87.71	87.89	88.24	88.34	88.67	89.00
40	---	---	---	---	---	---	---	---	---	85.48	85.89	86.30	86.57	86.95	87.33	87.54	87.89	88.01	88.34	88.67
41	---	---	---	---	---	---	---	---	---	---	85.48	85.89	86.19	86.57	86.95	87.19	87.54	87.68	88.01	88.34
42	---	---	---	---	---	---	---	---	---	---	---	85.48	85.81	86.19	86.57	86.84	87.19	87.35	87.68	88.01
43	---	---	---	---	---	---	---	---	---	---	---	---	85.43	85.81	86.19	86.49	86.84	87.02	87.35	87.68
44	---	---	---	---	---	---	---	---	---	---	---	---	---	85.43	85.81	86.14	86.49	86.69	87.02	87.35
45	---	---	---	---	---	---	---	---	---	---	---	---	---	---	85.43	85.79	86.14	86.36	86.69	87.02
46	---	---	---	---	---	---	---	---	---	---	---	---	---	---	---	85.44	85.79	86.03	86.36	86.69
47	---	---	---	---	---	---	---	---	---	---	---	---	---	---	---	---	85.44	85.70	86.03	86.36
48	---	---	---	---	---	---	---	---	---	---	---	---	---	---	---	---	---	85.37	85.70	86.03
49	---	---	---	---	---	---	---	---	---	---	---	---	---	---	---	---	---	---	85.37	85.70
50	---	---	---	---	---	---	---	---	---	---	---	---	---	---	---	---	---	---	---	85.37

NO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99.67	99.69	99.69	99.69	99.71	99.71	99.71	99.71	99.73	99.73	99.73	99.74	99.74	99.74	99.75	99.75	99.75	99.75	99.77	99.77
3	99.34	99.38	99.38	99.38	99.42	99.42	99.42	99.42	99.46	99.46	99.46	99.48	99.48	99.48	99.50	99.50	99.50	99.50	99.54	99.54
4	99.01	99.07	99.07	99.07	99.13	99.13	99.13	99.13	99.19	99.19	99.19	99.22	99.22	99.22	99.25	99.25	99.25	99.25	99.31	99.31
5	98.68	98.76	98.76	98.76	98.84	98.84	98.84	98.84	98.92	98.92	98.92	98.96	98.96	98.96	99.00	99.00	99.00	99.00	99.08	99.08
6	98.35	98.45	98.45	98.45	98.55	98.55	98.55	98.55	98.65	98.65	98.65	98.70	98.70	98.70	98.75	98.75	98.75	98.75	98.85	98.85
7	98.02	98.14	98.14	98.14	98.26	98.26	98.26	98.26	98.38	98.38	98.38	98.44	98.44	98.44	98.50	98.50	98.50	98.50	98.62	98.62
8	97.69	97.83	97.83	97.83	97.97	97.97	97.97	97.97	98.11	98.11	98.11	98.18	98.18	98.18	98.25	98.25	98.25	98.25	98.39	98.39
9	97.36	97.52	97.52	97.52	97.68	97.68	97.68	97.68	97.84	97.84	97.84	97.92	97.92	97.92	98.00	98.00	98.00	98.00	98.16	98.16
10	97.03	97.21	97.21	97.21	97.39	97.39	97.39	97.39	97.57	97.57	97.57	97.66	97.66	97.66	97.75	97.75	97.75	97.75	97.93	97.93
11	96.70	96.90	96.90	96.90	97.10	97.10	97.10	97.10	97.30	97.30	97.30	97.40	97.40	97.40	97.50	97.50	97.50	97.50	97.70	97.70
12	96.37	96.59	96.59	96.59	96.81	96.81	96.81	96.81	97.03	97.03	97.03	97.14	97.14	97.14	97.25	97.25	97.25	97.25	97.47	97.47
13	96.04	96.28	96.28	96.28	96.52	96.52	96.52	96.52	96.76	96.76	96.76	96.88	96.88	96.88	97.00	97.00	97.00	97.00	97.24	97.24
14	95.71	95.97	95.97	95.97	96.23	96.23	96.23	96.23	96.49	96.49	96.49	96.62	96.62	96.62	96.75	96.75	96.75	96.75	97.01	97.01
15	95.38	95.66	95.66	95.66	95.94	95.94	95.94	95.94	96.22	96.22	96.22	96.36	96.36	96.36	96.50	96.50	96.50	96.50	96.78	96.78
16	94.99	95.35	95.35	95.35	95.65	95.65	95.65	95.65	95.95	95.95	95.95	96.10	96.10	96.10	96.25	96.25	96.25	96.25	96.55	96.55
17	94.76	94.99	94.99	94.99	95.36	95.36	95.36	95.36	95.68	95.68	95.68	95.84	95.84	95.84	96.00	96.00	96.00	96.00	96.32	96.32
18	94.53	94.76	94.76	94.77	94.99	94.99	94.99	94.99	95.41	95.41	95.41	95.58	95.58	95.58	95.75	95.75	95.75	95.75	96.09	96.09
19	94.30	94.53	94.53	94.55	94.77	94.77	94.78	94.78	94.99	94.99	94.99	95.32	95.32	95.32	95.50	95.50	95.50	95.50	95.86	95.86
20	94.07	94.30	94.30	94.33	94.55	94.55	94.57	94.57	94.78	94.79	94.79	94.99	94.99	94.99	95.25	95.25	95.25	95.25	95.63	95.63
21	93.84	94.07	94.07	94.11	94.33	94.33	94.36	94.36	94.57	94.59	94.59	94.79	94.79	94.80	94.99	94.99	94.99	94.99	95.40	95.40
22	93.61	93.84	93.84	93.89	94.11	94.11	94.15	94.15	94.36	94.39	94.39	94.59	94.59	94.61	94.80	94.80	94.81	94.81	94.99	94.99
23	93.38	93.61	93.61	93.67	93.89	93.89	93.94	93.94	94.15	94.19	94.19	94.39	94.39	94.42	94.61	94.61	94.63	94.63	94.81	94.82
24	93.15	93.38	93.38	93.45	93.67	93.67	93.73	93.73	93.94	93.99	93.99	94.19	94.19	94.23	94.42	94.42	94.45	94.45	94.63	94.65
25	92.92	93.15	93.15	93.23	93.45	93.45	93.52	93.52	93.73	93.79	93.79	93.99	93.99	94.04	94.23	94.23	94.27	94.27	94.45	94.48
26	92.69	92.92	92.92	93.01	93.23	93.23	93.31	93.31	93.52	93.59	93.59	93.79	93.79	93.85	94.04	94.04	94.09	94.09	94.27	94.31
27	92.46	92.69	92.69	92.79	93.01	93.01	93.10	93.10	93.31	93.39	93.39	93.59	93.59	93.66	93.85	93.85	93.91	93.91	94.09	94.14
28	92.23	92.46	92.46	92.57	92.79	92.79	92.89	92.89	93.10	93.19	93.19	93.39	93.39	93.47	93.66	93.66	93.73	93.73	93.91	93.97
29	92.00	92.23	92.23	92.35	92.57	92.57	92.68	92.68	92.89	92.99	92.99	93.19	93.19	93.28	93.47	93.47	93.55	93.55	93.73	93.80
30	91.77	92.00	92.00	92.13	92.35	92.35	92.47	92.47	92.68	92.79	92.79	92.99	92.99	93.09	93.28	93.28	93.37	93.37	93.55	93.63
31	91.54	91.77	91.77	91.91	92.13	92.13	92.26	92.26	92.47	92.59	92.59	92.79	92.79	92.90	93.09	93.09	93.19	93.19	93.37	93.46
32	91.31	91.54	91.54	91.69	91.91	91.91	92.05	92.05	92.26	92.39	92.39	92.59	92.59	92.71	92.90	92.90	93.01	93.01	93.19	93.29
33	91.08	91.31	91.31	91.47	91.69	91.69	91.84	91.84	92.05	92.19	92.19	92.39	92.39	92.52	92.71	92.71	92.83	92.83	93.01	93.12
34	90.85	91.08	91.08	91.25	91.47	91.47	91.63	91.63	91.84	91.99	91.99	92.19	92.19	92.33	92.52	92.52	92.65	92.65	92.83	92.95
35	90.62	90.85	90.85	91.03	91.25	91.25	91.42	91.42	91.63	91.79	91.79	91.99	91.99	92.14	92.33	92.33	92.47	92.47	92.65	92.78
36	90.39	90.62	90.62	90.81	91.03	91.03	91.21	91.21	91.42	91.59	91.59	91.79	91.79	91.95	92.14	92.14	92.29	92.29	92.47	92.61
37	89.99	90.39	90.39	90.59	90.81	90.81	91.00	91.00	91.21	91.39	91.39	91.59	91.59	91.76	91.95	91.95	92.11	92.11	92.29	92.44
38	89.66	89.99	89.99	90.37	90.59	90.59	90.79	90.79	91.00	91.19	91.19	91.39	91.39	91.57	91.76	91.76	91.93	91.93	92.11	92.27
39	89.33	89.66	89.68	89.99	90.37	90.37	90.58	90.58	90.79	90.99	90.99	91.19	91.19	91.38	91.57	91.57	91.75	91.75	91.93	92.10
40	89.00	89.33	89.37	89.68	89.99	89.99	90.37	90.37	90.58	90.79	90.79	90.99	90.99	91.19	91.38	91.38	91.57	91.57	91.75	91.93
41	88.67	89.00	89.06	89.37	89.68	89.70	89.99	89.99	90.37	90.59	90.59	90.79	90.79	91.00	91.19	91.19	91.39	91.39	91.57	91.76
42	88.34	88.67	88.75	89.06	89.37	89.41	89.70	89.72	89.99	90.39	90.39	90.59	90.59	90.81	91.00	91.00	91.21	91.21	91.39	91.59
43	88.01	88.34	88.44	88.75	89.06	89.12	89.41	89.45	89.72	89.99	90.19	90.39	90.39	90.62	90.81	90.81	91.03	91.03	91.21	91.42
44	87.68	88.01	88.13	88.44	88.75	88.83	89.12	89.18	89.45	89.72	89.99	90.19	90.19	90.43	90.62	90.62	90.85	90.85	91.03	91.25
45	87.35	87.68	87.82	88.13	88.44	88.54	88.83	88.91	89.18	89.45	89.72	89.99	89.99	90.24	90.43	90.43	90.67	90.67	90.85	91.08
46	87.02	87.35	87.51	87.82	88.13	88.25	88.54	88.64	88.91	89.18	89.45	89.72	89.73	89.99	90.24	90.24	90.49	90.49	90.67	90.91
47	86.69	87.02	87.20	87.51	87.82	87.96	88.25	88.37	88.64	88.91	89.18	89.45	89.47	89.73	89.99	89.99	90.31	90.31	90.49	90.74
48	86.36	86.69	86.89	87.20	87.51	87.67	87.96	88.10	88.37	88.64	88.91	89.18	89.21	89.47	89.73	89.74	89.99	89.99	90.31	90.57
49	86.03	86.36	86.58	86.89	87.20	87.38	87.67	87.83	88.10	88.37	88.64	88.91	88.95	89.21	89.47	89.49	89.74	89.76	89.99	90.40
50	85.70	86.03	86.27	86.58	86.89	87.09	87.38	87.56	87.83	88.10	88.37	88.64	88.69	88.95	89.21	89.24	89.49	89.53	89.76	89.99

NO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51	85.37	85.70	85.96	86.27	86.58	86.80	87.09	87.29	87.56	87.83	88.10	88.37	88.43	88.69	88.95	88.99	89.24	89.30	89.53	89.76
52	---	85.37	85.65	85.96	86.27	86.51	86.80	87.02	87.29	87.56	87.83	88.10	88.17	88.43	88.69	88.74	88.99	89.07	89.30	89.53
53	---	---	85.34	85.65	85.96	86.22	86.51	86.75	87.02	87.29	87.56	87.83	87.91	88.17	88.43	88.49	88.74	88.84	89.07	89.30
54	---	---	---	85.34	85.65	85.93	86.22	86.48	86.75	87.02	87.29	87.56	87.65	87.91	88.17	88.24	88.49	88.61	88.84	89.07
55	---	---	---	---	85.34	85.64	85.93	86.21	86.48	86.75	87.02	87.29	87.39	87.65	87.91	87.99	88.24	88.38	88.61	88.84
56	---	---	---	---	---	85.35	85.64	85.94	86.21	86.48	86.75	87.02	87.13	87.39	87.65	87.74	87.99	88.15	88.38	88.61
57	---	---	---	---	---	---	85.35	85.67	85.94	86.21	86.48	86.75	86.87	87.13	87.39	87.49	87.74	87.92	88.15	88.38
58	---	---	---	---	---	---	---	85.40	85.67	85.94	86.21	86.48	86.61	86.87	87.13	87.24	87.49	87.69	87.92	88.15
59	---	---	---	---	---	---	---	---	85.40	85.67	85.94	86.21	86.35	86.61	86.87	86.99	87.24	87.46	87.69	87.92
60	---	---	---	---	---	---	---	---	---	85.40	85.67	85.94	86.09	86.35	86.61	86.74	86.99	87.23	87.46	87.69
61	---	---	---	---	---	---	---	---	---	---	85.40	85.67	85.83	86.09	86.35	86.49	86.74	87.00	87.23	87.46
62	---	---	---	---	---	---	---	---	---	---	---	85.40	85.57	85.83	86.09	86.24	86.49	86.77	87.00	87.23
63	---	---	---	---	---	---	---	---	---	---	---	---	85.31	85.57	85.83	85.99	86.24	86.54	86.77	87.00
64	---	---	---	---	---	---	---	---	---	---	---	---	---	85.31	85.57	85.74	85.99	86.31	86.54	86.77
65	---	---	---	---	---	---	---	---	---	---	---	---	---	---	85.31	85.49	85.74	86.08	86.31	86.54
66	---	---	---	---	---	---	---	---	---	---	---	---	---	---	---	85.24	85.49	85.85	86.08	86.31
67	---	---	---	---	---	---	---	---	---	---	---	---	---	---	---	---	85.24	85.62	85.85	86.08
68	---	---	---	---	---	---	---	---	---	---	---	---	---	---	---	---	---	85.39	85.62	85.85
69	---	---	---	---	---	---	---	---	---	---	---	---	---	---	---	---	---	---	85.39	85.62
70	---	---	---	---	---	---	---	---	---	---	---	---	---	---	---	---	---	---	---	85.39

NO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99.77	99.78	99.78	99.78	99.79	99.79	99.79	99.79	99.80	99.80	99.80	99.80	99.80	99.80	99.81	99.81	99.81	99.81	99.82	99.82
3	99.54	99.56	99.56	99.56	99.58	99.58	99.58	99.58	99.60	99.60	99.60	99.60	99.60	99.60	99.62	99.62	99.62	99.62	99.64	99.64
4	99.31	99.34	99.34	99.34	99.37	99.37	99.37	99.37	99.40	99.40	99.40	99.40	99.40	99.40	99.43	99.43	99.43	99.43	99.46	99.46
5	99.08	99.12	99.12	99.12	99.16	99.16	99.16	99.16	99.20	99.20	99.20	99.20	99.20	99.20	99.24	99.24	99.24	99.24	99.28	99.28
6	98.85	98.90	98.90	98.90	98.95	98.95	98.95	98.95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5	99.05	99.05	99.05	99.10	99.10
7	98.62	98.68	98.68	98.68	98.74	98.74	98.74	98.74	98.80	98.80	98.80	98.80	98.80	98.80	98.86	98.86	98.86	98.86	98.92	98.92
8	98.39	98.46	98.46	98.46	98.53	98.53	98.53	98.53	98.60	98.60	98.60	98.60	98.60	98.60	98.67	98.67	98.67	98.67	98.74	98.74
9	98.16	98.24	98.24	98.24	98.32	98.32	98.32	98.32	98.40	98.40	98.40	98.40	98.40	98.40	98.48	98.48	98.48	98.48	98.56	98.56
10	97.93	98.02	98.02	98.02	98.11	98.11	98.11	98.11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9	98.29	98.29	98.29	98.38	98.38
11	97.70	97.80	97.80	97.80	97.90	97.90	97.90	97.90	98.00	98.00	98.00	98.00	98.00	98.00	98.10	98.10	98.10	98.10	98.20	98.20
12	97.47	97.58	97.58	97.58	97.69	97.69	97.69	97.69	97.80	97.80	97.80	97.80	97.80	97.80	97.91	97.91	97.91	97.91	98.02	98.02
13	97.24	97.36	97.36	97.36	97.48	97.48	97.48	97.48	97.60	97.60	97.60	97.60	97.60	97.60	97.72	97.72	97.72	97.72	97.84	97.84
14	97.01	97.14	97.14	97.14	97.27	97.27	97.27	97.27	97.40	97.40	97.40	97.40	97.40	97.40	97.53	97.53	97.53	97.53	97.66	97.66
15	96.78	96.92	96.92	96.92	97.06	97.06	97.06	97.06	97.20	97.20	97.20	97.20	97.20	97.20	97.34	97.34	97.34	97.34	97.48	97.48
16	96.55	96.70	96.70	96.70	96.85	96.85	96.85	96.85	97.00	97.00	97.00	97.00	97.00	97.00	97.15	97.15	97.15	97.15	97.30	97.30
17	96.32	96.48	96.48	96.48	96.64	96.64	96.64	96.64	96.80	96.80	96.80	96.80	96.80	96.80	96.96	96.96	96.96	96.96	97.12	97.12
18	96.09	96.26	96.26	96.26	96.43	96.43	96.43	96.43	96.60	96.60	96.60	96.60	96.60	96.60	96.77	96.77	96.77	96.77	96.94	96.94
19	95.86	96.04	96.04	96.04	96.22	96.22	96.22	96.22	96.40	96.40	96.40	96.40	96.40	96.40	96.58	96.58	96.58	96.58	96.76	96.76
20	95.63	95.82	95.82	95.82	96.01	96.01	96.01	96.01	96.20	96.20	96.20	96.20	96.20	96.20	96.39	96.39	96.39	96.39	96.58	96.58
21	95.40	95.60	95.60	95.60	95.80	95.80	95.80	95.80	96.00	96.00	96.00	96.00	96.00	96.00	96.20	96.20	96.20	96.20	96.40	96.40
22	94.99	95.38	95.38	95.38	95.59	95.59	95.59	95.59	95.80	95.80	95.80	95.80	95.80	95.80	96.01	96.01	96.01	96.01	96.22	96.22
23	94.82	94.99	94.99	94.99	95.38	95.38	95.38	95.38	95.60	95.60	95.60	95.60	95.60	95.60	95.82	95.82	95.82	95.82	96.04	96.04
24	94.65	94.82	94.82	94.83	94.99	94.99	94.99	94.99	95.40	95.40	95.40	95.40	95.40	95.40	95.63	95.63	95.63	95.63	95.86	95.86
25	94.48	94.65	94.65	94.67	94.83	94.83	94.83	94.83	94.99	94.99	94.99	95.20	95.20	95.20	95.44	95.44	95.44	95.44	95.68	95.68
26	94.31	94.48	94.48	94.51	94.67	94.67	94.67	94.67	94.83	94.84	94.84	94.99	94.99	94.99	95.25	95.25	95.25	95.25	95.50	95.50
27	94.14	94.31	94.31	94.35	94.51	94.51	94.51	94.51	94.67	94.69	94.69	94.84	94.84	94.85	94.99	94.99	94.99	94.99	95.32	95.32
28	93.97	94.14	94.14	94.19	94.35	94.35	94.35	94.35	94.51	94.54	94.54	94.69	94.69	94.71	94.85	94.85	94.85	94.85	94.99	94.99
29	93.80	93.97	93.97	94.03	94.19	94.19	94.19	94.19	94.35	94.39	94.39	94.54	94.54	94.57	94.71	94.71	94.71	94.71	94.85	94.86
30	93.63	93.80	93.80	93.87	94.03	94.03	94.03	94.03	94.19	94.24	94.24	94.39	94.39	94.43	94.57	94.57	94.57	94.57	94.71	94.73
31	93.46	93.63	93.63	93.71	93.87	93.87	93.87	93.87	94.03	94.09	94.09	94.24	94.24	94.29	94.43	94.43	94.43	94.43	94.57	94.60
32	93.29	93.46	93.46	93.55	93.71	93.71	93.71	93.71	93.87	93.94	93.94	94.09	94.09	94.15	94.29	94.29	94.29	94.29	94.43	94.47
33	93.12	93.29	93.29	93.39	93.55	93.55	93.55	93.55	93.71	93.79	93.79	93.94	93.94	94.01	94.15	94.15	94.15	94.15	94.29	94.34
34	92.95	93.12	93.12	93.23	93.39	93.39	93.39	93.39	93.55	93.64	93.64	93.79	93.79	93.87	94.01	94.01	94.01	94.01	94.15	94.21
35	92.78	92.95	92.95	93.07	93.23	93.23	93.23	93.23	93.39	93.49	93.49	93.64	93.64	93.73	93.87	93.87	93.87	93.87	94.01	94.08
36	92.61	92.78	92.78	92.91	93.07	93.07	93.07	93.07	93.23	93.34	93.34	93.49	93.49	93.59	93.73	93.73	93.73	93.73	93.87	93.95
37	92.44	92.61	92.61	92.75	92.91	92.91	92.91	92.91	93.07	93.19	93.19	93.34	93.34	93.45	93.59	93.59	93.59	93.59	93.73	93.82
38	92.27	92.44	92.44	92.59	92.75	92.75	92.75	92.75	92.91	93.04	93.04	93.19	93.19	93.31	93.45	93.45	93.45	93.45	93.59	93.69
39	92.10	92.27	92.27	92.43	92.59	92.59	92.59	92.59	92.75	92.89	92.89	93.04	93.04	93.17	93.31	93.31	93.31	93.31	93.45	93.56
40	91.93	92.10	92.10	92.27	92.43	92.43	92.43	92.43	92.59	92.74	92.74	92.89	92.89	93.03	93.17	93.17	93.17	93.17	93.31	93.43
41	91.76	91.93	91.93	92.11	92.27	92.27	92.27	92.27	92.43	92.59	92.59	92.74	92.74	92.89	93.03	93.03	93.03	93.03	93.17	93.30
42	91.59	91.76	91.76	91.95	92.11	92.11	92.11	92.11	92.27	92.44	92.44	92.59	92.59	92.75	92.89	92.89	92.89	92.89	93.03	93.17
43	91.42	91.59	91.59	91.79	91.95	91.95	91.95	91.95	92.11	92.29	92.29	92.44	92.44	92.61	92.75	92.75	92.75	92.75	92.89	93.04
44	91.25	91.42	91.42	91.63	91.79	91.79	91.79	91.79	91.95	92.14	92.14	92.29	92.29	92.47	92.61	92.61	92.61	92.61	92.75	92.91
45	91.08	91.25	91.25	91.47	91.63	91.63	91.63	91.63	91.79	91.99	91.99	92.14	92.14	92.33	92.47	92.47	92.47	92.47	92.61	92.78
46	90.91	91.08	91.08	91.31	91.47	91.47	91.47	91.47	91.63	91.84	91.84	91.99	91.99	92.19	92.33	92.33	92.33	92.33	92.47	92.65
47	90.74	90.91	90.91	91.15	91.31	91.31	91.31	91.31	91.47	91.69	91.69	91.84	91.84	92.05	92.19	92.19	92.19	92.19	92.33	92.52
48	90.57	90.74	90.74	90.99	91.15	91.15	91.15	91.15	91.31	91.54	91.54	91.69	91.69	91.91	92.05	92.05	92.05	92.05	92.19	92.39
49	90.40	90.57	90.57	90.83	90.99	90.99	90.99	90.99	91.15	91.39	91.39	91.54	91.54	91.77	91.91	91.91	91.91	91.91	92.05	92.26
50	90.23	90.40	90.40	90.67	90.83	90.83	90.83	90.83	90.99	91.24	91.24	91.39	91.39	91.63	91.77	91.77	91.77	91.77	91.91	92.13

NO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51	89.99	90.23	90.23	90.51	90.67	90.67	90.67	90.67	90.83	91.09	91.09	91.24	91.24	91.49	91.63	91.63	91.63	91.63	91.77	92.00
52	89.76	89.99	89.99	90.35	90.51	90.51	90.51	90.51	90.67	90.94	90.94	91.09	91.09	91.35	91.49	91.49	91.49	91.49	91.63	91.87
53	89.53	89.76	89.77	89.99	90.35	90.35	90.35	90.35	90.51	90.79	90.79	90.94	90.94	91.21	91.35	91.35	91.35	91.35	91.49	91.74
54	89.30	89.53	89.55	89.77	89.99	89.99	90.19	90.19	90.35	90.64	90.64	90.79	90.79	91.07	91.21	91.21	91.21	91.21	91.35	91.61
55	89.07	89.30	89.33	89.55	89.77	89.78	89.99	89.99	90.19	90.49	90.49	90.64	90.64	90.93	91.07	91.07	91.07	91.07	91.21	91.48
56	88.84	89.07	89.11	89.33	89.55	89.57	89.78	89.79	89.99	90.34	90.34	90.49	90.49	90.79	90.93	90.93	90.93	90.93	91.07	91.35
57	88.61	88.84	88.89	89.11	89.33	89.36	89.57	89.59	89.79	89.99	90.19	90.34	90.34	90.65	90.79	90.79	90.79	90.79	90.93	91.22
58	88.38	88.61	88.67	88.89	89.11	89.15	89.36	89.39	89.59	89.79	89.99	90.19	90.19	90.51	90.65	90.65	90.65	90.65	90.79	91.09
59	88.15	88.38	88.45	88.67	88.89	88.94	89.15	89.19	89.39	89.59	89.79	89.99	89.99	90.37	90.51	90.51	90.51	90.51	90.65	90.96
60	87.92	88.15	88.23	88.45	88.67	88.73	88.94	88.99	89.19	89.39	89.59	89.79	89.79	89.99	90.37	90.37	90.37	90.37	90.51	90.83
61	87.69	87.92	88.01	88.23	88.45	88.52	88.73	88.79	88.99	89.19	89.39	89.59	89.59	89.79	89.99	89.99	90.23	90.23	90.37	90.70
62	87.46	87.69	87.79	88.01	88.23	88.31	88.52	88.59	88.79	88.99	89.19	89.39	89.39	89.59	89.79	89.80	89.99	89.99	90.23	90.57
63	87.23	87.46	87.57	87.79	88.01	88.10	88.31	88.39	88.59	88.79	88.99	89.19	89.19	89.39	89.59	89.61	89.80	89.81	89.99	90.44
64	87.00	87.23	87.35	87.57	87.79	87.89	88.10	88.19	88.39	88.59	88.79	88.99	88.99	89.19	89.39	89.42	89.61	89.63	89.81	89.99
65	86.77	87.00	87.13	87.35	87.57	87.68	87.89	87.99	88.19	88.39	88.59	88.79	88.79	88.99	89.19	89.23	89.42	89.45	89.63	89.81
66	86.54	86.77	86.91	87.13	87.35	87.47	87.68	87.79	87.99	88.19	88.39	88.59	88.59	88.79	88.99	89.04	89.23	89.27	89.45	89.63
67	86.31	86.54	86.69	86.91	87.13	87.26	87.47	87.59	87.79	87.99	88.19	88.39	88.39	88.59	88.79	88.85	89.04	89.09	89.27	89.45
68	86.08	86.31	86.47	86.69	86.91	87.05	87.26	87.39	87.59	87.79	87.99	88.19	88.19	88.39	88.59	88.66	88.85	88.91	89.09	89.27
69	85.85	86.08	86.25	86.47	86.69	86.84	87.05	87.19	87.39	87.59	87.79	87.99	87.99	88.19	88.39	88.47	88.66	88.73	88.91	89.09
70	85.62	85.85	86.03	86.25	86.47	86.63	86.84	86.99	87.19	87.39	87.59	87.79	87.79	87.99	88.19	88.28	88.47	88.55	88.73	88.91
71	85.39	85.62	85.81	86.03	86.25	86.42	86.63	86.79	86.99	87.19	87.39	87.59	87.59	87.79	87.99	88.09	88.28	88.37	88.55	88.73
72	---	85.39	85.59	85.81	86.03	86.21	86.42	86.59	86.79	86.99	87.19	87.39	87.39	87.59	87.79	87.90	88.09	88.19	88.37	88.55
73	---	---	85.37	85.59	85.81	86.00	86.21	86.39	86.59	86.79	86.99	87.19	87.19	87.39	87.59	87.71	87.90	88.01	88.19	88.37
74	---	---	---	85.37	85.59	85.79	86.00	86.19	86.39	86.59	86.79	86.99	86.99	87.19	87.39	87.52	87.71	87.83	88.01	88.19
75	---	---	---	---	85.37	85.58	85.79	85.99	86.19	86.39	86.59	86.79	86.79	86.99	87.19	87.33	87.52	87.65	87.83	88.01
76	---	---	---	---	---	85.37	85.58	85.79	85.99	86.19	86.39	86.59	86.59	86.79	86.99	87.14	87.33	87.47	87.65	87.83
77	---	---	---	---	---	---	85.37	85.59	85.79	85.99	86.19	86.39	86.39	86.59	86.79	86.95	87.14	87.29	87.47	87.65
78	---	---	---	---	---	---	---	85.39	85.59	85.79	85.99	86.19	86.19	86.39	86.59	86.76	86.95	87.11	87.29	87.47
79	---	---	---	---	---	---	---	---	85.39	85.59	85.79	85.99	85.99	86.19	86.39	86.57	86.76	86.93	87.11	87.29
80	---	---	---	---	---	---	---	---	---	85.39	85.59	85.79	85.79	85.99	86.19	86.38	86.57	86.75	86.93	87.11
81	---	---	---	---	---	---	---	---	---	---	85.39	85.59	85.59	85.79	85.99	86.19	86.38	86.57	86.75	86.93
82	---	---	---	---	---	---	---	---	---	---	---	85.39	85.39	85.59	85.79	86.00	86.19	86.39	86.57	86.75
83	---	---	---	---	---	---	---	---	---	---	---	---	85.19	85.39	85.59	85.81	86.00	86.21	86.39	86.57
84	---	---	---	---	---	---	---	---	---	---	---	---	---	85.19	85.39	85.62	85.81	86.03	86.21	86.39
85	---	---	---	---	---	---	---	---	---	---	---	---	---	---	85.19	85.43	85.62	85.85	86.03	86.21
86	---	---	---	---	---	---	---	---	---	---	---	---	---	---	---	85.24	85.43	85.67	85.85	86.03
87	---	---	---	---	---	---	---	---	---	---	---	---	---	---	---	---	85.24	85.49	85.67	85.85
88	---	---	---	---	---	---	---	---	---	---	---	---	---	---	---	---	---	85.31	85.49	85.67
89	---	---	---	---	---	---	---	---	---	---	---	---	---	---	---	---	---	---	85.31	85.49
90	---	---	---	---	---	---	---	---	---	---	---	---	---	---	---	---	---	---	---	85.31

NO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99.82	99.83	99.83	99.83	99.83	99.83	99.83	99.83	99.84	99.84	99.84	99.84	99.84	99.84	99.85	99.85	99.85	99.85	99.85	99.85
3	99.64	99.66	99.66	99.66	99.66	99.66	99.66	99.66	99.68	99.68	99.68	99.68	99.68	99.68	99.70	99.70	99.70	99.70	99.70	99.70
4	99.46	99.49	99.49	99.49	99.49	99.49	99.49	99.49	99.52	99.52	99.52	99.52	99.52	99.52	99.55	99.55	99.55	99.55	99.55	99.55
5	99.28	99.32	99.32	99.32	99.32	99.32	99.32	99.32	99.36	99.36	99.36	99.36	99.36	99.36	99.40	99.40	99.40	99.40	99.40	99.40
6	99.10	99.15	99.15	99.15	99.15	99.15	99.15	99.15	99.20	99.20	99.20	99.20	99.20	99.20	99.25	99.25	99.25	99.25	99.25	99.25
7	98.92	98.98	98.98	98.98	98.98	98.98	98.98	98.98	99.04	99.04	99.04	99.04	99.04	99.04	99.10	99.10	99.10	99.10	99.10	99.10
8	98.74	98.81	98.81	98.81	98.81	98.81	98.81	98.81	98.88	98.88	98.88	98.88	98.88	98.88	98.95	98.95	98.95	98.95	98.95	98.95
9	98.56	98.64	98.64	98.64	98.64	98.64	98.64	98.64	98.72	98.72	98.72	98.72	98.72	98.72	98.80	98.80	98.80	98.80	98.80	98.80
10	98.38	98.47	98.47	98.47	98.47	98.47	98.47	98.47	98.56	98.56	98.56	98.56	98.56	98.56	98.65	98.65	98.65	98.65	98.65	98.65
11	98.20	98.30	98.30	98.30	98.30	98.30	98.30	98.30	98.40	98.40	98.40	98.40	98.40	98.40	98.50	98.50	98.50	98.50	98.50	98.50
12	98.02	98.13	98.13	98.13	98.13	98.13	98.13	98.13	98.24	98.24	98.24	98.24	98.24	98.24	98.35	98.35	98.35	98.35	98.35	98.35
13	97.84	97.96	97.96	97.96	97.96	97.96	97.96	97.96	98.08	98.08	98.08	98.08	98.08	98.08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14	97.66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92	97.92	97.92	97.92	97.92	97.92	98.05	98.05	98.05	98.05	98.05	98.05
15	97.48	97.62	97.62	97.62	97.62	97.62	97.62	97.62	97.76	97.76	97.76	97.76	97.76	97.76	97.90	97.90	97.90	97.90	97.90	97.90
16	97.30	97.45	97.45	97.45	97.45	97.45	97.45	97.45	97.60	97.60	97.60	97.60	97.60	97.60	97.75	97.75	97.75	97.75	97.75	97.75
17	97.12	97.28	97.28	97.28	97.28	97.28	97.28	97.28	97.44	97.44	97.44	97.44	97.44	97.44	97.60	97.60	97.60	97.60	97.60	97.60
18	96.94	97.11	97.11	97.11	97.11	97.11	97.11	97.11	97.28	97.28	97.28	97.28	97.28	97.28	97.45	97.45	97.45	97.45	97.45	97.45
19	96.76	96.94	96.94	96.94	96.94	96.94	96.94	96.94	97.12	97.12	97.12	97.12	97.12	97.12	97.30	97.30	97.30	97.30	97.30	97.30
20	96.58	96.77	96.77	96.77	96.77	96.77	96.77	96.77	96.96	96.96	96.96	96.96	96.96	96.96	97.15	97.15	97.15	97.15	97.15	97.15
21	96.40	96.60	96.60	96.60	96.60	96.60	96.60	96.60	96.80	96.80	96.80	96.80	96.80	96.80	97.00	97.00	97.00	97.00	97.00	97.00
22	96.22	96.43	96.43	96.43	96.43	96.43	96.43	96.43	96.64	96.64	96.64	96.64	96.64	96.64	96.85	96.85	96.85	96.85	96.85	96.85
23	96.04	96.26	96.26	96.26	96.26	96.26	96.26	96.26	96.48	96.48	96.48	96.48	96.48	96.48	96.70	96.70	96.70	96.70	96.70	96.70
24	95.86	96.09	96.09	96.09	96.09	96.09	96.09	96.09	96.32	96.32	96.32	96.32	96.32	96.32	96.55	96.55	96.55	96.55	96.55	96.55
25	95.68	95.92	95.92	95.92	95.92	95.92	95.92	95.92	96.16	96.16	96.16	96.16	96.16	96.16	96.40	96.40	96.40	96.40	96.40	96.40
26	95.50	95.75	95.75	95.75	95.75	95.75	95.75	95.75	96.00	96.00	96.00	96.00	96.00	96.00	96.25	96.25	96.25	96.25	96.25	96.25
27	95.32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6.10	96.10	96.10	96.10	96.10	96.10
28	94.99	95.41	95.41	95.41	95.41	95.41	95.41	95.41	95.68	95.68	95.68	95.68	95.68	95.68	95.95	95.95	95.95	95.95	95.95	95.95
29	94.86	94.99	94.99	94.99	95.24	95.24	95.24	95.24	95.52	95.52	95.52	95.52	95.52	95.52	95.80	95.80	95.80	95.80	95.80	95.80
30	94.73	94.86	94.86	94.86	94.99	94.99	94.99	94.99	95.36	95.36	95.36	95.36	95.36	95.36	95.65	95.65	95.65	95.65	95.65	95.65
31	94.60	94.73	94.73	94.73	94.86	94.86	94.87	94.87	94.99	94.99	94.99	95.20	95.20	95.20	95.50	95.50	95.50	95.50	95.50	95.50
32	94.47	94.60	94.60	94.60	94.73	94.73	94.75	94.75	94.87	94.87	94.87	94.99	94.99	94.99	95.35	95.35	95.35	95.35	95.35	95.35
33	94.34	94.47	94.47	94.47	94.60	94.60	94.63	94.63	94.75	94.75	94.75	94.87	94.87	94.88	94.99	94.99	94.99	94.99	95.20	95.20
34	94.21	94.34	94.34	94.34	94.47	94.47	94.51	94.51	94.63	94.63	94.63	94.75	94.75	94.77	94.88	94.88	94.88	94.88	94.99	94.99
35	94.08	94.21	94.21	94.21	94.34	94.34	94.39	94.39	94.51	94.51	94.51	94.63	94.63	94.66	94.77	94.77	94.77	94.77	94.88	94.88
36	93.95	94.08	94.08	94.08	94.21	94.21	94.27	94.27	94.39	94.39	94.39	94.51	94.51	94.55	94.66	94.66	94.66	94.66	94.77	94.77
37	93.82	93.95	93.95	93.95	94.08	94.08	94.15	94.15	94.27	94.27	94.27	94.39	94.39	94.44	94.55	94.55	94.55	94.55	94.66	94.66
38	93.69	93.82	93.82	93.82	93.95	93.95	94.03	94.03	94.15	94.15	94.15	94.27	94.27	94.33	94.44	94.44	94.44	94.44	94.55	94.55
39	93.56	93.69	93.69	93.69	93.82	93.82	93.91	93.91	94.03	94.03	94.03	94.15	94.15	94.22	94.33	94.33	94.33	94.33	94.44	94.44
40	93.43	93.56	93.56	93.56	93.69	93.69	93.79	93.79	93.91	93.91	93.91	94.03	94.03	94.11	94.22	94.22	94.22	94.22	94.33	94.33
41	93.30	93.43	93.43	93.43	93.56	93.56	93.67	93.67	93.79	93.79	93.79	93.91	93.91	94.00	94.11	94.11	94.11	94.11	94.22	94.22
42	93.17	93.30	93.30	93.30	93.43	93.43	93.55	93.55	93.67	93.67	93.67	93.79	93.79	93.89	94.00	94.00	94.00	94.00	94.11	94.11
43	93.04	93.17	93.17	93.17	93.30	93.30	93.43	93.43	93.55	93.55	93.55	93.67	93.67	93.78	93.89	93.89	93.89	93.89	94.00	94.00
44	92.91	93.04	93.04	93.04	93.17	93.17	93.31	93.31	93.43	93.43	93.43	93.55	93.55	93.67	93.78	93.78	93.78	93.78	93.89	93.89
45	92.78	92.91	92.91	92.91	93.04	93.04	93.19	93.19	93.31	93.31	93.31	93.43	93.43	93.56	93.67	93.67	93.67	93.67	93.78	93.78
46	92.65	92.78	92.78	92.78	92.91	92.91	93.07	93.07	93.19	93.19	93.19	93.31	93.31	93.45	93.56	93.56	93.56	93.56	93.67	93.67
47	92.52	92.65	92.65	92.65	92.78	92.78	92.95	92.95	93.07	93.07	93.07	93.19	93.19	93.34	93.45	93.45	93.45	93.45	93.56	93.56
48	92.39	92.52	92.52	92.52	92.65	92.65	92.83	92.83	92.95	92.95	92.95	93.07	93.07	93.23	93.34	93.34	93.34	93.34	93.45	93.45
49	92.26	92.39	92.39	92.39	92.52	92.52	92.71	92.71	92.83	92.83	92.83	92.95	92.95	93.12	93.23	93.23	93.23	93.23	93.34	93.34
50	92.13	92.26	92.26	92.26	92.39	92.39	92.59	92.59	92.71	92.71	92.71	92.83	92.83	93.01	93.12	93.12	93.12	93.12	93.23	93.23

NO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51	92.00	92.13	92.13	92.13	92.26	92.26	92.47	92.47	92.59	92.59	92.59	92.71	92.71	92.90	93.01	93.01	93.01	93.01	93.12	93.12
52	91.87	92.00	92.00	92.00	92.13	92.13	92.35	92.35	92.47	92.47	92.47	92.59	92.59	92.79	92.90	92.90	92.90	92.90	93.01	93.01
53	91.74	91.87	91.87	91.87	92.00	92.00	92.23	92.23	92.35	92.35	92.35	92.47	92.47	92.68	92.79	92.79	92.79	92.79	92.90	92.90
54	91.61	91.74	91.74	91.74	91.87	91.87	92.11	92.11	92.23	92.23	92.23	92.35	92.35	92.57	92.68	92.68	92.68	92.68	92.79	92.79
55	91.48	91.61	91.61	91.61	91.74	91.74	91.99	91.99	92.11	92.11	92.11	92.23	92.23	92.46	92.57	92.57	92.57	92.57	92.68	92.68
56	91.35	91.48	91.48	91.48	91.61	91.61	91.87	91.87	91.99	91.99	91.99	92.11	92.11	92.35	92.46	92.46	92.46	92.46	92.57	92.57
57	91.22	91.35	91.35	91.35	91.48	91.48	91.75	91.75	91.87	91.87	91.87	91.99	91.99	92.24	92.35	92.35	92.35	92.35	92.46	92.46
58	91.09	91.22	91.22	91.22	91.35	91.35	91.63	91.63	91.75	91.75	91.75	91.87	91.87	92.13	92.24	92.24	92.24	92.24	92.35	92.35
59	90.96	91.09	91.09	91.09	91.22	91.22	91.51	91.51	91.63	91.63	91.63	91.75	91.75	92.02	92.13	92.13	92.13	92.13	92.24	92.24
60	90.83	90.96	90.96	90.96	91.09	91.09	91.39	91.39	91.51	91.51	91.51	91.63	91.63	91.91	92.02	92.02	92.02	92.02	92.13	92.13
61	90.70	90.83	90.83	90.83	90.96	90.96	91.27	91.27	91.39	91.39	91.39	91.51	91.51	91.80	91.91	91.91	91.91	91.91	92.02	92.02
62	90.57	90.70	90.70	90.70	90.83	90.83	91.15	91.15	91.27	91.27	91.27	91.39	91.39	91.69	91.80	91.80	91.80	91.80	91.91	91.91
63	90.44	90.57	90.57	90.57	90.70	90.70	91.03	91.03	91.15	91.15	91.15	91.27	91.27	91.58	91.69	91.69	91.69	91.69	91.80	91.80
64	90.31	90.44	90.44	90.44	90.57	90.57	90.91	90.91	91.03	91.03	91.03	91.15	91.15	91.47	91.58	91.58	91.58	91.58	91.69	91.69
65	89.99	90.31	90.31	90.31	90.44	90.44	90.79	90.79	90.91	90.91	90.91	91.03	91.03	91.36	91.47	91.47	91.47	91.47	91.58	91.58
66	89.81	89.99	89.99	90.18	90.31	90.31	90.67	90.67	90.79	90.79	90.79	90.91	90.91	91.25	91.36	91.36	91.36	91.36	91.47	91.47
67	89.63	89.81	89.82	89.99	90.18	90.18	90.55	90.55	90.67	90.67	90.67	90.79	90.79	91.14	91.25	91.25	91.25	91.25	91.36	91.36
68	89.45	89.63	89.65	89.82	89.99	89.99	90.43	90.43	90.55	90.55	90.55	90.67	90.67	91.03	91.14	91.14	91.14	91.14	91.25	91.25
69	89.27	89.45	89.48	89.65	89.82	89.82	89.99	89.99	90.43	90.43	90.43	90.55	90.55	90.92	91.03	91.03	91.03	91.03	91.14	91.14
70	89.09	89.27	89.31	89.48	89.65	89.65	89.82	89.83	89.99	90.31	90.31	90.43	90.43	90.81	90.92	90.92	90.92	90.92	91.03	91.03
71	88.91	89.09	89.14	89.31	89.48	89.48	89.65	89.67	89.83	89.99	90.19	90.31	90.31	90.70	90.81	90.81	90.81	90.81	90.92	90.92
72	88.73	88.91	88.97	89.14	89.31	89.31	89.48	89.51	89.67	89.83	89.99	90.19	90.19	90.59	90.70	90.70	90.70	90.70	90.81	90.81
73	88.55	88.73	88.80	88.97	89.14	89.14	89.31	89.35	89.51	89.67	89.83	89.99	89.99	90.48	90.59	90.59	90.59	90.59	90.70	90.70
74	88.37	88.55	88.63	88.80	88.97	88.97	89.14	89.19	89.35	89.51	89.67	89.83	89.83	89.99	90.48	90.48	90.48	90.48	90.59	90.59
75	88.19	88.37	88.46	88.63	88.80	88.80	88.97	89.03	89.19	89.35	89.51	89.67	89.67	89.83	89.99	89.99	90.37	90.37	90.48	90.48
76	88.01	88.19	88.29	88.46	88.63	88.63	88.80	88.87	89.03	89.19	89.35	89.51	89.51	89.67	89.83	89.84	89.99	89.99	90.37	90.37
77	87.83	88.01	88.12	88.29	88.46	88.46	88.63	88.71	88.87	89.03	89.19	89.35	89.35	89.51	89.67	89.69	89.84	89.84	89.99	90.26
78	87.65	87.83	87.95	88.12	88.29	88.29	88.46	88.55	88.71	88.87	89.03	89.19	89.19	89.35	89.51	89.54	89.69	89.69	89.84	89.99
79	87.47	87.65	87.78	87.95	88.12	88.12	88.29	88.39	88.55	88.71	88.87	89.03	89.03	89.19	89.35	89.39	89.54	89.54	89.69	89.84
80	87.29	87.47	87.61	87.78	87.95	87.95	88.12	88.23	88.39	88.55	88.71	88.87	88.87	89.03	89.19	89.24	89.39	89.39	89.54	89.69
81	87.11	87.29	87.44	87.61	87.78	87.78	87.95	88.07	88.23	88.39	88.55	88.71	88.71	88.87	89.03	89.09	89.24	89.24	89.39	89.54
82	86.93	87.11	87.27	87.44	87.61	87.61	87.78	87.91	88.07	88.23	88.39	88.55	88.55	88.71	88.87	88.94	89.09	89.09	89.24	89.39
83	86.75	86.93	87.10	87.27	87.44	87.44	87.61	87.75	87.91	88.07	88.23	88.39	88.39	88.55	88.71	88.79	88.94	88.94	89.09	89.24
84	86.57	86.75	86.93	87.10	87.27	87.27	87.44	87.59	87.75	87.91	88.07	88.23	88.23	88.39	88.55	88.64	88.79	88.79	88.94	89.09
85	86.39	86.57	86.76	86.93	87.10	87.10	87.27	87.43	87.59	87.75	87.91	88.07	88.07	88.23	88.39	88.49	88.64	88.64	88.79	88.94
86	86.21	86.39	86.59	86.76	86.93	86.93	87.10	87.27	87.43	87.59	87.75	87.91	87.91	88.07	88.23	88.34	88.49	88.49	88.64	88.79
87	86.03	86.21	86.42	86.59	86.76	86.76	86.93	87.11	87.27	87.43	87.59	87.75	87.75	87.91	88.07	88.19	88.34	88.34	88.49	88.64
88	85.85	86.03	86.25	86.42	86.59	86.59	86.76	86.95	87.11	87.27	87.43	87.59	87.59	87.75	87.91	88.04	88.19	88.19	88.34	88.49
89	85.67	85.85	86.08	86.25	86.42	86.42	86.59	86.79	86.95	87.11	87.27	87.43	87.43	87.59	87.75	87.89	88.04	88.04	88.19	88.34
90	85.49	85.67	85.91	86.08	86.25	86.25	86.42	86.63	86.79	86.95	87.11	87.27	87.27	87.43	87.59	87.74	87.89	87.89	88.04	88.19
91	85.31	85.49	85.74	85.91	86.08	86.08	86.25	86.47	86.63	86.79	86.95	87.11	87.11	87.27	87.43	87.59	87.74	87.74	87.89	88.04
92	---	85.31	85.57	85.74	85.91	85.91	86.08	86.31	86.47	86.63	86.79	86.95	86.95	87.11	87.27	87.44	87.59	87.59	87.74	87.89
93	---	---	85.40	85.57	85.74	85.74	85.91	86.15	86.31	86.47	86.63	86.79	86.79	86.95	87.11	87.29	87.44	87.44	87.59	87.74
94	---	---	---	85.40	85.57	85.57	85.74	85.99	86.15	86.31	86.47	86.63	86.63	86.79	86.95	87.14	87.29	87.29	87.44	87.59
95	---	---	---	---	85.40	85.40	85.57	85.83	85.99	86.15	86.31	86.47	86.47	86.63	86.79	86.99	87.14	87.14	87.29	87.44
96	---	---	---	---	---	85.23	85.40	85.67	85.83	85.99	86.15	86.31	86.31	86.47	86.63	86.84	86.99	86.99	87.14	87.29
97	---	---	---	---	---	---	85.23	85.51	85.67	85.83	85.99	86.15	86.15	86.31	86.47	86.69	86.84	86.84	86.99	87.14
98	---	---	---	---	---	---	---	85.35	85.51	85.67	85.83	85.99	85.99	86.15	86.31	86.54	86.69	86.69	86.84	86.99
99	---	---	---	---	---	---	---	---	85.35	85.51	85.67	85.83	85.83	85.99	86.15	86.39	86.54	86.54	86.69	86.84
100	---	---	---	---	---	---	---	---	---	85.35	85.51	85.67	85.67	85.83	85.99	86.24	86.39	86.39	86.54	86.69

NO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01	---	---	---	---	---	---	---	---	---	---	85.35	85.51	85.51	85.67	85.83	86.09	86.24	86.24	86.39	86.54
102	---	---	---	---	---	---	---	---	---	---	---	85.35	85.35	85.51	85.67	85.94	86.09	86.09	86.24	86.39
103	---	---	---	---	---	---	---	---	---	---	---	---	85.19	85.35	85.51	85.79	85.94	85.94	86.09	86.24
104	---	---	---	---	---	---	---	---	---	---	---	---	---	85.19	85.35	85.64	85.79	85.79	85.94	86.09
105	---	---	---	---	---	---	---	---	---	---	---	---	---	---	85.19	85.49	85.64	85.64	85.79	85.94
106	---	---	---	---	---	---	---	---	---	---	---	---	---	---	---	85.34	85.49	85.49	85.64	85.79
107	---	---	---	---	---	---	---	---	---	---	---	---	---	---	---	---	85.34	85.34	85.49	85.64
108	---	---	---	---	---	---	---	---	---	---	---	---	---	---	---	---	---	85.19	85.34	85.49
109	---	---	---	---	---	---	---	---	---	---	---	---	---	---	---	---	---	---	85.19	85.34
110	---	---	---	---	---	---	---	---	---	---	---	---	---	---	---	---	---	---	---	85.19

NO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99.85	99.86	99.86	99.86	99.86	99.86	99.86	99.86	99.87	99.87	99.87	99.87	99.87	99.87	99.87	99.87	99.87	99.87	99.88	99.88
3	99.70	99.72	99.72	99.72	99.72	99.72	99.72	99.72	99.74	99.74	99.74	99.74	99.74	99.74	99.74	99.74	99.74	99.74	99.76	99.76
4	99.55	99.58	99.58	99.58	99.58	99.58	99.58	99.58	99.61	99.61	99.61	99.61	99.61	99.61	99.61	99.61	99.61	99.61	99.64	99.64
5	99.40	99.44	99.44	99.44	99.44	99.44	99.44	99.44	99.48	99.48	99.48	99.48	99.48	99.48	99.48	99.48	99.48	99.48	99.52	99.52
6	99.25	99.30	99.30	99.30	99.30	99.30	99.30	99.30	99.35	99.35	99.35	99.35	99.35	99.35	99.35	99.35	99.35	99.35	99.40	99.40
7	99.10	99.16	99.16	99.16	99.16	99.16	99.16	99.16	99.22	99.22	99.22	99.22	99.22	99.22	99.22	99.22	99.22	99.22	99.28	99.28
8	98.95	99.02	99.02	99.02	99.02	99.02	99.02	99.02	99.09	99.09	99.09	99.09	99.09	99.09	99.09	99.09	99.09	99.09	99.16	99.16
9	98.80	98.88	98.88	98.88	98.88	98.88	98.88	98.88	98.96	98.96	98.96	98.96	98.96	98.96	98.96	98.96	98.96	98.96	99.04	99.04
10	98.65	98.74	98.74	98.74	98.74	98.74	98.74	98.74	98.83	98.83	98.83	98.83	98.83	98.83	98.83	98.83	98.83	98.83	98.92	98.92
11	98.50	98.60	98.60	98.60	98.60	98.60	98.60	98.60	98.70	98.70	98.70	98.70	98.70	98.70	98.70	98.70	98.70	98.70	98.80	98.80
12	98.35	98.46	98.46	98.46	98.46	98.46	98.46	98.46	98.57	98.57	98.57	98.57	98.57	98.57	98.57	98.57	98.57	98.57	98.68	98.68
13	98.20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44	98.44	98.44	98.44	98.44	98.44	98.44	98.44	98.44	98.44	98.56	98.56
14	98.05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31	98.31	98.31	98.31	98.31	98.31	98.31	98.31	98.31	98.31	98.44	98.44
15	97.90	98.04	98.04	98.04	98.04	98.04	98.04	98.04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18	98.32	98.32
16	97.75	97.90	97.90	97.90	97.90	97.90	97.90	97.90	98.05	98.05	98.05	98.05	98.05	98.05	98.05	98.05	98.05	98.05	98.20	98.20
17	97.60	97.76	97.76	97.76	97.76	97.76	97.76	97.76	97.92	97.92	97.92	97.92	97.92	97.92	97.92	97.92	97.92	97.92	98.08	98.08
18	97.45	97.62	97.62	97.62	97.62	97.62	97.62	97.62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79	97.96	97.96
19	97.30	97.48	97.48	97.48	97.48	97.48	97.48	97.48	97.66	97.66	97.66	97.66	97.66	97.66	97.66	97.66	97.66	97.66	97.84	97.84
20	97.15	97.34	97.34	97.34	97.34	97.34	97.34	97.34	97.53	97.53	97.53	97.53	97.53	97.53	97.53	97.53	97.53	97.53	97.72	97.72
21	97.00	97.20	97.20	97.20	97.20	97.20	97.20	97.20	97.40	97.40	97.40	97.40	97.40	97.40	97.40	97.40	97.40	97.40	97.60	97.60
22	96.85	97.06	97.06	97.06	97.06	97.06	97.06	97.06	97.27	97.27	97.27	97.27	97.27	97.27	97.27	97.27	97.27	97.27	97.48	97.48
23	96.70	96.92	96.92	96.92	96.92	96.92	96.92	96.92	97.14	97.14	97.14	97.14	97.14	97.14	97.14	97.14	97.14	97.14	97.36	97.36
24	96.55	96.78	96.78	96.78	96.78	96.78	96.78	96.78	97.01	97.01	97.01	97.01	97.01	97.01	97.01	97.01	97.01	97.01	97.24	97.24
25	96.40	96.64	96.64	96.64	96.64	96.64	96.64	96.64	96.88	96.88	96.88	96.88	96.88	96.88	96.88	96.88	96.88	96.88	97.12	97.12
26	96.25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75	96.75	96.75	96.75	96.75	96.75	96.75	96.75	96.75	96.75	97.00	97.00
27	96.10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62	96.62	96.62	96.62	96.62	96.62	96.62	96.62	96.62	96.62	96.88	96.88
28	95.95	96.22	96.22	96.22	96.22	96.22	96.22	96.22	96.49	96.49	96.49	96.49	96.49	96.49	96.49	96.49	96.49	96.49	96.76	96.76
29	95.80	96.08	96.08	96.08	96.08	96.08	96.08	96.08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36	96.64	96.64
30	95.65	95.94	95.94	95.94	95.94	95.94	95.94	95.94	96.23	96.23	96.23	96.23	96.23	96.23	96.23	96.23	96.23	96.23	96.52	96.52
31	95.50	95.80	95.80	95.80	95.80	95.80	95.80	95.80	96.10	96.10	96.10	96.10	96.10	96.10	96.10	96.10	96.10	96.10	96.40	96.40
32	95.35	95.66	95.66	95.66	95.66	95.66	95.66	95.66	95.97	95.97	95.97	95.97	95.97	95.97	95.97	95.97	95.97	95.97	96.28	96.28
33	95.20	95.52	95.52	95.52	95.52	95.52	95.52	95.52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5.84	96.16	96.16
34	94.99	95.38	95.38	95.38	95.38	95.38	95.38	95.38	95.71	95.71	95.71	95.71	95.71	95.71	95.71	95.71	95.71	95.71	96.04	96.04
35	94.88	94.99	94.99	94.99	95.24	95.24	95.24	95.24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58	95.92	95.92
36	94.77	94.88	94.88	94.89	94.99	94.99	94.99	94.99	95.45	95.45	95.45	95.45	95.45	95.45	95.45	95.45	95.45	95.45	95.80	95.80
37	94.66	94.77	94.77	94.79	94.89	94.89	94.89	94.89	94.99	94.99	94.99	95.32	95.32	95.32	95.32	95.32	95.32	95.32	95.68	95.68
38	94.55	94.66	94.66	94.69	94.79	94.79	94.79	94.79	94.89	94.89	94.89	94.99	94.99	94.99	95.19	95.19	95.19	95.19	95.56	95.56
39	94.44	94.55	94.55	94.59	94.69	94.69	94.69	94.69	94.79	94.79	94.79	94.89	94.89	94.89	94.99	94.99	94.99	94.99	95.44	95.44
40	94.33	94.44	94.44	94.49	94.59	94.59	94.59	94.59	94.69	94.69	94.69	94.79	94.79	94.79	94.89	94.89	94.90	94.90	94.99	94.99
41	94.22	94.33	94.33	94.39	94.49	94.49	94.49	94.49	94.59	94.59	94.59	94.69	94.69	94.69	94.79	94.79	94.81	94.81	94.90	94.90
42	94.11	94.22	94.22	94.29	94.39	94.39	94.39	94.39	94.49	94.49	94.49	94.59	94.59	94.59	94.69	94.69	94.72	94.72	94.81	94.81
43	94.00	94.11	94.11	94.19	94.29	94.29	94.29	94.29	94.39	94.39	94.39	94.49	94.49	94.49	94.59	94.59	94.63	94.63	94.72	94.72
44	93.89	94.00	94.00	94.09	94.19	94.19	94.19	94.19	94.29	94.29	94.29	94.39	94.39	94.39	94.49	94.49	94.54	94.54	94.63	94.63
45	93.78	93.89	93.89	93.99	94.09	94.09	94.09	94.09	94.19	94.19	94.19	94.29	94.29	94.29	94.39	94.39	94.45	94.45	94.54	94.54
46	93.67	93.78	93.78	93.89	93.99	93.99	93.99	93.99	94.09	94.09	94.09	94.19	94.19	94.19	94.29	94.29	94.36	94.36	94.45	94.45
47	93.56	93.67	93.67	93.79	93.89	93.89	93.89	93.89	93.99	93.99	93.99	94.09	94.09	94.09	94.19	94.19	94.27	94.27	94.36	94.36
48	93.45	93.56	93.56	93.69	93.79	93.79	93.79	93.79	93.89	93.89	93.89	93.99	93.99	93.99	94.09	94.09	94.18	94.18	94.27	94.27
49	93.34	93.45	93.45	93.59	93.69	93.69	93.69	93.69	93.79	93.79	93.79	93.89	93.89	93.89	93.99	93.99	94.09	94.09	94.18	94.18
50	93.23	93.34	93.34	93.49	93.59	93.59	93.59	93.59	93.69	93.69	93.69	93.79	93.79	93.79	93.89	93.89	94.00	94.00	94.09	94.09

NO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51	93.12	93.23	93.23	93.39	93.49	93.49	93.49	93.49	93.59	93.59	93.59	93.69	93.69	93.69	93.79	93.79	93.91	93.91	94.00	94.00
52	93.01	93.12	93.12	93.29	93.39	93.39	93.39	93.39	93.49	93.49	93.49	93.59	93.59	93.59	93.69	93.69	93.82	93.82	93.91	93.91
53	92.90	93.01	93.01	93.19	93.29	93.29	93.29	93.29	93.39	93.39	93.39	93.49	93.49	93.49	93.59	93.59	93.73	93.73	93.82	93.82
54	92.79	92.90	92.90	93.09	93.19	93.19	93.19	93.19	93.29	93.29	93.29	93.39	93.39	93.39	93.49	93.49	93.64	93.64	93.73	93.73
55	92.68	92.79	92.79	92.99	93.09	93.09	93.09	93.09	93.19	93.19	93.19	93.29	93.29	93.29	93.39	93.39	93.55	93.55	93.64	93.64
56	92.57	92.68	92.68	92.89	92.99	92.99	92.99	92.99	93.09	93.09	93.09	93.19	93.19	93.19	93.29	93.29	93.46	93.46	93.55	93.55
57	92.46	92.57	92.57	92.79	92.89	92.89	92.89	92.89	92.99	92.99	92.99	93.09	93.09	93.09	93.19	93.19	93.37	93.37	93.46	93.46
58	92.35	92.46	92.46	92.69	92.79	92.79	92.79	92.79	92.89	92.89	92.89	92.99	92.99	92.99	93.09	93.09	93.28	93.28	93.37	93.37
59	92.24	92.35	92.35	92.59	92.69	92.69	92.69	92.69	92.79	92.79	92.79	92.89	92.89	92.89	92.99	92.99	93.19	93.19	93.28	93.28
60	92.13	92.24	92.24	92.49	92.59	92.59	92.59	92.59	92.69	92.69	92.69	92.79	92.79	92.79	92.89	92.89	93.10	93.10	93.19	93.19
61	92.02	92.13	92.13	92.39	92.49	92.49	92.49	92.49	92.59	92.59	92.59	92.69	92.69	92.69	92.79	92.79	93.01	93.01	93.10	93.10
62	91.91	92.02	92.02	92.29	92.39	92.39	92.39	92.39	92.49	92.49	92.49	92.59	92.59	92.59	92.69	92.69	92.92	92.92	93.01	93.01
63	91.80	91.91	91.91	92.19	92.29	92.29	92.29	92.29	92.39	92.39	92.39	92.49	92.49	92.49	92.59	92.59	92.83	92.83	92.92	92.92
64	91.69	91.80	91.80	92.09	92.19	92.19	92.19	92.19	92.29	92.29	92.29	92.39	92.39	92.39	92.49	92.49	92.74	92.74	92.83	92.83
65	91.58	91.69	91.69	91.99	92.09	92.09	92.09	92.09	92.19	92.19	92.19	92.29	92.29	92.29	92.39	92.39	92.65	92.65	92.74	92.74
66	91.47	91.58	91.58	91.89	91.99	91.99	91.99	91.99	92.09	92.09	92.09	92.19	92.19	92.19	92.29	92.29	92.56	92.56	92.65	92.65
67	91.36	91.47	91.47	91.79	91.89	91.89	91.89	91.89	91.99	91.99	91.99	92.09	92.09	92.09	92.19	92.19	92.47	92.47	92.56	92.56
68	91.25	91.36	91.36	91.69	91.79	91.79	91.79	91.79	91.89	91.89	91.89	91.99	91.99	91.99	92.09	92.09	92.38	92.38	92.47	92.47
69	91.14	91.25	91.25	91.59	91.69	91.69	91.69	91.69	91.79	91.79	91.79	91.89	91.89	91.89	91.99	91.99	92.29	92.29	92.38	92.38
70	91.03	91.14	91.14	91.49	91.59	91.59	91.59	91.59	91.69	91.69	91.69	91.79	91.79	91.79	91.89	91.89	92.20	92.20	92.29	92.29
71	90.92	91.03	91.03	91.39	91.49	91.49	91.49	91.49	91.59	91.59	91.59	91.69	91.69	91.69	91.79	91.79	92.11	92.11	92.20	92.20
72	90.81	90.92	90.92	91.29	91.39	91.39	91.39	91.39	91.49	91.49	91.49	91.59	91.59	91.59	91.69	91.69	92.02	92.02	92.11	92.11
73	90.70	90.81	90.81	91.19	91.29	91.29	91.29	91.29	91.39	91.39	91.39	91.49	91.49	91.49	91.59	91.59	91.93	91.93	92.02	92.02
74	90.59	90.70	90.70	91.09	91.19	91.19	91.19	91.19	91.29	91.29	91.29	91.39	91.39	91.39	91.49	91.49	91.84	91.84	91.93	91.93
75	90.48	90.59	90.59	90.99	91.09	91.09	91.09	91.09	91.19	91.19	91.19	91.29	91.29	91.29	91.39	91.39	91.75	91.75	91.84	91.84
76	90.37	90.48	90.48	90.89	90.99	90.99	90.99	90.99	91.09	91.09	91.09	91.19	91.19	91.19	91.29	91.29	91.66	91.66	91.75	91.75
77	90.26	90.37	90.37	90.79	90.89	90.89	90.89	90.89	90.99	90.99	90.99	91.09	91.09	91.09	91.19	91.19	91.57	91.57	91.66	91.66
78	90.15	90.26	90.26	90.69	90.79	90.79	90.79	90.79	90.89	90.89	90.89	90.99	90.99	90.99	91.09	91.09	91.48	91.48	91.57	91.57
79	89.99	90.15	90.15	90.59	90.69	90.69	90.69	90.69	90.79	90.79	90.79	90.89	90.89	90.89	90.99	90.99	91.39	91.39	91.48	91.48
80	89.84	89.99	89.99	90.49	90.59	90.59	90.59	90.59	90.69	90.69	90.69	90.79	90.79	90.79	90.89	90.89	91.30	91.30	91.39	91.39
81	89.69	89.84	89.85	89.99	90.49	90.49	90.49	90.49	90.59	90.59	90.59	90.69	90.69	90.69	90.79	90.79	91.21	91.21	91.30	91.30
82	89.54	89.69	89.71	89.85	89.99	89.99	90.39	90.39	90.49	90.49	90.49	90.59	90.59	90.59	90.69	90.69	91.12	91.12	91.21	91.21
83	89.39	89.54	89.57	89.71	89.85	89.85	89.99	89.99	90.39	90.39	90.39	90.49	90.49	90.49	90.59	90.59	91.03	91.03	91.12	91.12
84	89.24	89.39	89.43	89.57	89.71	89.71	89.85	89.86	89.99	90.29	90.29	90.39	90.39	90.39	90.49	90.49	90.94	90.94	91.03	91.03
85	89.09	89.24	89.29	89.43	89.57	89.57	89.71	89.73	89.86	89.99	90.19	90.29	90.29	90.29	90.39	90.39	90.85	90.85	90.94	90.94
86	88.94	89.09	89.15	89.29	89.43	89.43	89.57	89.60	89.73	89.86	89.99	90.19	90.19	90.19	90.29	90.29	90.76	90.76	90.85	90.85
87	88.79	88.94	89.01	89.15	89.29	89.29	89.43	89.47	89.60	89.73	89.86	89.99	89.99	90.09	90.19	90.19	90.67	90.67	90.76	90.76
88	88.64	88.79	88.87	89.01	89.15	89.15	89.29	89.34	89.47	89.60	89.73	89.86	89.86	89.99	90.09	90.09	90.58	90.58	90.67	90.67
89	88.49	88.64	88.73	88.87	89.01	89.01	89.15	89.21	89.34	89.47	89.60	89.73	89.73	89.86	89.99	89.99	90.49	90.49	90.58	90.58
90	88.34	88.49	88.59	88.73	88.87	88.87	89.01	89.08	89.21	89.34	89.47	89.60	89.60	89.73	89.86	89.86	89.99	89.99	90.49	90.49
91	88.19	88.34	88.45	88.59	88.73	88.73	88.87	88.95	89.08	89.21	89.34	89.47	89.47	89.60	89.73	89.73	89.86	89.87	89.99	90.40
92	88.04	88.19	88.31	88.45	88.59	88.59	88.73	88.82	88.95	89.08	89.21	89.34	89.34	89.47	89.60	89.60	89.73	89.75	89.87	89.99
93	87.89	88.04	88.17	88.31	88.45	88.45	88.59	88.69	88.82	88.95	89.08	89.21	89.21	89.34	89.47	89.47	89.60	89.63	89.75	89.87
94	87.74	87.89	88.03	88.17	88.31	88.31	88.45	88.56	88.69	88.82	88.95	89.08	89.08	89.21	89.34	89.34	89.47	89.51	89.63	89.75
95	87.59	87.74	87.89	88.03	88.17	88.17	88.31	88.43	88.56	88.69	88.82	88.95	88.95	89.08	89.21	89.21	89.34	89.39	89.51	89.63
96	87.44	87.59	87.75	87.89	88.03	88.03	88.17	88.30	88.43	88.56	88.69	88.82	88.82	88.95	89.08	89.08	89.21	89.27	89.39	89.51
97	87.29	87.44	87.61	87.75	87.89	87.89	88.03	88.17	88.30	88.43	88.56	88.69	88.69	88.82	88.95	88.95	89.08	89.15	89.27	89.39
98	87.14	87.29	87.47	87.61	87.75	87.75	87.89	88.04	88.17	88.30	88.43	88.56	88.56	88.69	88.82	88.82	88.95	89.03	89.15	89.27
99	86.99	87.14	87.33	87.47	87.61	87.61	87.75	87.91	88.04	88.17	88.30	88.43	88.43	88.56	88.69	88.69	88.82	88.91	89.03	89.15
100	86.84	86.99	87.19	87.33	87.47	87.47	87.61	87.78	87.91	88.04	88.17	88.30	88.30	88.43	88.56	88.56	88.69	88.79	88.91	89.03

NO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01	86.69	86.84	87.05	87.19	87.33	87.33	87.47	87.65	87.78	87.91	88.04	88.17	88.17	88.30	88.43	88.43	88.56	88.67	88.79	88.91
102	86.54	86.69	86.91	87.05	87.19	87.19	87.33	87.52	87.65	87.78	87.91	88.04	88.04	88.17	88.30	88.30	88.43	88.55	88.67	88.79
103	86.39	86.54	86.77	86.91	87.05	87.05	87.19	87.39	87.52	87.65	87.78	87.91	87.91	88.04	88.17	88.17	88.30	88.43	88.55	88.67
104	86.24	86.39	86.63	86.77	86.91	86.91	87.05	87.26	87.39	87.52	87.65	87.78	87.78	87.91	88.04	88.04	88.17	88.31	88.43	88.55
105	86.09	86.24	86.49	86.63	86.77	86.77	86.91	87.13	87.26	87.39	87.52	87.65	87.65	87.78	87.91	87.91	88.04	88.19	88.31	88.43
106	85.94	86.09	86.35	86.49	86.63	86.63	86.77	87.00	87.13	87.26	87.39	87.52	87.52	87.65	87.78	87.78	87.91	88.07	88.19	88.31
107	85.79	85.94	86.21	86.35	86.49	86.49	86.63	86.87	87.00	87.13	87.26	87.39	87.39	87.52	87.65	87.65	87.78	87.95	88.07	88.19
108	85.64	85.79	86.07	86.21	86.35	86.35	86.49	86.74	86.87	87.00	87.13	87.26	87.26	87.39	87.52	87.52	87.65	87.83	87.95	88.07
109	85.49	85.64	85.93	86.07	86.21	86.21	86.35	86.61	86.74	86.87	87.00	87.13	87.13	87.26	87.39	87.39	87.52	87.71	87.83	87.95
110	85.34	85.49	85.79	85.93	86.07	86.07	86.21	86.48	86.61	86.74	86.87	87.00	87.00	87.13	87.26	87.26	87.39	87.59	87.71	87.83
111	85.19	85.34	85.65	85.79	85.93	85.93	86.07	86.35	86.48	86.61	86.74	86.87	86.87	87.00	87.13	87.13	87.26	87.47	87.59	87.71
112	---	85.19	85.51	85.65	85.79	85.79	85.93	86.22	86.35	86.48	86.61	86.74	86.74	86.87	87.00	87.00	87.13	87.35	87.47	87.59
113	---	---	85.37	85.51	85.65	85.65	85.79	86.09	86.22	86.35	86.48	86.61	86.61	86.74	86.87	86.87	87.00	87.23	87.35	87.47
114	---	---	---	85.37	85.51	85.51	85.65	85.96	86.09	86.22	86.35	86.48	86.48	86.61	86.74	86.74	86.87	87.11	87.23	87.35
115	---	---	---	---	85.37	85.37	85.51	85.83	85.96	86.09	86.22	86.35	86.35	86.48	86.61	86.61	86.74	86.99	87.11	87.23
116	---	---	---	---	---	85.23	85.37	85.70	85.83	85.96	86.09	86.22	86.22	86.35	86.48	86.48	86.61	86.87	86.99	87.11
117	---	---	---	---	---	---	85.23	85.57	85.70	85.83	85.96	86.09	86.09	86.22	86.35	86.35	86.48	86.75	86.87	86.99
118	---	---	---	---	---	---	---	85.44	85.57	85.70	85.83	85.96	85.96	86.09	86.22	86.22	86.35	86.63	86.75	86.87
119	---	---	---	---	---	---	---	---	85.44	85.57	85.70	85.83	85.83	85.96	86.09	86.09	86.22	86.51	86.63	86.75
120	---	---	---	---	---	---	---	---	---	85.44	85.57	85.70	85.70	85.83	85.96	85.96	86.09	86.39	86.51	86.63
121	---	---	---	---	---	---	---	---	---	---	85.44	85.57	85.57	85.70	85.83	85.83	85.96	86.27	86.39	86.51
122	---	---	---	---	---	---	---	---	---	---	---	85.44	85.44	85.57	85.70	85.70	85.83	86.15	86.27	86.39
123	---	---	---	---	---	---	---	---	---	---	---	---	85.31	85.44	85.57	85.57	85.70	86.03	86.15	86.27
124	---	---	---	---	---	---	---	---	---	---	---	---	---	85.31	85.44	85.44	85.57	85.91	86.03	86.15
125	---	---	---	---	---	---	---	---	---	---	---	---	---	---	85.31	85.31	85.44	85.79	85.91	86.03
126	---	---	---	---	---	---	---	---	---	---	---	---	---	---	---	85.18	85.31	85.67	85.79	85.91
127	---	---	---	---	---	---	---	---	---	---	---	---	---	---	---	---	85.18	85.55	85.67	85.79
128	---	---	---	---	---	---	---	---	---	---	---	---	---	---	---	---	---	85.43	85.55	85.67
129	---	---	---	---	---	---	---	---	---	---	---	---	---	---	---	---	---	---	85.43	85.55
130	---	---	---	---	---	---	---	---	---	---	---	---	---	---	---	---	---	---	---	85.43

※ 대규모 학교 등 평정인원이 130명을 초과할 경우는 평정 분포 비율에 맞게 조정점을 균등 배분한다.
※ 교감 근무성적 평정 조정점 조견표는 매학년도 도교육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른다.

자율 균형 미래

- 발행일 : 2025. 11.
- 발행인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 발행자 : 경기도교육청
- 디자인 : 피피디자인(T.031-247-2227)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중등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